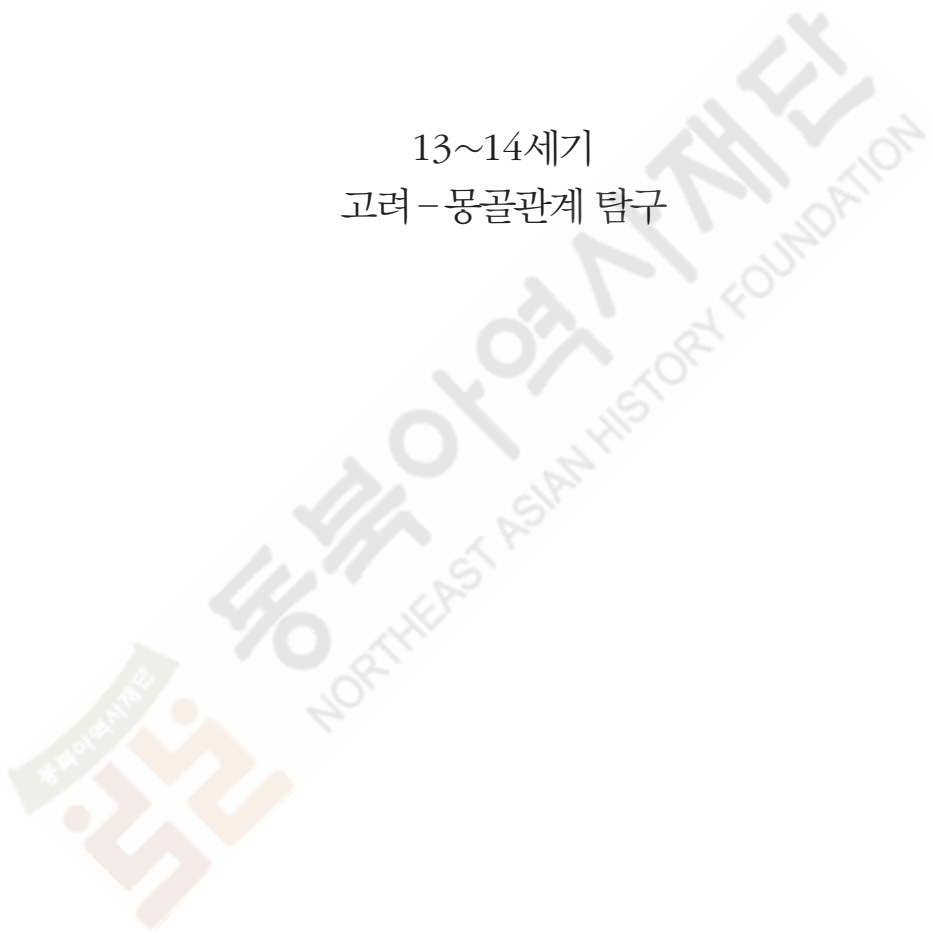


13~14세기
고려-몽골관계 탐구



13~14세기 고려-몽골관계 탐구

동북아역사재단 · 경북대학교 한중교류연구원 엮음



지난 2009년 12월 동북아역사재단과 경북대학교 한중교류연구원은 “13~14세기 동아시아와 고려: 대원-고려 관계의 성격 탐구”라는 주제로, 이 분야의 국내외 연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학술회의를 열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3~14세기는 몽골이라는 거대 세력이 세계사 무대에 등장하여, 동아시아 국제관계사뿐만 아니라 지구사적 변국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또한 13세기 초 고려가 몽골과 처음 대면한 이후 14세기 후반까지 약 150년에 이르는 시기는 우리 한민족과 이웃 민족들 간의 교류사에서 매우 특별한 시기로, 이 시대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고려일국사(高麗一國史) 차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한국 역사학계가 그동안 13~14세기 고려사 연구에 많은 성과를 축적해왔지만, 여전히 고려사 연구자와 13~14세기 몽골시대사·원사 연구자 사이의 학문 교류와 협력 연구를 위한 노력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글들을 체계 있게 다듬고 보완하여 『13~14세기 고려-몽골관계 탐구』를 펴냅니다. 국제학술회의는 국내외 학계의 각 분야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당시 동아시아사와 고

려사 관계의 성격을 토론하는 첫 번째 마당이 된 바 있습니다.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앞으로 학제적 또는 국제적 협력 연구가 활발해지면, 13~14세기 고려사 연구를 심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15세기 조선 사회의 역동적 변화의 비밀을 푸는 열쇠를 찾는 데에도 적잖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대 동아시아 국제관계사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사실과 지식을 축적하여 동북아 국가간 역사분쟁을 해소하고, 평화와 공존의 실마리를 찾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논문을 다듬고 정리해주신 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1년 6월 15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정재정



● 여몽관계사 연구의 새로운 시점 이개석	
-제1차 여몽화약과 지배층의 통혼관계를 중심으로-	
1. 머리말	11
2. 여몽형제맹약관계의 개시와 성격	15
3. 몽골 공신[根脚] 가문과 고려 지배층의 통혼	27
4. 맺음말	49
● 고려-몽골관계에서 보이는 책봉-조공 관계 요소의 탐색 이익주	
1. 머리말	53
2. 책봉-조공관계의 요소	56
3. 책봉-조공관계 이외의 요소	72
4. 맺음말	88
● 대몽항쟁기(1219~1270) 여몽관계의 추이와 성격 윤용혁	
1. 머리말	95
2. 1219년 여몽 간의 '형제맹약'	98
3. 군사적 대결의 개시	103
4. 몽골 침입에 대한 고려의 외교적 대응	110
5. 몽골의 대고려 전략의 전환	117
6. 맺음말	120

● 쿠빌라이의 고려정책과 원 - 고려관계의 전환점	천더즈
1. 몽골의 고려에 대한 군사침략	125
2. 쿠빌라이의 고려정책	132
3. 행정 개치 사건에서 본 고려의 지위	148
● 제국 동방 변경에서 일본을 막는다	모리히라 마사히코
1. 머리말	159
2. 갑술(1274)·신사(1281)의 역과 고려	163
3. 고려의 '대일전선'화	171
4. 몽골 황족과의 통혼 배경	180
5. 교통·경제정책과 왕조체제의 보전	183
6. 맺음말 : 고려사에서 갑술·신사의 역의 의의에 대하여	193
● 13~14세기 여몽관계에 대한 몽골 학계의 관점	김장규
1. 머리말	197
2. 여몽관계에 대한 몽골 학계의 관점	199
3. 맺음말	219

여몽관계사 연구의 새로운 시점

— 제1차 여몽화약(麗蒙和約)과 지배층의
통혼관계를 중심으로 —

이개석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 동북아시아사연구소
NORTH 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여몽관계사 연구의 새로운 시점

— 제1차 여몽화약(麗蒙和約)과 지배층의
통혼관계를 중심으로

이개석 경북대학교

1. 머리말

최근 국내외의 여몽·여원관계사 연구와 토론은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여몽관계사 연구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모리히라 마사히코[森平雅彦]는 “고려가 독자적인 왕조체제를 유지한 것을 두 나라 관계의 기축으로 중시하고, (註) 여몽관계(麗蒙關係)를 전통적인 중국 왕조에 대한 사대관계(事大關係)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는 관점”¹인 곧 이익주가 대

1 森平雅彦(2008a), 「事元期高麗における在來王朝體制の保全問題」, 『北東アジア研究』別冊第1號, 135쪽. 이 견해는 李益柱가 최근 발표한 「원간섭기의 역사적 성격」, 『한국중세사학회 제75회 연구발표회 논문집 : 원간섭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2009년 6월 26일 경북대학교, 7~27쪽)에서 재천명되었고, 일부 수정되어 「고려-몽골 관계사연구시각의 검토 : 고려-몽골관계사에 대한 통시적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중세사연구』 27호, 5~43쪽에 발표되었다.

표하는 ‘원 간섭기’론의 논거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 원에게 고려 재래 왕조체제의 보전은 중국전통의 화이질서나 책봉체제의 재현(再現)이라기 보다, 상대국에 대한 일정한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비교적 고도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인정한다고 하는 몽골의 일반적 정복지 지배 방식에, 책봉·사인(賜印)·반력(頒曆) 등 부분적으로 중국풍의 외피를 두른 것으로 보는 것이 실태에 가까운 것은 아닐까?”²라고 하여, 여원관계에 몽골적 정복지 지배 형식을 관철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른바 ‘원 간섭기’론은 현재 한국 학계를 대표하는 견해로서 13세기 후반부터 14세기 전반까지 약 100년 동안 몽골의 간섭이 계속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익주는 그 사이 몽골의 외압에 조응하여 고려에 독자적인 정치체제가 성립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고려의 대원(對元)관계의 틀로서 세조구제(世祖舊制)와 이를 내적으로 반영한 국왕의 측근 정치 성립에도 주목하고 있다.³

근래 필자도 13~14세기 원과 고려 사이의 관계를 검토한 몇 편의 글을 쓰면서 위에 언급한 두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는데,⁴ 여몽·여원(麗蒙·麗元)관계가 매우 중층적인 구조로 얽혀 있어서 한 두 가지 척도로 간단히 성격을 규정하거나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결론을

2 森平雅彦(2008a), 위의 글, 161쪽.

3 李益柱(1996), 「高麗·元關係의 構造와 高麗後期 政治體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9쪽.

4 이개석(2004), 「『高麗史』元宗·忠烈王·忠宣王世家 중 元朝關係記事의 註釋研究」, 『東洋史學研究』 88, 東洋史學會 ; __ (2007a), 「大蒙古國-高麗關係 연구의 재검토」, 『史學研究』 88, 한국사학회 ; __ (2007b), 「정통론과 13~14세기 동아시아 역사 서술」, 『大丘史學』 88, 대구사학회.

연게 되었다. 또 그 사이 간과했던 선배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와 문제 의식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검토할 기회를 얻게 되면서 여몽·여원관계 연구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難題)와 미개척 분야가 있어서, 아직도 미력이나마 기여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 기뻐다.

여몽관계가 형식상 이전 고려의 대송(對宋), 대요(對遼), 대금(對金) 사대 관계나 이후 조선의 대명(對明), 대청(對淸) 사대관계와 유사한 점이 많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지만, 유목민족 국가 대몽골국(大蒙古國, Yeke Mongol ulus)과 그것을 계승한 대원(大元)이 고려와 맺은 새로운 관계는 그 이전과 이후에 고려와 외교관계를 맺었던 한족 왕조나 북방민족의 왕조와 달랐다는 인식에서 필자의 문제의식은 출발하고 있다. 동시에 고려 관료와 지식인들이 설사 몽골 왕조를 중국 왕조와 유사한 실체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대몽골국과 쿠빌라이가 지배한 카안 울루스 대원은 일체이면서 별개라는 인식이 연구의 새로운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곧 몽골 초원의 동남단에 천도하기 전의 대몽골국과 천도한 이후의 대원(大元)은 권력의 성격이 크게 달랐다. 그 권력을 장악하고 운용한 세력의 민족적 구성이 크게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쿠빌라이 왕조의 통치 이념은 몽케 카안 이전 몽골 권력의 시각에서 보면 본래의 궤도를 크게 수정한 것이었다. 새로운 권력에도 분명히 몽골 민족이 중심에 있었지만 그들이나 색목인이 그것을 독점한 것이 아니었다. 다수의 한인과 남인이 참여하고 있고, 고려인도 몽골 권력의 건설과 유지에 다수 참여하여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보이는 국가 권력이었다. 따라서 여몽관계 역시 전통적인 지배와 피지배, 책봉과 조공의 사대관계로 잘라 말하기도 어렵고 유목민족 특유의 정복지역 지배 방식으로도 설명하기 어렵다.

쿠빌라이 카안 즉위 이전의 대몽골국과 고려의 관계에 비하면, 쿠

빌라이 이후 대원과 고려의 제도화된 관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전히 “대원이라 부른 대몽골국” 제도와 이념의 기본 골격은 쿠빌라이 왕조에서도 상당부분 유지되었다. 따라서 인적구성의 변화나 통치제도의 변용을 지나치게 크게 평가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물론 14세기 인종(仁宗) 즉위 이후 특히 영종(英宗)과 문종(文宗) 시기 급격한 한화(漢化)가 진행되었고, 세조구제(世祖舊制)의 준수를 슬로건으로 내건 후지원(後至元, 1335-1340) 연간의 바얀 집권시기의 반동정치를 거쳐 지정갱시(至正更始)의 한화정책이 추세가 되었을 때, 몽골적 특성이 상당부분 변색되었음도 부인할 수 없다. 고려 역시 원조체제 속에 정치적·사회적으로 지나칠 만큼 깊이 통합되어 간 측면이 있음도 소홀히 평가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요컨대 몽골 권력 안에는 몽골인과 색목인 이외에 다수의 한족과 한화한 북방민족, 그리고 고려인이 참여하여 대원의 상층 권력 운용에 깊숙이 간여하고 있었다. 특히 고려인은 관료 외에도 환관과 궁녀라는 새롭고 독특한 성분으로 원조권력의 운영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원말 몽골 권력주체의 성격에 대하여 진지하게 되물어 볼 필요가 있다. 14세기 중엽의 몽골 정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13세기 초반 몽골 권력과 전혀 새로운 권력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고려와 몽골의 관계를 다각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고, 축적된 개별 연구를 개념화하는 일이 중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 역시 종래 여원관계 이해의 중요한 지렛대였던 왕실통혼에서 한걸음 나아가 고려 지배층과 몽골 공신가문 사이의 통혼관계로 넓혀서 새롭게 검토한 것이다. 아울러 필자는 고려와 대몽골국이 어떻게 관계를 시작하며, 그

성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른바 여몽형제맹약(麗蒙兄弟盟約, 제1차 여몽화약)의 전후 사정과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재검토하였는데, 이것은 필자가 여몽형제맹약을 고려가 몽골에 예속하는 첫 단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발표자가 이전에 다소 거칠게 검토한 바 있는 관점을 이 연구에서 보완한 것이다.⁵

따라서 2장에서는 1218년 이래 1259년 입조를 결정하기까지 여몽관계를 규정하는 1218년 몽골군의 1차 침경(侵境)과 형제맹약을 중심으로 여몽·여원관계의 개시(開始) 시기와 초기 여몽관계의 성격을 다시 검토하려는 것이고, 3장에서는 이른바 쿠빌라이 왕조 시기의 여몽관계의 한 측면을 양국 지배집단의 혼인관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두 문제 모두 이미 많건 적건 관련 연구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검토하였으나, 문제의식이 달라 여기서는 연구사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다.

2. 여몽형제맹약관계의 개시와 성격

고려와 몽골국 사이의 최초의 조우는 1211년 고려의 대금회사사절(對金回謝使節) 김양기(金良器) 일행이 오늘날의 베이징(北京) 근처 통주(通州)에서 몽골군이 쏜 화살에 맞아 살해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실질적인 교섭은 1218년 합진(合珍, 哈真)과 찰랄(札剌)이 이끈 1만의 몽골군과 완안자연(完顏子淵)이 이끈 2만의 동진군(東眞軍)이 대동강 중류 강동성(江東城)에 농성한 거란족을 수습하기 위해 고려에 침경하면서 시작된다. 동

5 이개석(2009), 「초기 여몽관계의 재구성 : 사료검토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재단 편, 『국제학술회의 : 한몽관계의 재조명』, 울란바타르, 133~154쪽.

계(東界)의 국경을 따라 고려 영토에 들어온 몽골군 군대와 동진국(東眞國) 군대는 강동성(江東城)에 이르러 고려에 대해서 군사와 군량의 지원, 동맹관계를 요구하였다. 고려는 결국 이에 응하여 1만의 군대와 1천 섬의 식량을 보냈고, 연합작전을 펴 1219년 1월 14일(辛巳) 강동성을 함락시켰다. 또 24일(辛卯)에는 칭기스칸이 보낸 조서를 몽골 사신이 고려국왕에게 전달하여 두 나라 사이에 공식적인 맹약의 관계가 성립되었고, 다음달 22일(己未) 몽골군이 철수했다.⁶

이에 대하여는 필자의 은사 고병익 선생의 개척적인 연구가 있으며, 목적과 명분은 고려 땅에 들어온 거란족을 몰아내주고 고려와 형제맹약을 맺는 데 있었으며, 당초 고려에게 군사와 군량지원을 요구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있다. 칭기스칸의 의도는 거란족의 정토(征討), 금에 대한 견제라는 고차원적 국제관계조작에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투배(投拜)의 성격도 있고, 부차적으로 몽골의 세공징납(歲貢徵納)이라는 경제적 요구도 관철하였다고 보았다.⁷ 또 이후의 국내 연구자들은 대체로 이러한 견해를 수용하고 있고, 특히 윤은숙의 경우 칭기스칸이 고려와 동진을 옷치긴 왕가에 분배하였다는 설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⁸

그러나 필자는 기왕의 이른바 ‘여몽형제맹약’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

6 尹龍焄은 李齊賢의 「金公行軍記」(『益齋亂藁』 益齋集 卷6/14上)의 기록을 들어 高麗史의 날짜가 오류라고 보고 있으나, 도리어 李齊賢의 行軍記 중 글자 그대로 믿기 어려운 기술이 많다.

7 高柄翊(1994), 「蒙古·高麗의 兄弟盟約의 性格」, 『東亞交涉史의 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36~183쪽.

8 윤은숙의 연구성과는 최근에 출간한 『몽골제국의 만주 지배사 — 옷치긴 왕가의 만주경영과 이성계의 조선 건국』(소나무, 2010) 51~64쪽에 집약되어 있다.

여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몽골-고려 형제맹약은 고려에 앞서 몽골에 굴복한 것으로 보이는 몽골-동진 사이의 맹약과 그리 다르지 않은 내용과 성격의 맹약이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 기왕의 연구는 몽골군이 고려에 들어오기 전에 몽골 측에서 선박을 태워 정주로 보낸 40여 명의 몽골 사절이 가져온 첩문(牒文)에 대해 일언반구도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 이 사실은 1219년 고려와 몽골국 두 나라 사이에 맺어진 형제맹약의 과정과 맹약의 성격에 대하여 아직도 검토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몽골 측의 요청으로 1218년(戊寅) 12월 고려가 쌀 1천 섬을 보냈을 때, 1천의 정병(精兵)을 이끌고 이를 호송한 중군(中軍) 판관(判官) 김양경(金良鏡)에게 몽골의 원수 합진이 위로연을 베푸는 자리에서 “양국이 형제를 맺으려면 마땅히 (고려)국왕에게 첩문을 받아와서 내가 돌아가 황제에게 아뢰어야 한다”⁹고 했다. 1219년 정월 13일 결화첩문(結和牒文)을 작성하여 몽골 행영(行營)에 가져갔다고 하는데,¹⁰ 고려에서 이러한 몽골의 요구를 수용하는 첩문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거란 잔당이 항복했던 다음날 14일 찰랄은 이에 대한 답사(答謝)를 조충과 김취려(金就麗)에게 하였고, 20일 합진과 찰랄 두 원수는 조충과 김취려 두 원수를 청하여 동맹(同盟)에 대하여 재확인한 다음,¹¹ 23일에 포리대완(蒲里岱完)을

9 『高麗史』卷103, 『趙冲傳』, “冲卽輸米一千石, 遣中軍判官金良鏡率精兵一千護送. 及良鏡至, 蒙古東真兩元帥邀置上坐宴慰曰, 兩國結爲兄弟, 當白國王, 受文牒來, 則我且還奏皇帝.” 같은 내용이 『高麗史節要』에 기록되어 있다(卷15/16上).

10 『元高麗紀事』2쪽. “十四年己卯, 正月十三日, 高麗遣知權閣門祇候尹公就, 中書注書崔雀, 奉結和牒文, 送箭刺行營, 箭刺遣人答謝, 以固和意.”

11 李齊賢, 『益齋亂藁』卷6, 『門下侍郎平章事判吏部事贈諡威烈公金公行軍記』(15下).

고려 조정에 보내 이튿날 24일 칭기스칸의 조서를 고려국왕에게 전달하게 했다. 이로써 이른바 여몽형제맹약을 위한 교섭과 맹약체결 과정은 일단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월 22일(己未) 몽골군은 고려 군사의 배웅을 받고 거란 포로를 이끌고 돌아갔다. 합진은 돌아가면서 동진(東眞)의 관인과 겸종(兼從) 41인을 의주(義州)에 머물게 하며 고려어(高麗語)를 배우게 했는데,¹² 차후 본격적인 고려 진출과 함께 당장 공납징수 사절을 보낼 때를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몽강화조약(麗蒙講和條約)의 초안(草案)을 몽골의 요구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고려에서 주도적으로 작성하여 찰랄의 군영에 보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 몽골 측에서 미리 요구한 사항을 고려 측에서 확인하여 보낸 것인가? 이에 대한 실마리는 앞에 언급한 바, 김양경에게 합진이 위로연을 베푼 자리에서 “형제를 맺으려면 마땅히 (고려)국왕에게 첩문을 받아와서 내가 돌아가 황제에게 아뢰어야 한다”는 구절과 조충의 묘지명(墓誌銘)에서 확인되는 바, 몽골 측에서 이에 앞서 정주(定州)를 통해 고려에 보낸 첩문을 연결시키면 쉽게 풀릴 수 있다. 또 1218년 12월에 통사(通事) 조중상(趙仲祥)과 고려인 덕주(德州) 진사(進士) 임경화(任慶和)를 보내 고려에 병향(兵餉)과 군사를 요구했을 때, 조충이 조정(朝廷)에 이를 보고하면서, “이전에 몽골국이 배편으로 첩(牒)을 가진 40여 인의 사절을 (여진족 지역인 曷懶路和 高麗 東界의 接境에 있는) 정주(定州)에 보내, 오늘과 같은 강화(講和)를 청한 적이 있다”¹³고 지적하고

12 『高麗史』卷22/17上, 「高宗世家」, “二月己未哈眞等還, 以東眞官人及兼從四十一人, 留義州, 曰, 爾等習高麗語, 以待吾復來.”

13 『趙冲墓誌銘』23행, “公卽奏聞: 先是, 蒙古國遣四十餘人, 齎牒乘船□□□定州, 請如今日講和事.”

있다. 곧 몽골군이 고려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첩문을 보내 몽골이 고려에게 강화를 요청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안에 고려에 대해 요구한 강화 조건도 포함하고 있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고려 측 문헌 몽골군이 “거란의 적도를 토벌하러 왔다”¹⁴고 공언했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도 기실 몽골이 미리 보낸 첩문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짐작컨대 몽골이 첩문으로 미리 요구한 강화조건을 고려가 수용하는 첩문을 몽골 군영에 보내고, 이것을 몽골 원수가 조충 등에게 재확인한 뒤에 칭기스칸의 조서를 고려에 보내는 형식으로 고려와 몽골 사이의 형제 맹약이 완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몽골국이 고려에 요구한 화호맹약(和好盟約)의 조건은 무엇이었나? 우선 몽골군의 두 원수가 김양경과 조충·김취려에게 두 차례나 두 나라 사이의 ‘형제맹약’을 말한 것으로 미루어, 전술한 고병익 선생의 주장과 같이 ‘형제맹약’이 화호맹약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 고려가 “해마다 공부(貢賦)는 본국의 사정에 맞게 바치겠다”고 하였고, 원수가 “도로가 심히 나빠 너희 나라에서는 왕래하기 어려울 테니, 매년 우리나라에서 보내되, 사(使)·좌(佐) 합해 10인을 넘지 않을 것이다. 와서 받아가되 이르는 길은 만노(萬奴)의 땅을 거쳐 올 것이다”¹⁵라고 하여, 몽골이 공물(貢物) 진상(進上)의 때와 방법 및 양을 주동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세공(歲貢) 역시 몽골 측이 내건 여몽화호맹약의 조건 중 중요한 내용이며, 몽골 측에서 공물 진상을 크게

14 『高麗史節要』卷15/15上, “蒙古太祖遣元帥哈眞及札剌, 率兵一萬, 與東眞萬奴所遣完顏子淵兵二萬, 聲言討契丹賊, 攻和孟順德四城, 破之, 直指江東城.”

15 『東國李相國集』卷28, 陳情表 同前狀. 또 이 말의 話者를 『元高麗紀事』는 元帥 대신 劄刺로 적고 있다.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곧 몽골-고려의 형제관계와 공납(貢納)이 여몽형제맹약의 중요한 실질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219년 8월 29일(壬辰)~9월 9일(辛丑)에 선차대사(宣差大使) 정도홀사(慶都忽思)가 거느린 몽골사절 11인과 회원대장군(懷遠大將軍) 홀석렬(紇石烈)이 거느린 온 동진국 사절 9인이 왔는데, 황태제국왕(皇太弟國王)과 원수 합진, 부원수 찰랄(札剌) 등이 각각 편지를 고려에 보내 입공(入貢)을 독촉하였고, 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고려는 특산물(方物)을 바쳤다.¹⁶ 또 동북면병마사가 공납사절이 오기 전에 몽골과 동진국이 군사를 고려와 동진의 변경인 명성(溟城) 바깥에 주둔시키고, 세공의 납부를 독촉했다는 보고를 올린 것으로 미루어 약조한 대로 공납사신의 경로도, 동진의 영역인 갈라로(葛懶路)를 거쳐 왔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여몽형제맹약은 1224년 저고여(著古與) 피살사건으로 중단되기까지 해마다 이행되었다.¹⁷ 몽골은 화호맹약에 정한 바, 1년 1회보다 많은 사절을 보내 공물을 수탈하였고, 높은 품질의 공물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1221년 8월 8일(己未)에 몽골 사신 저고여 등 13인과 동진인 8인이 고려에 왔을 때, 이들은 고려가 제지했는데도 대관전(大觀殿)에 밀고 올라와 황태제 옷치간의 균지(鈞旨)와 함께 공납할 품목과 수량을 제하였고, 이전에 가져간 공물 중 저급품을 품에서 꺼내 대관전에 내던지며 시위하였다.¹⁸ 또 9월 12일(癸巳)에 저가(這可) 등 몽골 사절 23인이 와

16 『元高麗紀事』, 3쪽; 『元史』 卷208, 「高麗傳」, 4608쪽.

17 麗蒙關係 초기 蒙古使臣의 來往 상황은 간략하지만 尹龍燾(1991), 『高麗對蒙抗爭史研究』, 一志社, 33쪽에 표로 정리되어 있으며, 윤은숙도 학위 논문 76쪽에서 1219년부터 1224년까지 사신 왕래를 표로 만들어 보여주고 있다.

18 이들이 요구한 품목은 水獺皮 1만 領, 細紬 3천 匹, 細苧 2천 匹, 솜(絨子) 1만 근, 龍團墨 1천 丁, 筆 2백 管, 紙 十萬 張, 紫草 5근, 荇花·藍筍·朱紅

서 공납을 독촉하였고, 또 10월 5일(乙卯)에도 몽골사신 희속불화(喜速不花) 등 7인이 와서 공물을 요구하였다¹⁹ 물론 몽골이 고려에 요구한 공납은 특산물에 그친 것은 당시 옷치간의 몽골 유수정권(留守政權)은 여자 어린이(女孩兒)와 한어(漢語)를 읽고 말할 수 있는 사람(會漢兒文字言語人), 솜씨가 뛰어난 각종 장인(諸般名手匠人)을 바치도록 요구했으며, 고려는 그러한 요구를 반복하여 거절하고 있다.²⁰

또 여몽형제맹약의 성격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몽골의 공납 사절이 올 때마다 함께 사절을 보내온 동진과 고려는 어떤 관계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려에 앞서 몽골에 굴복하여 군사적 협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몽골과 동진의 관계에 대하여도 검토하여, 이를 고려-몽골 관계와 비교해 봄직하다. 몽골의 공납 사절과 함께 동진도 사절을 보내온 것으로 미루어 동진이 편승하여, 여몽화호맹약의 또 다른 당사자로 나서서 고려로부터 공납을 받아갔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김취려가 합진을 처음 만났을 때 몽골 칸에 대한 요례(遙禮)와 더불어 포선만노(蒲鮮萬奴)에 대한 요례를 결혼(結婚)의 조건으로 요구하자 단호하게 거부한 점을 보면, 고려는 몽골에 대해서만 불평등한 관계를 인정하고, 동진에 대해서는 대등한 물자교환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확실한 사료가 없어 별도의 여진(麗眞)화약의 체결여부는 단언하기 어려우며, 몽진(蒙眞)관계의 성격도 확실히 말하기는

각 50근, 雌黃·光漆·桐油 각 10근이었으며, 따로 元帥 札刺과 蒲里尙完의 서찰을 각각 1통씩 보내, 水獺皮와 髹紬, 絁子 등을 요구하였다.

19 『高麗史』 卷22, 「高宗世家」 8年 8月~10月 기사/(20上下).

20 李奎報, 「蒙古國使齋廻上皇太弟書」, “上件人物皆下國所乏, 前已再陳所不能應副之由”, “其諸般名手匠人亦如前書所陳, 國無能者. 故未能發遣, 事輒違意深恐深恐.”

어렵다. 다만 1224년 정월 동진국에서 보낸 사절이 가져온 두 통의 첩문 중 하나에 “늙은 칭기스칸의 생존여부가 불투명하고, 옷치긴이 ‘탐폭 불인(貪暴不仁)’하여 이미 관계를 끊었다” 또 다른 첩문에 “동진의 청주(靑州)와 고려의 정주에 각장(榷場)을 설치하여 교역(賣買)을 하자”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²¹ 옷치긴의 감국정권(監國政權)이 고려에 요구한 것에 못지않은 과도한 공납을 동진에도 요구하였음²²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완안자연이 몽골의 강동성 공략을 돕기 위해 2만의 군사를 이끌고 고려에 온 것도 몽골이 동진에 대하여 조군(助軍)의 의무를 부과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유승단(俞升旦)이 쓴 ‘회동하국서(回東夏國書)’는 동진국 국왕에게 칭기스칸의 성지(聖旨)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입조(入朝)하는지 여부를 묻고, 입조하기로 약속한 고려의 애로사항을 적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어,²³ 동진과 고려가 모두 맹약을 통해 몽골 칸의 장전(帳殿)에 입조할 것을 요구받아 이를 준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곧 고려는 몽골국에 대하여 공납, 입조의 의무를 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강동성의 거란 잔당을 치는 과정에서 조군(助軍), 수량(輸糧)으로 도운 것으로 보아 이것이 1219년 몽골과 고려 사이에 맺은 형제맹약의 실질이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동진 역시 몽골국에 대해 조군, 공납, 입조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으로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몽골 주도의 동북아 국제관계 속에서 고려의 위상도 가늠할 수 있다.

1224년 정월 고려는 먼저 도착한 몽골 공납사절 저고여(札古也, 著古與) 일행과 뒤이어 도착한 동진의 사절을 접대하였고, 동진과 몽골 사이의

21 『高麗史』卷22, 「高宗世家」11年 春正月 戊申 기사(/25上).

22 地内宏, 「金末の滿洲」, 『滿鮮史研究, 中世第一冊』, 619~620쪽.

23 『東文選』卷61 書, 「回東夏國書」.

단교 통고에도 불구하고 저고여 일행에게 달피(獺皮)와 주포(紬布) 등 공납품을 바쳤고, 그들은 압록강(鴨綠江)을 건너 감국 옷치킨이 우수하고 있던 동몽골로 돌아갔다. 또 고려는 1224년 동짓달 다시 온 몽골 공납사절 저고여 일행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두 달이나 체류한 뒤 역시 공납품을 가지고 이듬해 정월 압록강을 건너 돌아갔다. 가는 길에 저고여 일행은 피습을 받아 살해되었고, 이후 몽골은 공납사절을 고려에 보내지 않았다. 이로써 고려와 몽골의 최초의 맹약관계는 유명무실해졌다.

물론 맹약에 대한 고려와 몽골국 양측의 인식이 달랐던 점에 대하여도 더 검토할 여지가 있다. 몽골국은 강동성을 공략할 때 고려가 식량을 보내고, 군사를 지원한 것(助軍)과 국서교환을 통해 고려가 평화적인 절차로 몽골국에 복속한 것으로 간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그 해 9월부터 매년 세공을 요구하였고, 특히 1221년부터 과도한 세공을 요구하였다. 한편 고려 측은 신흥 대국인 몽골을 상국(上國)으로 받들고, 매년 공물을 바칠 것을 약속하였지만, 피복속국의 현실을 수용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고려는 맹약을 맺을 당시 몽골 원수에게 “해마다 공물을 알아서 보내기를 청하고[因請歲進貢賦所更]²⁴ 몽골 측이 원하더라도 고려가 원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고, 몽골과 절충하고자 했다. 이규보(李奎報)가 지은 몽골 칸에게 보낸 진정표동전장(陳情表同前狀)의 표문(表文)도 “대대로 반드시 사대의 예를 행한 다음에 국가를 지킬 수 있었다[自歷世已來, 必行事大之禮, 然後能保有國家]”라 하여, 고려의 역대 사대외교와 그 목표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바, 이는 당초 몽골이 요구하는 세공(歲貢)을 고려 측이 피정복지역 신민(臣民)의 의무가 아닌 종래 요(遼)나 금(金)에 보

24 「回東夏國書」.

내던 사대의 예물로 이해하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요컨대 여몽형제맹약의 실질은 몽골이 다른 정복지역에 대하여 부과했던 각종 요구와 크게 다름이 없었지만, 몽골 측의 이러한 공납요구를 고려는 예의 '사대의 예물' 요구로 치환하여 대응한 것이다. 몽골 측의 과도하고 빈번한 공납요구에 대하여도 고려는 크게 개의치 않았고, 몽골 측이 원하지 않는 주포(紬布)를 계속 바치면서, “상국(上國)의 용도에 전혀 맞지 않아도, 변변치 않은 물건이라도 바치는 뜻으로 해마다 보잘것없는 물품을 갖추어 인정을 보이고 예를 닦을 뿐이다”²⁵라고, 고려 자신의 사대의 도리만 다하면 된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감국인 황태제의 과도한 세공 요구나 1232년 살리타이(札剌台/撒禮塔)의 요구에 대하여도 이를 줄이기 위해 협상을 하였고, 급기야는 몽골 측의 과도한 세공 요구에 저항하여 강도(江都)로 수도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232년 이후 약 30년 동안이나 이어진 항쟁과 협상이 시작된 배경이다.

1218년 몽골군이 고려의 영토에 들어왔을 때 최씨 정권의 초기 전략은 결국 평화의 길인 몽골에 대한 사대를 수용하는 것이었다. 물론 고려는 금과 관계를 복원하고 균형외교(均衡外交)로 몽골의 압력을 억제하려 하였지만, 만주지역에서 금의 군사력이 급격히 약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고려 측의 외교를 통한 위기극복이라는 바람은 실현하지 못했다. 곧 『금사(金史)』 교빙표(交聘表)를 보면 몽골과 맹약을 체결하기 전인 1219년 정월 초하루 요동행성(遼東行省)에서 급보를 보내 고려가

25 李奎報, 「蒙古國使齋廻上皇太弟書」, “殊不合上國之用, 徒以獻芹之意, 歲備不腆般品”.

금에 조공하겠다는 표(表)를 보냈음을 알리고 있고,²⁶ 맹약을 체결한 이후인 3월에도 고려가 뜻을 굽히지 않자 특별히 사람을 보내 ‘길이 통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고려에서 보낸 사신을 타일러 돌려보냈다는 기사²⁷가 적혀 있다. 이는 한편으로 고려가 당시 금을 이용해 몽골을 견제하려는 뜻이 매우 강했음을 보여주지만, 정작 금이 몽골과 적극적인 대결을 기피하여, 이러한 전략은 실패로 돌아갔다.

몽골군이 본격 침략했던 1231년 이후에도 몽골에 대한 고려의 사대 전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전술 역시 정면대결을 회피하는 화의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보인다. 처음 항전론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나 화전양면(和戰兩面) 전술(戰術)을 펴면서 몽골군의 요구를 대체로 수용하고 협상으로 국면을 극복하려는 태도를 줄곧 유지하였다. 몽골의 무리한 요구로 항전의 명분도 있었지만, 무신정권의 정권안보의 필요도 강도에 천도하여 항몽전쟁을 수행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²⁸ 유승단 등의 대몽화의론(對蒙和議論)이 항쟁기간 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몽골-고려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기 위한 고려 측의 외교 교섭이 역시 쉬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점 역시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최이(崔怡)의 강화천도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화의를 주장하였다가 강화 천도한 달 만에 죽은 유승단의 이소사대(以小事大) 주장 역시 주의해 볼 대목이다. 윤용혁(尹龍赫)은 이를 대금 사대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하고

26 『金史』卷62, 「交聘表下」, 1486쪽, 正月戊辰朔 이하 참조.

27 『金史』卷15, 宣宗 興定 3年 三月, “甲戌, 高麗先請朝貢, 因遣使撫諭之, 使還, 表言道路不通, 俟平定後議通款. 命行省姑示羈縻, 勿絕其好.”

28 尹龍赫(1991), 앞의 책 3장 1절 「최씨정권의 강화천도」, 134~163쪽 참조.

있는데,²⁹ 유승단이 형제맹약 당시 “지금 듣건데, 칭기스 황제는 나라를 세우고 널리 영토를 정복하여 해와 달이 비치는 곳은 모두 그 신하가 되었다[今聞，成吉思皇帝，廓開聖緒，奄統絳區，日月所照，莫不賓服]”³⁰ 라고 하여, 고려 군신이 몽골의 위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지만, 유승단의 주장은 침략과 약탈에 굶주린 몽골 권력과 전통적인 천하관을 가진 한족 권력과 구분하지 못한 잘못된 국제정세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하여 “예로부터 대대로 대국(大國)을 섬겼지만 국왕이 직접 황제의 조정에 찾아가 예를 닦는 전례가 없었다[邈自古初，歷事大國，朝覲之禮，未獲躬親]”³¹ 라고 하여, 전례(前例)를 고집하였고, 몽골의 정복지역에 대한 통상적 공납(貢納) 요구에 대해서도, 고려가 이소사대(以小事大)라는 전통적인 관계의 설정 요구로 대응하였는데, 이러한 인식이 쿠빌라이 집권 이후 수립된 여몽·여원관계의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쿠빌라이가 한법을 수용한 새로운 몽골 정권의 통치노선을 수립하면서, 몽골에 대한 고려의 끈질긴 전통적인 천하질서 수용 요구도 반영되고, 결국 새로운 여원관계 설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전통적인 이소사대 노선을 반영한 이러한 고려의 끈질긴 관계 재정립 요구는 이후 원조 내부의 입성책동을 저지하는 고려의 세조구제론(世祖舊制論)에도 관철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29 尹龍嶽(1991), 앞의 책, 137쪽; 『高麗史』卷102, 「俞升旦傳」, “高宗在幼沖亦受學, 及卽位除守宮署丞, 恩眷深厚, 遂爲師傅, 歷禮部侍郎右諫議大夫, 進參知政事. 蒙古大舉侵及京畿, 崔怡會宰樞議遷都江華時, …… , 升旦獨曰, 以小事大義也. 事之以禮, 交之以信, 彼亦何名而困我哉.”

30 『東文選』卷61, 「回東夏國書」.

31 『東文選』卷61, 「回東夏國書」.

3. 몽골 공신[根脚] 가문과 고려 지배층의 통혼

대몽골국황실과 고려왕실 사이의 통혼문제와 몽골황실과 고려 귀족 사이의 통혼문제는 고려와 대몽골국 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며, 이미 꽤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³² 그러나 그 외 지배층이나 일반인의 통혼에 대하여는 본격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다.

비록 일시적으로 행해졌지만, 고려와 원의 일반 평민 사이에도, 몽골군의 동정(東征)을 계기로 통혼이 이루어졌다. 곧 1275년 남송 귀부군인 만자군(蠻子軍) 1400인을 해주·염주·백주(海州·鹽州·白州)에 정착시켰는데,³³ 1276년 윤3월 29일(甲子)에 원에서 양중신(楊仲信)에게 폐백(幣帛)을 보내 그중 500명에게 처를 구해주게 하였고, 고려국왕은 과부처녀추고 별감(寡婦處女推考別監)인 정랑(正郎) 김응문(金應文) 등 5인을 각도에 파견하고 있다.³⁴ 이는 쿠빌라이 정권이 이른바 육사(六事)를 매개로 여원관계를 새롭게 정비한 직후 고려에 파견된 원의 군인과 고려의 평민 사이에 통혼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것이 훗날의 여원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필 수 있는 자료는 전혀 남아 있지 않다. 오로지 원

32 왕실 사이의 통혼을 다룬 글로 蕭啓慶(1983), 「元麗關係中的王室婚姻與強權政治」, 『元代史新探』,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김혜원(1989), 「麗元王室通婚의 成立과 特徵—元公主出身王妃의 家系를 중심으로」, 『梨大史苑』 24·25합집; 王崇實(1992), 「元與高麗統治集團的聯姻」, 『吉林師範學院學報』 1992-4; 정용숙(1992), 「원 공주 출신 왕비의 등장과 정치세력의 변화」, 『고려시대의 后妃』, 민음사; 이명미(2003), 「高麗·元 王室通婚의 政治的 의미」, 『한국사론』 49집; 森平雅彦(2008b), 「高麗王家とモンゴル皇族の通婚關係に關する覺書」, 『東洋史研究』 67-3이 있다.

33 『高麗史』 卷28/8上 忠烈王 元年 三月 庚午.

34 『高麗史』 卷28/14 忠烈王 元年.

의 관군(官軍)이 고려 백성을 처의 친척이라고 속여 데려가는 빌미로 혼인을 이용한 형적만 남아 있다. 1278년 7월 20일(辛丑)에 카보[哈伯]와 불로[字羅]가 힌두[析都]에게 “너의 군사 중에 고려 백성을 처(妻)의 가족이라고 속여 데리고 가는 자가 있는데, 너는 성지(聖旨)가 두렵지 않는가?”라고 따지고, 9월 10일(辛卯)에도 고려국왕이 역자교위(譯者校尉) 최기(崔奇)를 중서성에 보내 상서한 내용을 보면, “일찍이 성지로 관군의 철수를 명하고, 또 힌두에게 칙을 내려 ‘군인이 처가의 족당(族黨)이라고 칭하고 데리고 오는 것을 금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관군이 따르려 하지 않으니, 옳드려 바라옵건데 특별히 명문(明文)을 내려 고려 관사(官司)와 원 관군(官軍)이 함께 추쇄하도록 하소서”라고, 황제에게 원의 관군이 고려인을 협대(挾帶)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원 관군과 고려 여인의 통혼이 고려 사회에 야기한 사회적 모순 또한 작지 않았음을 보여준다.³⁵

이 밖에도 고려와 몽골국 평민 사이에 통혼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반드시 통혼을 전제한 것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1219년 여몽형제맹약의 관계가 시작된 이래 몽골국에서 고려에 대하여 여자아이[女孩兒]의 공납³⁶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여몽·여원 지배층 사이의 통혼관계의 단초를 열었을 수도 있다. 당시 고려가 여자 아이는 물론이고 함께 요구한 숙련된 장인(匠人), 한어(漢語) 능통자도 몽골국에 보내지 않았지만, 1231년 본격적인 군사침략이 시작된 이후에는 사정이 다소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몽골 원수 살리타이가 수달피(水獺皮) 등 다른 공납품과 함께 왕실, 고관 등 지배층의 자녀(원조 성립

35 『高麗史』卷28/43下~44上, 忠烈王 4年.

36 李奎報, 『東國李相國集』卷28, 「蒙古國使齋廻上皇太弟書」.

이후에는 良家子女) 남녀 각 1천 명을 보내도록 요구하였을 때, 비록 숫자를 절충하여 각 500명으로 줄었다고는 하지만, 결코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지는 못했다. 또 몽골의 고려 정복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많은 남녀가 전쟁포로로 노획(擄獲)되어 끌려갔기 때문에, 그 일부가 몽골에 간 뒤 몽골 지배층의 처첩(妻妾)이 되어 혼인관계로 발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세조 만년 한림학사승지(翰林學士承旨), 중서성(中書省)의 평장정사(平章政事)가 되어 쿠빌라이 카안의 한법(漢法) 수용정책을 뒷받침하고, 성종(成宗)의 한법 계승과 실천에 기여하였던 강리인 부쿠무(不忽木)의 어머니 김장희(金長姬) 역시 대몽골국 시기에 붙들려 가서 소르카타니 하툰(莊聖太后)의 계르에서 시종들었던 고려 여인이었다.³⁷ 소르카타니 하툰이 부쿠무의 부친 연진(燕眞)에게 주어 혼인하도록 한 김장희는 5명의 아들을 낳았고, 부쿠무가 그중 둘째였다. 어려서부터 동궁에서 친김(眞金)을 시종든 부쿠무는 찬선(贊善) 왕순(王珣)에게 배웠는데, 12세가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부쿠무에게 독서를 시키고자 쿠빌라이 카안에게 청하자 그를 국자학(國子學)에 입학시켜서 배우게 하였다. 당시 국자학의 제주(祭酒) 허형(許衡)이 그를 매우 칭찬하여 ‘시용(時用)’이라 불렀고, 뒤에 관리가 된 뒤에는 원조 정권의 핵심에서 활동하면서 유자(儒者) 관료로 이름을 떨쳤다. 그는 46세로 대덕(大德) 4년(1300)에 죽었으므로 그의 모친 김장희는 적어도 1253년 이전에 몽골에 끌려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부쿠무가 국자학에 들어간 배경에 모친인 그녀의 가정교육 영향도 있다고

37 趙孟頫, 『松雪齋集』(四部叢刊初編集部上海商務印書館縮印元刊本: 松雪齋文集附外集), 卷7 故昭文館大學士榮祿大夫平章軍國事行御史中丞領侍儀司事贈純誠佐理功臣太傅開府儀同三司上柱國追封魯國公諡文貞康里公碑.

여겨지므로, 간접적이긴 하겠지만 전쟁 중에 끌려간 고려 여인 김장희가 받은 가정교육과 교양도 아들 부쿠무가 유자 관료로 성장하여 쿠빌라이 왕조의 한법 수용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김장희의 손자인 부쿠무의 아들들 역시 원조의 한법 수용에 기여했다. 『원사(元史)』 열전에 입전(立傳)된 두 아들 곧 부인 구씨(寇氏)의 소생인 회회(回回)와 계실 왕씨(繼室 王氏, 文淵閣四庫本: 加“御史中丞薊國文正公壽之女”)의 소생인 노노(纓纓),³⁸ 그리고 딸 입동(立童, 明刻本, 城書室本: 加“女立童, 適御史中丞相朵兒赤之子不花”)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는데, 강리회회는 유능한 관리로 특히 이름을 떨쳤다. 고려 출신 시희(侍姬)와의 사이에 국자학생(國子學生)인 득토무르(脫脫木兒)라는 아들을 두기도 했던³⁹ 회회는 영종(英宗) 치세에 참의중서성사(參議中書省事)로 중서우승상(中書右丞相) 바이주(拜住)의 정무를 도왔고, 대원 최초의 공식 법전인 『대원통제(大元通制)』의 심정(審定)에도 참여하였다. 특히 필자의 주의를 끄는 점은 그가 지치(至治) 연간의 입성책동(立省策動)을 중서성 내부의 논의과정에서 주저않힌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점이다. 당시 국가로서 고려를 폐하고 대원의 군현(郡縣)으로 삼고자 했던 영종을 바이주가 강리회회와 함께 장시간 설득하여, 결국 입성론을 잠재웠다는 대목이 여몽관계를 새롭게 살피는 이 글에서 특히 주목할 점이다.⁴⁰ 요컨대 할머니의 나라인 고려에 회회가 우호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의 동생 노노 역시 어려서부터 국학에서 수학한 박통군서(博通群書)의 대표적인 유자관리로 경연(經筵)을 맡았고, 삼사편찬(三史編纂)에

38 『元史』 卷143 「纓纓傳」, 附回回.

39 宋濂, 『潛溪後集(宋濂全集本)』 卷8, 「元故榮祿大夫陝西等處行中書省平章政事康里公神道碑銘」.

40 宋濂, 위의 글, 270쪽, “丞相偕公入奏, 上不聽, 復叩頭力爭, 久之乃允留.” 이에 대하여는 張東翼(1997), 『元代麗史資料輯錄』, 서울대학교출판부, 329~331쪽 참조.

도 기여하였으며, 강절행성평장정사(江浙行省平章政事), 한림학사승지(翰林學士承旨)에 올랐으니, 김장희의 자손이 모두 원조(元朝)의 한법 수용에 중요 한 기여를 한 것은 물론이고, 고려를 위해서도 기여한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약탈이나 공녀로 몽골에 간 사례들은 여성의 노동력이나 성(性)을 수탈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었으므로 그 자체로는 통혼이라 보기 어렵다. 실제로 1275년 10월 약탈연(岳脫衍)과 강수형(康守衡)이 가져온 조(詔)를 통해 몽골이 미녀를 공납할 것을 고려에 요구한⁴¹ 후 원말까지 계속되었던 ‘공녀’에 관한 연구는, 희뢰(喜蕾)의 연구⁴²를 제외하면, 따라서 여성의 약탈이라는 측면에 주안점이 놓여 있다. 따라서 부수적으로 양국 지배층 사이에 성립한 혼인관계에 대하여 의미 있는 탐구는 대체로 부족하다. 물론 희뢰가 공녀연구(貢女研究)의 일부를 할애하여 공녀와 정복권력의 여성약탈이라는 점에서 공녀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양국 지배층 사이의 혼인과 그 후대(後代)에 대하여 간단히 검토한 적은 있지만, 양국 지배층의 통혼관계와 그것이 여몽관계 또는 여원관계에서 갖는 의미를 본격적인 전론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따라서 양국 지배층 사이의 통혼은 1270년(지원 7, 원종 11) 윤10월 13일(己酉)에 원종이 양가(良家)에 청혼하겠다는 다루가치(達魯花赤) 툽타르[脫朶兒]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⁴³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전년 5월에 다

41 『高麗史』 忠烈王 元年(1275) 冬十月, “庚戌, 元遣岳脫衍康守衡來, …… 詔曰, …… , 且我太祖皇帝征十三國, 其國爭獻美女良馬珍寶爾所聞也, …… 非苟使爾貢子女革官名減宰相也, …… 壬子, 以將獻處女于元禁國婚嫁”(卷28/11上下).

42 柳洪烈, 「高麗의 元에 대한 貢女」, 『震檀學報』 18 ; 정구선(2002), 『공녀-중국으로 끌려간 우리 여인들의 역사』, 국학자료원 ; 喜蕾(2003), 『元代高麗貢女制度研究』, 北京 : 民族出版社.

43 『高麗史』 卷26/37下, “閏月己酉達魯花赤請婚良家從之.” 이 해는 윤달 10월이며 丁酉朔이다.

루가치로 취임한 토타르가 고려의 상문(相門)의 딸을 자부(子婦)로 얻고자 했는데, 딸이 있는 가문에서는 이를 피하기 위해 미리 사위를 들였다. 1271년 2월 재상가 가운데, 결국 자색이 고운 김련(金鍊)의 딸이 낙점되었는데, 김련의 집에도 이미 예서(預書)를 들이고 있었으나 도망쳤다. 마침 김련이 사신으로 몽골에 가고 집에 없었기 때문에 기다려 혼례를 치르자고 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⁴⁴ 토타르가(家)와 김련가(金鍊家)의 혼인은 기록에 남아 있는 여원 양국 지배층 가문 사이의 최초의 비교적 정상적인 혼인관계라고 할 수 있으나, 이후 두 가문 사이의 혼인 결과를 전하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또 1280년 4월 15일(丙戌) 원의 권신(權臣) 평장(平章) 아흐마드(阿哈馬)가 고려에 미녀를 구하였다. 홍원사(弘圓寺) 진전직(眞殿直) 장인경(張仁罔)이 자청하여 그의 딸을 중랑장 간유지(簡有之)에게 데려가게 하였으나, 명문가의 딸이 아니라고 받지 않아, 다시 총랑(總郎) 김원(金涇)과 장군 조윤번(趙允蕃)의 딸을 다시 보냈다.⁴⁵ 하지만 1282년 아흐마드가 익도(益都) 천호(千戶) 왕저(王著)에게 피살되고, 이어 자질(子姪)이 모두 복주(伏誅)되어⁴⁶ 자손(子孫)을 남기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들의 혼인관계가 이후 고려와 원 지배층을 잇는 의미 있는 혼인관계로 발전하였을 것으로 보기 힘들다.⁴⁷

44 『高麗史』卷27, 元宗 1/(8上).

45 『高麗史節要』卷20/27上.

46 『元史』卷205, 「阿哈馬傳」. 그러나 조카의 경우는 생존한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아래 주 Herbert Franke의 논문 참조.

47 당시 아흐마드에게는 많은 처첩이 있었으며, 일부 처첩은 노비로 다른 사람에게 하사되었다고 한다. Herbert Franke(1993), "Aḥmad(?~1282)," Igor de Rachewiltz etc. ed., *In the Service of the Khan : Eminent Personalities of the Early Mongol-Yuan Period*, Harrassowitz Verlag, Wiesbaden, pp.

세 번째 예는 고려에 부임한 원의 관리 스스로 고려 여인을 처로 삼은 경우인데, 1283년 음력 9월 22일 탐라 다루가치 타라치[塔刺赤]의 구혼을 받아들여 내시(內侍) 정부(鄭孿)의 딸을 그의 처로 삼게 한 것이다.⁴⁸

네 번째 들 수 있는 예는 1289년 몽골 사신으로 고려에 온 아쿠타이(阿忽台)와 고려의 공신 관료였던 홍규(洪奎)의 장녀 사이의 혼인(婚姻)이다. 1287년 12월 13일(己巳) 나라에서 지(旨)를 내려, 양가 처녀는 관청에 고한 뒤 시집을 보내도록 하고, 허공(許琬) 등에게 동녀(童女)를 선발하도록 하여 황제에게 바치고자 하였는데, 딸이 뽑히게 된 전주밀원부사(前樞密院副使) 홍문계(洪文系)는 궁여지책으로 딸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런데, 1288년 동짓달 이 사실이 결국 공주에게 알려졌고, 공주가 대노하여 홍문계의 재산을 몰수하고, 혹형을 가한 뒤 섬으로 유배하였다. 공주는 홍문계의 딸도 혹형으로 문초했는데, 이듬해 1289년 3월 아쿠타이가 공주에게 보내는 선물을 가지고 사신으로 오자 그에게 홍문계의 딸을 선물로 주었다.⁴⁹

위의 네 건의 혼인 중 징벌성(懲罰性)으로 억지로 이루어진 홍규의 장녀 홍씨의 혼인은, 포로로 잡혀간 김장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이루어져 정상적인 혼인관계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아쿠타이의 후손이 이후 고려 지배층의 다른 가문과 혼인 관계로 거듭 이어지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뿐만 아니라 14세기 중엽 고려와 대원의 사

552~553.

48 『高麗史』卷29 忠烈王世家,“(9年 9月)壬申, 塔刺赤享王獻二馬求婚, 以內侍鄭孿女妻之”(45下~46上).

49 『高麗史』卷106, 「洪奎傳」(41下~42上).

이의 관계 설정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몽·여원관계를 이해하는 의미 있는 지표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성종대 중서좌승상의 지위에 올랐고, 성종 사후 불루간 황후와 함께 안서왕 아난다를 추대하려 했다가 처형당한 아쿠타이와 홍씨 사이에 소생이 있고, 그 소생과 고려 지배층 가문과 거듭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면, 고려 권문과 몽골의 혼구 세족인 엘지기드가(家) 아쿠타이 가문 사이에 의미있는 사회적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아울러 그러한 혼인관계가 내적인 메커니즘에 의하여 더욱 분화되어 갔다면, 우연적이고 일회적인 혼인관계가 고려와 원 두 나라를 이어주는 보다 복잡한 형태의 통혼관계로 발전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우선 좌승상 아쿠타이와 홍씨 사이에 과연 자손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원사』 열전에 입전하고 있는 베르케 부카(別兒怯不花)와 그 형 즈단(自當)이 아쿠타이와 홍씨 사이에 출생한 자식이라는 확신을 줄 만한 당시에 씌어진 1차 사료는 어디에도 없다. 통상 원대 몽골 관료는 한인이나 남인 관료와 달라 복수의 처첩을 거느리고 있었던 터라 베르케 부카 형제가 아쿠타이의 자식이 분명하더라도 반드시 홍씨 소생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베르케 부카와 즈단이 아쿠타이와 홍씨 소생이라고 밝힌 기록은 300년 이후인 17세기 초(1604)에 편찬된 『홍씨 족보(族譜)』⁵⁰이다. 유성룡(柳成龍)이 서문을 쓴 이 족보에 베르케 부카와 즈단을 홍규의 장녀의 남편(夫)을 몽골 아쿠타이(阿古大) 승상의 자손으로 기록하고 있다. 11대조 홍휘

50 『南陽洪氏世譜』(萬曆 甲辰五月日 豊原府院君 柳成龍 序, 1604年).

규초휘문계(洪諱奎初諱文系)의 계보(系譜) 중 女(孀)아쿠타이 원승상 아래 자(子) 별개우과(伐介于伐[戈]) 승상(丞相), 자(子) 자당(紫堂)으로 적혀 있다. 이 족보 기록의 전거(典據)가 확실하지 않지만, 베르케 부카의 몽골 이름의 한자 전사법(轉寫法)이 『원사』 혹은 『고려사』, 『고려사절요』 등과 다른 것으로 보아, 베르케 부카의 이름이 독특하게 전사된 별개의 자료가 홍씨 가문에 전해져 족보 편찬에 이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족보 편찬자의 무지로 베르케 부카를 별개우과(伐介于伐)의 과(戈) 대신 별(伐)로 잘못 쓰고, 형과 동생의 순서를 바꾸고 있다. 하지만 이 족보의 기록은 홍씨 가문에서도 베르케 부카와 그의 형 즈단을 자랑스러운 외손(外孫)으로 기억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즈단과 베르케 부카 형제는 『원사』에도 입전(立傳)하고 있고,⁵¹ 특히 동생 베르케 부카는 아룩투 집권 시기의 실권자로 『지정조격(至正條格)』의 편찬과정에 깊숙이 간여하여 법전의 성격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⁵² 더욱 주목을 끄는 인물이다. 그렇다면 최근 몇 건의 연구에서 지적한 대로 과연 즈단과 베르케 부카는 홍규의 장녀 홍씨 소생인가?

국내 학계에서 최초로 베르케 부카에 대하여 주목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한 것은 민현구 선생의 논문(1994)이었다. 고려 공민왕 대 ‘주기철 공신(誅奇勳功臣)’에 대하여 검토한 논문 중에서 정동행성(征東行省) 유학제거사(儒學提舉司)의 유학제거로 임명된 홍언박(洪彦博)의 정치적 배경을 검토하

51 『元史』 卷140, 「別兒怯不花」; 『元史』 卷143 自當.

52 金浩東(2007), 「지정조격(至正條格)의 편찬과 원(元)말의 정치」,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至正條格校註本』, 375~383쪽 참조.

면서 홍규의 손자인 홍언박(洪彦博)과 지정(至正) 4년 중서좌승상,⁵³ 7년 중서우승상까지 오른 베르케 부카 사이의 내외종형제관계가 원에서 홍언박의 출세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하고, 특히 베르케 부카가 홍규 장녀 홍씨 소생으로 충혜왕과 공민왕이 모두 그와 이종형제 사이고, 고려와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기에, 원과 고려를 연결시킬 수 있는 원의 친고려 정치가였다고 결론짓고 있다.⁵⁴ 나아가 베르케 부카가 김순(金榘)의 3녀를 아내로 맞은 특이한 인물이라고 강조하고, 중정원(中政院)의 관리로 강남에서 일한 적이 있는 염제신(廉悌臣)도 그가 황제에 천거한 것을 예로 들어, 고려인이 원에서 사환(仕宦)하는데 그가 상당한 관심을 가졌다고 보았다. 민현구 선생의 추론은 대체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그가 이종형제사이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새로운 자료는 제시하고 있지 않고, 설사 그런 관계를 말하는 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명분상 이종형제인 것을 증명할 뿐 홍씨 소생임을 입증할 자료라고는 할 수 없다.

다음으로 베르케 부카에 주목한 것은 이정란의 논문⁵⁵이다. 그는 베르케 부카와 원 권력 내부의 고려계통 인물들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 역시 베르케 부카가 홍규의 장녀 소생이라고 명토박아 적고 있다.⁵⁶ 그는 충목왕(忠穆王) 3년(1347년) 베르케 부카가 중서우승상(中書右丞

53 『元史』 卷140, 「列傳」에는 至正 4年으로 기재되고, 『元史』 卷41, 「順帝 本紀」 4에는 三年 十二月 丁未에 別兒怯不花를 中書左丞相에 임명했다고 한다.

54 閔賢九(1994), 「高麗 恭愍王代의 '誅奇轍功臣'에 대한 檢討; 反元的 改革政治의 主導勢力」, 『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論叢』, 906~907쪽.

55 이정란(2005), 「정치도감 활동에서 드러난 家 속의 개인과 그의 행동방식」, 『한국사학보』, 고려사학회.

56 이정란(2005), 위의 글, 304쪽의 주21 참조.

相)에 오르자, 고려 정부가 그의 매부인 김영돈(金永暉)과 김영후(金永煦)를 원에 보내 베르케 부카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했다고 한다. 또 기황후(奇皇后)를 천거한 고용보가 베르케 부카가 탄핵되었을 때 그를 변호해 준 것을 예로 들어, 그와 기황후와 고용보가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충목왕 3년(1347) 정치도감의 설치 과정에도 개입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⁵⁷

신은제(2009)의 최근 연구 「14세기 전반 원의 정국동향과 고려의 정치도감」 역시 베르케 부카와 고려 정권 사이의 관계에 주목한 새로운 연구다.⁵⁸ 이 연구는 고려정국에 영향을 미친 순제 즉위 후 원의 정국 변화 추이, 특히 1340년 톡토가 권력을 장악한 이후 원조 정국의 변화 추이에 주목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명종(明宗) 코실라의 잠저(潛邸) 구신(舊臣)들인 테무르타시(鐵木兒塔識)⁵⁹와 베르케 부카의 등장을 주목하고 있다. 『원사』에 대한 필자의 깊은 이해가 특징인 이 논문은 두 사람이 명종 코실라의 잠저 시절의 종신(從臣)이었다는 점(198쪽)에 주목했지만, 결국 대(對)고려 정책에 나타나는 차별성에 대하여 지적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

고려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베르케 부카에 대한 한국 학계의 깊은 관심에는 미치지 않지만 해외에서 여원관계사(麗元關係史)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도 역시 그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중국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의 유효(劉曉) 교수도 베르케 부카와 즈단의 모

57 이정란(2005), 앞의 글, 301~304 · 306 · 317~322쪽.

58 『한국중세사연구』 26호.

59 鐵木兒塔識(『元史』 卷140傳) 역시 康里 계통으로 康里脫脫(『元史』 卷138傳)의 아들이고, 阿沙不花(『元史』 卷136傳)의 조카이다.

계(母系)는 고려이고, 홍규와 김씨 사이에서 낳은 홍씨의 아들이라고 단언하고 있고,⁶⁰ 희뢰(喜雷) 역시 약간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희뢰는 이제현(李齊賢)의 「김문영공부인허씨묘지명(金文英公夫人許氏墓誌銘)」에서 상락군(上洛君) 김순(金洵)의 계녀(季女)가 시집간 원 강절행성참지정사(江浙行省參知政事) 베르케 부카와 『고려사』 권124 「신청전(申靑傳)」의 1340년 당시 평장(平章)인 (金)영후(永煦)의 매서(妹婿) 베르케 부카는 ‘비록 원사에 기재가 없지만(雖然元史未載其人其事)’⁶¹ 동일 인물로 단정하고, 김씨가 1332년 이전에 원에 들어갔을 것으로 추론하고 있는데, 희뢰 박사가 고려 시대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결과로 이 논의를 더 이상 검토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요컨대 이상의 연구들은 당시 문헌에서 베르케 부카와 즈단의 모친이 홍씨라는 것을 논증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 하지만 홍규의 묘지명(1316)에는 맏딸을 중국 좌승상 아쿠타이(中國左丞相阿古步)에 시집보냈다고 하고, 그의 처 김씨의 묘지명(1339)에는 5녀 덕비(德妃)가 충혜왕을 낳았다고 적은 뒤에, 승상공의 두 아들 중 베르케 부카는 어사대부(御史大夫)이고, 즈단은 동지휘정원사(同知徽政院使)로 천하에 이름을 떨치고 있다고 적고 있다.⁶² 사왕(嗣王)의 생모는 밝히면서도 홍씨를 선물로 취한 아쿠타이의 두 아들이 누구라는 것 외에 베르케 부카와 즈단의 생모는 분명히 밝히지 않고

60 劉曉, 「《三韓國大夫人金氏墓誌銘》讀後」(未刊手稿). 李齊賢이 짓고, 1339년 세운 「三韓國大夫人金氏墓誌銘」(金龍善編, 『高麗墓誌冥集成』 한림대학교출판부, 1997, 개정판, 506~507쪽과 『元史』 卷140, 「別兒怯不花傳」을 전거로 제시하고 있다.

61 同上, 附錄: 「高麗貢女入元疑年考」, 291쪽.

62 李齊賢 撰, 「三韓國大夫人金氏墓誌銘并序」(後至元 5年 己卯 十一月).

있다. 당시 몽골인들의 혼인은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가 아니었고, 공녀나 동녀로 얻은 여자를 정처로 맞았다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아쿠타이의 두 아들을 확실한 근거없이 고려 출신 여인의 아들로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김순의 묘지명(1321)과 그의 부인 허씨(許氏)의 묘지명(1332)에 역시 아쿠타이의 아들 베르케 부카에 관한 사료가 있다. 안정복(安鼎福)이 『잡동산이(雜同散異)』⁶³에 거둔 1321년 김순 묘지명의 찬자(撰者)는 여흥군(驪興君) 민지(閔漬)이고, 묘지명을 지은 시기는 영종 지치(至治) 원년(1321, 辛酉) 10월 14일데, 김순의 3녀가 대원의 승상 아쿠타이의 아들 사인(舍人) 베르케 부카에게 시집갔다고 적고 있다.⁶⁴ 여기서 김씨가 베르케 부카에게 적어도 1321년 이전에 시집간 것으로 보이며, 1320년 즉위한 원 영종이 다르기(答己) 황태후를 태황태후로 높인 조(詔)를 반포하여 7월 계사(癸巳)에 베르케 부카가 그 조를 가지고 고려에 사신으로 왔을 때, 김순의 3녀를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 ‘사인’은 김순의 처 허씨의 묘지명에 나오는 “막내는 왕인(王人) 강절행성참지정사 베르케 부카에게 시집갔다[季適王人別里哥不花江浙省參知政事]”⁶⁵의 ‘왕인’과 같은 의미로 보이는데, 당시 그가 케식(怯薛)의 직책에 복무하고 있었음이 보인다. 또 열전에 그는 어려서 일찍 아버지를 잃었고 8세가 되자 흥성(興聖)태후와 무종의 명으로 명종을 번저(潘邸)에서 시봉(侍奉)하고, 이어 국자학(國子學)에 입학하였으며, 연우(延祐) 3년(1316) 주왕(周王)이 윈난(雲南)에 출진하였을 때 대동(大同)까지 따라

63 영인본, 亞細亞文化社, 1981. 이 墓誌銘은 『安東金氏大同譜』(1979)에서 가져온 것이다.

64 「金恂墓誌銘」, “三嫡舍人別里哥不花大元左丞相阿忽反之子也.”

65 『益齋亂稿』 卷7, 「金恂妻許氏墓誌銘」: “忠肅王 復位年(元 至順 3年, 1332) 季適王人別里哥不花江浙省參知政事.”

갔다 돌아와 인종의 숙위(宿衛)가 되었다고 하는데, 1320년 김씨 부인과 혼인할 무렵 그는 21세 가량 된 청년 관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방경(金方慶)의 손녀 김씨와 젊은 사인 베르케 부카 사이의 혼인은 특별한 정치적 배려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 베르케 부카의 모친 (또는 서모)의 친정이나 형제자매를 통해 미리 안배된 혼인이었을 가능성도 높다.

물론 베르케 부카에 대하여는 고려 측에도 꽤 많은 관련 자료가 남아 있어 그의 열전을 보충해준다. 이색(李穡)의 「충경공염공신도비명서(忠敬公廉公神道碑并序)」⁶⁶에는 염제신[廉梯臣(불노, 佛奴)]이 지정(至正) 3년(癸未, 1343)에 익정사승(翊正司丞, 正4品)으로 강절행성(江浙行省)에 가서 중정원(中政院)에 속하는 강절등처재부도총관부 예하의 재물 출납을 감사하였는데, 일체의 뇌물을 거절한 염제신(廉梯臣)을 행성 좌승상 베르케 부카가 특별히 배려하였고, 중서좌승상으로 입상(久相)한 뒤에도 황제에게 염제신을 특별히 천거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또 1344년 정포(鄭誦, 字仲孚)가 원에 갔을 때도 승상 베르케 부카가 그를 크게 아끼고 천자에게 천거하려 하였는데 마침 병에 걸려 을유(乙酉, 1345) 추7월(秋七月) 14일에 여사(旅舍)에서 병몰하였다고 한다.⁶⁷ 당시 중서성 좌승상이었던 베르케 부카가 처 김씨의 이질(媵姪)인 그를 돌보아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필자가 특별히 주목하는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한 『고려사』 권124 「신청전(申靑傳)」의 “영후(永熙)매서(妹婿) 베르케 부카는 이때 평장이고, 왕과 이종형제였다. 그 까닭에 영후에게 초(鈔) 100정(錠)과 능라 12필, 모시 30필을 주었다[永熙妹婿別哥不花時爲平章,

66 『東文選』 卷119/266~272쪽.

67 『東文選』 卷100, 「鄭氏家傳」, 230~231쪽.

於王兩姨兄弟, 故賜永煦鈔一百錠, 綾一十五匹, 紵布三十四]”라는 기사(記事) 중 “어왕양 이형제(於王兩姨兄弟)”란 대목이다. 충숙왕(忠肅王) 생전에 신청이 충숙왕의 걱정을 덜기 위해 충혜왕(1315~1345)을 따르던 악소(惡少) 중 특히 행패가 심한 자인 송팔랑(宋八郎) 등을 가두고 혹독하게 문초하였는데, 충혜왕이 그들을 방면시키기 위해 신청을 불렀으나 가지 않았다. 충혜왕은 즉위한 뒤 바로 정동행성(征東行省) 좌승상을 대리한(權省) 홍빈(洪彬)에게 신청을 이문소(理問所)에 가두게 하였고, 김영후(金永煦)를 보내 일곱 가지 죄목(罪目)을 적어 중서성에 고하게 했는데, 영후의 매형(妹兄)인 평장(平章) 베르케 부카에게 보낸 선물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어왕양이형제(於王兩姨兄弟)”라 하여 충혜왕과 베르케 부카가 이종형제였음을 말하고 있다. 만약 베르케 부카와 충혜왕 사이가 실제로 이종형제라면, 그의 생모는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 후투룩켈미시가 아쿠타이에게 주어 둘 사이에 1남 5녀의 자녀를 두었던 홍규의 장녀임을 보여주는 가장 유력한 사료임이 분명할 것이다. 첫 딸 외에 홍규는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 정해(鄭瑨)와 밀직부사(密直副使) 원충(元忠)에게 각각 두 딸을 시집보냈고, 나머지 두 딸도 충선왕의 순화원비(順和院妃)와 충숙왕의 덕비(德妃)가 되었는데, 덕비는 충혜왕과 공민왕(恭愍王, 재위 1330~1374)을 낳았다.

고려의 공신 가문인 홍규가의 장녀 홍씨와 몽골의 훈구(勳舊)인 엘지기드 가 연진(燕眞)의 아들 아쿠타이 사이의 혼인은 비록 형벌적 성격의 사혼(賜婚)으로 시작하였지만, 이후 아들 베르케 부카가 김순의 셋째 딸과 다시 혼인하여 여몽 두 나라 지배층 가문 사이에 더욱 의미있는 혼인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위에서 검토한 베르케 부카 관련 사료가 잘 보여준다.

한편 「신청진」의 기사는 충숙왕이 홍거(薨去)한 뒤, 충혜왕이 정식으

로 다시 책봉되기 전인 1339년의 기록으로 당시 베르케 부카가 어사대 부를 거쳐 바로 중서성의 평장정사(平章政事)에 임명되었을 때의 일이었다. 그러나 바얀 형제의 정권과 즈단, 베르케 부카 형제의 사이가 불편했다. 게다가 충혜왕이 엘테무르[燕鐵木兒]와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중서성에 대한 충혜왕 측의 요청을 바얀이 수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오히려 1339년 12월 중서성 단사관 두린(頭隣)과 직성사인 구통(九通)을 보내 경화공주(慶華公主)를 범한(蒸) 충혜왕을 종신들과 함께 다시 붙잡아갔다. 충혜왕은 1340년 여름 톡토[朮脫]가 바얀을 축출하고, 톡토의 도움으로 순제(順帝)가 친정(親政)을 시작한 후에 비로소 귀국하게 되었지만, 1343년 11월 원에서 다시 내주(乃住) 등을 보내 조(詔)를 받들러 정동행성에 온 충혜왕을 압송해간 것으로 보아 당시 톡토의 원 중서성도 충혜왕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다소 성격이 다르지만 이 외에 몇 건의 양국 지배층 사이에 있었던 의미있는 혼인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아직도 남아 있다. 먼저 고려의 종실(宗室) 왕현(王顯)의 두 딸도 원의 고관과 황실로 시집갔다. 1308년 충선왕이 취한 종실 왕현의 과처(寡妻) 순비(順妃, 1309년 책봉)는 1335년 65세로 사거하였는데, 이제현이 쓴 그녀의 묘비명을 보면 허공(許琜)의 9남매 중 계실 최씨가 낳은 여섯째(金暉妻許氏墓誌銘)로 충선왕이 취하였을 때 이미 38세의 중년 여인이었던 그녀는 일곱 자녀를 두었다. 그중 연희옹주(延禧翁主)는 원나라의 중서좌승 길길반의(吉吉反懿)에게 시집갔고, 다음 바얀쿠투(伯顏忽篤)는 황태자 아우르바르와다에게 시집가 인종의 후비가 되었다.⁶⁸ 또 다음 경녕옹주(慶寧翁主)는 노책(盧頌)에게 시집갔는데,

68 李齊賢, 『益齋亂藁』 卷7, 「順妃許氏墓誌銘」; 金龍善, 『高麗墓誌銘集成』, 484쪽.

공민왕대 노책은 딸을 원 순제에게 바치고,⁶⁹ 고려 조정에서 권세를 누리다가 기철(奇徹) 등과 복주(伏誅)되었다.

충렬왕의 총신(寵臣) 조인규가(趙仁規家)와 원 근각(根脚)가문 사이의 혼인도 빼놓을 수 없다. 이곡(李穀)의 「조정숙공사당기(趙貞肅公祠堂記)」에 그의 차녀가(大元榮祿大夫) 강절등처행중서성(江浙等處行中書省) 평장정사(平章政事) 우마르(烏馬兒/吳抹)에게 시집간 것으로 되어 있다.⁷⁰ 부카라 출신으로 원의 원난 통치의 기초를 세운 쿠빌라이 시대의 이름난 신하 무슬림 사이드 아잘(賽典赤)의 손자인 우마르와 조인규 차녀의 혼인생활에 대한 이후 경과를 알 수 없다. 다만 충선왕에게 시집간 조인규의 딸(趙妃)이 충선왕의 총애를 받아 계국공주(薊國公主) 보타시린(寶塔實禿)이 이를 질투하고 무고하여 조인규의 가족에게 혹독한 처벌을 내렸고,⁷¹ 1298년 5월에 조인규와 그 처를 가두었다가 결국 그를 원으로 압송하여 안서로 귀양 보냈는데, 6월 조비도 환자(宦者) 이온(李溫)과 함께 원에 끌려가 결국 당시 이름난 색목인 가문 고관인 사이드 아잘 오마르에게 다시 시집간 것으로 보인다.⁷²

원 지배층과 조인규 집안의 두 번째 혼인은 조인규의 손녀 곧 장자 조서(趙瑞)의 딸과 원 무종(武宗)의 총신 야아길니(也兒吉尼)가 혼인한 것이다.⁷³ 희뢰(喜蕾)는 그의 저서에서 『고려사』 권105 「조인규 열전」에 의

69 『高麗史』 卷 131 叛逆5 盧頊.

70 李穀, 『稼亭集』 卷3, 「趙貞肅公祠堂記」.

71 『高麗史節要』 卷22, 567~569쪽에 자세한 전후 사정이 적혀 있다.

72 喜蕾(2003), 169쪽. 『高麗史節要』 忠烈王 24年 五月, “關關不花等偕太后使者還自元, 以帝命囚崔沖紹及將軍柳溫于巡馬所并囚趙妃.(卷22/8上) …… (六月) 太后遣番僧五人道士二人來, 被公主咀呪.(9上) …… 元遣使執趙妃及宦者李溫以歸”(9下).

73 李穀 撰, 『稼亭集』 卷3, 「趙貞肅公祠堂記」.

거 1309년 혼인을 계기로 조서가 고려부도원수(高麗副都元帥)가 되었다고 하여, 고려부도원수가 당시 곤경에 처한 가문을 살리기 위해 원 나라의 권세있는 가문에 시집보낸 것으로 보고 있으나, 지대(至大) 원년(1308) 6월에 지어진 방우선(方于宣)의 조인규모지명(趙仁規墓誌銘)⁷⁴에 이미 “황제가 고려군 정동좌부도원수로 임명했다(宣授管高麗軍征東左副都元帥)”로 나와 있어 희희의 결론은 더 검토해 볼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원 무종의 공신 안길왕(安吉王) 야아길니(也兒吉尼, 額爾吉納)에게 시집간 조인규의 장남 특수회원대장군고려부도원수삼사사(特授會遠大將軍高麗副都元帥三司使) 서(瑞)의 딸이 자녀를 출산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야아길니가 유력한 인물인 점은 확실하다. 세조(世祖) 쿠빌라이의 구신(舊臣) 안길왕(安吉王) 결태보제의 적자인 야아길니는 어렸을 때부터 부친 결태보제(乞台普濟)의 중용으로 무종과 인종이 수업할 때 옆에서 시독(侍讀)한 측신(側臣)이었으며,⁷⁵ 대덕(大德) 2년(1298) 무종 하이산을 따라 부친과 함께 한화에 출정한 뒤에도 큰 전공을 세웠다. 스물두 살이 된 야아길니는 성종 대덕 3년에 알타이 산 남쪽의 고포리(庫布裡?)에 적이 출현하자, 좌위사사(左衛射士)를 선두에서 이끌고 싸워 적의 선봉장을 베었고, 이튿날 하이산은 그 공을 치하해 자신이 입었던 옷과 말안장, 그리고 양가 여자를 상으로 내렸다고 전한다. 1300년에도 그는 앙길이도(昂吉爾圖)에

74 金龍善(1997), 『高麗墓誌銘集成』 개정판, 한림대학교출판부, 629~632쪽.

75 姚燧, 『牧庵集』 卷26, 「開府儀同三司太尉太保太子太師中書右丞相史公先德碑」(1上~6下), “公夏人史姓, …… 七子, 同出五人, 公次居二, 以‘奇塔特布濟克’名行, 自童幼從忠宣出入世祖帷幄, 天監灼其已克恭勤, 至元丙寅(1266)選侍裕宗於東宮, 將二十年, 敬畏益加無少僭忒, 遞順考生皇上, 儲皇詔公保育鞠視之, 每帝召見, 則必左右兼抱之至前方, 幼而學, 詔教之經, 以其嫡子額爾吉納(也兒吉尼)侍讀, 俟其遨嬉廢誦, 輒撻其子以警之, 故能終業, 大會將畢聚諸侯王, 讀太祖大訓, 加丁寧告戒之, 始遣就國, 或皇上儲皇不在列, 必邀致之, 使與有聞。”

서 적을 멸하여 많은 인축(人畜)을 얻었다. 또 이듬해 대덕 5년(1301) 카이두 측이 대거 쳐들어왔을 때도 합라태[哈喇台]에서 싸워 공을 세웠고, 대덕 10년(1306)에는 알타이 산맥을 넘어 차파르의 진영을 쳐서 1만 여 인을 포로로 잡았다. 이처럼 혁혁한 전공을 세운 야아길니는 1307년 하이산이 즉위하자 자덕대부(資德大夫)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에 임명되었고, 6월에 태부원사사(使太府院事), 탕구트친군도지휘사(唐古親軍都指揮使), 7월에 지추밀원사 겸 전서원사(知樞密院事兼典瑞院使)에 임명되었다. 또 이듬해(1308) 5월에 인우원사(仁虞院使)를 겸하고, 11월에 남대(南臺)의 어사대부(御史大夫)에 제수되었다.⁷⁶

한편 『비서감지(秘書監志)』에 의거하면, 지대(至大) 2년 11월 초5일(初五日) 예케(大)케식 제1일(也可怯薛第一日) 카간이 신경전 서이방(西耳房)에 있을 때 시구르치(速古兒赤) 야아길니 승상(丞相)이 배석했다고 하는데, 이는 그가 중요한 사안을 함께 논의하는 핵심기구인 케식관(怯薛官)을 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⁷⁷ 또 『원사』 본기를 보면, 1320년 3월 17일(丙申)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 야아길니가 공창등로둔수(鞏昌等路屯戍)를 검핵(檢覈)하여, 감주수졸(甘州戍卒)을 선발한 뒤에 이어 7월 28일(乙巳)에 강서행성평장정사(江西行省平章政事)로 옮겨짐을 알 수 있다. 또 그 사이 행적은 확인할 수 없으나 1328년 9월 29일(戊子)에 문종 정부(文宗政府)가 운남행성좌승상(雲南行省左丞相) 야아길니를 불렀으나 오지 않았다는 기록으로 보아, 그가 그 무렵까지 건재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이 혼인(婚姻)은 조씨 일가와 몽골

76 也兒吉尼는 1309년 3월 22일 현재 只兒哈郎과 더불어 南臺의 御史大夫를 하고 있다. 『南臺備要』 御史臺 5/10下.

77 『秘書監志』 卷5, 102쪽, “於至大二年十一月初五日也可怯薛第一日, 宸慶殿西耳房內有時分, 速古兒赤也兒吉尼丞相.”

권부를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였음이 틀림없어 보인다.

물론 이 밖에도 비슷한 시기에 원나라 관료에게 고려 관료 가문의 딸을 시집보낸 사료가 몇 건 더 있어 역시 검토해 볼 만하다. 1289년 8월 대장군(大將軍) 장순룡(張舜龍)을 보내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 채인규(蔡仁規)의 딸을 원으로 보냈다.⁷⁸ 고려국왕은 당시 권신(權臣)이었던 승상(桑可)에게 그녀를 보낸 것이었다. 그러나 상가가 복주된 뒤 종적을 알 수 없었는데, 복건성 천주(泉州)에 망명하여 살고 있던 보카리(字哈里)가 1298년 고려국왕에게 선물을 보내 이를 통지함으로써, 당시 쿠빌라이 칸이 마팔국(馬八國) 왕자 보카리에게 주었음이 확인되었다.⁷⁹ 또 1298년 8월 25일(己卯) 보루구(字魯兀)가 돌아갈 때 대장군 강순(姜純)의 딸을 처로 주었다.⁸⁰ 8월 10일(甲子) 국왕과 공주의 입조(入朝)를 채근하러 온 보루구는 17일(辛未) 원으로 가는 길에 금교(金郊)에서 황제(皇帝)의 명으로 국왕의 인수를 받아 전왕(前王)에게 돌려주고 복위를 명하는 성종(成宗)의 조서를 전하고 가는 길이었다.

한편 1355년 7월에 찬성사(贊成事) 박수년(朴壽年)이 원에서 갑자기 죽었는데, 그는 원 중서우승상(中書右丞相) 왕가노(王家奴)의 부옹(婦翁)으로 승상의 대접을 받던 중에 과음하여 갑자기 사망하였다⁸¹고 하니, 찬성사 박수년의 가문과 그의 딸을 자부(子婦)로 맞은 원 중서우승상 왕가노의 가문 사이에 통혼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후지원(後至元) 2년 이미

78 『高麗史』卷30/18下.

79 『高麗史節要』卷22/9上.

80 『高麗史』卷31/23下：己卯，字魯兀還，以大將軍姜純之女妻之。/高麗史節要卷22/11上.

81 『高麗史節要』卷26，恭愍王四年/至正十五年“秋七月，贊成事朴壽年卒于元，壽年元丞相王家奴之婦翁也。丞相宴慰，過飲暴卒。”

선정원사(宣政院使)에 올랐던 왕가노는 지정 14년 어사대부, 그리고 이듬해 중서우승상에 까지 오른 원말의 권귀(權貴)였다. 같은 무렵에 관노 출신으로 찬성사에 올랐고, 진령부원군(晉寧府院君)에 봉해진 강융(姜融)의 딸도 원의 중서우승상 퉁토(脫脫)의 총희(寵姬)였기 때문에, 강융의 아들 천유(千裕)와 밀직(密直) 김경직(金敬直)의 딸을 맺어주었다⁸²고 한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홍규의 가족 중에도 손녀(장남 戎의 장녀)를 원 자정원(資政院) 동지(同知) 별첩목아(別帖木兒)에게 시집보내고 있어, 당시 원 관료와 혼인을 맺는 것이 일부 가문의 풍속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충렬왕의 충신 중찬(中贊) 염승익(廉承益)의 가문도 역시 원의 세족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고 있다. 공녀였는지 내막은 알 수 없으나 손자 염제신⁸³의 고모(姑母)가 몽골의 모기(末吉)에게 시집갔다. 모기는 무종대 검설관(怯薛官)이었던 시구르치(速古兒赤) 모기(抹乞)와 같은 인물로 보이는데,⁸⁴ 문종 천력(天曆) 2년(1329) 선달 대사도(大司徒)에 임명되었으며,⁸⁵ 1335년 순제 토곤테무르 즉위 초기 선정원사(宣政院使)로 벼슬을 마치고 있다.⁸⁶ 조인규의 외손이기도 한 염제신은 6세에 아버지를 잃고 고아가 되었는데, 11세(1314)에 고모부(姑夫)인 모기가 원으로 불러 이후 고모부

82 『高麗史』卷124, 「姜融傳」, “恭愍以其妹爲元丞相脫脫寵姬, 命密直金敬直以其子妻之”(20上下).

83 李穡, 『牧隱集/ 牧隱文藁』卷15, “高麗國忠誠守義同德論道輔理功臣壁上三韓三重大臣曲城府院君贈諡忠敬公廉公神道碑并序”.

84 『秘書監志』(교감본, 절강고적) 卷2, 41쪽, “至大二年十二月二十八日只(見) [兒]哈郎怯薛第三日玉德殿西耳房內有時分, 昔寶赤大(慈)都, 丞相玉龍帖木兒, 丞相寶兒赤朶烈禿, 火者太順司徒, 速古兒赤抹乞等有來, 太尉脫脫丞相, 太保三寶奴丞相, 伯顏平章, 忙哥帖木兒左丞相等奏”; 『元史』卷38, 順帝本紀 後至元 元年(1335): (十二月乙丑) 命宣政院使末吉以司徒就第.

85 『元史』卷33, 文宗本紀 天曆 2年 十二月 庚寅, 745쪽.

86 『元史』卷38, 順帝本紀 後至元 元年 十二月 乙丑: “命宣政院使末吉以司徒就第.”

의 후견 아래서 성장하였다. 모기는 또 특별히 유생(儒生)을 그의 집에 들여 염제신을 10년 동안 가르쳤다고 하니, 염제신은 당시로서도 드물게 고려와 몽골, 그리고 한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인재로 양육된 것으로 보이며, 지정 초 강남에서 재부(財賦)를 회계하며 명성을 쌓을 수 있었던 바탕이 이때 갖추어졌음을 알 수 있다.

모기는 1324년 태정제가 즉위할 때 염제신을 데리고 카라코룸까지 맞으러 갔는데, 이때 염제신은 태정제의 눈에 띄어 숙위(宿衛)가 되었고, 이어 카안의 시구르치가 되어, 이후 원의 관리로 출세할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는 지순(至順) 2년(1331)에 강향사(降香使)로 고려에 오기 전에도 한 차례 모친을 뵈러 왔는데, 지순 4년 결국 모친 봉양을 이유로 돌아와 정동행성의 낭중(郎中)으로 충숙왕의 통치를 도왔다. 충숙왕(忠肅王) 사후 염제신은 다시 원으로 돌아가 중정원(中政院)의 익정사승(翊正司丞)으로 복귀하였으며, 특히 1343년 강절행성(江浙行省)에 가서 중정원(中政院)에 속한 강절등처재부도총관부(江浙等處財賦都總管府)의 회계를 맡았을 때, 그는 청렴한 일처리로 당시 행성의 좌승상이었던 베르케 부카의 지우(知遇)를 받았다. 뒷날 중서성에 돌아온 베르케 부카가 그를 황제에게 천거했던 사실은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여말 고려 출신인 관료 중 이곡 외에도 상당수가 원의 과거에 합격하여 염제신과 같이 원과 고려를 오가며 사환하였다. 하지만 이들이 대체로 낮은 관직에 머무른 데 비해 염제신은 원나라의 고위 관직에 오를 전망도 있었으나, 결국 翊正司丞을 끝으로 고려에 돌아와 사환을 마쳤다. 염제신의 경우 역시 여원 지배층 사이의 통혼관계의 소산으로 지배층의 통혼관계가 여원관계의 성격을 새롭게 검토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4. 맺음말

1219년 정월 형제맹약으로 시작한 1단계 여몽관계부터 고려는 대몽골국을 중국의 전통 왕조와 다름없는 상대로 인식하여, 대몽골 관계를 이전의 대(對)거란 관계나 대금(對金) 관계와 같은 관계로 설정하고자 하였다. 1231년 몽골의 본격적인 군사침략 이후에도 고려는 양국 관계를 전통적인 형식적 책봉과 조공의 관계인 사대관계로 받아들이고 이를 굳히려는 노력을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고려는 몽골의 각종 요구, 곧 인질과 기술자와 공납물품에 대하여도 갖은 이유를 들어 고려의 부담을 경감시키려 몽골 정권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섭을 멈추지 않았다. 반면에, 몽골 측은 1219년 1차 형제맹약 이후 고려를 평화적 방법으로 굴복시킨 피정복지역으로 인식하여 이러한 공납을 당연한 정복의 과실로, 또 고려의 공납을 복속지역에서 부담해야 할 의무로 여겼기 때문에 처음 약속한 것보다 오히려 과도하게 징수하려 하였다. 결국 쿠빌라이 이후 여원관계 성립의 조건은 한법적 국제질서를 최선의 국제질서라고 본 쿠빌라이 권력의 핵심 조연자들의 인식에서도 영향을 받았지만, 1259년 고려 태자가 투항하려 가기 이전에 이루어진 여몽관계를 사대관계로 설정하려는 40여 년에 걸친 고려 무신정권의 외교노력과 저항 덕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몽관계의 두 번째 단계인 쿠빌라이가 중창한 왕조 대원(大元)과 고려의 관계는 원에 머무르고 있던 다수의 고려인의 자화상(自畫像)을 통해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 중에는 몽골이 고려를 침략했을 때 포로로 잡혀온 수십만의 고려인과 그 후에 그리고 또 반역한 지도자를 따라 망명한 고려인과 그 후에, 그리고 공녀, 환관과 승려 외에도 몽골 왕

조의 지배층의 처와 첩으로 살고 있었던 여인들과 그들의 후예도 있었다. 특히 몽골 지배층의 고려 출신 처와 첩은 약탈적 여성 수탈의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한족 가정이나 고려 가정의 관습과 몽골, 색목 가정의 혼인풍속이 달랐기 때문에, 그 소생에 대한 차별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몽골 지배 권력 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었고, 이들 후손을 다시 고려 지배층 가문 출신과 혼인시킬 수도 있어서, 두 나라의 지배층 사이에 더 의미있는 새 통혼관계도 성립했다. 몽골의 공신가문 중 하나인 엘지기드 가문과 고려의 대표 명문인 홍씨 가문, 김씨 가문과 대를 이어 거듭 혼인관계를 맺은 것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또 엘지기드 가문 아쿠타이와 홍문계(洪文系, 洪奎)의 장녀 홍씨 소생으로, 지정 연간 우승상까지 오른 베르케 부카가 원말 조정 내외의 고려인 집단과 우호관계를 맺고 그들을 후원한 것은 통혼관계의 직접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김장희와 연진(燕眞)의 손자인 칸리회회(康里回回)가 지치(至治) 연간 입성논의(立省論議)가 일어났을 때 영종을 설득하여 논의를 잠재운 숨은 공로자라는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도, 통혼관계가 사회적 의미 외에 대몽골국과 고려 관계에서 갖는 정치적 의미를 보여준다. 지배층의 통혼관계는 여원 두 나라를 더욱 강고하게 묶어주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역으로 상대에게 고려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켜 고려라는 왕조의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데에도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 - 몽골관계에서 보이는
책봉 - 조공관계 요소의 탐색

이익주 (서울시립대학교)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려 - 몽골관계에서 보이는 책봉 - 조공관계 요소의 탐색¹

이익주 서울시립대학교

1. 머리말

13세기 후반부터 14세기 전반까지—구체적으로는 고려와 몽골 강화가 이루어진 1259년부터 고려의 반원운동이 성공한 1356년까지—약 100년의 시기를 한국사학계에서는 ‘원 간섭기(元干涉期)’라고 부른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그 시기 고려와 원의 관계를 ‘간섭(干涉)’으로 표현한 것이다. 당시에 고려가 원의 간섭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을 드러내기 위하여 ‘지배(支配)’라는 말을 피하고 ‘간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몽골

1 이 글은 필자의 기 발표 논문 「13~14세기 세계질서와 고려 - 몽골관계」(『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의 한중관계사 - 제언과 모색』, 동북아역사재단, 2010)를 국제학술회의의 주제에 맞추어 재구성한 것이다.

제국^[이하 이 글에서는 '몽골(원)'으로 표기함] 아래서 고려가 국가를 유지하였음은 고병익의 선구적인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었다.² 그리고 그 견해가 이후 한국사학계에 널리 수용되어 '원 간섭기' 또는 '부마국(駙馬國)'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던 것이다.³

필자도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시각에 동의하면서 '간섭'으로 표현되는 고려-몽골(원) 관계를 구조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하였고, 그 결과 고려-몽골(원) 관계에서 보이는 '세조구제'(世祖舊制)에 주목하였다. 고려-몽골(원) 관계에서 '세조구제'란 원 세조 때 고려와 몽골(원)이 합의한 양국 관계의 틀로서, 그 내용은 고려가 국가를 유지하면서 몽골(원)의 정치적 간섭을 받는 이중성을 갖는 것으로 설명되었다.⁴ 그 뒤 필자는 한중관계사 공동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 결과 고려-몽골(원) 관계에서 보이는 '세조구제'가 전통적인 한중관계에서 보이는 책봉-조공 관계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몽골(원)의 간섭은 책봉-조공 관계 아래서 나타난 시기적 양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⁵

필자의 '세조구제'론은 본격적인 고려-원 관계사가 아니라 고려 후기 정치사를 연구하면서 고려 정치의 외적 조건으로서 고려의 대원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입론된 것이었다. 또한 일정 부분 2000년 이전 국내 학계의 몽골사 연구 수준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

2 高柄翊(1961·1962), 「麗代 征東行省의 研究(上·下)」, 『歷史學報』 14·19.

3 '駙馬國'이라는 용어는 閔賢九(1974), 「高麗後期の 權門世族」, 『한국사』 8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4 李益柱(1996), 「高麗·元關係의 構造에 대한 研究-소위 '世祖舊制'의 분석을 중심으로」, 『韓國史論』 36.

5 이익주(2006), 「14세기 후반 원·명교체와 한반도」,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일조각.

유 때문에 고려-몽골(원) 관계사 연구는 몽골(원)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오는 한계를 안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로는 국내의 몽골사 연구가 활발해지고, 몽골사 연구자들이 고려사에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고려-몽골(원) 관계사 연구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고 있는 느낌이다.⁶ 또한 모리히라 마사히코[森平雅彦]의 고려-몽골 관계에 대한 일련의 연구도 주목된다.⁷ 이러한 연구들은 몽골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서 고려와 몽골(원)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틀을 모색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몽골사 연구는 몽골사가 중국사의 일부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그 연장에서 고려-몽골(원) 관계를 한중관계사의 일부로 다루는 것을 비판한다. 그렇게 하면 몽골제국의 특수성이 포착되지 않으며, 결국 한중관계를 설명하는 책봉체제, 조공관계, 사대관계 등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충분히 설득력 있는 견해이지만, 그럴 경우 몽골(원)에서 찾을 수 있는 ‘중국적’ 요소들, 즉 쿠빌라이가 금과 남송을 차지한 뒤 중국 고전인 『역경(易經)』의 “크도다, 건원이여!(大哉乾元)”라는 구절에서 대원(大元)이라는 국호를 지은 것이나, 중통(中統)·지원(至元) 등 중국식 연호를 사용한 것, 중국식 도성을 건설하고 대도(大

6 다음의 연구들이 대표적이다. 이개석(2004), 『『高麗史』 元宗·忠烈王·忠宣王世家 중 元朝關係記事의 註釋研究』, 『東洋史學研究』 88 ; ____ (2007), 『大蒙古國-高麗 關係 연구의 재검토』, 『史學研究』 88 ; 김호동(2006), 『몽골제국과 ‘大元’』, 『歷史學報』 192 ; ____ (2007), 『몽골제국과 고려』, 서울대학교출판부.

7 森平雅彦(1998a), 『高麗王位下の基礎的考察-大元ウルスの一分權勢力として高麗王家』,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6 ; ____ (1998b), 『駙馬高麗國王の成立-元朝における高麗王の地位についての豫備的考察』, 『東洋學報』 79-4 ; ____ (2001), 『元朝ケンク制度と高麗王家-高麗·元關係における禿魯花の意義に關連して』, 『史學雜誌』 100-2.

翻)라고 이름 붙인 것, 정치제도에서도 중서성·추밀원·어사대 같은 중국 관제를 채용한 것 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러한 중국문화의 수용을 ‘한화(漢化)’라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적어도 중국 지역에 성립한 원조(元朝, 카안 울루스)가 중국 전통의 정책을 이용했던 것은 분명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중국의 전통적인 책봉-조공 관계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 글은 고려와 몽골(원)의 관계를 여전히 책봉-조공 관계로 볼 수 있는지를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려-몽골(원) 관계에서 책봉-조공 관계의 요소를 찾아보고, 아울러 양국 관계를 책봉-조공 관계로 보기 어렵게 하는 요소들도 함께 찾아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분석하여 양국 관계의 성격을 구명해보고자 하였다. 최근 모리히라 마사히코가 고려-몽골(원) 관계를 ‘세조구제’론에 입각하여 책봉-조공 관계로 보고자 한 필자의 견해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비판하였으므로,⁸ 이 글은 그에 대한 답변의 의미도 갖게 될 것이다.

2. 책봉-조공관계의 요소

1) 책봉과 조공

책봉-조공 관계의 가장 핵심 요소는 당연히 책봉(冊封)과 조공(朝貢)이며, 그중에서도 책봉이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고려와 몽골(원) 사이에는 1259년 원종에 대한 최초의 책봉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공민왕에

8 森平雅彦(2008), 「事元期高麗における在來王朝體制の保全問題」, 『東北アジア研究』別冊1號, 島根縣立大學 東北アジア地域研究センター.

이르기까지 역대 고려국왕들이 모두 몽골(원)의 책봉을 받았다. 책봉호(冊封號)에 몽골(원)의 관계(官階)와 행정승상(行省丞相), 부마(駙馬)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점이 달랐지만, 책봉 자체는 고려가 건국 초부터 오대와 송, 거란, 금으로부터 책봉을 받은 것과 다르지 않았다.⁹

몽골이 최초로 책봉한 고려국왕은 원종이었다. 1258년(고종 45) 원종이 태자로서 몽골에 입조한 사이에 고종이 죽자 쿠빌라이가 그를 고려국왕에 책봉하였던 것이다. 이 사실이 『고려사』에는,

江淮宣撫使 趙良弼이 皇弟(쿠빌라이)에게 말하기를 “고려가 비록 소국이라 하나 산과 바다에 의지하여 국가가 20여 년 동안 用兵하는데도 아직 臣附시키지 못했습니다. 전해에 太子 僖이 來朝하였으나 마침 황제가 西征했으므로 머문 지 2년이 되었는데, 대접하는 설비가 소홀하여 그 마음을 위안하지 못했으니 일단 돌아가면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마땅히 館穀을 후하게 하여 藩王의 예로 접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듣건대 그 아버지가 죽었다 하니 僖을 왕으로 세워 환국시키면 반드시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덕을 받들어 臣職 닦기를 원할 것이니, 이는 一拊을 수고롭게 하지 않고도 一國을 얻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陝西宣撫使 廉希憲도 또한 이를 말하자 皇弟가 그렇게 여겼다.¹⁰

라고 하여, ‘전을 세워 왕으로 삼았다(立僖爲王)’고 나와 있지만, 뒤이어 고려에 전달된 조서에서는 같은 사실이 ‘책위왕(冊爲王)’이라고 하여¹¹ 그것이 책봉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오랜 전쟁 끝에 성립한 양국 관계가 어떤

9 五代와 宋, 거란, 금의 高麗國王에 대한 책봉은 沈載錫(2002), 『高麗國王 冊封研究』, 혜안 참조.

10 『高麗史』卷25, 「世家」25, 元宗 元年 3月 丁亥.

11 『高麗史』卷25, 「世家」25 元宗 元年 4月 辛酉.

형태를 띠게 될 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종의 죽음이라는 우연한 사건이 몽골의 결정을 재촉했고, 몽골은 고려 태자를 고려국왕에 책봉함으로써 앞으로 고려와 책봉-조공 관계를 수립할 것임을 시사한 셈이었다.

원종이 책봉을 받고 귀국한 직후 몽골에서는 조서를 보내와 개원(改元)의 사실을 다음과 같이 알려왔다.

漢武帝 이후에 창업하거나 수성하는 군주는 즉위하는 시초에 반드시 改元하였으니, 이는 천하 만세에 근본을 바로하고 나라를 세우는 뜻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국가가 여러 대에 걸쳐 성스런 제왕들이 계승하였으나 나라를 여는 큰 사업때문에 예의 문물의 일은 돌볼 겨를이 없었다. 짐이 큰 사업을 이어받아 옛날의 좋은 정치를 회복하고자 하여 이미 금년 5월 19일에 연호를 세우고 中統 원년이라 하였으니, 사신이 돌아가거든 이 사실을 널리 알려 짐의 뜻을 알게 하도록 하라.¹²

즉 ‘금년(1260)’ 5월 19일을 기해서 중통(中統) 원년으로 개원한다는 내용으로, 조서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그 자체가 한 무제 이후의 중국 인전통이었고, 중통이라는 연호 역시 중국적인 것이었다. 개원과 함께 1262년(원종 3)부터는 반력(頒曆)도 시행하였다.¹³

책봉과 함께 인장(印章)도 수여되었다. 몽골은 1260년(원종 1)에 ‘호부 국왕지인(虎符國王之印)’을 수여하였는데,¹⁴ 인장은 고려 전기에 거란(요) 및

12 『高麗史』 卷25, 「世家」 25 元宗 元年 8月 壬子.

13 『元史』 卷208, 「列傳」 95, 高麗 世祖 中統 3年(元宗 3年) 正月, “賜植曆 後歲以爲常.”

14 『高麗史』 卷25, 「世家」 25, 元宗 元年 8月 壬子.

금과 책봉-조공 관계를 맺었을 때에도 수수된 적이 있었다.¹⁵ 책봉과 함께 인장이 수여되고 연호와 반력이 시행되었을 때, 고려인들은 당연히 몽골과의 관계를 책봉-조공 관계로 인식하였을 것이다.

원중에 이어 충렬왕도 즉위와 동시에 몽골의 책봉을 받았다.¹⁶ 그러나 충렬왕은 원종과 달리 고려국왕 이외의 여러 책봉호를 받았다. 우선 1280년(충렬왕 6)에는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중서좌승상행중서서사(中書左丞相行中書省事)에 임명되었다.¹⁷ 이는 일본 침략을 위해 설치된 정동행성에 충렬왕이 관여하고자 하여, 요·금이 고려국왕을 개부의동삼사에 책봉한 ‘제후입상(諸侯入相)’의 사례를 들어 요구한 결과였다.¹⁸ 그리고 다음 해에는 부마(駙馬)가 더해졌는데, 이 역시 충렬왕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¹⁹ 이후 1282년(충렬왕 8) 정동행성이 폐지되자²⁰ 부마국왕의 인장을 받았고,²¹ 이듬해 정동행성이 다시 설치되자 부마·고려국왕으로서 정동행성좌승상(征東行省左丞相)을 겸하였다.²² 이후 원 관제의 개편에 따라

15 거란과 금으로부터 國王이 印章을 받은 사례는 다음과 같다. 『高麗史』卷72, 「志」26, 輿服1 印章 王印章. 靖宗 9年 11月 “契丹主賜印綬”; 文宗 3年 正月 “契丹主賜印綬”; 宣宗 2年 11月 “遼主賜印”; 肅宗 2年 12月 “遼主賜印”; 仁宗 20年 5月 “金主賜金印一面”; 明宗 2年 5月 “金主賜金印一面駝紐”; 神宗 2年 4月 “金主賜金印”; 康宗 元年 7月 “金主賜金印.”

16 『高麗史』卷28, 「世家」28, 忠烈王 卽位年 7月, “元遣同知上都留守事張煥 冊爲王.”

17 『高麗史』卷29, 「世家」29, 忠烈王 6年 12月 辛卯.

18 『高麗史』卷29, 「世家」29, 忠烈王 6年 11月 己酉.

19 『高麗史』卷29, 「世家」29, 忠烈王 7年 3月 乙卯, “將軍盧英還自元 帝賜駙馬國王 宣命征東行中書省印 先是 王奏曰 臣旣尙公主 乞改宣命益駙馬二字 帝許之.”

20 『高麗史』卷29, 「世家」29, 忠烈王 8年 正月 “是月 元罷征東行中書省.”

21 『高麗史節要』卷20, 忠烈王 8年 9月 “元賜駙馬國王印.”

22 『高麗史』卷29, 「世家」29, 忠烈王 9年 6月 癸未, “趙仁規還自元 帝冊王爲征東 中書省左丞相 依前駙馬高麗國王 命與阿塔海共事.”

1288년(충렬왕 14) 정동행상서성우승상(征東行尙書省右丞相)으로 바뀌었다가²³ 1291년(충렬왕 17) 정동행중서성좌승상으로 환원되는 변화가 있었지만²⁴ 충렬왕은 고려국왕, 부마, 정동행성승상의 세 가지 지위를 기본적인 책봉호로 받았다.

1294년(충렬왕 20)에는 충렬왕이 작명(爵命)을 더해줄 것을 요청했고,²⁵ 이듬해에는 태사·중서령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²⁶ 관작의 추가는 1298년 충렬왕이 왕위에서 물러나면서 비로소 관철되어 추충선력정원보절공신(推忠宣力定遠保節功臣)·개부의동삼사·태위(太尉)·부마·상주국(上柱國)·일수왕(逸壽王)의 책봉이 이루어졌다.²⁷ 같은 해에 충선왕이 퇴위하고 충렬왕이 복위하였는데, 복위 당시의 책봉호는 확인되지 않지만, 1307년(충렬왕 33)에 충렬왕이 추충선력정원보절공신·개부의동삼사·태위·정동행중서성좌승상·상주국·고려국왕이었으므로²⁸ 이것이 복위시의 책봉호일 것이다. 단 여기에는 ‘부마’가 빠져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착오인 듯하다. 왜냐하면 1310년(충선왕 2) 원 무종(武宗)의 제서에 충렬왕의 직함이 순성수정추충선력정원보절공신·태위·개부의동삼사·정동행중서성우승상·상주국·부마·고려국왕으로 되어 있기

23 『高麗史』卷30, 「世家」30, 忠烈王 14年 4月 乙卯, “ 郎將金精選自元 詔以王爲 征東行尙書省左丞相.”

24 『高麗史』卷30, 「世家」30, 忠烈王 17年 9月 己亥 “元遣洪重慶 授王爲征東行中 書省左丞相.”

25 『高麗史』卷31, 「世家」31, 忠烈王 20年 5月, “王以四事奏于帝 一請歸耽羅 二 請歸被虜人民 三請冊公主 四請加爵命.”

26 『高麗史』卷31, 「世家」31, 忠烈王 21年 5月 丁亥, “遣贊成事印侯如元 請世子 婚 又遣左承旨柳庇請加王太師中書令 降公主印章 改世子印章 帝皆不允.”

27 『高麗史』卷31, 「世家」31, 忠烈王 24年 正月 甲辰.

28 『高麗史』卷32, 「世家」32, 忠烈王 33年 8月 辛亥.

때문이다. 충렬왕이 정동행성의 좌승상에 오른 것은 충선왕이 무종을 옹립하고 실권을 장악한 뒤인 1307년(충렬왕 33) 8월의 일이었다.²⁹

충선왕은 왕위에 오르기 전인 1291년(충렬왕 17)에 특진·상주국·고려국왕세자에 책봉되고³⁰ 1295년(충렬왕 21)에는 의동삼사·상주국·고려국왕세자·영도첨의사사에 진봉되었다³¹. 몽골(원)에 의한 고려국왕세자 책봉은 전무후무한 일이지만, 이보다 앞서 고려에서 세자에 책봉되었으므로³²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충선왕은 1298년에 충렬왕의 양위를 받아 즉위하였는데, 이때 개부의동삼사·정동행중서성좌승상·부마·상주국·고려국왕에 책봉되었다.³³ 부마의 지위는 그보다 앞서 1296년(충렬왕 22)에 원 진왕의 딸과 혼인함으로써 얻어졌다.³⁴ 충선왕은 곧 고려 왕위에서 물러났다가 1307년 원에서 무종을 옹립한 공으로 심양왕에 책봉되었는데, 당시 책봉호는 개부의동삼사·태자태부·상주국·부마도위·심양왕이었다.³⁵ 그리고 이듬해 고려국왕에 즉위하면서 정동행성우승상·고려국왕을 더하여³⁶ 개부의동삼사·태자태사·상주

29 『高麗史』卷32, 「世家」32, 忠烈王 33年 8月 辛亥.

30 『高麗史』卷30, 「世家」30, 忠烈王 17年 9月, “是月 帝授世子特進 上柱國 高麗國王世子 賜金印 ……”.

31 『高麗史節要』卷21, 忠烈王 21年 8月 戊午, “世子至自元 帝冊爲儀同三司 上柱國 高麗王世子 領都僉議使司 賜銀印.”

32 『高麗史』卷28, 「世家」28, 忠烈王 3年 正月 壬寅, “冊子諱爲王世子.”

33 『高麗史』卷31, 「世家」31, 忠烈王 24年 正月 甲辰.

34 『高麗史』卷31, 「世家」31, 忠烈王 22年 11月 壬辰, “王與公主詣闕 世子以白馬納幣于帝 尙晉王之女.”

35 『高麗史節要』卷23, 忠烈王 34年 5月, “知密直司事朴瑄還自元 帝以前王定策功 特授開府儀同三司 太子太傅 上柱國駙馬都尉 進封瀋陽王 又令入中書省參議政事 賜金虎符 ……”.

36 『高麗史』卷33, 「世家」33, 忠宣王 復位年 10月 辛亥.

국·부마도위·심양왕·정동행성우승상·고려국왕이 되었다.

그러나 충선왕은 심양왕과 고려 왕위를 겸함으로써 ‘일신상에 양왕인을 겸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홍중희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 그 때문에 고려 왕위를 아들 충숙왕에게 양위하였다.³⁷ 이렇게 해서 즉위한 충숙왕은 금자광록대부·정동행중서성좌승상·상주국·고려국왕에 책봉되었는데³⁸ 아직 몽골(원) 공주와 혼인하지 않았으므로 부마는 책봉호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1316년(충숙왕 3) 혼인이 이루어진 뒤³⁹ 이듬해 개부의동삼사·부마·고려국왕으로 다시 책봉되었다.⁴⁰ 이때 정동행성좌승상과 상주국은 그대로 이어졌을 것이다. 한편 충숙왕과 고려 왕위를 다투었던 왕고(王鬲)는 충선왕으로부터 심양위를 물려받아 개부의동삼사·심왕에 책봉되고 몽골(원) 공주와 혼인하였는데,⁴¹ 부마에 봉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충숙왕의 양위를 받아 즉위한 충혜왕은 개부의동삼사·정동행중서성좌승상·상주국·고려국왕에 책봉되었다.⁴² 부마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충혜왕이 아직 부마가 아니었기 때문으로, 몽골(원) 공주와 혼인한 뒤⁴³ 부마호가 더해졌을 것이지만 확인되지 않는다. 그 뒤를 이은 충목

37 『高麗史』卷35, 「世家」35, 忠肅王 15年 7月 己巳.

38 『高麗史』卷34, 「世家」34, 忠宣王 5年 3月 甲寅.

39 『高麗史』卷34, 「世家」34, 忠肅王 3年 7月 戊申, “王娶營王女亦憐眞八刺公主.”

40 『高麗史』卷34, 「世家」34, 忠肅王 4年 11月 辛卯, “贊成事權漢功還自元 帝冊王爲開府儀同三司 駙馬 高麗國王.”

41 『高麗史節要』卷24, 忠肅王 3年 3月, “上王奏于帝 傳瀋王位于世子鬲 自稱太尉王 帝授鬲開府儀同三司 瀋王 令尙梁王女.”

42 『高麗史』卷36, 「世家」36, 忠肅王 17年 2月 壬午, “帝命典瑞院使阿魯委, 頭曼台, 客省太史九住 策王曰 …… 可特授開府儀同三司 征東行中書省左丞相 上柱國 高麗國王.”

43 『高麗史』卷36, 「世家」36, 忠惠王 卽位年 3月 戊寅, “王尙關西王焦八長女 是

왕도 개부의동삼사·정동행중서성좌승상·상주국·고려국왕에 책봉되었지만,⁴⁴ 미처 혼인을 하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사망하였다. 충정왕의 경우는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원으로부터 마지막으로 책봉을 받은 공민왕도 “국왕으로 삼았다”고만 되어 있을 뿐⁴⁵ 책봉 기록이 남아 있지 않지만 전례대로 개부의동삼사·정동행성승상·부마·상주국·고려국왕에 책봉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원종부터 공민왕까지 고려의 역대 왕들은 몽골(원)로부터 고려국왕·부마·정동행성승상에 책봉호를 받았다. 그리고 책봉과 동시에 책봉호에 어울리는 인장을 받았을 것이지만, 그에 대한 기록은 1282년(충렬왕 8)에 충렬왕이 부마국왕인을 받은 것을⁴⁶ 마지막으로 나오지 않는다. 『원사』 제왕표(諸王表)에는 ‘부마고려국왕’에게 원의 6등급 인장 가운데 1등급에 해당하는 금인수뉴(金印纒紐)를 수여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⁴⁷ 이 표에 올라 있는 123명의 제왕 가운데 유독 고려국왕만 부마고려국왕으로 이름을 올린 것도 특이하지만, 그럴 경우 부마가 아닌 고려국왕들이 어떤 인장을 받았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한편, 몽골(원)의 중국식 연호 사용은 그 뒤로도 계속되었고, 연호가 바뀔 때마다 고려에 사신을 파견하여 그 사실을 알렸다.⁴⁸

爲德寧公主。”

44 『高麗史』卷37, 「世家」37, 忠穆王 卽位年 5月 甲午.

45 『高麗史』卷37, 「世家」37, 忠定王 3年 10月 壬午, “元以江陵大君祺爲國王.”

46 『高麗史』卷72, 「志」26, 輿服1 印章 王印章.

47 『元史』卷108, 「表」3, 諸王表.

48 『高麗史』卷26, 「世家」26, 忠烈王 5年 10月 戊申, ‘至元’; 卷31, 「世家」31 忠烈王 20年 12月 辛丑 ‘元貞’; 卷31, 「世家」31, 忠烈王 23年 2月 庚申 ‘大德’; 卷32, 「世家」32, 忠烈王 34年 2月 辛丑 ‘至大’; 卷34, 「世家」34, 忠宣王 3年 12月 庚午 ‘皇慶’; 卷34, 「世家」34, 忠肅王 元年 2月 庚午 ‘延祐’; 卷35, 「世

이 시기 고려 국왕에 대한 책봉은 몽골(원)이 일방적이고 실질적으로 행했다는 점에서 그 이전, 이후와 달랐다. 즉 이전에 고려가 경험했던 오대·송·거란·금의 책봉은 이미 이루어진 고려의 왕 위 계승을 추인하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지만, 몽골(원)은 이것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마치 고려 국왕을 임면하듯 하였던 것이다. 예를 들어 1298년(충렬왕 24)에 충선왕이 퇴위하고 충렬왕이 복위한 것은 전적으로 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이 사실은 충렬왕의 복위를 명하는 조서가 반포되었을 때 “(그것을 가져온) 패로울[李魯元]이 온 지 10일이 되었으나, 국인(國人)들은 이러한 조서가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한 데서⁴⁹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몽골(원)의 책봉권에도 명백한 한계가 있었다. 몽골(원)이 고려의 전통적인 왕위계승 원칙을 부정하지는 못했는데, 실제로 ‘원 간섭기’에 왕위계승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몽골(원)으로부터 책봉을 받은 적은 없었다. 또한 충숙왕 때 일어난 심왕 응립운동에서 보듯이 심왕 고는 원의 후원을 받았음에도 방계(傍系)라는 점이 결정적인 약점으로 결국 왕위에 오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의 ‘실질적’인 책봉권이라는 것도 역시 제한된 범위에서 행사되었고, 대부분은 부자 사이에서 왕위를 옮기는 정도에 머물렀던 것이다.

책봉에 대한 반대급부로 조공이 시행되었다. 조공은 원종이 몽골에서 책봉을 받고 귀국한 직후 몽골에 사신을 파견하고 공물을 보내는 것

家」35, 忠肅王 8年 正月 庚辰 ‘至治’；忠肅王 10年 12月 辛酉 ‘泰定’；忠肅王 15年 4月 乙未 ‘致和’；忠肅王 15年 9月 壬申 ‘天曆’；忠肅王 後4年 12月 己巳 ‘至元’；卷36, 「世家」36, 忠惠王 卽位年 5月 乙丑 ‘至順’；忠惠王 後2年 2月 庚寅 ‘至正.’

49 『高麗史』卷31, 「世家」31, 忠烈王 24年 8月 癸酉.

으로 시작되었다.⁵⁰ 그때부터 하정사, 하성절사 등 정기적인 사신뿐 아니라 진정, 주청, 사은, 진하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러한 사행은 고려 전기에 거란이나 금에 사신을 보낸 것과 크게 다른 것이 아니었다. 다만, 이 시기에는 몽골이 일방적인 수탈을 자행하였고, 그것이 양국 관계를 규정하는 요소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⁵¹ 실제로 고려는 몽골(원)의 요구에 따라 매(鷹, 鷂), 인삼, 포 등을 몽골(원)에 제공하였으며, 이 시기에 나타난 가장 특징적인 현상으로는 공녀(宮女, 處女)와 환관을 보낸 사실이다. 또한 ‘방물(方物)’이라고만 기록되어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공납도 매우 많았다.

물자와 인력의 공납은 당시 고려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고, 그에 따른 고통도 매우 컸을 것이다. 그러나 고려의 몽골(원)에 대한 공물의 부담이 다른 시기에 비해 훨씬 더 컸다고 볼 근거는 없다. 이에 대해서는 책봉-조공 관계에 있었던 다른 시기의 경우와 비교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1379년(우왕 5) 책봉-조공 관계에 있던 명이 고려에 금 100근, 은 1만 냥, 양마(良馬) 100필, 세포(細布) 1만 필을 해마다 보낼 것을 요구해왔고,⁵² 1382년(우왕 8)에는 실제로 고려에서 금 100근과 은 1만 냥, 포 1만 필, 말 1천 필을 세공(歲貢)으로 보낸 적이 있었다.⁵³ 이것이 당시 고려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코 적은 부담은 아니었을 것이다. 따라서 공물의 부담을 근거로 고려-몽골(원) 관계가 다른 시기의 책봉-조공 관계와 질적으로 달랐다고

50 『高麗史』 卷25, 「世家」 25, 元宗 元年 4月 庚戌.

51 森平雅彦(2008), 앞의 글, 142쪽.

52 『高麗史』 卷134, 「列傳」 47, 辛禡 2 禡王 5年 3月.

53 『高麗史』 卷134, 「列傳」 47, 辛禡 2 禡王 8年 4月.

주장하는 것도 실은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⁵⁴

2) 고려인들의 대원의식

13~14세기(한국사에서 흔히 '원 간섭기'라고 불리는 시기)에 고려인들은 몽골제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몽골제국 전체를 인식하고 있었을까? 그렇지 않으면 '대원(원)'으로 표현되는 중국 왕조로 인식하고 있었을까? 이 문제는 당시 고려인들의 자신이 속한 세계에 대한 인식과도 관련되고, 고려와 몽골(원) 관계에 대한 인식과도 관련된다.

우선, 국호인 '원'과 '몽골'에 대해서 『고려사』는 1271년(원종 12) 12월에 “몽골이 사신을 보내와 국호를 세워 대원이라 하였음을 알렸다”⁵⁵는 기사를 실었고, 그 이전까지는 몽골, 그 이후는 원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즉 대원(원)은 몽골을 대신하는 국호였고, 그것은 아마도 송·요·금을 잇는 중국 왕조로서 인식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당시 고려인들은, 적어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한에서는, 몽골=원을 중국 왕조로 인식하였다.⁵⁶ 전쟁 초기인 1232년(고종 19)에 강화천도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유승단(俞升旦)이,

54 모리히라 마사히코는 고려의 몽골(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各種 物資의 進獻·供出’로 묶어 이른바 ‘六事’의 輸糧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였다(森平雅彦(2008), 앞의 글, 142쪽). 그러나 이것은 성격이 다른 것이다. ‘육사’의 輸糧은 몽골의 전통에 따른 물자의 수탈이고, 공물은 책봉의 반대급부로서 조공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이다.

55 『高麗史』 卷27, 「世家」 27, 元宗 12年 12月 己亥 “蒙古遣使告建國號曰大元.”

56 이에 대해서는 채웅석(2003), 「원간섭기 성리학자들의 화이관과 국가관」, 『역사와 현실』 49 참조.

작은 것으로써 큰 것을 섬기는 것은 이치에 맞는 일이다(以小事大理也). 예로써 섬기고 믿음으로써 사귀다면 저들 역시 무슨 명분으로 매번 우리를 괴롭히겠는가. 성곽을 포기하고 종사를 버리며 섬에 숨어 구차하게 세월만 천연하여 변방의 백성들로 하여금 짊어지는 모두 칼에 맞아 죽고 노약자는 끌려가 노예나 포로가 되게 하는 것은 국가의 長計가 아니다.⁵⁷

라고 한 데는 몽골을 사대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나타나 있다. 몽골=원을 중국 왕조로 인식한 대표적인 사례는 이승휴의 『제왕운기』이다. 『제왕운기』는 반고부터 원까지 ‘중조(中朝)’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삼황오제부터 진-한-위-진-송-제-양-진-수-당-송-금을 거쳐 ‘아황(我皇)’, 즉 원으로 이어지는 정통의 체계를 세웠다.⁵⁸ 또 원에 대해서는,

明昌 중에 天兵이 일어나니 다투어 어찌하리.
 汝水에 煙塵 잠기고 空鼎이 끓으니
 오로지 우리 上國 大元이 일어나서
 그 많은 백성들을 노래케 하였으니
 聖德의 높고 넓음 어찌 다 이르리오.
 우리 임금 같은 德望 널리널리 미쳐 있어
 세상의 모든 나라 使臣을 보내오고
 中華의 넓은 천지 모두가 執贄하다.
 土地는 광대하며 人民은 많으니
 開闢한 이래로 이런 나라 처음이라.

라고 하여 ‘상국(上國) 대원(大元)’의 영역이 광대하고 인구가 많은 것을 찬

57 『高麗史節要』卷16, 高宗 19年 6月.

58 『帝王韻紀』卷上, 正統相傳訟, “正統相傳奉我皇.”

탄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이승휴보다 한 세대 뒤에 안축(安軸)이 “지금 우리 성 조는 하늘에 따르고 민의에 순응하여 큰 기업을 세웠다. 온 천지에 굴복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 토지의 크기가 예전에 비할 바가 없다”고 한 것이나,⁵⁹ 이제현(李齊賢)이 “성원(聖元)의 덕우(德友)가 건곤(乾坤)과 같아 사해(四海)가 모두 번국(蕃國)이 되었다”고 한 것에서⁶⁰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광대한 영역이 몽골제국 전체의 영역인지, 원의 영역인지는 달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만 보면 유라시아 대륙에 걸친 몽골 제국 영토 자체가 광대함을 이르는 것 같지만 이곡(利穀)이,

당이 쇠퇴하자 오대가 크게 혼란하였고 요·금과 송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전쟁이 그치지 않았으며 백성이 극도로 도탄에 빠졌다. 하늘이 경사스런 운수를 열어 성인이 계속해서 나고 이름난 신하들이 무리로 나와서 천하를 통일하고 여러 사람들의 뜻을 정하였으며, 文軌를 같게 하고 풍속을 고쳤다. 『周易』에 말하기를, ‘크도다, 乾元이여. 만물이 의지해서 시작된다’고 하였는데, 皇元이 그러한 것이다.⁶¹

라고 한 것을 보면 원이 당 이후 분열된 천하, 즉 중국을 통일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이승휴 이후 고려의 성리학자들에게 원은 중국을 통일한 왕조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1310년(충선왕 2) 원 무종의 제서에서 “짐이 보건대, 지금 천하에서 백성과 사직이 있어 왕 노릇을 하는 것은 오직 삼한(三韓)뿐이다”⁶²

59 『謹齋集』 元朝泰定甲子制科策.

60 『益齋亂藁』 卷3.

61 『稼亭集』 卷3, 趙貞肅公祠堂記.

62 『高麗史』 卷33, 「世家」 33, 忠宣王 2年 7月 乙未 “朕觀今天下有民社而王者惟

라고 한 대목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 김호동은 무종이 몽골제국의 대칸으로서 고려국왕에게 보낸 것이고, 여기 나타난 천하는 몽골제국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위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려의 ‘속국(屬國)’ 지위를 대몽골 올루스 전체에 대한 관계라고 하였던 것이고, 몽골 지배층이 여·몽 양국 관계를 중국적인 사대관계가 아니라 몽골적인 속국 관계로 파악했다고 설명하게 되었던 것이다.⁶³

하지만 위 제서가 고려에 전해진 배경을 살펴보면 지극히 중국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충선왕이 선왕인 충렬왕의 시호를 원에 요청하자 원이 왕의 3대를 추증하는 제서를 보내왔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 『고려사』에서는,

처음에 우리나라가 비록 宋·遼·金の 正朔을 사용하였지만 역대 왕의 시호는 모두 宗이라 하였다. 원에 사대한 이래 명분이 더욱 엄해져 옛날 한의 제후가 모두 한으로부터 시호를 얻었으므로 왕이 표를 올려 上昇王의 尊號를 요청하고, 또 高·元 2왕의 시호를 追敍할 것을 요청하니 조서를 내려 따랐다.⁶⁴

라고 하여, 중국 왕조부터 정사를 받는 제후국으로서의 명분을 엄하게 한 결과로 평가하였다. 이 제서의 존재 자체가 중국적인 천자-제후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제서에서 언급한 천하 역시 중국적 천하, 즉 몽골제국이 아닌 원(카안 올루스)을 중심으로 하는 천하로 보는 것이 옳지

是三韓.”

63 김호동(2007), 앞의 책, 116쪽.

64 『高麗史』卷33, 「世家」33, 忠宣王 2年 7月 乙未.

않을까 한다.⁶⁵

『고려사』나 『원사』 등 한문 사료에는 어김없이 양국 관계를 책봉-조공 관계로 기록하고 있고, 당시 고려인들의 저술에는 몽골제국을 중국 왕조로 간주하고, 양국 관계를 사대관계로 인식하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인다. 고려를 ‘동번(東蕃)’ 또는 ‘번병(蕃屏)’ ‘번직(蕃職)’ 등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고, 충렬왕 때 고려가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우리나라는 원래 조상 때부터 원나라를 臣事하였으니 그 유래가 오래 되었다. 우리 父王은 天庭에 두 번 朝觀하였는데, 그 때마다 황제의 칭찬을 받아 국가를 安保하고 侯度를 각별히 하였으며, 내가 세자가 되었을 때 父王을 이어 親朝하니 황제가 특별히 총애를 내려 공주와의 결혼을 허락하고 부마로 삼았다. 宗器를 승습하여 국호를 잃지 아니하고 君臣, 사직과 예악, 文物, 衣冠, 名分 등을 일체 이전대로 하게 하여 백성들이 안도하고 業을 즐기고 生을 편안히 하게 된 것은 실로 정성을 다하여 사대한 까닭이다.⁶⁶

라고 한 데서도 원에 사대하여 국가를 보전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나타나 있다. 또 이것은 고려인들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몽골(원)에서 보내온 국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찾아진다. 즉 몽골(원)에서도 고려를 ‘동번(東蕃)’ 등으로 표현하고,⁶⁷ 고려국왕을 ‘일국지왕(一國之主),’⁶⁸

65 김호동(2007), 앞의 책, 98쪽에서는 ‘동아시아의 안남(베트남), 중앙아시아의 위구르, 서아시아의 아르메니아, 유럽의 러시아 등도’ 고려와 같은 ‘속국’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武宗의 制書에서 “…… 오직 三韓뿐이다”라고 한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制書의 ‘天下’는 원(카안 울루스)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적 천하로 보아야 할 것이다.

66 『高麗史』卷30, 「世家」30, 忠烈王 18年 10月 庚寅.

67 『高麗史』卷26, 「世家」26, 元宗 8年 8月, “遣起居舍人潘阜齋蒙古書及國書如

일국신민지주(一國臣民之主),⁶⁹ 외국지주(外國之主)⁷⁰ 등으로 표현하여 고려가 몽골제국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국가라는 점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한편, ‘원 간섭기’에는 몽골(원)의 요구에 따라 고려왕실 관련 용어들이 격하되고 관제가 개편되었다. 즉 1275년(충렬왕 1)에 관칭 이름이 원과 같은 것을 개칭하였고,⁷¹ 다음 해에는 ‘선지(宣旨)’·‘짐(朕)’·‘사(敕)’·‘주(奏)’ 등을 각각 ‘왕지(王旨)’·‘고(孤)’·‘유(有)’·‘정(呈)’으로 고쳤다.⁷² 이러한 개편은 고려의 관제가 참월하다는 원의 불만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원의 내정 간섭으로만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왜냐하면 관제의 참월함을 문제삼은 것 자체가 천자와 제후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고려인들은 원의 요구에 따른 관제 개편을 제후의 도리로서 합리화하였던 것이다.

13~14세기에는 고려와 원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였고, 특히 고려의 학자나 관리 중에는 원에서 수학하거나 관리 생활을 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들은 당연히 몽골(원)이 가지고 있는 비중국적 요소를 목격하거나 경험하였을 것이지만, 어느 누구도

日本 蒙古書曰 …… 高麗朕之東藩也 ……”；卷30, 忠烈王 19年 3月 乙酉, “帝勅曰 卿世守王爵 選向我家 載揚藩屏之功 宜示褒嘉之寵 ……”

68 『高麗史』卷26, 「世家」26, 元宗 11年 12月 乙卯, “世子諶與蒙古斷事官不花孟祺等來 王出迎于郊 詔曰 …… 卿國雖小 卿亦是一國之王 黜陟威福 或是或非 當自己出 ……”

69 『高麗史』卷27, 「世家」27, 元宗 12年 7月 丙申, “蒙古遣斷事官只必哥等六人來 詔曰 …… 卿一國臣民之主 敷奏不實可乎 爾後慎勿如此.”

70 『高麗史節要』卷19, 忠烈王 元年 5月, “王聞詔使來 出迎西門外 王既尙主 雖詔使未嘗出城而迎 舌人金台如元 省官語之曰 駙馬王不迎詔使不爲無例 然王是外國之主也 詔書至不可不迎 至是始迎之.”

71 『高麗史』卷28, 「世家」28, 忠烈王 元年 10月 庚戌；10月 壬戌.

72 『高麗史』卷28, 「世家」28, 忠烈王 2年 3月 甲申.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채용석은 당시 고려인들이 ‘화이론적 천하관에 바탕을 두고 원을 중화로 인정했기 때문에 …… 몽골 제국의 비중화적 요소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다’고 하였지만,⁷³ 과연 그것이 특정한 인식 때문이었을까? 그보다는 고려와 원 사이에 당시 고려인들의 그러한 인식을 가능하게 한 근거, 즉 책봉-조공 관계의 요소가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3. 책봉-조공관계 이외의 요소

1) 고려국왕의 위상 : 친조, 왕실혼인, 정동행성

원 간섭기에는 고려의 국왕이 직접 원에 다녀오는 일이 자주 있었고, 이러한 친조(親朝)는 한중관계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이 때문에 고려와 원의 관계를 책봉-조공 관계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아 책봉-조공체제(朝覲體制)라고 불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⁷⁴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친조가 제후로서 해야 할 일 또는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논리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친조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책봉-조공 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왕의 친조는 고려 초 거란의 침입 때 철근조건으로 제기된 적이 있었고, 고려와 몽골의 전쟁 때에도 몽골 측에서 요구해왔지만,⁷⁵ 실현

73 채용석(2003), 앞의 글, 108쪽.

74 沈載錫(2002), 앞의 책, 14쪽.

75 『高麗史』卷23, 「世家」23, 高宗 26年 4月, “蒙古遣甫可阿叱等二十人齋詔來論親朝 王迎詔于梯浦館 是月蒙兵還”; 8月, “蒙古遣甫加波下等一百三十七人來更徵王親朝”; 卷24, 「世家」24, 高宗 38年 10月 戊申, “王出迎于梯浦 皇帝新

된 적은 없었다. 전쟁 중에 고려에서는 국왕의 친조를 극구 거부하고 태자가 대신 입조하는 조건으로 강화를 성립시켰다. 그런데 강화가 성립된 뒤인 1264년(원종 5) 5월에 몽골에서는 국왕의 친조를 요구해왔고, 그러한 요구의 명분은 ‘조근(朝覲)이 제후의 대전(大典)’이라는 것이었다.⁷⁶ 이에 대하여 고려에서는 “왕이 조회하면 화친이 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틈이 생길 것이다”라는 이장용(李藏用)의 주장에 따라 친조하기로 결정하고,⁷⁷ 같은 해 8월 국왕 친조를 실행하였다.⁷⁸ 전례가 없음에도 이때 친조를 실행한 데에는 당시 고려 국내에서 국왕이 무신정권과 대결하면서 몽골의 후원에 의지하고 있었던 점과, 가까이서 원종이 태자로서 입조하여 쿠빌라이를 만났던 경험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원종은 1269년(원종 10)에도 몽골에 다녀왔다. 이때는 임연에 의해 폐위되었다가 몽골의 도움으로 복위한 뒤 그간의 사정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원종은 몽골에 가서 왕실 혼인과 군대를 요청하였고, 몽골군을 앞세우고 돌아와 무신정권을 무너뜨리고 왕정을 복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부터 친조는 고려 왕실과 몽골 사이에 직접적인 외교통로가 되었고, 몽골이 고려국왕을 견제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고려 국왕이 정치현안을 직접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원종에 이어 즉위한 충렬왕은 친조를 통해 원의 황제를 직접 만나는 기회를 이용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예를 들어 1278년(충렬왕 4)에는 충렬왕이 친조하여, 다루가치와 원군을 소환하고 호구조사를 고려에서 독자적으

即位 詔國王親朝 及令還舊京.”

76 『高麗史』 卷26, 「世家」 26, 元宗 5年 5月 辛巳.

77 『高麗史節要』 卷18, 元宗 5年 5月.

78 『高麗史』 卷26, 「世家」 26, 元宗 5年 8月 癸丑.

로 실시할 것을 허락받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고, 그에 대해서는 “이 행차에서 무릇 국가의 소요사(騷擾事)를 모두 아뢰어 없애니 국인(國人)이 덕을 칭송하고 감읍하였다”⁷⁹는 당시의 평가가 있었다. 이와 같이 ‘원 간섭기’에는 국왕의 친조를 대원외교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친조를 “몽골의 요구에 따라 국왕이 수시로 출두하는 것과 같은 관계”라고 본 모리히라 마사히코의 견해는⁸⁰ 친조의 일면만을 강조한 것이라고 하겠다.

고려-몽골(원) 관계에서 고려국왕의 위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양국 간의 왕실혼인을 통해 고려국왕이 몽골(원)의 부마로서 존재하였다는 점이다. 고려국왕이 부마를 겸한다는 사실은 고려국왕의 위상만이 아니라 몽골제국 안에서 고려의 위상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다.

고려와 몽골(원)의 왕실혼인에 대해서는 주로 혼인의 배경과 과정, 혼인의 정치적 의미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왕실혼인을 통해 고려의 위상을 밝히려는 시도가 있었다. 고려를 몽골의 부마에게 수여된 투하령(投下領)으로 보는 견해나(森平雅彦, ‘부마와 국왕의 이중적 지위’로부터 고려를 국왕이 통치하는 속국(屬國)이자 부마의 속령(屬領)으로 보는 견해(김호동)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최근의 논의들이 부마를 겸하고 있는 고려국왕의 존재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양국 간 최초의 왕실 혼인은 1274년(원종 15) 고려의 세자(충렬왕)와 쿠빌라이칸의 딸 사이에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충선·충숙·충혜·공민

79 『高麗史』卷28, 「世家」28, 忠烈王 4年 9月 乙巳.

80 森平雅彦(2008), 앞의 글, 139쪽.

왕과 심왕 고가 몽골(원) 공주와 결혼하였다. 충목왕과 충정왕은 어린 나이에 즉위했다가 훗날 이전에 죽었으므로, ‘원 간섭기’에 고려국왕들은 모두 몽골(원)의 부마가 되었던 셈이다. 그런데 충렬왕 이외에는 결혼 대상자가 누가 되는가가 문제되었을 뿐이고 혼인 자체에 대한 논란은 없었다. 따라서 충렬왕의 결혼은 고려 왕실이 몽골 황실의 통혼권에 편입되어 대대로 혼인하는 것을 보장받는 것을 뜻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충렬왕의 혼인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서 먼저 제안하였는지, 또 언제부터 거론되었는지가 사료에서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몽골에서 그 혼인을 수용한 시점이다. 1270년(원종 11) 2월 원종이 몽골에 친조하여 청혼했을 때 “짐의 친자식은 모두 이미 시집을 갔으니, 형제들과 의논하여 마땅히 허락하겠다”고 하여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⁸¹ 쿠빌라이 칸이 1년 뒤인 1271년(원종 12)에 혼인을 허락한 것은⁸² 무슨 이유에서일까? 그 1년 여 사이에 고려에서는 무신정권이 완전히 무너지고 개경환도가 이루어졌으며, 고려와 몽골 연합군이 진도의 삼별초를 진압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정세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 고려에서 반몽골 세력의 약화와 왕권의 회복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결과로서 고려 왕실이 비로소 몽골 황실과 혼인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혼인의 대전제는 고려에서 왕권의 회복이며, 왕실혼인을 통해 고려국왕이 부마를 겸하게 되

81 『高麗史』 卷26, 「世家」 26, 元宗 11年 2月 甲戌.

82 『高麗史』 卷27, 「世家」 27, 元宗 12年 10月 辛丑, “李昌慶還自蒙古 帝許世子婚.”

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종에 이어 즉위한 충렬왕은 고려국왕과 부마를 겸하였다. 두 가지 지위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는 당시에든 문제가 되었는데, 먼저 의전에서 논란이 일어났다. 즉 충렬왕이 즉위한 직후 연회 자리에서 몽골의 사신은 충렬왕을 부마로 대우했고, 다루가치는 고려국왕으로 대우하고자 하여 의견 충돌이 있었다. 이때는 몽골 사신의 주장에 따라 부마로 대우받았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두 지위 중 부마가 우선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의전은 여러 지위 가운데 가장 높은 쪽의 것을 따르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려국왕과 부마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에 대한 몽골 측의 판단은 1275년(충렬왕 1) 충렬왕이 몽골 사신을 나와서 맞이하는 문제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다음의 자료가 그것이다.

왕이 詔使가 온다는 말을 듣고 西門 밖에 나가 맞이하였다. 왕이 공주와 결혼하였으므로 비록 詔使가 와도 성을 나가 맞이한 적이 없었는데, 舌人 金台가 원에 갔을 때 중서성 관리가 말하기를 “駙馬王이 詔使를 맞이하지 않는 예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왕은 外國之主이니 詔書가 이르면 맞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였다. 이때 이르러 처음으로 맞이하였다.⁸³

몽골(원)의 중서성관은 충렬왕을 ‘부마왕’이기에 앞서 ‘외국지주(外國之主)’라고 판단하였고, 고려가 몽골(원)에서 볼 때 ‘외국(外國)’이라는 견해도 함께 피력하였다. 이후 충렬왕은 몽골로부터 부마국왕인(駙馬國王印)을

83 『高麗史節要』卷19, 忠烈王 元年 5月.

수여받았지만, 이것을 가지고 “부마의 지위와 고려왕의 지위가 일체화된 부마고려국왕이란 왕호가 성립하였다”거나, “고려왕의 격식은 원조의 부마로서 실체화되고 있었다”고⁸⁴ 보기는 어렵다. 고려국왕의 지위가 여전히 건재하며, 부마와 고려국왕 가운데 후자가 우선하는 지위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려를 몽골의 부마에게 수여된 투하(投下)로 보는 견해도, 그 논리 속에서 고려국왕의 지위를 설명할 수 없는 한 재고되어야 한다.

고려와 몽골(원)의 관계를 설명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정동행성의 존재이다. 행성(행중서성)은 원의 지방행정기관으로 모두 11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⁸⁵ 그중 하나인 정동행성이 고려에 설치되었다. 하지만 정동행성이 다른 행성들과는 달리 지방행정기관으로 기능하지 않았음은 일찍이 고병익이 충분히 논증한 바 있다.⁸⁶ 다만, 고려-몽골(원) 관계에 대한 최근의 논의와 관련하여 정동행성의 설치 목적과 기능에 대해 몇 가지 살필 것이 있다.

먼저 정동행성의 설치 목적이다. 정동행성은 일본 침략을 위해 설치한 것이지만, 일본 침략과 무관하게 오랫동안 존속하였다. 정동행성이 군사기관의 성격에서 벗어나는 것은 1287년(충렬왕 13) 경으로 알려져 있는데,⁸⁷ 그 무렵인 1283년부터 원에서 행성이 지방의 최고행정기관으로 변모하기 시작하여 1287년에 10개 행성체제가 완성되었던 점이 주목

84 森平雅彦(1998b), 앞의 글.

85 『元史』 卷91, 「志」 41上, 百官 7 行中書省.

86 高柄翊(1961·1962), 앞의 글.

87 高柄翊(1961), 앞의 글 ; 張東翼(1994), 『高麗後期外交史研究』, 一潮閣 에서도 1287年 이후의 정동행성을 後期征東行省이라고 하여 그 이전과 구분하였다.

된다.⁸⁸ 즉 1287년 정동행성 설치는 원의 지방제도 정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었다. 이때의 정동행성을 형식적인 기구이며, 고려-원 간의 연락 기구라고 본 고병익의 견해는 경청할 만한데,⁸⁹ 이후 양국 간의 행정 절차가 행성의 예에 따르도록 되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1293년(충렬왕 19)에 정동행성이 추밀원의 차문(咨文)을 고려의 도첨의사사에 전달한 것이⁹⁰ 그러한 기능을 잘 보여준다.

다음으로는 정동행성의 ‘증치(增置)’ 문제이다. 『원사』에 나오는 1299년(충렬왕 25)와 1308년(충렬왕 34) 정동행성의 ‘복립(復立)’이 실은 평장정사 등 행성고위관의 파견을 뜻하며, 증치 기간도 매우 짧았음은 고병익에 의해 이미 밝혀져 있다.⁹¹ 그런데 근래 이 ‘증치’가 1299년부터 1312년(충선왕 4)까지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⁹² 하지만 정동행성의 ‘증치’에 대해서는 고려에서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그에 따라 곧 행성관이 소환되었던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1299년 정동행성의 증치에 대하여 고려에서는,

이 달에 행성을 증치하였으므로 표를 올려 진정하기를, “小邦이 대를 이어 勤王하는 공이 무릇 80여 년으로 해마다 職貢을 닦았으며, 신이 일찍이 세자로서 입시하였을 때 帝室과 혼인할 수 있게 되어 장인

88 韓儒林 主編(1986), 『元朝史』(上), 人民出版社, 301쪽.

89 高柄翊(1961), 앞의 글.

90 『高麗史』卷30, 「世家」30, 忠烈王 19年 7月 甲戌.

91 高柄翊(1962), 앞의 글.

92 張東翼(1994), 앞의 책, 42~47쪽. 이 책에서는 “(行省官增置期에) 수차례에 걸쳐 임명·파견된 정동성관의 활동이 몇 예를 제외하고는 분명치 못한데, 이는 …… 실제 파견되지 않았거나 그 임명이 당시 많이 유행했던 搖授職이었는지도 분명히 알 수는 없다”고 하여 조심스럽게 서술하였다.

과 사위가 되었으니 지극한 은혜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소국으로 하여금 祖風을 바꾸지 않고 길이 侯職을 닦도록 해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라고 하였다.⁹³

라 하여 ‘조풍(祖風)’의 유지를 명분으로 하여 반대하였고, 이에 대해 몽골(원)에서는 “행성관리를 더 설치한 것은 그 국속을 고치려 한 것이 아니며, 항구적으로 두려는 것도 아니었다”고 답변하고⁹⁴ 곧 활리길시를 소환하였다.⁹⁵ 즉 행성의 ‘증치’가 고려와 몽골 사이에 합의된(또는 몽골이 고려에 약속한) ‘불개토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었고, 따라서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2) ‘육사’의 문제

고려와 몽골의 관계를 책봉-조공 관계로 보기 어렵게 하는 또 한 가지 근거가 몽골이 고려에 요구한 ‘육사(六事)’이다. ‘육사’란 ‘납질(納質)’·‘조군(助軍)’·‘수량(輸糧)’·‘설역(設驛)’·‘공호수적(供戶數籍)’·‘치다루가치(置達魯花赤)’ 등 6가지 요구사항을 가리킨다. 최근 모리히라 마사히코는 몽골이 고려와 베트남(安南)에 각각 요구한 ‘육사’의 항목에 차이가 있는 점을 들어 반드시 여섯 가지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⁹⁶ 이와 관련해서는 ‘육사’의 항목들이 고정불변이라기보다는 상황과 대상에

93 『高麗史』卷31, 「世家」31, 忠烈王 25年 10月.

94 『高麗史』卷31, 「世家」31, 忠烈王 26年 11月.

95 『高麗史』卷32, 「世家」32, 忠烈王 27年 3月.

96 森平雅彦(2008), 앞의 글, 139쪽.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는 김호동의 견해가 참고할 만하다.⁹⁷

몽골이 고려에 ‘육사’를 처음 요구한 것은 1262년(원종 3) 12월의 일이었다. 이때 몽골은 반력(頒曆)과 동시에 조서를 보내와,

무릇 멀고 가까이에 새로 귀부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우리 조종이 이미 정한 규정이 있으니, 반드시 인질을 보내고(納質), 백성들의 호적을 작성하며(籍民編), 郵驛을 설치하고(置郵), 군사를 내고(出師旅), 군량을 운반하고(轉輸糧餉), 군비를 보조하는 것(補助軍儲)이다.⁹⁸

라고 하여 뒷날 ‘육사’라 불리는 항목들 가운데 ‘치다루가치’를 제외한 다섯 가지를 요구하였다. 다루가치 설치가 빠진 것은 불과 2년 전에 고려의 요청에 따라 기존의 다루가치를 모두 소환하였기 때문일 것이다.⁹⁹ 또 ‘납질’은 이미 실행된 것으로 간주하였는데, 이는 전쟁 중이던 1241년(고종 28)에 영녕공 준을 몽골에 보낸 것을 가리킨다.¹⁰⁰

‘육사’의 요구는 조서에서도 밝혔듯이 몽골 전통에 따른 것이었고, 중국적인 책봉-조공 관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다. 이에 고려에서는 즉답을 하지 않았고, 몽골에서는 다시 사신을 보내와 그 이행을 촉구하였는데, 그때는 ‘치우(置郵)’, ‘적민(籍民)’, ‘출사(出師)’, ‘수량(輸糧)’ 등

97 김호동(2007), 앞의 책, 94쪽.

98 『高麗史』卷25, 「世家」25, 元宗 3年 12月 乙卯.

99 『元高麗紀事』世祖 中統 元年(元宗 元年) 6月, “復降詔諭僕日 卿表請附奏六事 一皆允俞 …… 元設達魯花赤一行人等 俱勅西還.”

100 『高麗史』卷23, 「世家」23, 高宗 28年 4月, “以族子永寧公綽稱爲子 率衣冠子弟十人入蒙古爲秃魯花 遣樞密院使崔璘, 將軍金寶鼎, 左司諫金謙伴行 秃魯花華言質子也.”

네 가지를 지목하였다.¹⁰¹ 그러자 고려에서는 ‘치우’는 이미 북계 지역에 역을 설치했으며, 나머지 3가지는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고,¹⁰² 몽골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¹⁰³ 일단 마무리되었다.

몽골이 ‘육사’를 다시 요구해온 것은 1268년(원종 9년) 2월이었다. 이때 몽골은 ‘출군조전(出軍助戰)’과 ‘전량(轉糧)’, ‘점수민호(點數民戶)’ 외에 ‘청다루가치(請達魯花赤)’를 추가하여 4가지를 요구하였다.¹⁰⁴ 그리고 다음 달에는 다시 내속지국(內屬之國)의 의무로서 ‘납질(納質)’, ‘조군(助軍)’, ‘수량(輸糧)’, ‘설역(設驛)’, ‘공호수적(供戶數籍)’, ‘치다루가치[置達魯花赤]’ 등 ‘육사’를 명시하고, ‘납질’과 ‘설역’은 이미 시행되었으니 나머지 4가지를 이행할 것을 재촉했다.¹⁰⁵ 바로 전 해에 몽골은 베트남에도 ‘군장친조(君長親朝)’, ‘자제입질(子弟入質)’, ‘편민수(編民數)’, ‘출군역(出軍役)’, ‘수납세부(輸納稅賦)’, ‘치다루가치[置達魯花赤]’ 등 ‘육사’를 요구했는데,¹⁰⁶ 구체적인 항목은 조금 다르지만 책봉-조공의 형식을 취하고 있던 고려와 안남에 대하여 몽골 전통에 따른 통치방식을 적용하려 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고려는 ‘조군’과 ‘수량’은 즉시 이행할 것이며, ‘치다루가치’와 ‘공호수적’은 개경환도 이후로 미룰 것을 요청하였다.¹⁰⁷ 즉 고려는 ‘육사’에 대하여 일괄수용하거나 거부하기보다 경중을 따져 개별적으로 협상을 벌였던 것이다.

101 『高麗史』卷25, 「世家」25, 元宗 4年 3月 甲午, “高訥還自蒙古言 中書省云 帝怒爾國前降詔書內置郵, 籍民, 出師, 輸糧等事 置而不奏 故不賜回詔.”

102 『高麗史』卷25, 「世家」25, 元宗 4年 4月 甲寅.

103 『高麗史』卷25, 「世家」25, 元宗 4年 8月 甲子.

104 『高麗史』卷26, 「世家」26, 元宗 9年 2月 壬寅.

105 『高麗史』卷26, 「世家」26, 元宗 9年 3月 壬申.

106 『元史』卷209, 「列傳」96, 外夷2 安南傳 世祖 至元 4年 9月.

107 『高麗史』卷26, 「世家」26, 元宗 9年 4月.

이때 몽골의 ‘육사’ 요구는 고려의 무신정권을 압박하여 결과적으로 임연의 원종 폐위를 초래하였고, 이때부터 국왕과 무신정권의 대립이 겹으로 드러나 결국 원종이 몽골의 후원을 받아 무신정권을 무너뜨리고 왕정을 회복하였으며, 곧 개경으로 환도하였다. 그렇다면 그 후에 ‘육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개경 환도가 이루어진 직후인 1271년(원종 12)에 세자와 의관윤주(衣冠胤胄) 20명을 몽골에 보냈다.¹⁰⁸ 이는 인질이 늙거나 죽으면 새로 보내 대신하거나 보충하는 예에 따른 것으로,¹⁰⁹ 특히 세자와 몽골(원) 공주의 혼인이 논의 중이었으므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다루가치를 두는 문제는, 1270년(원종 11)에 친조했던 원종이 몽골군을 앞세워 귀국할 때 원종의 요청에 따라 다루가치가 파견되었는데,¹¹⁰ 무신정권이 종식된 뒤에도 돌아가지 않음으로써 자연히 설치된 셈이 되었다. 그 후 몽골은 1272년(원종 13)에 이익(李益)을, 1274년(충렬왕 즉위)에 흑적(黑的)을 다루가치로 파견하였으며,¹¹¹ 그 밖에 부(副)다루가치와 다루가치경력(經歷)을 따로 두었다.¹¹² 이는 다루가치가 고려에 상주하는 기관으로 존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시 다루가치는 고려의 노비법

108 『高麗史』 卷26, 「世家」 26, 元宗 12年 6月 己亥.

109 『高麗史』 卷26, 「世家」 26, 元宗 9年 3月 壬申, “蒙古遣北京路總管兼大定府尹于也孫脫, 禮部郎中孟甲等來 詔曰 …… 且納質之事 惟我太宗皇帝朝 王綽等已入質 代老補亡 固自有例 ……”.

110 『高麗史』 卷26, 「世家」 26, 元宗 11年 2月 庚辰, “王上表 …… 又請達魯花赤偕往本國”; 11年 5月 丙午, “蒙古以脫朶兒爲我國達魯花赤.”

111 『高麗史』 卷27, 「世家」 27, 元宗 13年 4月 癸卯; 卷28, 「世家」 28, 忠烈王 卽位年 12月 甲寅.

112 『高麗史』 卷28, 「世家」 28, 忠烈王 元年 12月 “是月 元遣中書員外郎石抹天衢爲副達魯花赤”; 2년 7월 “遣中贊金方慶, 直史館文璉如元 賀聖節 王上書中書省 一曰 達魯花赤經歷張國綱明敏清平 百姓德之 瓜期已滿 乞令留任.”

개정을 시도하는가 하면,¹¹³ 고려인들의 무기 소지를 금지하고,¹¹⁴ 몽골 제도에 따라 순마소(巡馬所)를 설치하고 야간 통행을 금지하는 등¹¹⁵ 고려의 내정에 간섭하였다. 그런데 이때 다루가치는 고려에 파견된 몽골의 유일한 행정기관으로 몽골의 요구를 고려에 전달하고 대항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사실은 1277년(충렬왕 3)에 다루가치가 추밀원의 첩(牒)을 받고 고려인의 무기 소지를 금지한 것이나,¹¹⁶ 이듬해 박항(朴恒)이 “조지(朝旨)로써 소방(小邦)에 명할 것이 있으면 모두 원수부(元帥府)와 다루가치에게 내려진다”고 말한 대목에서¹¹⁷ 확인할 수 있다.

‘조군’과 ‘수량’은 이미 1268년(원종 9)에 시행하기로 약속한 바 있었다. 다만, 이 두 가지는 늘 있는 일은 아니었으므로 몽골에서 요구할 때 부응하는 형태로 이행되었는데, 1270년(원종 11)에 몽골에서 남송과 일본 공략에 필요한 병마와 군함·군량을 준비할 것을 요구해온 뒤¹¹⁸ 일본침략이 실현됨으로써 몽골의 요구대로 인력과 물자를 부담하게 되었다. 또한 ‘설역’은 1263년(원종 4)에 이미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¹¹⁹

113 『高麗史』卷31, 「世家」31, 忠烈王 26年 10月, “是月 闕里吉思欲革本國奴婢之法 王上表曰 …… 故於至元七年(元宗 11年) 小邦去水就陸之時 先帝遣達魯花赤以治之 于時因人告狀 欲變此法 ……”; 11月 “是月 …… 又移書中書省曰 …… 昨於至元八年(元宗 12年) 有本國達魯花赤衙門 欲改本俗體例.”

114 『高麗史』卷28, 「世家」28, 忠烈王 2年 11月 丙辰, “達魯花赤張榜 國人軍士外禁持弓箭兵器.”

115 『高麗史』卷28, 「世家」28, 忠烈王 4年 7月, “時達魯花赤依蒙古制 置巡馬所 每夜巡行禁人夜作.”

116 『高麗史』卷28, 「世家」28, 忠烈王 3年 正月 甲寅, “元樞密院牒達魯花赤 禁國人持弓矢 蓋信匿名書也.”

117 『高麗史』卷28, 「世家」28, 忠烈王 4年 7月 乙酉, “王在元 …… (朴)恒曰 …… 且朝旨有以命小邦者 皆下帥府及達魯花赤 …….”

118 『高麗史』卷26, 「世家」26, 元宗 11年 12月 乙卯.

119 1272年(원종 13) 正月에 程驛蘇復別監을 각 도에 파견한 것이(『高麗史』卷

‘육사’ 가운데 ‘공호수적’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조항은 원종 복위와 개경 환도를 계기로 모두 이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호수적’, 즉 고려의 호구를 조사하여 몽골에 보고하는 일은 그 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1269년(원종 10)에 고려에서 민호를 계점(計點)하여 공부(貢賦)를 다시 정하는 작업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¹²⁰ 이것이 몽골이 요구한 ‘공호수적’과 관련된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¹²¹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호구조사의 결과가 끝내 몽골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육사’ 가운데 유일하게 ‘공호수적’은 이행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호구의 파악은 징세 또는 각종 부담의 근거가 될 것이므로 고려 측에서 극구 거부했던 것이지만, 그것이 명시적으로 폐기된 것은 1278년(충렬왕 4)의 일이므로 그때까지는 고려 측에서 시일을 미루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당시 고려는 호구조사 결과를 몽골에 보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몽골이 고려의 호구 실태를 파악하는 것조차 막으려 하였다. 다음의 사례가 그러한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嘉林縣 사람들이 다루가치를 찾아와 말하기를 “현의 촌락들이 元成殿과 貞和院, 將軍房, 忽赤, 巡軍에 分屬되고 오로지 金所 한 촌만이 남아 있는데, 지금 鷹坊 迷刺里가 또 빼앗아가니 저희들이 어떻게 賦役을 내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다루가치가 말하기를 “이같은 것들이 많다. 너희 현만 그런 것이 아니다”고 하고는 장차 각 도를 巡審하여 그 폐를 줄이고자 왕에게 청하여 관리를 보내 함께 가도록 하

27, 「世家」 27, 元宗 13年 正月) 혹시 이것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한다.

120 『高麗史』 卷79, 「志」 33, 食貨2 戶口 忠烈王 18年 10月.

121 박중진(2000), 『고려시기 재정운영과 조세제도』, 서울대학교출판부, 206쪽.

였다. 이에 총랑 金昞을 推考使로 삼았다. 재추들이 왕께 아뢰기를 “다루가치가 사람을 시켜 각 도를 巡審하여 그 실상을 모두 조정에 보고한다면 작은 일이 아닙니다. 籍民들을 돌려보내 本役으로 돌아가게 하십시오”라고 하니, 왕이 따랐다.¹²²

여기서 보듯이 당시 재추들이 우려한 것은 다루가치가 각 지방의 실상을 파악하여 몽골(원)에 보고하는 것이었고, 그 때문에 추고사의 파견이 정지되었던 것이다.

‘육사’ 가운데 호구조사의 보고만을 현안으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이행되었던 상황이 재정리된 것은 1278년(충렬왕 4) 충렬왕의 친조에서였다. 이 친조는 전 해에 일어난 김방경무고사건을 해명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친조 자체가 김방경이 무죄라는 쿠빌라이의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므로, 쿠빌라이와 충렬왕의 대화는 주로 고려-몽골(원) 관계를 재정리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 때 결정된 사항들은 대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어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왕이 말하기를 “원컨대 上께서 親信하는 韃靼 한 사람을 다루가치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어찌 꼭 다루가치이겠는가. 그대가 스스로 잘 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小邦도 上國法에 의하여 點戶를 하게 해 주십시오. 또 合浦의 鎭戍軍을 머물러 두어 왜구에 대비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어찌 꼭 머물러두게 하겠는가. 그대의 백성들에게 해가 없을 수 있겠는가. 그대는 스스로 그대 나라 사람들을 써서 진수할 수 있다. 왜구는 두려워할 것이 못된다. 점호는 스스로 하는 것이 가하다”라고

122 『高麗史節要』卷20, 忠烈王 4年 4月.

하였다.¹²³

여기에는 함포에 주둔하고 있던 몽골군을 철수시키는 것 외에 다루 가치를 두지 않을 것과 호구 조사를 고려에서 스스로 하도록 할 것 등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 가운데 뒤의 두 가지는 ‘육사’의 핵심 내용으로서 주목된다. 즉 위 사료에는 충렬왕이 몽골 사람을 다루 가치에 임명할 것과 ‘상국법’에 따라 점호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육사’ 가운데 ‘치다루가치’와 ‘공호수적’ 2가지를 폐지할 것을 요청했고, 쿠빌라이가 그것을 받아들여 원종 복위 후 오래 동안 현안으로 남아 있던 ‘육사’의 이행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이해된다.

위의 합의가 이루어진 직후인 이 해 9월에 다루가치가 몽골로 돌아갔고,¹²⁴ 이후로는 다시 파견되지 않았다. 이는 고려에 몽골(원)의 관리가 상주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각 도에 계점사(計點使)를 파견하였는데,¹²⁵ 이것은 고려 스스로 호구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약속에 따른 것으로, 그 결과를 몽골에 보고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호구조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것은 더 나아가 고려가 독자적인 재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하였는데, 이 사실은 뒷날 “고려 전량(錢糧)은 동국(東國)의 지용(支用)에만 쓰도록 했다”라든

123 『高麗史』卷28, 「世家」28, 忠烈王 4年 7月 戊戌, “王曰 願得上所親信韃靼一人 爲達魯花赤 帝曰 何必達魯花赤 汝自好爲之 王曰 小邦亦請依上國法點戶 又請留合浦鎮戍軍 以備倭寇 帝曰 何必留之 其能無害於汝民乎 汝可自用汝國人鎮戍 倭寇不足畏也 若點戶則可自爲之.”

124 『高麗史』卷28, 「世家」28, 忠烈王 4年 9月 丙戌, “達魯花赤經歷張國綱還元……”; 己丑, “達魯花赤石抹天衢還元…….”

125 『高麗史』卷28, 「世家」28, 忠烈王 4年 11月, “遣諸道計點使三司使 朱悅于慶尙, 國子祭酒權昞于全羅, 判少府事崔濡于忠淸, 殿中尹崔有侯于東界交州, 判事禹濬冲于西海.”

가,¹²⁶ 요수(姚遂)가 고려에 대하여 “부세를 거두면 모두 관할하는 경계 안에서만 쓰고 천부(天府)에 들이지 않았다”고 한 사료로써¹²⁷ 뒷받침된다.

‘치다루가치’와 ‘공호수적’을 제외한 ‘육사’의 나머지 조항들은 1278년 이후에도 그대로 이행되었다. 특히 ‘조군’과 ‘수량’은 장차 있을 일본 침략과 관련하여 오히려 강화되어 1281년(충렬왕 7) 2차 침략에서는 물론이고 1294년(충렬왕 20) 쿠빌라이의 죽음으로 몽골(원)이 일본 침략을 포기할 때까지 전쟁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제공하는 일은 고려의 부담으로 남게 되었다. 또 1287년(충렬왕 13)에 원에서 나얀(乃顔)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와, 1289년(충렬왕 15)에 쿠빌라이가 카이두(海都)를 공격할 때 조전군을 파견하였다.¹²⁸ 이러한 ‘조군’ 이외에도 원의 요구에 따라 군량을 보내는 등¹²⁹ ‘수량’의 부담도 계속 있었다.¹³⁰

1278년 이후 ‘납질’ 역시 강화되었다. 충렬왕이 친조를 마치고 귀국한 직후 투르각(秃魯花)을 새로 파견하였는데,¹³¹ 여기에는 왕자를 비롯하여 당시 고위 관직자의 자제들이 거의 모두 포함되었다. 이는 앞서 파견한 투르각을 원에서 의관자제(衣冠子弟)가 아니라 하여 돌려보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¹³² 시기적으로 기왕의 ‘육사’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126 『高麗史』卷32, 「世家」32, 忠烈王 29年 12月, “中書省移文 略曰 征東省欲將本國所貯兵糧 折支行省官吏俸 都省送戶部議 得高麗錢糧 止從東國支用.”

127 『牧庵集』卷3, 「高麗潘王詩序」, “征賦則 盡是所轄之境惟所用之 不入天府.”

128 『高麗史』卷30, 「世家」30, 忠烈王 13年 5月 壬寅; 6月 壬戌; 15年 7月 癸卯; 8月 壬戌.

129 『高麗史』卷30, 「世家」30, 忠烈王 14年 4月 庚午; 15年 3月 辛卯.

130 『高麗史』卷31, 「世家」31, 忠烈王 21年 3月 丁巳; 4月 己卯; 5月 癸酉.

131 『高麗史』卷29, 「世家」29, 忠烈王 5年 3月 丁巳.

132 『高麗史』卷28, 「世家」28, 忠烈王 2年 3月 癸丑, “元以前所進秃魯花謂非衣冠之胄 皆遣還.”

가 이루어지고, ‘치다루가치’와 ‘공호수적’ 조항이 폐기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즉 몽골이 ‘육사’ 가운데 핵심적인 두 가지를 양보하는 대신 ‘조군’과 ‘수량’, 그리고 ‘납질’의 조건을 강화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설역’도 시행되기는 하였지만, 몽골(원)의 대도(大都)와 고려의 개경을 연결하는 교통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고려의 기존 역로를 이용함으로써 처음부터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¹³³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고려-몽골(원) 사이에서 ‘육사’의 문제는 1278년을 고비로 타협점을 찾았다. 즉 ‘육사’ 가운데 ‘공호수적’과 ‘치다루가치’는 시행하지 않은 채 ‘납질’과 ‘조군’, ‘수량’, ‘설역’을 시행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몽골(원)의 요구에 대하여 고려가 끈질긴 협상을 벌여 얻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고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를 가지고 책봉-조공 관계를 대신할 수 있는 몽골(원)의 고려에 대한 지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4. 맺음말

고려와 몽골(원)의 관계에서 책봉과 조공을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책봉-조공 관계에서 보이는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점은 고려-몽골 관계를 책봉-조공 관계로 보는 데 동의하지 않는 연구자들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즉 김호동은 “(당시 고려인들이) 여·몽 관계를 중국과 주변국의 전통적인 외교관계의 틀 속에서 이해”했음을

133 ‘원 간섭기’의 역로망에 대해서는 정요근(2007), 『고려 역로망 운영에 대한 원의 개입과 그 의미』, 『역사와 현실』 64를 참고하였다.

인정하고 있고,¹³⁴ 모리히라 마사히코도 “고려에 관해서는 관계 구축의 때에 [책봉, 왕인(王印)의 수여, 연호의 제정과 반력 등] 중국의 전통적인 형식이 채용”되었음을 중시하였다.¹³⁵ 그렇다면 이러한 책봉-조공 요소의 존재와 책봉-조공 관계의 실재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고려와 몽골(원) 사이에 책봉-조공 관계 이외의 요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고려국왕이 몽골(원)의 부마가 되었고, 국왕의 친조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며, 고려에 몽골(원)의 지방행정기관인 행성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이 그러하다. 또한 ‘육사’ 가운데 ‘납질’과 ‘조군’, ‘수량’, ‘설역’의 조항이 시행된 점도 고려-몽골 관계를 책봉-조공 관계로 보기 어렵게 한다.

하지만 몽골 전통에 따른 ‘육사’의 요구가 고려에서 전면적으로 관철되지 않은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특히 ‘육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호수적’과 ‘치다루가치’가 시행되지 않은 것은 ‘육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또 친조와 왕실혼인, 정동행성의 설치 등을 양국 관계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와 같이 책봉-조공 관계의 요소와 그 이외의 요소가 모두 존재했던 고려-몽골(원)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책봉-조공 관계의 개념을 재확인함으로써 해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¹³⁶

전근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책봉과 조공의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의 책

134 김호동(2007), 앞의 책, 111쪽.

135 森平雅彦(2008), 앞의 글, 147쪽.

136 책봉-조공 관계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이익주(2009), 「고려-몽골 관계사 연구 시각의 검토-고려-몽골 관계사에 대한 공시적, 통시적 접근」, 『한국중세사연구』 27에서 정리해 두었다.

봉체제론(冊封體制論)이나 존 페어뱅크(John Fairbank)의 조공체제(Trubutary system) 이론이 대표적인 것인데, 그 이론의 바탕에 깔려 있는 중국 중심 사고의 문제점이 이후 연구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책봉국이 조공국에 대하여 규제력을 발휘함으로써 일원적인 국제질서를 성립시키고 유지했다는 견해는 책봉-조공 관계의 한 쪽 당사자인 조공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관계의 분석틀로서 근본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책봉-조공 관계를 책봉국과 다수의 피책봉국(조공국) 사이에 합의된 국제 관계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중국 중심의 화이관이 그 사상적 기반이 된다는 인식을 극복해야 한다. 그러한 인식은 한족 왕조가 책봉국이 되었을 경우에만 의미를 갖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는 오히려 드물고, 그럴 경우에도 피책봉국들이 한족 중심의 화이관을 수용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려 전기에는 거란 및 금과 책봉-조공 관계를 맺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화이관의 영향은 찾아볼 수 없다. 당시 고려는 중원을 차지한 강대국과 전쟁을 피하고 공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또는 거란·금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에 편입되는 수단으로서 책봉-조공 관계를 수용했던 것이다.

책봉-조공 관계에 대하여 또 한 가지 범하기 쉬운 오류는 책봉-조공 관계의 전형을 설정하려는 것이다. 전해중은 한중간의 조공관계를 개관하면서 조선과 명·청의 관계를 ‘전형적 조공관계’라고 규정하였고,¹³⁷ 청과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조선이 전형적인 책봉국(model tributary)이었다고 하여¹³⁸ 책봉-조공 관계의 전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137 全海宗(1971), 『韓中關係史 研究』, 一潮閣, 50~54쪽.

138 Hae-jong Chun(1968), Sino-Korean tributary relations in the Ch'ing

‘전형’과 비교를 통해 책봉-조공 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려의 자주성 상실을 근거로 고려-몽골 관계에서 책봉-조공 관계로 보기 어렵다거나, 고려-몽골 관계를 책봉-조공 관계로 보기에는 예외 현상이 많다는 등의 견해가 그러하다. 그러나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로 기능했던 책봉-조공 관계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 가장 중요하게는 책봉국과 조공국의 세력 관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띠었다. 고구려와 북위, 신라와 당, 고려와 거란·금, 조선과 명·청이 모두 책봉-조공 관계에 있었지만, 실제 관계는 모두가 달랐다. 고려-몽골(원)의 관계는 위의 사례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인가?

5세기 고구려와 북위의 관계부터 19세기 조선과 청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다양한 관계들을 모두 책봉-조공 관계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의 외연을 넓혀야 하고 내포가 줄어야 한다. 그 내포란 책봉과 조공의 형식일 것이며, 그러한 형식이 적용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상하관계 또는 상하관계에 대한 인정 등이 포함될 것이다. 즉 책봉-조공 관계란 책봉국과 피책봉국(조공국)이 상하관계를 인정하고 책봉과 조공을 교환하는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형식 안에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러한 것들은 책봉-조공 관계의 시대적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려-몽골(원) 관계도, 다른 시기의 책봉-조공 관계와 다른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려가 국가로서 유지되면서 몽골(원)과 상하관계를 인정하는 가운데 책봉-조공의 형식을 유지하였던 점에서 책봉-조공 관계의 범주에 들 수 있을 것이다.

period, John K.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Harvard Univ. Press, p. 90.

대몽항쟁기(1219~1270)
여몽관계의 추이와 성격

윤용혁(공주대학교)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대몽항쟁기(1219~1270) 여몽관계의 추이와 성격

윤용혁 공주대학교

1. 머리말

13세기 후반 이후 14세기 전반에 걸치는 1세기 가까운 이른바 ‘원 간섭기’는 한국 역사에서 독특한 성격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식민지 예속은 아니지만 정치적 독립성이 크게 훼손된 이 같은 시대는 한국 역사에서 다른 유례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¹ ‘원 간섭기’의 등장은 그 이전 대략 30~40년에 걸친 전쟁

1 이개석(2007), 「대몽고국-고려 관계 연구의 재검토」, 『사학연구』 88, 한국사학회는 13~14세기 여원관계의 성격을 둘러싼 근년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원간섭기 이전 시기, 13세기 여몽 간의 전쟁과 교섭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도 이 같은 여원 관계사 전반에 관련한 거시적 관점이 앞으로의 연구에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의 결과였다. 이 때문에 ‘원 간섭기’ 이전 여몽관계는 이 시기의 역사로서만이 아니라 ‘원 간섭기’의 이해를 위해서도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원 간섭기’ 이전, 13세기 고려와 몽골의 관계는 1218년 몽골군이 거란족을 추격하여 고려에 입경하면서 몽골군에서 시작한다. 이후 1231년 몽골은 고려를 본격 침입하기 시작하였고, 오랜 전쟁과 외교적 교섭 끝에 1270년 고려 정부는 몽골항전을 포기하고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한다. 이러한 점에서 13~14세기의 고려와 몽골관계는 주로 대결과 저항을 기조로 하는 전반기와 원 제국 범주 안에서 왕조의 전통을 유지하는 후반기로 대분(大分)할 수 있다. 구태여 연대로 명시한다면 1218~1270년까지 52년간이 전반에 해당하고, ‘원 간섭기’라 할 1270~1356년까지 86년간이 후반기라 할 수 있다.

한편 전반기에 해당하는 시기(1218~1270)의 여몽관계는 다음과 같은 세 시기로 구분된다. 1기는 1218년(고종 5) 강동성 전투를 계기로 여몽간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이후 공물을 매개로 하는 외교 관계가 전개되는 시기, 2기는 1231년(고종 12) 몽골사신 저고여가 살해당한 것을 명분으로 몽골군이 침입하여 군사대결이 진행되는 단계, 3기는 1259년 고려 태자가 몽골에 입조하고 개경(開經)으로 환도(宦途)를 약속하는 등 겉으로는 몽골에 복속하는 입장을 수용하는 시기이다. 그동안 이 시기 여몽관계는 초기 관계의 성립, 전쟁, 화의론(和議論)의 대두 등 각각의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이 글은 이 같은 기왕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면서 대략 13세기 몽골 복속 이전 50여 년간 여몽관계 추이 전체를 시야에 넣고 검토하려는 것이다.

이 시기의 여몽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으로는 몽골 측이 고려

에 요구한 이른바 ‘육사(六事)’가 있다.² ‘육사’는 시기와 지역 혹은 여건에 따라 그 내용에 다소 출입이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일종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치는 포괄적 요구로 몽골의 침략기에 고려를 압박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었다. 1231년 이후 전쟁기간 동안 무인정권이 주도한 고려 정부는 외교방법을 동원하여 몽골의 요구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부단히 기울인다. 그러나 1259년 고려 태자의 입조 이후로는, 반대로 외교방법으로 고려를 복속시키기 위한 몽골(원)의 전략이 두드러진다. 즉 고려 태자 입조 후, 새로 수립된 쿠빌라이 정권은 군사압력으로 고려를 굴복시킨다는 이제까지 방식을 수정하여 외교방식으로 회유하여 고려를 굴복시키려는 전략의 전환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고려의 끈질긴 저항에 직면한 몽골 나름의 대응책이었으며, 군사압력과 외교교섭의 절충은 완전한 고려의 폐합 가능성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결과적으로 고려와 몽골이 타협한 절충선이 ‘원 간섭’이라는 수준에서 정리되었던 것이다. 고려가 몽골에 굴복하였다고 해도, 원의 영토와 체제에 완전히 편입하지 않은 것은 고려의 장기 항전과 외교대응이 일정한 요인이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개념을 기본으로 하여 이 글에서는 대몽항쟁기 고려와 몽골 양국의 외교 관계 추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2 『元高麗紀事』 至元 5年 正月 28日(『高麗史』 26, 元宗 9年 正月)의 조서에는 納質, 籍民編, 置郵, 出師旅, 轉輸糧餉 補助軍儲 등이 열거되고 있으며, 『元高麗紀事』 中統 3年 12月(『高麗史』 24, 元宗世家 3年 12月)의 또 다른 고려에 대한 조서에서는 6事로서 納質·助軍·輸糧·設驛·供戶數籍·置達魯花赤이라 하여 다루가치의 설치가 포함되어 있다.

2. 1219년 여몽 간의 ‘형제맹약’

고려와 몽골관계에서, 거란족 공동 진압을 매개로 1219년 고려와 원이 맺은 형제맹약의 성격에 대해서는 일찍이 고병익이 논의를 제기하였다. 그는 1219년 몽골은 고려와 ‘형제맹약’을 하면서, 몽골이 정복지역에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육사’를 고려에는 제기하지 않고 있음을 특기하였다. 당시 형제맹약은 정복·피정복의 개념이 아닌 동일평면상의 횡적관계로 성립된 것이라는 것이다.³

1219년 이후 초기의 여몽관계는 ‘원 간섭기’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인 관점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다. 몽골군과의 침략 전쟁기에도 고려정부가 희망하는 수준의 여몽관계이기도 하였다. 몽골의 요구가 대체로 정치적인 것보다는 경제적인 것에 국한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무인정권이었던 고려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여몽관계였던 것 같다. 그러나 ‘형제맹약’의 체결 과정이 실제 일부 기록이 언급하는 것처럼 ‘우호적’인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이것은 양국 관계의 항구적 형태라기보다는 당시 동북아 정세 속에서 몽골이 취한 임시 조치라는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몽골군이 고려의 압록강을 건너 고려 서북면 지역에 진압한 것은 1218년 1월 경의 일이다. 몽골의 원수 합진(哈眞)과 찰랄(札剌)이 군사 1만을 거느리고 동진 완안자연(完顔子淵)의 군 2만과 함께 고려에 입경한 것이다. 이들은 서북면의 화주, 맹주, 순주, 덕주를 공파하고 거란적을 추격하여 12월 강동성(江東城)에 이른다.

3 고병익(1970), 「몽고·고려의 형제맹약의 성격」, 『동양교섭사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79~182쪽.

고려가 몽골과 관계를 처음으로 맺은 것은 이듬해 1219년(고종 6)의 일로, 몽골에 세공을 납부하라는 것이 중요한 조건이었다.⁴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 따라 그해 9월 이후 1225년(고종 12)까지 7년간 매년 몽골 사신이 고려에 들어와 공물을 징구하여 갔던 것이다. 몽골 사신의 수는 10명 이내, 그리고 거의 비슷한 수의 동진국 사신이 동행하였는데 몽골이 고려와 동진을 하나로 묶어 자신의 관할권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몽골의 공물 징구에 대해서는 고려의 부담감이 적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몽골에 대한 적대감과 반발 의식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매양 명을 내려 한없이 요구하니 소국이 이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한정된 산물로 무한한 요구에 응하는 것이 결코 가능하지 않음을 알 것입니다.” 이것은 종래 요·금과 맺었던 의례적 사대 관계와 비교할 때 고려에게는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1221년(고종 8년)의 경우에는 몽골 사신이 1년 동안 6회나 들이닥쳤다.⁵

1219년 강동성 전역 이후 여몽 간의 화의 체결은 몽골군이 적극 요구하여 실현되었다. 몽골의 합진·찰랄 등은 강동성 전투 직전 고려 원수부에 보낸 편지에서 적을 격파한 다음에는 고려와 형제 맹약을 맺도록 하라는 몽제의 명이 있었음을 통보하고 있다.⁶ 이것은 몽골이 거란족 진압 이후 고려와 처음부터 관계 체결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들어온 것을

4 “小國 以蒙賜不貲 講投拜之禮 遂向天盟告 以萬世和好爲約 因請歲進貢賦所便”(『東國李相國集』 28, 陳情狀; 『高麗史』 23, 高宗 19年 11月).

5 高柄翊(1970), 앞의 글.

6 『高麗史』 103, 「趙沖傳」.

말하며, 동시에 몽골침입목적이 바로 고려와 화약을 체결하는 데 있었음을 암시한다.⁷ 당시 화의 체결과 관련한 특징 중 하나는 화의를 맺는데 현장 지휘관의 역할이 컸다는 점이다. 형제맹약에 대한 정부의 회답을 받지 못하였지만 몽골 측의 재촉으로 조충이 맹약 체결에 응한 것이다.

몽골이 고려에 맹약 체결을 적극 요구한 것은 거란에 대한 공동작전을 계기로 고려를 몽골의 영향하에 묶어두려는 전략적 필요 때문이었다. 금에 대한 공략을 앞두고 금과 전통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후의 고려를 장악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유효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⁸

그런데 여몽화의에서 고려의 입장에 대한 최근 논의에서는 고려 사령관 조충의 역할, 그리고 화의체결에 대한 권신 최충헌(崔忠獻)과 국왕 고종의 입장 차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몽골과의 외교 관계 수립에 대해 권신 최충헌이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으로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고종의 의도를 대변하여 조충이 이를

7 이개석은 몽골군의 본격적 진입에 앞서 이미 이같은 강화 요청의 제안이 몽골측으로부터 국경지역에 전달된 적이 있음을 「조충묘지명」에 근거하여 밝힘으로써 和約의 초안이 몽골에 의하여 제안된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이개석(2009), 「여몽관계사 연구의 새로운 시점」, 『13~14세기 동아시아와 고려』, 학술회의 발표자료집, 경북대학교 한중교류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 136~137쪽. 묘지명에 의하면 당시 몽골측은 고려 진입에 앞서 40여 인 사절이 접장을 휴대하고 선편으로 定州에 당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묘지명에서는 “先是 蒙古軍遣使十與人賚牒乘船□□□定州 請如今日講和事”(「조충묘지명」, 『고려묘지명집성』, 김용선 편,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1, 335쪽)라 하였다.

8 최근 이정란은 몽골이 고려와 ‘형제맹약’이라는 수준의 조심스러운 연계를 도모한 요인의 하나로서, 고구려 이래 고려에 대한 몽골인의 ‘강국 이미지’가 작용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李貞蘭(2009), 「13세기 몽골제국의 고려관」, 『한국중세사연구』 27, 97~104쪽 참조.

실현시켰다는 것이다.⁹ 몽골의 요구에 따라 조충이 주도한 여몽 간의 형제맹약은 말하자면 “왕권 회복을 꾀한 고종의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였다.¹⁰

이제현의 김취려(金就礪)에 대한 기문(記文)에서는 당시 고려 원수부가 몽골의 요구를 조정에 전하여 고종의 허가가 있었던 것처럼 언급하였다. “또 이르기를 황제께서 적을 파한 후에는 (고려와) 형제의 약속을 맺도록 명하였다 하므로 우리 원수가 아뢰어 왕이 이를 허락하고 김양경(金良鏡)·김진석(金晉錫)을 보내 병사 1천으로 가게 하였다”¹¹는 것이 그것이다. 정선용은 이에 근거하여 조충이 형제맹약을 맺기 앞서 고종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에 따라 최충헌의 의사와는 다른 맹약을 성사시켰다는 것이다.¹² 그러나 이 자료는 ‘원 간섭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이제현이 작성한 것으로 원과의 우호 관계를 전제한 내용 상의 왜곡이 개재되어 있다.¹³ 『고려사』 「조충전(趙沖傳)」에서는 김양경의 파견은 몽골의 병량 요구에 응하여 쌀 1천 석을 수송한 것이었으며 형제맹약은 그 이후에 조정에 보고 되었고, 조정에서는 당황하여 의견을 정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다. 이 때문에 몽골의 “독촉이 극히 심하여 조충이 적당히 화해하였다”¹⁴고 되어 있다. 이것이 당시의 실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면 1219년(고종 6) 여몽 간의 형제맹약을 최충헌과 국왕 고

9 丁善溶(2002), 「조충의 대몽교섭과 그 정치적 의미」, 『진단학보』 93, 115~130쪽.

10 丁善溶(2002), 위의 글, 134쪽.

11 李齊賢, 「門下侍郎平章事判吏部事贈諡威烈公金公行軍記」, 『益齋亂藁』 6.

12 丁善溶(2002), 앞의 글, 124~125쪽.

13 원간섭기의 관련 자료들에 당시 맹약의 성립이 우호적 혹은 화기에애한 분위기였던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 것이 일종의 자료 윤색이 더해진 것이라는 점이 이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된다. 고병익(1970), 앞의 글, 170~171쪽.

14 『高麗史』 103, 「趙沖傳」.

중 사이의 정치 주도권 문제와 연결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조충은 현지 지휘관으로 파견되어 여몽 간의 외교측면보다는 거란 진압을 위하여 파견된 야전의 사령관이라는 입장에서 상황에 대처하였다. 현장의 사정에 입각한 판단은 때로 정치가의 입장이나 감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사실 거란에 대한 대처는 대규모 몽골군의 돌연한 개입으로 매우 혼란한 상태였으며, 예기치 못했던 상황의 급변 때문에 중앙정부에서의 판단 자체가 쉽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 이러한 특수성이 현지 사령관의 즉각적 판단과 결정의 범위를 확대시켰고 결과적으로는 그 결정력이 극대화된 측면이 있다. 그리고 당시 대외관계의 국면상 고려 조정에서도 이같은 화의 체결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강동성 전투 이후 여몽 간에 이루어진 형제맹약은 강력한 군사력을 과시한 몽골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대결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그리고 금의 공략을 위한 배후 안전판을 구축하려는 몽골의 계획적 의도로 성립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⁵ 적어도 몽골은 ‘맹약’으로 고려에 대한 안전판을 구축하는 데 성공하고, 첫 번째 고리를 일단 걸어 놓은 것이다.

1219년 여몽 간의 화약(和約)은 몽골의 무리한 공물 요구를 수반하기는 하였지만, 기본적으로는 국가 간의 상호관계라는 위상에 걸맞은 관계였다. 몽골 침입이 있고 고려가 정복 대상인 시기에 고려가 목표로 한 것은 1219년 화약 단계와 같은 양국 관계의 회복이었다. 즉 정치적 요구를 수반하지 않는 제한된 조건에서 양국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었다. 한편 ‘월 간섭기’에, 1219년의 ‘맹약’은 이것이 여원관계의 출발이

15 고병익(1970), 앞의 글, 168쪽.

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특히 그것이 우호 분위기에서 출발한 것이었음을 강조하려 하였다. 『고려사』의 세가에서는 화약을 맺은 것에 대하여 합진이 “강화를 청하였다”고 간단히 적은 다음, 이들 몽골군 진영의 사신이 매우 거칠고 무례한 행동으로 조야를 놀라게 한 사실을 장황하게 적고 있다.¹⁶ 반면 「김취려전(金就礪傳)」에서는 합진 찰라가 고려의 조충 김취려 등과 서로 형 동생을 삼고 주석(主席)을 같이하면서 “양국이 영원히 형제가 되어 만대까지 오늘의 맹약을 잊지 말자”는 다짐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⁷ 이는 이제현이 지은 「김공행군기(金公行軍記)」에 따른 것으로,¹⁸ 조충과 함께 ‘맹약’의 주역을 담당하였던 김취려의 행적을 우호적 여원 관계 성립이라는 관점에서 주목한 것이다. 반면 『원고려기사(元高麗紀事)』 등 원의 기록은 몽골의 고려 정복이 이미 이 시기에 관철되었다는 시각에서 이 사건을 정리하는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¹⁹

3. 군사적 대결의 개시

‘맹약’ 체결 후 몽골이 고려에 주로 요구한 것은 공물이었으며 1219년(고종 6) 이후 전개된 이러한 경제 관계는 햇수로 7년을 지속하였는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1225년(고종 12) 몽사 저고여(著古與) 피살 사건을 마지막으로 파탄에 직면하고 말았다.²⁰ 그리고 그로부터 6년이 지난 1231년

16 『高麗史』 22, 고종세가 6年 正月.

17 『高麗史』 103, 「金就礪傳」.

18 李齊賢, 「門下侍郎平章事判吏部事贈諡威烈公金公行軍記」, 『益齋亂藁』 6.

19 김인호(2003), 「원의 고려 인식과 고려인의 대응」, 『한국사상사학』 21, 119~121쪽.

20 『高麗史』 23, 고종세가 18年 12月 壬子 소수 몽고문첩 ; 이규보, 『동국이상국』

몽골군이 압록강을 건너 고려에 내도하였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몽사가 살해되고 외교 관계가 단절된 1225년 고려는 이미 몽골과의 항전에 돌입하였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고여 피살사건에 대한 피아간 책임 문제에 대한 논란은 오래된 논의 중의 하나다. 사건 이후 몽골은 사실 확인을 위한 사자를 파견하였으나 이 역시 고려 측의 화살 세례를 받고 쫓겨났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고려는 이것이 고려군으로 위장한 동진군이 저지른 소행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이 문제는 몽골의 고려 침입을 야기한 전쟁의 책임 소재라는 측면에서 여몽 전쟁 초기 양측의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²¹

일찍 몽골의 고려 침입에 대한 논고를 제출한 야나이는 이 문제에 대하여 몽골 측 주장을 신뢰하여, 당시 고려가 몽골과의 관계를 달가워 하지 않았고 특히 수공사의 거친 행동이 고려 조정의 감정을 상하게 하였다는 점, 그리고 동진이 이런 사건을 일으킬 이유가 없으며 고려가 처음 이 사건을 금장 가불애(哥不愛)의 소행이었다고 주장하다가 동진군의 소행이었다고 말을 바꾼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²² 그러나 당시 고려 측은 이 같은 번복이 사건의 진상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가 후에 동진국 포선만노(蒲鮮萬奴) 휘하의 망명자 왕호비(王好非)를 통하여 비로소 파악하게 된 사정을 진술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이 고려 측이 저지른 것이 아니었던 점은, 고려의 주장과 같이, 사건 이후 고려가 몽골군의 대거 내습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으로 입증된다. 고려는 8월 몽골군의 침입을 받고도 이들이 실제 몽골군이라는 사실을, 10월 몽골군이 사자

집」 28, 「(上都皇帝)陳情狀」 참조.

21 고병익(1970), 앞의 글, 183쪽.

22 箭内互(1918), 「蒙古 高麗經略」,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4, 270~275쪽.

를 파견한 후에야 비로소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²³ 몽골군을 칭하는 무리의 준동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그때까지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고여 사건을 고려의 소행으로 보는 것은 고려의 자료에 대한 야나이의 불신 때문이라고 생각된다.²⁴

몽골의 고려 침략에서 살레탑(撒剌塔)이 전달해 준 몽골의 요구는 고려의 항복이었다. 살레탑이 그를 방문한 북계 분대어사 민희(閔曦)에게 “투항하려면 투항하고 맞서 싸우려면 맞서 싸우되 빨리 결판을 내자”고 다그친 것이나,²⁵ 몽골 사절이 고종에게 전달한 서장 중에 “투배(投拜)하면 전처럼 살게 할 것이요, 투배하지 않은 백성은 범의 새끼를 잡듯 할 것이다”²⁶고 천명한 것은 고려의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1차 목표였음을 말해준다. 한편 항복의 구체 내용은 1219년 맺은 공물의 징구를 매개로 하는 관계 회복이었다. 1231년 살레탑의 몽골군은 1219년 강동성의 거란족을 압박한 것처럼 이제 고려에 대하여 군사적인 압박을 가하였던 것이다.

살레탑의 몽골군은 1231년(고종 18) 8월 압록강을 건너 함신진(의주)을 경유하여 침입하였다. 『고려사』에서는 8월 29일자에 침입에 대한 첫 기록이 등장하지만, 이것은 철주 함락 시점을 가리키는 것 같고, 따라서 몽골군의 함신진 내도 시기는 그로부터 여러 날 전의 일이다. 최우가 몽골군 침입에 맞서 중앙의 방어군을 출정시키는 문제를 결정한 것은 9월 2일, 3군을 파견한 시점은 9월 9일이었다. 고려 3군은 9월 하순 황주

23 『高麗史』 23, 고종세가 18年 10月 壬申.

24 尹龍赫(1991), 「초기 여몽관계의 성립과 파탄」, 『고려대몽항쟁사연구』 일지사, 35~40쪽 참조.

25 『高麗史』 23, 고종세가 18年 11月 癸巳.

26 『高麗史』 23, 고종세가 18年 12月.

의 동선역에 도달하여 몽골군 선봉 8천여 병력과 맞닥뜨려 이를 물리치고 10월 21일에 청천강변 안북부에 이른다. 안북부 전투에서 고려 3군은 몽골군에 완패하였으며 이에 조정은 몽골과 화의 타결을 서두르는 한편 11월 22일 개경 방어를 위하여 5군을 다시 발하여 대처하도록 한다. 몽골과 화의를 타결한 것은 이듬해(1232) 정월 11일의 일이었다. 화의 타결에는 고종을 대신하여 왕족 회안공(淮安公)을 파견하였으며, 몽골은 북계의 40여 성에 다루가치를 설치하고 철수한다.²⁷

12월 23일 고려 정부는 삼군진주(三軍陣主)를 안북부의 살레탑에게 보내 항복을 표시하였다. 살레탑은 항복의 표시로 고려가 당장 부담해야 할 공물을, 말 1~2만 필을 동원해야 하는 양 금, 은 등의 각종 물품, 100만 대군의 의복, 진자라 1만 필, 수달피 2만 매, 대마(大馬) 1만 필, 소마(消磨) 1만 필, 대관(代官)의 아들딸 각 1천 명 등으로 제시하였다.²⁸ 고려에서 사실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지만, 이 역시 고려를 압박하는 수단이었다. 이에 응하여 고려 조정은 일단 많은 선물을 살레탑에게 보내는 한편 1219년 여몽화의를 주도하였던 조충의 아들 조숙창(趙叔昌)을 대장군에 임명하여 동행하게 하여, 몽골의 긍정적 반응을 끌어내려고 하였다. 몽고 황제에게 보내는 서장에서는 저고여 사건에 대한 오해를 풀도록 해명하는 한편으로 항복 건에 대해서 종전의 우호관계(舊年之好)를 거듭 강화할 것이라는 다짐을 하였다. 이듬해 정월 11일(임진), 몽골군은 고려에서 철군하였다.

27 『元史』 3, 태종본기 3년 8월. 몽골 1차 침입의 경과에 대해서는 山口修(1972), 「蒙古と高麗(1231)-蒙古第一次高麗侵攻」, 『聖心女子大學論叢』 40에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28 『高麗史』 23, 고종세가 18년 12월 甲戌.

몽골군의 철군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은 고려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하면서 철군을 한 화의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하는 문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자료는 명확하지 않은데, 주채혁(周采赫)은 당시 항복의 조건을 ‘납질(蠟質), 적편민(籍編民), 치우(置郵), 출사려(出師旅), 전수량항(傳輸糧餉), 보조군저(補助軍儲) 내지 치다루가치’를 근간으로 하는 몽골의 이른바 육사였을 것으로 추측하였다.²⁹ 물론 육사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를 기준으로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2차 침략 시 양측에서 오간 문서들을 검토하면, 몽골은 1차 철군 때는 적어도 다루가치 설치, 조군, 호적 정리 등을 고려에게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³⁰ 좀 뒤의 일이지만 고종 27년(1240) 5월 몽골의 조서 중에서도 이 점을 유추할 수 있다.³¹

몽골은 고려로부터 군사를 철수시켰지만, 양국의 관계가 원래대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고려에는 몽골의 다루가치가 각처에 배치되어 고려의 정치행정권을 위협하였고, 다른 한편 고려는 몽골의 정복전쟁에 군사를 동원하라는 요구에 응하여야 하였다. 1차 침략 이후 몽골이 정복지역에 적용하던 육사의 일부가 고려에 실제 부가되고 있었던 것이다.

우선 72인의 다루가치를 개경과 북계지역에 배치하고, 또 야속질야(也速迭兒)의 탐마적군(探馬赤軍)이 잔류하였다. “경부(京府)와 주현에 다루가

29 周采赫(1974), 「고려 內地의 달로화적 置廢에 관한 연구」, 『청대사림』 1, 93쪽.

30 『元高麗紀事』 태종 5년 4월 24일자 몽제의 조서에는 포선만노 정토에 대한 군사적 협력, 민호 수의 파악 등에 비협조적인 고려 정부를 힐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1 『元高麗紀事』 태종 12년 5월조, 해도로부터의 출륙, 민호의 점검, 禿魯花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1232년 초 1차 침입시의 화의 체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정확히 ‘육사’에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육사에 유사한 수준의 조건으로 철군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이다.

치를 설치하고 야속질아로 탐마적군을 거느리고 머물러 진수하도록 하였다”³²는 것이 그것인데, 이것으로 보면 다루가치는 지방에만이 아니라 ‘경부’, 즉 개경에까지 파견되었던 것이다. 탐마적군은 몽골이 몽골 이외 이민족들로 편성한 부대로³³ 아마 거란·여진·한족 등 동북아 제족(諸族)들로 구성된 부대일 것으로 보인다. 몽골은 고려에서 철수하면서 이들 탐마적군과 항부한 흥복원 휘하의 군민을 군사적 배후로 하여 72인의 다루가치를 주둔시켜 고려에 일단의 지배권을 행사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실제 몽골군 철군 직후인 고종 19년 2월에 “고려의 국사를 도통(悼童)한다”는 임무를 자임한 도단(道斷)이라는 자가 파견되어 안하무인으로 횡포를 자행하였다.³⁴ 살레탐의 2차 침입 때, 몽골군과 교환된 서장중이 “다루가치로 경읍(京邑)에 있는 자”³⁵라 한 것이 이 도단을 지칭한 것일 것이다. 1차 침략 이후 몽골군이 철수하면서 북계의 여러 지역에 다루가치를 설치한 사건은 이제 몽골이 고려를 점령지로 간주하고 육사를 기준으로 한 요구를 고려에 부가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이제현은 당시 다루가치 설치 기록이 사실이라는 근거가 없는 것이며, 이에 근거하여 다루가치 설치 사실을 부정하는 의견이 전개된 바 있었으나, 주채혁은 이러한 논의를 부정한 바 있다.³⁶

32 『新元史』 132, 札刺亦兒台豁兒赤傳.

33 몽골의 探馬赤軍에 대해서는 萩原淳平(1977), 「木華黎王國の探馬赤軍について」, 『東洋史研究』 36-2 참조.

34 『高麗史』 23, 高宗 19年 2月 戊戌, 丁丑, 3月 甲申, 丙戌.

35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28 ; 『高麗史』 23, 高宗 19年 9月條에 수록된 「답몽고관인서」.

36 周采赫(1974), 「고려 内地의 달로화적 置廢에 관한 연구」, 『청대사림』 1, 116~119쪽.

북계 지역에 다루가치를 설치한 것은 고려가 몽골에 군사저항을 하려는 의지를 마비시키려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 몽골에 대한 조군 요구도 고려에게는 심각한 부담이었다. 몽골의 요구로 고종 19년 3월 서경도령 정응경(鄭應卿), 전 정주부사(靜州副使) 박득분(朴得芬)이 배 30척, 수수 3천을 가지고 몽골로 갔다. 동진(同進) 정벌 전에 징발된 것이다. 5월 동진 정벌에 즈음하여 몽골은 고려군의 징병 계획을 결정하였으며,³⁷ 이 결정에 따라 7월 몽사 9인이 개경에 이르고 있다. 4월에는 상장군 조숙창 등을 몽골에 보내 칭신의 표와 함께 살레탑이 지난번에 요구하였던 공물중의 일부를 보냈다.³⁸ 서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요구 조건을 삭감해 달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여몽 전쟁 초기의 몽골에 대한 표문을 분석해 보면 이 시기 고려의 몽골에 대한 칭신은 “어디까지나” 몽골의 군사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임시방편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³⁹ 따라서 몽골군이 물러가자 고려 정부는 곧 천도 논의에 들어갔다(2월 20일). 철군한 달 여만의 일이다. 고려의 천도 논의는 몽골과의 관계가 단순한 사대 관계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복속국의 수준에서 고려의 독자적 정치력 행사에 커다란 장애를 초래한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정리된 대응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37 “帝 以將征浦鮮萬奴 遣使九人 徵兵高麗”(『新元史』 札刺亦兒台豁兒赤傳).

38 『元高麗紀事』 太宗 4年 4月; 『高麗史』 23, 高宗 19年.

39 이미지(2009), 「1231·1232년 대몽 표문을 통해본 고려의 몽골에 대한 외교적 대응」, 『한국사학보』 36, 247~255쪽 참조.

4. 몽골 침입에 대한 고려의 외교적 대응

몽골군이 철군한 그해 1232년(고종 19) 6월 천도를 결정하고 다음달 바로 강화로 천도를 단행하였다. 몽골로서는 그야말로 고려의 양동(陽動) 작전에 허를 찔린 셈이다. 강화로 천도를 눈앞에 두고 있는 7월 1일 몽골에서 9명의 사신이 당도하였다. 아마 세공사(歲貢使)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는 강화 천도를 앞두고 경황이 전혀 없던 시기이다. 몽골 사신은 4일만에 귀국하고 말았다. 강화천도와 관련하여 대몽관계에서 주목되는 것은 천도의 결행과 동시에 고려 정부가 북계 제성에 설치된 몽골의 다루가치를 모두 살해한 사실이다. 이는 강화 천도가 단순히 소극적 도피가 아니라, 몽골과의 대결을 불사한다는 적극적 항몽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몽골의 재침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재침한 살레탑 군영과는 편지가 오갔지만 이 시기의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이규보가 작성한 서장이 그나마 남아 있어 전후 사정을 다소나마 짐작할 수 있다. 11월 몽골 황제에게 보낸 진정표에는 군사를 내어 포선만노(蒲鮮萬奴)를 토벌하도록 할 것, 국왕 고종의 몽골 입조, 호구수의 보고를 비롯한 여러 요구를 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고려는 이러한 제반 요구를 완곡히 거부하고 오직 공물제공만을 약속하는 정도였다.⁴⁰

고려가 사신을 몽골에 파견한 것은 고종 25년(1238) 12월의 일이다. 고종 22년부터 계속된 몽골 3차 침입의 장기화 때문이었다. 이에 응하여 몽골군은 이듬해(1239) 4월 고려에서 철수하였다. 고종 25년부터 32년

40 『高麗史』 23, 고종세가 19年, 진정표.

(1245)까지 고려는 도합 12회 몽골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몽골은 고려에 7회 파견한 기록이 있다. 그 가운데 특히 고종 26~27년은 활발한 사신 교환이 있었다. 2년 동안 고려는 5회, 몽골은 4회, 규모도 고종 26년에는 몽골 137명, 고려 148명이라는 대규모 사신단을 교환하고 있다. 전란기 대결 국면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고려는 몽골에 군사 행동의 중지를, 몽골은 교착상태에 빠진 군사압박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욕을 보이는 시기였던 셈이다. 그러나 고종 28년 이후 여몽 간의 사신 교환은 구체적 성과는 눈에 띄지 않은 채 관성적으로 이어진다. 이로써 고려는 일정시간 몽골의 침입을 모면하였다.

몽골 측의 요구는 국왕의 친조, 강도출륙, 민호의 파악 보고 등이었다. 고종의 모친인 원덕태후(元德太后) 류씨(柳氏) 사망을 핑계로 대기까지 하면서⁴¹ 고려는 시일을 끌며 미적거렸다.

표 1 여몽 전쟁기 고려-몽골 간 사신 교류 ⁴²

연 도	고려 → 몽골	몽골 → 고려	비고
고종 18(1231)	3	4	1차 전쟁
19(1232)	1		2차 전쟁
21(1234)	1		
25(1238)	1		3차 전쟁
26(1239)	2	2	
27(1240)	3	2	
28(1241)	1	2	
29(1242)	1	2	
30(1243)	3	1	
31(1244)	1	1	
32(1245)	2		

41 『元高麗紀事』太宗 11年 10月 13日.

42 申安湜(1993), 「고려 최씨무인정권의 대몽강화교섭에 대한 일고찰」, 『국사관 논총』 45, 195~198쪽의 표를 참고하여 재작성하였다.

연 도	고려 → 몽골	몽골 → 고려	비고
34(1247) 35(1248)	1 2		4차 전쟁
36(1249) 37(1250) 38(1251) 39(1252)	2 3 2 1	2 1 1	
40(1253) 41(1254)	4 5	5 2	5차 전쟁
42(1255) 43(1256) 44(1257)	2 2 7	2 2	6차 전쟁

여몽 전쟁기 대부분 기간 대몽관계에 대한 최종 정책결정은 역시 무인정권, 특히 최씨 집정자가 장악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몽골로 보내는 사신 파견을 비롯한 외교교섭도 몽골의 침략 강도를 완화하거나 그 예봉을 피해보려는 하나의 전략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씨 혹은 무인정권의 항몽 및 몽골에 대한 외교교섭에 대해서는 역시 부정적 관점이 우세하다.⁴³ 필자 역시 이 점에서 특별히 견해를 달리하는 점은 없다. 다만 대내적 측면이 아닌 대외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최씨정권이 장기항전, 그리고 외교교섭을 하며 시간을 끈 것이 몽골이 여몽관계의 전개와 정립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오랜

43 신안식은 최씨무인정권의 대몽 교섭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최씨정권에 의한 강화교섭은 정권 보위를 위한 유리한 입장을 세우는 것이었고, 상황 변화에 따라 몽골에 대한 순종·거부·지연과 재침략에 의해 환원하는 형태로써 국가의 운명보다는 정권의 운명에 더 치우치는 감이 있었다”고 종합적으로 평가한 바 있는데[申安湜(1993), 「고려 최씨무인정권의 대몽강화교섭에 대한 입고찰」, 『國史館論叢』 45, 194쪽] 이는 최씨정권이 취한 대몽관계 정책에 대한 학계의 일반적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간에 걸친 타협적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점은 최씨정권의 장기 항전과 외교책략이 초래한 다른 측면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하는 생각이다.

1231~1259년까지 거의 30년에 걸친 여몽 전쟁은 편의상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필자는 1~3차와 4~6차로 나누어 전기, 후기 구분을 하였다.⁴⁴ 이에 대하여 이익주는 몽골의 1~4차 기간을 전기, 5~6차 기간을 후기로 설정하자고 제안하였다. 고려 최항의 집권, 몽골 현종의 즉위라는 정세 변화를 감안한 것이다. 그리하여 전기는 최우가 정권을 주도하며 강경한 항전책을 견지하던 시기, 후기는 최항이 권력을 승계하여 몽골과 강화를 추진하는 시기로 구분한 것이다.⁴⁵ 최항 집권 이후 강화론의 대두는 약해진 권력 기반, 몽골 측의 요구가 완화된 때문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최항의 대몽책은 강온을 오가며 일관성이 없었는데, 이는 최항 정권이 처한 난처한 현실상황 때문이었다.⁴⁶ 이러한 과정에서 문신을 중심으로 몽골과의 강화론이 점차 공식화된다.⁴⁷

몽골과 군사적 대결을 불사한 대몽항쟁기 무인정권의 대외정책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남송과의 관계이다. 이 시기에 정치적 혹은 군사적으로 고려가 남송과 연계하여 몽골에 대항하려 했던 시도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이것은 고려 정부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몽골에 대항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는 외교기조와도 부합한다. 그렇지만 남

44 尹龍赫(1991), 앞의 글, 40~41쪽.

45 이익주(1996), 「고려 대몽항쟁기 강화론의 연구」, 『역사학보』 151, 5쪽.

46 이익주(1996), 위의 글, 9~11쪽.

47 이익주(1996), 앞의 글 ; 李興鍾(2002), 「대몽강화와 문신의 역할」, 『洪景萬敎授 정년기념한국사학논총』 참조.

송과의 통교를 중시하였고, 실제 남송의 상단(上壇)이, 장기적 전란이 지속되는 특수 상황에서도 여전히 고려를 내왕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몽골의 장기적 압박으로 위기에 봉착한 말기의 무인 정권이 남송과 정치적 관계를 탐색하려는 시도를 한 점이 주목된다.

고종 46년(1259) 몽골의 연이은 군사압박으로 곤경에 처한 시기, 강도 정부가 몽골군 포로 남송인 3명을 남송에 정중히 돌려보내면서 고려 예빈성의 처장을 휴대한 관원을 파견한 사실이 그것이다.⁴⁸ 마아(麻兒)[해삼(解三), 26세] · 승보(升甫, 풍시(諷示), 24세) · 지취(地嘴, 황이(荒夷), 38세) 등 남송인 3명은 1245년, 1249년, 1235년 각각 몽골군 포로로 잡혀 몽골군에 종군하였고, 이후 차라대군에 속하여 고려에 출정하였다가 1257년 고려에 투항한 인물들이다.

보우 5년(1257) 7월 두목인 차라대가 2만 인을 거느리고 출정하니 빙시와 해삼은 모두 말을 기르는 임무를 맡고 종군하였다. 두 달이 지나 고려 국경선 首東路에 이르러 和尚城에 주둔하였다. 고려 군사는 성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11월이 되어 오랫동안 비가 내리자 말이 많이 얼어죽고 사람도 굶주렸다. 諷示와 海蓼은 도망쳐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서로 모의하여 깊은 산중에 숨었다. 군이 물러난 뒤 고려인이 그들을 데려다 섬에 안치하였다.⁴⁹

48 黃時鑿(1997), 「송-고려-몽골관계사에 관한 일고찰-〈收刺麗國送還人〉에 대하여」, 『동방학지』 9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16쪽.

49 “寶祐五年七月 頭目人車辣大 領二萬人出軍 馮時解三皆以牧馬從 凡兩月至麗界首東路 屯于和尚城 麗師不出 及十一月 久雨 馬多凍死 人且飢 馮解謀逸歸本朝 匿深山中 師退 麗人取以歸置島上”[梅應發 撰, 「收刺麗國送還人」, 『開慶四明續志』 8 ; 黃時鑿(1997), 위의 글에서 재인용].

차라대의 세 번째 침입에 해당하는 1257년(고종 44)의 고려 침입은 5월 부터의 일이며, 당시 이들은 개경을 거쳐 충청 지역까지 남하하였는데, 군사적 움직임은 경기, 서해도 일대에 집중하여 주로 강도를 압박하는 것이었다. 그해 윤4월 최항(崔沆)이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 내부에서 출항논의가 공식적으로 제기되어 몽골에 전달됨으로써 하반기 몽골군은 일단 국경지역으로 철수한 상태에 있었다.⁵⁰

위에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마야, 승보 등 남송인 포로가 몽골 진영에서 탈출한 것은 이 무렵 11월의 일이었다. 이들이 주둔한 수동로의 화상성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으나 국경지방 북계 지역일 것이며, 탈출한 이들 남송인은 고려인의 보호를 받으며 일단 섬으로 피신하였다. 이듬해 1258년(고종 45) 정월 이들은 아마도 해로로 강도(剛度)로 이동되었고, 고종을 알현한다. 그리고 황이(荒夷)가 합류하여 도합 3명의 남송인은 한어도감소(漢語都監所)에서 숙식하며 한동안 지내다가 남송의 상단(上壇)인 강수(江水) 범언화(范彦華)의 배를 타고 남송의 경원(敬遠) 명주(明州)으로 돌아간 것이다. 1259년 경원(명주)으로 가는 이 배에는 고려 예빈성(禮賓省)의 접문을 휴대한 8명의 고려 관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8명의 고려 관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⁵¹

金之用(注簿, 文林郎)

李孝悌(注簿, 文林郎)

金光遠(丞, 文林郎)

潘吉儒(丞, 文林郎)

李軾(試少卿入內侍, 文林郎)

50 尹龍焄(1991), 앞의 글, 119~124쪽.

51 梅應發 撰, 「收刺麗國送還人」, 『開慶四明續志』 8.

任柱(卿, 朝議大夫)

羅國維(判事入內侍 通議大夫 三司使 太子右庶子)

奉君用(判事正議大夫 監門衛攝上將軍)

여기에서 무엇보다 이들 남송인 포로를 본국으로 이송하고, 거기에 정부의 첩장(牒狀)을 휴대한 고려의 관원들이 함께 동행한 이유가 무엇일 까 하는 점이 궁금하다. 이 예빈성 첩문(牒文)의 작성 시점과 출발 시기는 기미(幾微) 3월, 즉 고종 46년(1259) 3월이었다. 1259년이라면 고려가 몽골의 압력에 굴복하여 태자가 입조한 시점이다. 차라대 둔소(屯所)에 파견되어 태자의 입조를 조건으로 철군을 약속받은 박천식(朴天植) 등이 차라대 사자 온양가대(溫陽加大)와 강도(剛度)에 돌아온 것이 고종 46년(1259) 3월 8일이었고, 이때 이미 태자의 입조 날짜를 4월 17일로 약정한 상태였다.⁵² 그렇다면 고려의 관원들이 포로를 송환하는 모양으로 남송에 파견된 이 사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 같은 의문에 대하여 위 고려의 첩문에서 남송에 대해서는 ‘대송국’이라 한 반면, 몽골에 대해서는 ‘적인’이라 칭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몽골에게 굴복’하여 태자가 입조를 예정하고 있는 시점에서 남송에 관인을 파견한 것은, 동일하게 몽골의 군사적 압력으로 위기에 처한 남송과의 정치적 군사적 연대를 모색해보려는 시도는 아니었을까? 고려의 무인 정권은 몽골에 굴복하는 최후의 시점까지 상황을 타개하려는 노력을 그치지 않았던 것이다. 3명의 남송군 포로를 송환한 것은 이 같은 노력의 일단이었으며, 태자 입조를 약속했음에도 고종은 입조일을 미루려고 끝까지 시도하였다. 그러나 남송에 파견된 관원들이 소기의

52 尹龍榭(1991), 앞의 글, 128~129쪽.

성과를 거두기에는 이미 고려와 남송 양측의 상황은 극히 악화된 상태였다. 4월 21일 고려 태자 전이 몽골 입조를 위하여 강도를 출발하였고, 이들은 남송 정벌전에 종사하던 헌종(憲宗)의 돌연한 사망에 직면하여 결국 즉위를 준비하고 있는 쿠빌라이를 연말의 시점에 면담하고 귀국한다.

5. 몽골의 대고려 전략의 전환

몽골의 고려에 대한 군사압박은 처음에는 금을 제압하려는 전략 중 하나였지만, 금이 멸망하고 남송과 전쟁을 벌인 후에 몽골은 고려를 남송정복과 일본정복을 위한 전략지역으로 중요시하게 되었다. 특히 전쟁이 길어지고 고려와 남송과의 전선(傳宣)이 동시에 형성되면서 몽골은 고려가 남송과 정치적·군사적으로 연대할 가능성을 의식하게 된다. 몽골 관인의 다음과 같은 대고려 전략에 대한 언급은 남송과의 연대 가능성이 있는 고려에 대하여 강온(強溫) 전략을 함께 검토하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군을) 움직이면 승리할 수는 있으나 또한 최선은 아니고, 만에 하나라도 이기지 못하면 위로는 국가의 위엄을 손상시키고 아래로는 사졸의 힘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저들이 강과 산의 험함을 믿고 바다에 식량을 쌓아 가만히 지키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무슨 계책으로 취할 수 있겠습니까?(『元高麗紀事』中桶 6년 11월)

만약 소국(고려)의 권신이 흉악함을 자행하여 반역하면서 산과 물을

믿고 송과 연횡하여 섬을 막아 지키면 우리나라에 비록 뛰어난 병사 백만이 있다 해도 금새 함락시킬 수 없으니 실로 대국(大國)에 도움 되는 것이 아닙니다(『元高麗紀事』中桶 6년 11월).

위의 자료 중 앞은 원의 호부상서 마형(馬亨, 1207~1277), 뒤의 언급은 전(前) 추밀원경력(樞密院經歷) 마희기(馬希驥)의 주장이다.⁵³ 이들은 고려에 대한 군사제압이 쉽지 않다는 전제에서 오히려 고려에 유화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은 특히 고종 46년(1259) 태자의 입조와 쿠빌라이 정권 성립 이후 확산된 것으로 보이며, 원종 초년에는 군사적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외교방식으로 고려 정부를 복속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주목된다.

고려에서는 최씨정권 최후의 계승자인 최의(崔瑄)가 고종 45년(1258) 3월 권좌에서 제거되었고, 1년 뒤인 고종 46년(1259) 4월, 태자 전(腆)이 몽골에 입조한다. 몽골군의 군사공략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이었다. 태자 전의 입조는 쿠빌라이와의 만남으로 대체되었고 이듬해 1260년 4월 쿠빌라이의 즉위와 원 제국 개창으로 고려와 몽골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기묘하게도 거의 동일한 시기인 1259년 6월, 고려 고종이 사망하여, 쿠빌라이를 만나고 돌아온 태자 전은 귀국 후 곧바로 왕위에 오른다.⁵⁴ 고려와 몽골, 양국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새로운 정국

53 인용문의 번역은 여원관계사연구팀(2008), 『譯註 元高麗紀事』 선인, 172~181쪽을 참조함.

54 46년을 재위한 고려 高宗은 고려의 역대 34명의 임금 중 가장 오랜 재위 기록을 남긴 인물이며, 재위 기간 대부분이 전란으로 점철된 세월을 보냈다. 무인정권이라는 특수한 정치 환경, 전란으로 인하여 거의 30년 가까이 피란 수도 강도에서 지내야 했다. 최근 필자는 대몽항쟁기의 대부분 기간을 차지하는 이 高宗에 대하여 인물사적 측면에서 검토한 바 있다. 윤용혁(2009), 「무인정권, 그리고 전란 속의 왕권-고려 高宗(1192-1259) 연구」, 『한국인물사연구』 12.

의 변화를 가져올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이 시기 몽골의 고려에 대한 요구는 ‘육사(事)’를 고려 복속의 구체적 기준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졌다. 원종 3년(1262) 12월에 전달된 쿠빌라이의 조서에는 국왕 승인, 몽골군의 철수, 전통 의관(衣冠) 허용, 포로 송환 등 쿠빌라이가 베풀었다는 후의를 상기시키는 한편 볼모[(납질(納質)), 호적조사[적민편(籍民編)], 역참 설치[치우(置郵), 조전(助戰)을 위한] 군대[출사려(出師旅)], 식량 조달[전수량항(轉輸糧餉), 보조군저(補助軍儲)] 등을 강하게 천명하고 있다. 원종 9년 3월에 고려에 전달된 쿠빌라이의 조서 역시 고려의 환도 약속 불이행을 질책하면서, 「대송전」에서 고려가 군사, 병선 및 군량 등을 조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⁵⁵ 육사와 관련하여 이 무렵 다루가치 설치 문제를 제기한 점도 주목된다. 태자 전(腆)이 입조하기 몇 달 전 고종 45년(1258) 12월 박희실을 몽골에 파견하여 “다루가치를 청하였다”⁵⁶는 것이다. 이후 원종 원년(1260) 8월 고려에 전달한 조서에서는 고려 주둔군의 철수와 함께 다루가치로 파견한 패로합반아발도로(孛魯合反兒拔觀魯)의 귀국 조치를 명하는 것이 보인다.⁵⁷

원종 및 쿠빌라이 즉위 이후 여몽관계의 특징은 몽골이 군사압박을 자제하는 대신 고려를 회유하여 굴복시키려는 외교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오랜 군사적 침입으로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던 그동안의 대고려 전략에 대한 평가를 전제한 것이었으며, 외교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몽골의 정책 전환을 읽을 수 있다. 이에 부

55 『高麗史』 26, 元宗세가 9年 3月.

56 『高麗史』 24, 高宗세가 45年 12月 甲辰.

57 고려에 설치된 다루가치 전반에 대해서는 李玠爽(2004), 「〈고려사〉 원종·충렬왕·충선왕세가 중 원조관계기사의 주석연구」, 『동양사학연구』 88, 119~123쪽 참조.

응하여 입조 이후 몽골 조정과의 연결고리를 갖게 된 원종조의 대몽관계는 이제 무인정권을 압박하는 확실한 정치세력으로 자리 잡게 된다.⁵⁸

여몽 간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몽골이 끝까지 고려에 요구한 선행 조건은 국왕의 입조와 개경으로의 환도였다. 1259년 태자입조는 국왕에 대한 입조요구를 축소시켜 실현한 것이었다. 이것은 몽골의 강한 군사압박, 그리고 국내에서 대두하는 강화론의 압력으로 실현된 것이지만, 다른 또 하나의 조건인 개경환도는 정권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한 결코 이루어지기 어려운 성격의 것이었다. 이 때문에 결국 개경환도는 1270년 무인 정권 붕괴와 동시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고려 정부의 몽골 복속 시점은 개경환도가 이루어지는 1270년에 비로소 실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6. 맺음말

1270년까지 대략 50여년 동안의 고려의 대몽 관계와 항전은 단속적인 전쟁이 큰 흐름을 이루지만 그 배후에서는 외교방식으로 사태를 완화 혹은 해결하려는 시도를 시종 진행하였다. 이 같은 화전(和戰) 양면의 대몽관계 양상이 이 시기 여몽관계의 중요한 줄거리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58 대종조의 대몽관계에 대해서는 강성원(1995), 「원종대의 권력구조와 정국의 변화」, 『역사와 현실』; 최원영(1995), 「임씨무인정권의 성립과 붕괴」, 『고려 무인정권 연구』 홍승기 편, 서강대학교출판부; 윤용혁(2002), 「원종조의 대몽관계」,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참조.

고려가 공식적으로 몽골에 정부 차원의 무력 대항을 전개하였던 것은 1231년 한 해에 국한되고 있다. 1232년 고려는 강화로 천도하여 장기 항전을 지속하였으나 이후 고려 정부는 몽골에 적극적인 군사대결 보다는 지방민의 입보 지도와 함께 몽골군의 철군을 요구하는 외교방식을 주로 구사하였다. 고려는 몽골에 공물증여, 왕족파견 등의 방법으로 몽골의 요구를 완화시키려 하였고, 반면 몽골은 육사를 근간으로 하는 요구를 지속하였으나 이 시기의 특수성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국왕의 몽골 입조와 개경환도를 우선 요구하였다. 무인 정권의 고려 정부는 1259년 태자가 입조하는 시점까지도 남송과 연대를 모색하는 등 몽골 압력에 대응하여 새로운 출구를 찾으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고려가 몽골의 복속 요구를 결코 수용할 수 없었던 데에는 당시 무인정권이라는 특수상황이 현실적으로 작용하였다. 몽골에 복속하는 것은 무인 정권 자체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인집정자가 몽골의 요구를 시종 거부하며 대항할 수 있었던 데에는 자주성을 추구하는 고려의 전통적 대외관계 이념이 명분으로 작동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1231년 이후 전쟁기간 동안 무인정권이 주도한 고려 정부는 외교적 방법을 동원하여 몽골의 요구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부단히 기울인다. 그러나 1259년 고려 태자의 입조 이후로는 반대로 외교적 방법으로 고려를 복속시키기 위한 몽골(원)의 전략이 두드러진다. 오랜 군사적 압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 그리고 남송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몽골의 고려에 대한 정책 전환을 가져온 것으로 생각된다. 외교교섭이라는 이러한 상호간의 절충은 결과적으로 고려의 폐합(廢合) 가능성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고, 그 타협적 절충선이 ‘원 간섭’

이라는 수준이었다.

1270년 몽골에 복속하였지만 불구하고 고려가 최소한의 정치적 독립성을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은, 몽골의 일방적 요구에 대하여 50여 년 이상 군사 혹은 외교대응을 지속하였던 것이 중요한 배경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무인정권이 주도한 몽골과의 장기항전이 많은 내부적 모순을 축적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몽골에 대한 고려의 완전한 예속을 예방하는 기능으로 작용하였다는 측면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쿠빌라이의 고려정책과 원-고려관계의 전환점

忽必烈의高麗政策與元麗關係的轉振點

천더즈 (陳得芝, 난징대학)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쿠빌라이의 고려정책과 원-고려관계의 전환점

천더즈 난징대학

1. 몽골의 고려에 대한 군사침략

칭기스칸이 제국을 건설한 후 몽골은 무단히 사방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재부(財賦)를 약탈하던 것에서 차츰 정복과 점령으로 바뀌었다. 고려와 몽골 사이에는 요동을 차지하고 있는 거란과 여진의 재지세력이 가로 막고 있었기에, 당초 고려는 몽골의 확장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 1216년(고려 고종3년) 반몽(反蒙) 거란세력은 요동에서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자 고려로 달아나 각지의 성을 공격하고 빼앗으며 살육을 자행했다. 1218년 몽골 원수 합신(哈臣, 또는 합진(哈眞))과 찰랄(札剌)이 이끄는 군대가 고려로 진입하여 거란 반당을 추격하였으며, 고려 서북면원수 조충(趙冲)과 병마사 김취려(金就礪)는 명을 받들어 몽골군과 연합하여 거란 잔당을 토벌하였고, 이로써 강동성에 퇴거해 있던 거란 잔당은 다급히

투항하였다. 이리하여 고려와 원 쌍방은 “약위형제(約為兄弟)”하였다.¹ 사실 몽골 통치자는 고려와 우호관계를 신속(臣屬) 관계로 보고 이때부터 부단히 고려에 사자(使者)를 파견해 공물을 요구하며 주구가 끊이 없었다. 칭기스칸의 서정(西征) 동안 말제(末弟) 테무게 옷치긴(斡赤斤)은 본토(本土)를 유수(留守)하며 동부(東部)지역을 관할하였다. 『원사(元史)』 『고려전(高麗傳)』에 태조 14년(1219) 9월, 황태제국왕(皇太弟國王, 즉 옷치긴)과 원수(元帥) 합신찰랄은 사자를 보내 각각의 서신(書信)으로 고려에 입공(入貢)을 재촉하였다. 태조 15년(1220) 9월 몽골의 “대두령관(大斗領官)인 감고고(堪古古)와 저고여(著古與) 등이 다시 황태제국왕의 서(書)로 [공납을] 재촉”하였다. 16년(1221) 8월 · 17년(1222) 10월에 저고여는 잇달아 고려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 18년(1223) 8월에 선차(宣差) 산출알(山朮歹) 등은 “다시 황태제국왕의 서(書)를 가지고 [고려에] 공헌(貢獻)을 독촉했다.”² 『고려사』 『고종세가(高宗世家)』에 따르면, 고종 8년(1221) 8월 몽골 사자 저고여 등이 “황태제의 균

1 『高麗史』卷103, 「趙沖傳」에 哈真이 通事를 통해 元帥府에 牒을 보내 고려로 하여금 “식량과 물자를 보내 도우되 부족하지 않게 하라고 하였는데, 그 言辭가 매우 엄하였다. 또한 황제가 [거란]적을 격파한 후 형제 맹약을 맺으라고 하였다”; 고려 사자가 몽골의 군영의 이르자 동진의 원수가 그를 연회에 초대하고는 “양국이 형제를 맺었으니 마땅히 국왕에게 아뢰고 문첩을 받아오라” 등등의 기재가 있다. 후에 고려인이 고려와 몽골의 관계를 언급할 때 혹자는 거란 잔당을 共滅한 뒤 “양국이 형제맹약을 맺었다”라고 하지만 대부분은 다만 고려가 이때 몽골에 귀부한 것이라고 언급한다. 『元史』 『高麗傳』에서는 단지 …… 기재하였을 뿐이고 양국이 형제맹약을 맺었다라고 한 것은 아니다. 李齊賢은 『益齋亂稿』卷6, 「在大都上中書都堂書」에서 거란잔당을 토벌한 후 “이에 兩元帥(哈真과 劄刺)를 가리킨다)와 趙沖이 형제가 되기로 맹세하였다”라고 했고 『金公行軍記』에서도 金就礪와 趙沖이 몽골 원수 哈真 · 劄刺과 형제 맹약을 맺었다라고 기재하였다.

2 『元史』 『高麗傳』, ‘皇太弟國王’은 옷치긴(斡赤斤)의 칭호로 『元史』 『宗室世系表』에 보인다. 中華書局 点校本에서 “國王”과 “皇太弟”를 끊어서 읽었는데 이는 틀린 것이다.

지(鈞旨)를 전하고” 엄청난 수량의 공품[貢品, 달피일만령(獺皮一萬領)·세주 3천 필(細紬三千匹)·세저 2천 필(細苧二千匹)·면자 1만 근(綿子一萬斤)·종이 10만 장(紙十萬張) 등을 요구하였다. 이규보가 쓴 「몽고국사회상황대제서(蒙古國使回上皇大弟書)」에서 옷치긴은 일찍이 여러 번 사자를 고려에 보내 공물을 요구하였다고 했는데, 「고종세가」에 기재된 물품 외에도 여자아이·한어(漢語)를 할 줄 아는 자와 수공업자들을 요구하였다.³ 이규보가 「상황대제서(上皇太弟書)」에서 언급했듯이, 고려는 “[요구하는 물품이 너무 많아] 매번 균지(鈞旨)를 어겼고, 요구하는 것은 끝이 없으니 소국(小國)이 어찌 그것을 감당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저가(這可)와 희속불화(喜速不花), 찰고야(察古也, 즉 저고여) 등 몽골 사자가 부단히 고려에 와서 물품을 요구하였고, 이때 몽골에 귀부한 동진국(東眞國)도 이 기회를 틈타 고려에 끊임없이 물품을 요구하였다. 1224년 저고여가 다시 고려에 왔고, 이듬해 초에 공물을 가지고 돌아가는 도중에 피살되었다. 몽골은 고려가 살해한 것이라고 보고 사람을 보내 책문(責問)하려 하였으나 다시 변계(邊界)에서 화살을 맞고 돌아오자 고려와 몽골의 왕래는 마침내 단절되었다.⁴

3 『李相國文集』卷28. 이 글은 아마도 1223년 몽골의 사자 山術友가 전한 옷치긴의 ‘鈞旨’에 대한 회신일 것이다. 『元史』 「高麗傳」에는 옷치긴이 적어도 3차례에 걸쳐 고려에 사자를 보내 공물을 요구한 것을 기재하고 있는데, 이규보의 이 글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몽골은 著古與가 피살된 책임을 고려에게 돌렸다. 이에 대해 고려는 저고여가 이전처럼 東眞의 경내를 거쳐 오지 않고 婆速路를 경유하여 오다가 賊人에게 피살되었다고 해명하였다. 몽골이 저고여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을 때 邊境에서 활을 쏘아 돌려보낸 것도 東眞 사람이 속이고 고려가 이미 배반했다고 말하는 등 동진의 이간질이라고 해명하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李奎報, 「蒙古行李齋去上皇帝表」, 『李相國文集』卷28; 『高麗史』卷23, 「高宗世家」19年 11月 ‘上皇帝陳情表’ 참조. 고려와 몽골이 관계를 단절하게 된 일은 동진과 관련이 있다. 『高麗史』, 「高宗世家」11年(1224) 正月에 동진국의 사자가 2개의 첩문을 가져왔는데, 그중의 하나에서 “蒙古成吉思師老絕域, 不知所存, 訛赤

1231년 몽골의 대칸 우구테이는 살례탑(撒禮塔)이 이끄는 대군을 보내 ‘살사(殺使)’ 직명으로 고려를 침입하여 “40여 개 성을 빼앗고,…… 관(官)을 설치하여 그 땅에 분진(分鎭)하였다(즉 다루가치).”⁵ 몽골군은 저항자들을 도살했을 뿐만 아니라 [가령 철주(鐵州)와 평주(平州)] 도처에 불을 지르고 약탈을 자행하여 “지나는 곳마다 잔멸(殘滅)하지 않은 곳이 없고”, “가옥에 불을 지르고 백성의 재산을 무수히 약탈하였다.” 몽골군은 개경성 바깥에 주둔하면서 지(旨)를 전달하여 고려 국왕의 친신 입조를 강요하고, 엄청난 수량의 물자와 남녀(군복일백만투(軍服一百萬套)·상호수달피량만령(上好水獺皮兩萬領)·대소마각 1만 필(大小馬各一萬匹)·관환지가남녀해아각일천인(官宦之家男女孩兒各一千人) 등)을 요구하였다. 1232년 고려는 사자를 보내어 몽골을 응대하며 ‘표를 올려 칭신(稱臣)’하는 동시에 저고여 살해사건은 고려의 소행이 아님을 해명하고, 또 몽골이 요구하는 물품을 모두 제공할 수 없음을 설명하였다. 다른 한편 고려는 강화도로 천도하여(7월) 저항하였고, 몽골이 설치한 다루가치를 살해하였다. 살례탑은 다시 군대를 이끌고 고려로 들어왔고, 그가 처인성을 공격할 때 화살에 맞아 죽자(12월) 몽골군은 퇴각하였다.⁶ 1235~1240년까지 몽골군은 해마다 고려를 침략하여 남부의 동경(東京, 경주), 전주(全州) 일대까지 깊숙이 진입하고, 부단히 사자를 보내 공물을 요구하며 국왕의 친조를 압박하였다. 1241년 고려왕은 왕족인 영녕공(永寧公) 준(綽)을 국왕의 아들이라고 속이고 질자로 몽골에

斤貪暴不仁，已絕舊好”라고 하였다. 동진이 고려에 이 일을 알린 것은 명백히 고려가 몽골에 대한 공납을 중지시키고 자신들이 그 이익을 대신 취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칭기스칸은 서정으로 동쪽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고 동진은 기회를 틈타 부단히 고려를 침략하고 사자를 보내 물품을 요구한 것이 그 증거이다.

5 『元史』 「太宗本紀」.

6 『高麗史』 「高宗世家」 18年(1231) 8월~12월의 기사.

보내자 침략 행위가 다소 줄기도 하였다. 1247~1248년에 몽골군은 다시 고려에 들어와 주둔하며 수달을 잡는다고 핑계대면서 산천의 궁벽한 곳까지 탐색하면서, 숨어 있던 백성들은 전부 납치·약탈당하여 화를 면한 자가 별로 없을 지경이었다.⁷

1251년 몽케가 즉위하자 다시 사자를 보내 고려왕이 출륙환도와 친조(親朝)를 명하고, 그렇지 않으면 “군대를 보내 토벌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⁸ 1253년부터 몽골은 고려가 ‘역명(逆命)’한 것으로 보고 침략전쟁을 더욱 확대했다. 종왕(宗王) 예쿠(야고(也古))와 원수(元帥) 잘라이르타이(札剌兒帶), 즉 『고려사』에 나오는 차라대(車羅大)가 잇달아 군대를 이끌고 고려로 침입하여 해마다 약탈이 끊이지 않았고, 많은 성지(城地)를 파괴하였다. 잘라이르타이는 “(고려의) 군신들이 육지로 나오면 다 머리를 깎게 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국왕을 데리고 돌아가겠다. 만일 어느 하나라도 따르지 않으면 군사는 돌아갈 가망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였다. 고려는 그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고, 각지에서 성을 지키며 저항하는 군민들이 항상 있었기에 몽골군은 몽케가 “만약 명을 거스르면 짐은 절대로 ……”라고 말한대로 마음껏 살육을 자행하여 1254년 한 해에만 “몽고군에게 잡혀간 남녀가 무려 26만 6,800여 명이요, 살육을 당한 사람은 이루 셀 수가 없었으며 그들이 지나간 주(州)·군(郡)은 모두

7 『高麗史』「高宗世家」34年 8月の 기사.

8 『高麗史』「崔怡傳」에 따르면, 고종 39년(1252)에 고려는 李峴을 몽골에 보내 그 해 6월에 出陸하겠다고 했다. 이에 현종 몽케는 사신을 보내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만약 국왕이 출륙하여 사신을 접대하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고려왕은 권신 최항의 뜻에 따라 出迎하지 않자 몽골 사신은 크게 노하였다. 이때 “식견 있는 사람들은 최항이 천박한 식견으로 국가 대사를 그르쳤으니 금후 몽골병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얼마 후 과연 몽골군이 대거 침략하여 “州郡을 도륙하고 그들이 지나는 곳마다 잿더미만 남겨졌다.”

갯터미가 되었다”라고 한다.⁹ 1255년 이후 잘라이르타이는 다시 한 차례 군대를 이끌고 고려에 진입하였다. 그는 군영을 세우고 주둔하며 군사를 사방으로 보내 약탈을 자행하면서 국왕의 출륙환도와 태자의 입조를 퇴각 조건으로 내걸었다. 1258년 잘라이르타이의 군대는 고려의 구경(舊京)에 주둔하여 사방을 유린하며 백성과 재물을 약탈하여 “[이해] 여러 도의 곡식이 전부 몽골군에게 약탈당하였다”고 한다. 서경(西京, 평양)에 주둔한 몽골군은 수성(修城)과 둔전을 장기 주둔계획으로 삼았다. 1259년(고려 고종46년) 3월, 고려 사자는 몽케 황제를 근견(覲見)하여 철병을 간청하였는데, 몽케는 “그대들이 이미 우리와 동심(同心)이라면 왜 우리 군대가 고려에 주둔하는 것을 꺼리는가? 또 서경 이외에는 일찍부터 우리 군대의 주둔지다. 만약 너희가 속히 강화도에서 출륙(出陸)한다면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단지 내가 명령하면 그만일 따름일 것이다”¹⁰라고 말했다. 이것은 사실상 몽골이 고려를 군사 점령했음을 보여주는 말이다. 4월, 고려 태자 왕전(王僊)이 부친을 대신해 입조하여 이를 “입조하면 파병(罷兵)하겠다”는 약속과 맞바꾸려 하였다. 이때 몽골은 요동에 군대를 결집시키고 다시 대거 고려에 침입하려는 준비를 하였지만 태자의 입조로 잠시 철병을 미루고 대신 관원을 고려에 파견하여 강화도에 새로 지은 성을 허물 것을 독촉하였다. 그러나 고려 경내에 주둔하는 몽골군은 여전히 각처에서 인명과 재물을 약탈하고 출륙한 고려 병사는 모두 몽골군의 포로가 되었다.¹¹

몽골의 전(前) 사한(四汗, 칭기스칸~몽케) 시기 고려 침략 전쟁은 30여 년

9 『高麗史』「高宗世家」41年 7月~12月.

10 『高麗史』「元宗世家」高宗 46年 8月條.

11 『高麗史』「元宗世家」高宗 46年 7月과 12月.

동안 이어졌고, 이것은 고려 백성들에게 엄청난 재난이었다. 고려 문헌에는 이 시기 사람들의 비분(悲憤)한 감정이 잘 나타나 있다. 이규보(李奎報)는 「답동진별지(答東眞別紙)」에서 몽골이 “의심 많고 잔인하기가 막심하며” 신의를 저버리고 “도처에서 횡행하며 잔학하게 닥치는 대로 노략질하며”, “[고려를] 잡아 삼킬 뜻을 갖고 있다”며 고려인이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대항하는 전쟁은 정의라고 말하였다. 김구(金丘)는 「과서경(過西京)」이라는 시(詩)에서 “슬픈 노래로 이 강산을 애도하려 하나 혹여 신령께서 남몰래 눈물 흘릴까하네”라며 예전 전성기의 서도(西都)인 서경이 몽골 침략 후에 “지금 왕사(往事)는 몽땅 쓸어버린 듯, 가없어라 성궐 터에는 가을 풀만 우거졌네”라고 탄식하였다. 그는 또 「과철주(過鐵州)」라는 시(詩)에서 살례담(撒禮談)이 거느린 몽골군을 ‘구(寇)’와 ‘로(虜)’라고 칭하며, 주관(州官) 이원정(李元禎)을, 영웅적인 항전(抗戰)으로 자신을 불살라 의연하게 죽은 열사로 칭송하였다.¹² 당시 중원(中原)의 사인(士人)들도 고려인이 당한 고난을 동정하며 몽골군의 야만행위를 질타하였다. 학경(郝經)의 「고려탄(高麗歎)」이라는 시가 대표적이다.

고려가 나라를 세운지 어언 천여 년, 산을 걸치고 바다에 이어진 동북에 치우쳐 있어 문물제도는 漢唐을 동경하고, 衣冠禮樂은 中原과 같다. …… 天兵 때문에 모두 산산조각 나고, 稱臣納質하여도 병사가 물러가지 않는구나. 파괴되고 약탈당한 지 50여 년, 딱하고 가련할 뿐이니 이 무슨 죄란 말인가! 몽골은 모든 포로를 幽燕 지방에 팔아 해마다 高麗錢을 가불해 가는구나. 창백하고 초췌한 모습의 [인신매매 점포에 팔려고] 늘어진 [고려]사람들은 너무도 가련하구나! 전년에 公輔太子[譯者: 고려세자] 일행이 鈞魚山에 천자를 알현하러 [가는 길에] 거

12 金丘, 『止浦先生文集』 卷1.

리에서 [늘어진 고려인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차마 쳐다볼 수 없]에 얼굴을 가리며 지나자 [이를 목도한 고려인들이] 모두 목을 놓아 우니, 그 곡성이 燕人の 귀에까지 사무쳤네. 송을 섬기고, 요·금을 섬기었지만 지금처럼 억울함과 고통이 깊지 않았도다. 신심을 다해 항복하여도 모두 믿지 않고 고려를 전부 도륙하려고 하는구나. 오호 애재라! 언제나 이 살육당할 운명을 면할 것인가!¹³

2. 쿠빌라이의 고려정책

고려 고종 46년(1259) 4월, 태자 왕전(王腆)이 몽골에 입조하여 사천으로 가서 대간을 알현했다. 여정은 동경(東京, 요양) - 연경(燕京)¹⁴ - 동관(潼關) - 경조(京兆)인데, 대간 문계가 이미 7월에 조어산(釣魚山)에서 죽었기 때문에 결국 몽골 행영(行營)이 있는 육반산(六盤山)에 다다랐다. 이때가 바로 몽골 정국변화에 관건이 되는 시기였다. 악주(鄂州)에서 대남송(對南宋) 전선을 지휘하던 쿠빌라이와 카라코름(화림(和林))에 유수(留守)하던 아릭부케가 모두 제위(帝位)를 노리고 있어 관원(官員)과 장령(將令)들의 지지를 얻어야 했고, 당시 육반산에 주둔한 몽골군의 대다수는 아릭부케를 지지하

13 『郝文忠公陵川集』 卷10. 이 시는 1260년 郝經이 宋에 파견되기 전에 쓰여졌다. 苟宗道 纂, 『郝經行狀』 참조.

14 『高麗史』 「元宗世家」 고종 46년 12월 癸卯條, “(태자를 수행했던) 李世材가 몽골 사신 於散 등 네 사람과 함께 돌아 왔다. 처음에 이세재가 연경에 있을 때 洪福源의 아들이 사람을 시켜 황제에게 참소하길 “고려가 섬에서 나와서 항복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이세재가 이것을 알고 먼저 也速達에게 말하길 “듣건대 참소하는 자가 있다고 하니 곧이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야속달이 곧 洪福源의 아들 洪茶丘를 잡아 가두고 여산을 보내 이세재와 함께 출륙에 관한 실정을 조사하라 하였다”라는 기사가 있다. 이를 통해 태자 일행이 중도에 燕京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었다. 11월, 쿠빌라이는 아릭부케가 이미 친신(親臣)을 보내 한지(漢地)에서 정병(征兵)하고, 연경행성(燕京行省)의 권한을 접수하려는 준비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윤11월 신미(辛未, 초2일)에 신속히 약주(鄂州)에서 철수하여 북환(北還)하였다. 몽골 황실의 양파(兩派)가 제위를 다투는 일촉즉발의 복잡한 정세 속에서 왕전(王佛)은 현명한 선택을 하였다. 곧 그는 서둘러 변량(汴梁)으로 달려가 강한(江漢)에서 북상하던 쿠빌라이를 맞이하려 ‘양초(梁楚)의 교외’에서 조복(朝服)을 입고 상아로 만든 홀을 들고, 따르던 신하들도 역시 모두 관복에 따른 의복을 입고 배열하여, 길 가에 서서 알현하였다. 쿠빌라이는 기뻐하며 “고려는 만리(萬里)나 떨어져 있는 나라요, 당 태종이 친정(親征)하고도 항복시킬 수 없었는데 지금 그 나라의 세자가 스스로 와서 나를 따르니 이는 하늘의 뜻이로다”라고 하면서 “크게 칭찬하고는 함께 개평부에 이르렀다(俱至開平府)”라고 했다. 그런데 이 단락은 『고려사』 「원종세가」 원년 3월 정해조(元年 三月 丁亥條)에 있어 쿠빌라이 즉위 후의 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 이전의 사건을 서술한 것으로 쿠빌라이와 왕전이 ‘구지개평부(俱至開平府)’라고 한 것은 착오이다. 마땅히 ‘구지연경(俱至燕京)’이라고 해야 한다. 더 상세한 것은 아래를 참조하면 된다. 사사(史事)에 정통한 이제현은 이때의 중대한 배견(拜見)을 언급하여,

황제가 강남에서 회군할 때에 우리 忠敬王이 天命과 人心이 歸復하는 바를 알고 수륙 5천 여 리를 거쳐 梁楚 지방까지 가서 알현하였다.¹⁵ 世祖 文武皇帝가 襄陽에서 작전하고 있었을 때 아릭부케가 漠北에서 변란을 선동하려 하자 諸侯들이 불안과 의혹에 휩싸여 각기 去就를 생각하였다. 우리 忠敬王은 당시 세자로서 온갖 어려움을 감수하며 곧장 汴梁까지 가서 도중에 세조를 맞이하였다. 세조는 세자 일행을

15 『益齋亂藁』 卷6, 「在大都上中書都堂書」.

보고는 놀라고 기뻐하며 ‘고려는 멀리 떨어진 나라이다. 지금 내가 北歸하여 장차 大統을 이으려고 하는데 세자를 보내어 자진하여 내게 귀의하러 왔으니 이는 하늘이 나를 돕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¹⁶

이 단락은 당시 급박하게 자신을 추대하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동분서주하던 쿠빌라이의 기쁜 심정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것이다. 만약 그가 상수(象數) 징조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황위 쟁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려 태자가 와서 입조한 것은 의심할 여지없는 길조로 여길 것이다. 아마도 이때 만남이 그가 고려에 대한 정책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⁷

왕전(王僉)이 변량(汴梁) 부근에서 쿠빌라이를 알현한 것은 대략 윤10월 초10일 전후이고, 20일에 쿠빌라이는 왕전(王僉)을 데리고 연경(燕京)

16 李齊賢, 『東文選』 卷61, 「上征東省書」, 또 『益齋亂稿』 卷6, 「在大都上中書都堂書」에도 보이는데, “기미년(1259, 고종 46)에 世祖皇帝께서 江南에서 회군할 때, 우리 忠敬王(元宗)이 천명이 돌아가는 것과 인심이 복종함을 알고는 6천여 리를 跋涉하여 汴梁까지 가서 영접하였습니다”; 『同崔松坡贈元郎中書』에는 “世祖皇帝께서 南征에서 돌아와 장차 大統을 잇게 되었을 때 아우 하나가 朔方에서 변고를 선동하므로 諸侯들이 우려하고 疑懼하여 도리가 매우 삼엄하였습니다. 우리 忠敬王께서는 群臣을 거느리고 梁楚의 교외에서 [세조황제를] 영접하셨습니다. 천하가 먼 나라 사람들이 기뻐하며 복종함을 목도하고는 천명이 돌아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17 『高麗史』 「元宗世家」 3년 12월 乙卯條에 쿠빌라이가 역서를 반포하고 또 거기에 대한 조서에서 “卿은 동쪽 먼나라에서 上國에 신속하였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有難) 국경을 넘어 來歸하였다. 특별히 그대를 새 국왕으로 승인하여 본국으로 돌려보냈으며 모든 상주한 바는 들어주지 않은 것이 없었다. 가령 의관을 바꾸지 않을 것, 군대를 철수시킨 것, [강화도에서] 나와 출륙하는 것, 포로로 잡힌 자들을 돌려보낸 것 등 이런 것들은 너무 많아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쿠빌라이가 고려를 특별 대우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곧 자신이 ‘有難(마땅히 아릭부케와의 제위 다툼을 가리키는 것이리라)’에 있을 때에 王僉이 국경을 넘어 來歸한 때문이다.

에 도착하였다. 악주(鄂州)에서 연경까지 가는 데 19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데서, 일정의 촉박함을 알 수 있다. 쿠빌라이는 곧바로 아릭부케 일당을 처치하는데 착수하였고, 중원 한지의 군사력을 장악하고는 연경에 3개월 넘게 주둔하였다. 그리고 이듬해(庚申, 1260) 3월, 비로소 개평(開平)에 도달하였다. 연경에 있는 동안 그 번부(藩府)의 근신(近臣)인 조량필(趙良弼)이 건의하여 말하길,

고려는 비록 소국이나 산과 바다로 가로 막히어 우리가 用兵한 지 20여 년이 되었지만 아직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前歲, 고려 태자 王僖이 내조하였으나 마침 황제께서 西征을 나간지라 [왕전이] 머문 지 2년이나 되었습니다. 여태껏 그에 대한 대접이 소박하여 그 마음이 [우리를 따르도록] 모으지 못하였으니 그는 일단 돌아가면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그 宿食을 후하게 하여 藩王의 예로 대접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듣건대, 그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니, 만약 王僖을 왕으로 삼아 귀국시킬 수 있다면 반드시 感恩하고 積德하여 臣職을 닦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는 단 한명의 군졸도 힘들게 하지 않고도 一國을 얻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염희헌(廉希憲)도 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쿠빌라이는 곧 왕전에 대한 접대 규격(規格)을 높이고, 얼마 후 그를 귀국시켜 왕위를 계승하게 했다. 『원사(元史)』 「세조본기(世祖本紀)」에서는 이 일을 경신년(庚申年) 3월 24일로 쿠빌라이 즉위 후의 일로 기재하고 있는데, 실은 착오이다. 『고려사』 「원종세가(元宗世家)」에 동년(同年) 2월에는 “임술(壬戌)(24일), 왕이 경조부(京兆府)에 있었는데, 부고(訃告)를 듣고 상복을 입었다가 사흘 만에 벗고 쿠빌라이 대왕의 명을 받고 곧 귀국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때 왕전이 확실히 쿠빌라이를 따라 경조가 아닌 연경에 머무른 사실

에서 본다면,¹⁸ 이것은 당연히 쿠빌라이가 그를 귀국시켜 왕위를 계승하게 한 시기를 기록한 것이다. 동서(同書)에 실린 같은 달 을축(乙丑, 27일)에 왕전과 수신(隨臣) 및 몽골 호송 인원이 이미 서경(西京, 평양, 이때 몽골군의 점령하에 있었다)에 도착하였고,¹⁹ 3월 갑신(甲申, 17일)에 개경에 다다르고, 정해(丁亥, 20일)에 바다를 건너 강화에 도착했다. 먼저 쿠빌라이는 왕전이 서경에서 8~9일 동안 머물렀다는 얘기를 듣고 변고가 생긴 것인지 의심하여 사자를 보내 그에게 고려 정책을 상세히 설명한 영지(令旨)를 하달하고, 왕전이 속히 귀국하여 왕위를 계승할 것을 정중히 독촉하였다. 『고려사』 「원종세가」에 전문이 실려 있는데, 그 요점을 추리면 다음과 같다.

그대는 처음에 세자로서 幣帛을 가지고 성심을 맹세하러 몸소 예방했다가 부왕이 죽자 나의 명령이 있기를 요청하였는데, 참으로 가여운 바가 있어 귀국시켰다. 옛 강토를 모두 회복하여 그 땅에 안착하게 하고 국가를 보존해 주었으니 이는 널리 지극한 덕을 베풀고, 오랫동안 남아 있던 분쟁거리의 사소한 문제들을 없애 버리려고 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미 변방의 장령들에게 군사를 철수할 명령을 기다리라고 지시한 바 있다. …… 다시 섬(강화도)에 남아 있는 백성들이

18 王儼이 고종 46년(1259) 4월에 入朝하고, 5월에 東京(遼陽)에 이르고, 후에 燕京, 潼關, 京兆(西安)을 거쳐 六盤山에 이르러 몽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단락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지만 경조에 다다랐을 때 필경 몽케가 病死하였고, 四川에 들어갔던 몽골군 주력이 육반산으로撤回한 뒤라고 판단할 수 있다. 고종은 이해 6월에 죽고, 朴天植은 명을 받들어 몽골에 가서 부고를 알리고, 9월에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즉 당시 연경에 가서 소식을 알리고 귀국(몽골사자와 동행)한 것이다. 만약 왕전이 京兆에 도착한 것이 9월이라면 ‘聞訃服喪’했을 가능성이 있기에 이듬해 2월에서야 부고를 알았을 리가 없는 것이다.

19 왕전 일행이 연경에서 출발하여 4일째 서경에 도착했는데 行程이 이렇게 빠른 것은 불가능하다. 일자에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남는다.

오랫동안 도탄에 빠져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군대를 다하여 끝까지 토벌하는 것은 결코 나의 본심이 아니다. …… 변방의 장수들에게 명령하여 무슨 일이든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처리하게 하고, 죄 짓고 도망해 온 자의 말을 듣고 고려와의 관계를 나쁘게 하지 말 것이며, 유언비어가 떠돈다고 이미 정한 맹약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너희가 오직 성심으로 대한다면 일체 묻지 않을 것이다. 마땅히 넓은 은혜를 베풀어서 천하가 나에게 귀순하며 나의 감화를 새로이 받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尙書 金仁俊을 비롯하여 그의 일파였던 자들로서 관리·군인·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내 명령이 하달되기 전에 혹 내란을 음모한 주모자가 있었거나, 내 군대에 저항하였거나, 이미 항복하였다가 다시 반역하였거나, 원한 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사람을 죽였었거나, 용납될 길이 없다고 본 주인을 배반하고 망명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여러 사람들의 협박을 따랐거나 등등의 일을 한 자들은 응당 우리나라 사람들과 같은 법률로 처벌하되 이미 법을 위반하고 죄를 범한 자는 그 경중을 막론하고 모두 용서하여 줄 것이다. 세자는 빨리 행장을 정돈하여 본국에 돌아가서 정사를 바로 잡되 원수를 풀어 주고, 악감을 없애 덕과 은혜를 널리 베풀어 줄 것이다. …… 빨리 疆界를 바로 잡고 민심을 안정시킨다면 우리 군대가 다시는 국경을 넘어 가지 않을 것이다.

이 영지(永旨)는 비록 쿠빌라이 즉위 직전에 내려진 것이지만 사실상 성지(聖旨)나 다름없으며, 원조의 대 고려 정책기초를 다진 것이다. 그 요점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 ‘옛 강토를 모두 회복 완복구강(完復舊疆)하는 것’과 ‘강계를 바로잡아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 ‘정강계이정민심(正疆界以定民心)’을 허락하고, 아울러 몽골군이 다시는 경계를 넘어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승낙한 것이다. 두 번째, 이전에 일찍이 몽골에 저항했거나 항복했다가 복반(復叛)한 각종 범법자들에 대해서 ‘죄의 경중(輕重)에

상관없이' 모두 사면하고 추구(追究)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 세자의 왕위 계승을 알려 '삼가 내 뜻을 받들어 실천에 옮겨 영원히 동번(東蕃)이 되어 내 휴명(休命)을 선양할 것이다. 공승비훈(恭承丕訓), 영위동번(永爲東蕃), 이양아휴명(以揚我休命)'라고 한 것이다. 『원사』 「고려전」에도 이 전문(全文) 기사를 중통(中統) 원년(1260) 3월 기사 아래에 수록하고 '제(制)'라고 칭하고, '영지(令旨)'를 '성지(聖旨)'로 고치고 쿠빌라이가 자칭한 '여(子)'를 '짐(朕)'으로 고쳐 두었다. 이는 「세조본기(世祖本紀)」에서 왕전(王僊)을 귀국시킨 기사를 제위(帝位) 기사 아래에 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신(史臣)들이 일부러 시간의 전후(前後)를 바꾼 것이다.

「세조본기」에 실린 중통 원년(1260) 4월 기해(己亥, 초2일) 기사에 '조유고려국왕왕전(詔諭高麗國王王僊), 잉귀소부민급기도호(伊歸所俘民及其逃戶), 금변장물천략(禁邊將勿擅掠)'이라고 했다. 신유(辛酉, 24일)에 조서가 송달되었는데 『고려사』 「원종세가」에 전문이 수록되었다.

짐이 천명에 순응하여 조상들의 큰 공적을 받았으며, 위로는 天道를 생각하여 온 천하 백성들을 원근과 대소 차별이 없이 一視同仁하고 있다. 그대가 우리에게 귀복하였기에 내가 이미 그대를 국왕으로 승인하였다. 이제 나는 그대와 邊將들의 글을 얻고서야 고려 국내의 실정을 알게 되어 가련히 여기었다. 보고한 모든 것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것이다.

- (1) 귀국 조정이 섬에서 육지로 나와 백성들을 편히 살게 하자는 뜻은 나도 기뻐하는 바이다. 지금 바야흐로 만물이 자라는 때이니 우물쭈물하며 스스로 한 해의 제책을 그르칠 것이 아니라 마땅히 농사와 잡업을 장려하여 피폐한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우리 군사를 철거해 달라고 청한 것은 만약 군사들이 국경 부근

에 주둔하여 고려에 압력을 가한다면 소란이 없지 않을 것이므로 이미 장수들에게 즉시 군대를 거느리고 귀환하라고 지시하였다. 모두를 자신처럼 아끼는 짐의 마음을 잘 체득하고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이다.

- (3) 지난해 봄에 붙잡혔거나 도망하여 온 인민들을 놓아 보내 달라는 문제는 이미 해당 관원들에게 명령하여 전국에서 조사하고, 조회하여 고려와 약속이 있는 이후에(已下有司遍行刷會自言約之後) 붙잡혀 온 자나 도망 온 자는 놓아주어 귀국케 하였으니 이들이 고려에 도착하거든 잘 받아서 계속 돌봐 줄 것이다.
- (4) 고려에서 죄과를 범한 자들이 있겠지만 이미 지난번에 내린 대사령에 따라 석방하라. 그러나 군인으로 남의 물건을 실 한 올이라도 함부로 약탈한 자가 있다면 모두 사실대로 보고하여 법에 따라 처단할 것이다.²⁰

라고 하였다. 『원사』 「고려사」에서는 왕전(王僊)의 요청으로 운허한 4항의 조치를 개괄적으로 ‘僊求出水就陸，免軍馬侵擾，還被虜及逃民，皆從之’라고 하였는데, 이는 매우 불안전하다.

같은 해 6월에 고려 영안공(永安公) 왕희(王僖)가 즉위를 축하하러 오자 쿠빌라이는 그가 회반(回頒)하는 봉책(封冊)·호부(虎符) 및 성지(聖旨) 3도를 국왕에게 가져가게 했다. 그중 하나는 증원제도를 본떠 중통원년(中統元年)으로 건원(建元)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려에 대한 정책을 선포한 것이다. 즉,

20 상술한 4가지 항목의 조치 중에서 포로와 逃戶 반환 年限을 ‘言約之後’라고 하였는데, 나는 이것이 1219년 고려와 몽골이 함께 거란 잔당을 토멸한 후의 ‘約爲兄弟’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쿠빌라이가 下令한 ‘遍行刷會(즉 광범위한 조사)’는 다년간 포로로 잡히거나 도망해 온 고려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의관은 본국(고려)의 풍속대로 입고 쓸 것이니 모두 바꿀 것이 없다.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 오직 조정에서 파견한 자로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일체 엄금할 것이다. 옛 수도로 옮기는 시기 문제는 역량에 따라 빨리 하든 늦게 하든지 할 것이다. 고려에 주둔하고 있는 군사들의 철수는 가을을 기한으로 한다. 본래 배치하였던 다루가치 李魯合反兒拔靚魯 일행은 모두 서쪽(元)으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였다. 이곳(고려)에서 살겠다고 자원한 사람들이 10여 명 되는데, 지금 와 있는 사신도 그들이 어떤 곳에 정주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으니 이 일은 끝까지 구명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금후에 또 이렇게 머물러 있겠다고 하는 자들은 결코 허가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조서에서는 “그대가 국왕이 된 후 두 번이나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성의 있게 보내더니 이번에는 또 절에서 나를 위하여 축수의 기도를 올린다고 하니 더욱 그대의 거짓 없는 심정을 알 수 있다. 그대가 제기한 모든 문제들은 시행하도록 이미 조서를 내렸다. 사신이 돌아가겠다고 하므로 특히 총애하는 뜻을 표시하는 바이니 무엇이든지 백성을 유족하게 하고 또 나라에 유리한 일이라면 편리할 대로 처리할 것이다.”²¹

고려 국왕에게 출륙환도를 압박하는 것이 이전의 몽골 통치자들에게는 가장 엄격한 요구였는데, 쿠빌라이는 융통성 있는 태도를 취하여 고려 국왕이 하소연한, 구도(舊都)가 파괴되어 복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역량에 따라 행하도록[지원7년 임연(林衍)의 국 폐행사건을 처리한 후에 비로소 환도]하였다. 이전에 몽골 귀족과 대신, 장령들이 자주 고려에 사자를 보내 제멋대로 공물을 요구한 것은 고려 인민을 심각

21 『高麗史』「元宗世家」元年 8月壬子. 王暉, 『秋澗集』卷82, 「中堂事記」에 中統二年 8月 10일에 고려 국왕 王僖에게 手詔한 것이 실려 있는데 거기에 “……可封高麗國王, 仍統治東方諸國如故”라고 있다. 이것은 고려 권신의 擅權 때문에 재차 내린 조서다.

하게 소요시키는 것이었기에 쿠빌라이는 이것도 금지시켰다. 몽골군이 고려에 주둔하는 것은 사실상 군사 점령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 위해(危害)가 더욱 심각했는데, 쿠빌라이는 즉위 후에 명을 내려 '서경둔병(西京屯兵)'을 철회하였고, 조서에서 다시 철군 시한을 선포하였다. 이외에도 쿠빌라이는 여진인(女真人)이 고려 경내에서 백성을 약탈하거나 표략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²² 동진 군대와 인근 국경의 여진 적구(賊寇)의 침략은 고려로서는 몽골 입침 다음가는 심각한 위해(危害)였기에 쿠빌라이의 금령은 의심의 여지없이 고려 인민의 재난을 일부분 해소한 것이다. 당연히 이런 우대와 회유 정책을 실행하는 조건은 고려가 반드시 '영위동번(永爲東藩)'하여 국왕의 친조(親朝)·자제입질(子弟入質) 등 번속국의 '육사(六事)'를 이행하는 것이었다. 왕전(王僂, 그후 禎으로 개명)은 즉위하여 국왕 책봉을 받은 후, 이듬해 직접 입조하고 그 후에도 두 차례 친조하였다. 세자 심(諶, 懽)은 여러 차례 입조했는데, 지원11년(1274)에 쿠빌라이는 왕식(王禎)의 청혼을 받아들여 유녀(幼女) 쿠틀룩 켈미시를 세자 왕심(王諶)과 결혼시키고, 혼인으로 더욱 긴밀한 '생구지호(甥舅之好)' 관계를 형성하였다.²³

쿠빌라이는 세계 정복자인 칭기스칸의 손자이자 대몽골국의 대칸으로서 여전히 자신의 할아버지처럼 세계 군주가 되려는 강렬한 지향(志向)을 갖고 있었다. 그는 만년에도 군대를 보내어 자바를 원정하고 실행하고, 패배하고도 여전히 체념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을 전형적으로 보여

22 『元史』卷5, 「世祖本紀」中統3年6月乙未條; 至元元年11月己丑條.

23 원과 고려의 왕실혼인에 대해서는 蕭啓慶, 「元麗關係中的王室婚姻與強權政治」, 『元代史新研』, 臺灣新文豐出版公司, 231~262쪽 참조. '甥舅之好'라는 용어는 『道園學古錄』卷5, 「大慶壽寺大藏經碑」에 보인다.

준다.²⁴ 그는 고려의 내정도 자주 간섭하여 번속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독촉하였고, 고려에 감독관을 파견하여 동란이 출현하거나 이반 징조가 나타나면 군대를 파견해 입경(入境)하여 처리하였다. 가령, 지원 6, 7년에 고려 권신 임연(林衍)이 왕식(王禘)을 폐위하고 동생 안경공(安慶公) 왕창(王滄)을 옹립하자 쿠빌라이는 국왕 두련가(頭輦哥)에게 명하여 대군을 이끌고 국경을 압박하며 정벌 준비를 하게 하였다. 또 고려 반신(叛臣)의 투현(投獻)을 받아들여 서경 50여 성(城)에 동녕로(東寧路)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점령이었다(지원27년에 귀환). 왕식이 복위 후 입조하자 두련가에게 동경행성의 군대를 이끌고 그의 귀국을 호송하게 하고, 서경에 진주시켰다. 아울러 다루가치를 설치하여 감국(監國)하게 하고, 안무사(安撫使)·경략사령군(經略使領軍)·둔전(屯田)을 고려의 남쪽 경계(境界)에 설치하였다. 진도(珍島)(후에 다시 탐라(耽羅)로 도망)도망간 임연의 여당을 정벌하였다. 그러나 쿠빌라이가 고려에 취한 정책은 분명, 상술한 앞의 네 명의 칸(前四汗) 시기의 잔악한 약탈행위나 군사 점령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회유(懷柔)와 안무(安撫)로 고려를 공순(恭順)한 번속(藩屬)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고려에 대한 쿠빌라이의 우대·유화 정책은 상술한 조서(詔書)에서 허락한 각 항목 외에도 사례들이 더 있다. 가령 번속국이 이행해야 하는 치역(置驛)·적호(籍戶)·출군(出軍)·수량(輸糧) 등을 고려가 이행하지 못했는데, 쿠빌라이는 매섭게 독촉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곤란함을 고려하여 강박하지는 않았다. 관련 문제(특히 고려 내정)를 처리할

24 至元 29年(1292)에 원조는 출병하여 자바를 침략했다. 30年 3월에 자바 국왕은 거짓으로 항복했다. 4월에 元軍은 기습 공격을 받고 크게 패하여 철병하여 귀국했다. 쿠빌라이는 자바를 잠시 얻었다가 잃은 것을 매우 내키지 않아했다(「此事猶癢在心」). 이에 재차 10만 군대를 보내 정벌할 준비를 하였다. 許有壬, 『至正集』 卷48, 「劉平章[國傑]神道碑」 참조.

때, 고려인의 의견을 듣고 고려 국왕의 자주권을 존중하였다. 가령 중
 통 2년에(1261) 고려 사자(使者) 전문윤(田文胤)이 귀국할 때, 쿠빌라이가 전
 년(前年)에 왕전이 귀국할 때 호송했던 다루가치 속리대(東里大)와 함께 가
 도록 하자 전문윤(田文胤)은 상주하여 “속리대는 전년에 황제의 명령으로
 주둔군을 철수한 일을 마치 소방(小邦, 고려)이 참소한 것으로 생각하고 성
 을 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소방을 참소하여 있지도 않은
 말을 꾸며 냈습니다. 지금 만일 저와 함께 간다면 이 자가 가서 또 무
 슌 말을 만들어 폐하를 속일지 알 수 없으니 그를 보내지 말아 주시옵
 소서”라고 하자 쿠빌라이는 이 말을 받아들여 다시 파견하지 않았다.²⁵
 지원 11년(1274)에 왕식(王禘)이 죽었다. 세자 심(愍)은 원에서 이미 공주와
 결혼하였는데, 쿠빌라이는 왕식의 유언에 따라 그를 귀국시켜 왕위를
 잇도록 하고 흑적(黑的)을 다루가치로 삼았다. 흑적은 오만하여 부마 국
 왕이 자신을 억누르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는 돌아와서 고려의 정사(政事)
 에 부당함이 많다고 아뢰었는데, 쿠빌라이는 이에 왕심(王愍)에게 조유(詔
 諭)하여 “흑적이 와서 이국의 사안에 관해 말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
 지만 모두 허락하지 않았으니 그렇다는 것을 알아 둘 것이다”라고 하였
 다.²⁶ 탐라와 고려를 치기 위해 고려에 주둔한 힌두(忻都)와 홍다구는 항
 상 고려의 정사(政事)에 간여하였는데, 왕춘(王賄, 諱의 개명)은 부마국왕의 신
 분으로 그들과 맞섰으며 쿠빌라이는 항상 그를 지지하였다.

가령, 지원 14, 15년(1277~1278)에 김방경안(金方慶案)과 고려의 주권을
 침해하는 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것이 있다. 홍다구와 힌두는 간인(奸人)
 이 모함하는 말을 빌려 고려 명신(名臣) 김방경을 체포하고 고문(拷問)하

25 『高麗史』「元宗世家」2年 5月 丁丑條.

26 『高麗史』「忠烈王世家」元年 7月 甲午條, 10月 庚戌條.

자, 왕춘은 억울하게 무고당한 것으로 여겨 김방경을 풀어주었다. 그런데도 홍다구와 힌두는 여전히 김방경을 고문하며 그를 유배 보내려 하였다. 홍다구는 기회를 틈타 군대 3천 명을 증가하자고 주청하였고, 그 중 2천여 명이 이미 압록강을 건넜으나 쿠빌라이는 왕춘의 견해를 받아들여 군대가 돌아가도록 명하였다. 홍다구는 다시 전라도에 토드카순(脫脫禾孫)을 설치할 것을 주청하였으나 쿠빌라이는 들어주지 않았다.²⁷ 지원 15년 4월, 왕춘은 지(旨)를 받들어 공주와 함께 입조하였는데, 힌두가 사람을 보내 “내가 귀국에 온 지도 7년이 되는데 아직도 좋은 일은 하나도 못하고 나쁜 일만 많이 하였으나 왕께서 잘 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왕춘은 상주할 때 김방경의 억울함을 힘써 변론하였고, 힌두의 전횡을 아뢰었다. 힌두는 조서를 받들고 귀국한 후 상주하길 “고려의 재상들은 민호(民戶)를 많이 차지하여 은닉하고, 부역을 면제·회피하니 이것을 금지시켜 주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고, 아울러 여러 영부(領符)를 파하고 군(軍)으로 삼을 것을 청하였다. 쿠빌라이가 그에게 국왕과 상의하였는지를 묻자 힌두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결국 허락하지 않았다.²⁸ 왕춘은 원에 머무는 기회를 틈타 황제에게 홍다구가 본래 군사에 관계되는 일만 담당할 뿐인데 월권하여 고려 정사(政事)에 관여하면서 김방경이 모반을 꾀한다고 모함하고²⁹ 고려의 국정을

27 『高麗史』「忠烈王世家」4年 4月 戊辰條.

28 『高麗史』「忠烈王世家」4年 6月 丁丑條.

29 洪茶丘와 힌두(忻都)는 간인이 모함하는 말을 빌려 김방경을 고문하여 잔혹하게 用刑하였으나 결국 굴복시키지 못했다. 洪茶丘는 사람을 입조시켜 거짓으로 상주하길 “김방경이 양곡을 모으고 선박을 건조하였으며, 많은 병기와 갑옷을 감추어 두고 不軌한 짓을 도모하였으니 [청컨대] 王京(개경) 이남의 要害地에 방수군을 두고, 또한 여러 주와 군에도 모두 다루가치를 두고, 김방경과 그 아들, 사위 기타 일가 권속들은 모두 대도로 압송하여 노예로 만들고,

거짓으로 보고한다고 하였다. 이에 국왕이 홍다구가 고려에 있어서 “신이 나라를 다스리기 어렵습니다!”라고 하며 홍다구 군대의 소환을 청하였다. 쿠빌라이는 상주를 받아들이고 하령하여 홍다구와 고려에 주둔한 군대를 돌아오게 하고, 홍다구가 청한 고려 남부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문제와 각 주군에 다루가치를 설치하자고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엄령(嚴令)으로 귀환하는 군대의 약탈행위를 금지하였다. 왕춘은 다시 상주를 올려 황제가 친신(親信)하는 몽골인을 다루가치에 임명할 것을 청하였는데, 쿠빌라이는 “하필 다루가치를 두겠는가? 그대 스스로 잘 하면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하였다.³⁰ 당시 쿠빌라이의 충애를 받던 고려인 이대순(李大順)은 기회를 타서 쿠빌라이에게 고려 국왕이 자신의 형을 별장(別將)으로 삼도록 명할 것을 청하였는데, 이때 쿠빌라이는 “관인을 선발하는 법이 있거늘 짐이 어찌 간여하겠는가”라고 하고는 이대순 자신이 국왕에게 부탁하도록 하였다.³¹ 쿠빌라이가 고려 국왕의 자주권을 존중한 것은 당시 국왕이 자신의 사위인 요인도 있다. 그러나 원조의 부마 지위에 있던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고려 부마 국왕의 지위

그 소유지는 몰수하여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군량으로 충당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한 후에 김방경이 갑옷을 감춘 것으로 判罪하여 대청도로 유배 보냈는데, 고려 국왕이 印侯를 원에 파견하여 보고하자, 쿠빌라이가 “김방경이 갑옷을 얼마나 감추어 두었느냐”라고 묻자 “46副뿐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쿠빌라이는 “김방경이 이것을 믿고 반역을 도모했다 말인가? 고려에서는 주·현의 조세를 모두 왕경으로 운반하고 있는데, 배들을 만들고 양곡을 저축했다는 말을 무엇 때문에 의심하는 것인가? 또 김방경이 자기 집을 왕경에다 지었다 하는데 만일 그가 반역을 도모했다면 하필 집은 왜 지었는가” 이에 洪茶丘를 조정으로 불러들였다. 국왕 왕춘도 명을 받고 입조하였고, 황제가 김방경의 억울함을 판명하여 마침내 풀려나 복직하였다. 『高麗史』卷104, 「金方慶傳」.

30 이상 모두 『高麗史』「忠烈王世家」4年 7月 甲申·丙子·戊戌諸條 참조.

31 李齊賢, 『櫟翁稗說』前集1.

는 분명 상당히 높았고, 질적으로 차이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상술한 여러 사례들이 설명하듯이, 쿠빌라이는 기본적으로 고려가 “옛 강토를 모두 회복하여 그 땅에 안착하게 하고 국가를 보존해 주는” 약속을 실행한 것이며 결코 다시 경계를 넘어 침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비록 그의 재위 기간에 고려에서 임연의 폐립사건·삼별초 군변(軍變) 등 중대 사건이 일어나서 원에서 대신(大臣)을 파견하여 입경(入境)해서 처리하고, 출병하여 난을 진압했지만 이를 기회로 고려를 점령하거나 고려국의 지위를 바꾸지 않았다. 지원 17년(1280)에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 행성을 설치할 때 북로군은 고려에서 집중적으로 출정하였고, 왕춘(王賻)은 행성의 좌승상에 임명되어 승상 아라한(阿剌罕)과 함께 일을 주관하였다. 또 이때 고려 국왕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임명서의 관함(官衛)에 ‘부마(駙馬)’ 2자를 더하여 권위를 높여주었다. 지원 30년(1293) 왕춘(王賻)은 거(巨)로 개명하였고, 다시 공신 칭호를 부여받았다. 원대 문인들은 자주 쿠빌라이가 고려에 대해 재조지은(再造之恩)이 있다고 언급하는데,³² 이것은 바로 이전에 해마다 되풀이하던 침략전쟁을 멈추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³³ 고려는 이로써 다른 나라들처럼 몽골의 말발굽에 멸망당하는 운명을 피하고 역대이래 중국 황조(皇朝)와 소위 ‘사대(事大)’라는 공사(貢賜)

32 魏初, 『青崖集』卷4, 「賀正表」(上表年代는 기재하지 않았지만 文中에 “襄樊可得而不迫以力”라는 구문을 통해 대거 襄樊을 공격하던 至元 5年 무렵이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王惲, 『秋澗先生大全文集』卷60, 「禦史臺上賀正表」(至元 8年) 참조.

33 姚燧, 『牧庵集』卷24, 「轉運鹽使曹公神道碑」에 “初高麗自太祖世納款, 而國王穆呼哩(=木華黎)方總兵, 歲東征不休, 虔劉人民, 而臧獲其子女. 高麗患之, 棄王城, 遷其民江華島. 世祖哀其首服, 為罷歲征, 使復王城”라고 있는데, 여기서 무갈리[木華黎]가 總兵하여 고려를 침략했다는 것은 착오이다. 그는 1223년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와 고려 정벌은 무관하다.

관계 속에서 본국의 자주적 지위를 유지하였다.

쿠빌라이가 고려에 대해 우대·유화정책을 취한 데에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첫 번째, 대몽골국이 초원 유목제국에서 중원황조(中原皇朝)로 바뀐 것이다. 쿠빌라이가 비록 여전히 자신의 조상들처럼 정복 야망을 갖고는 있었지만 중점은 이미 중원황조의 전통적 ‘만국내조(萬國來朝)’ 사상(그가 일본에 보낸 조서에서도 이런 의향을 드러내었다)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조량필(趙良弼)이 말한 ‘용병(用兵)하지 않고도 일국(一國)을 복속시키자’는 건의를 흔쾌히 받아들인 것이다. 두 번째, 고려는 자고로 ‘시서예의지방(詩書禮義之邦)³⁴’으로 유학과 불교를 숭상하였고, 이는 쿠빌라이의 ‘준용한법(遵用漢法)’ 정책과 부합되는 것이다. 가령, 그는 공자의 말을 이용하여 고려 부마를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는데, 고려 문신의 학문적 재능을 칭찬하고 매우 존중하였다.³⁵ 세 번째, 고려 국왕과 신료들은 원조에 대해 거듭 충신신속을 표명하였고, 게다가 혼인관계로 융통성 있는 자세로 자주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34 程鉅夫, 『雪樓集』 卷18의 “東南海濱之國高句麗, 古稱詩書禮義之邦, 奉佛尤謹, 皇元之有天下, 聞風來附. 世祖皇帝結之恩, 待之禮, 亦最優異, 父子繼王, 并列貳館” 기사 참조.

35 이전에 몽골에 질자로 보내진 永寧公 王諄은 본국에 5만의 군대가 있다고 말하자 쿠빌라이는 4만을 선발하여 南宋 정벌에 보내도록 명하였다. 이에 李藏用이 입조하여 戰後에 兵數가 급감했다고 항변하며 王諄과의 대질을 청하였다. 쿠빌라이는 그의 말을 듣고 그를 “阿蠻滅兒幹”(몽골어 aman mergen, “말을 잘하는 자”)라고 칭찬하였다. 『高麗史』 卷102, 「李藏用傳」.

3. 행성 개치 사건에서 본 고려의 지위

쿠빌라이에서 순제까지 원과 고려의 관계에서 몇 차례 위기가 있었다. 그리고 일본 정벌 기지로서 고려의 인력과 물력을 대량으로 동원하였는데, 이는 고려로서는 심각한 타격이었다. 지원 17년(1280) 일본 정벌을 위해 정동행성(征東行省, 또는 征日本行省이라고도 한다)을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 고려 국왕 왕춘(王椿)은 당연히 자신을 행성의 승상으로 임명해야 하고 “행성(行省)의 대소군정(大小軍情) 공사(公事)는 반드시 나와 상의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하여 쿠빌라이의 윤허를 얻어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중서좌승상(中書左丞相)·행중서성사(行中書省事)·부마고려국왕(駙馬高麗國王)에 제수되었다.³⁶ 이듬해, 일본 정벌이 실패로 끝나 행성은 폐지되었다. 쿠빌라이는 단념하지 않았고, 지원 25년(1288) 5월(五月)에 다시 정동행성을 설치하였고, 고려 국왕과 대신 아탑해(阿塔海)를 승상으로 임명하여 함께 행성 임무를 맡게 하였다. 그러나 다시 출병하지는 못했다. 후에 다시 두 차례 정동행성이 복치(復置, 1285, 1288)되어³⁷ 선박을 만들고 징병하여 “일본 정벌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실행하지는 못했다.

일본 정벌전이 끝난 후에도 정동행성은 여전히 유지되었는데, 실제로는 오직 명의만 고려를 통할하는 기구였고 고려국왕 단독으로 행성의 승상이 되어 [후에 기타 행성의 승상(丞相)은 모두 폐지되고 오직 평장정사(平章政事)가 최고 장관이 되었지만 고려 국왕이 수뇌를 담당한 정동행성의 승상은 폐지되지 않았다] 스스로 관원을 임명하였고, 고려 원래의 기구와 각종 제도는 모두 유지되고 바

36 『元史』「世組本紀」至元 17年 10月 癸酉條；『高麗史』「忠烈王世家」6年 8月 辛卯, 12月 辛卯條.

37 『元史』「世組本紀」至元 22年 10月, 25年 2月.

뀌지 않았다. 원에서는 행성의 장관을 파견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행성의 속관(屬官)은 원 조정에서 파견해 임명한 자가 있지만 정사(政事)에는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원인(元人) 요수(姚燧)는 당시 고려의 지위와 몽원(蒙元) 제국의 종왕(宗王)의 봉읍(封邑)을 비교하였는데, 고려 국왕은 이성왕(異姓王)으로 몽원(蒙元) 종왕과는 마땅히 구별이 있지만 지위는 종왕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종왕은 비록 대국을 受封받지만 虛邑으로 옮기는 것과 같다. 무슨 소리인가? 別子는 종묘에서 조상을 제사지낼 수 없고, 인민은 천자가 보낸 관리가 다스리며, 그 府는 비록 監郡과 屬府를 두어 다스리지만 모두 조정에 명령을 청해야 한다. 그리고 刑人·殺人·動兵 어느 것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 백성은 五家마다 絲를 내어 一斤만을 가지며, 또 下輸하여 마음대로 조세를 징발할 수 없다. 그 땅의 재부는 모두 조정으로 수송되어 歲終에 그것을 頒給한다. 그 조직망은 매우 조밀하다. 그러나 고려를 보면 그렇지 않다. 宗廟가 있어 蒸嘗으로 그 조상을 모시고, 백관이 布列하여 직무를 이끌고, 그 刑賞號令은 그 國에서만 전적으로 행하며, 征賦는 모두 三韓의 경내에서 오로지 사용하여 조정으로 들여보내지 않는다. …… 萬國에서 유일하다.³⁸

이 단락은 원대 고려가 상대적으로 독립국의 지위를 비교적 완전하게 표현한 것이다. 종왕은 황금가족이지만 그의 봉읍은 원 조정 직할 판도에 속하는 것이고, 고려는 번속관계에 있는 외국으로 간주하였다. 원인(元人) 우집(虞集)도 “고려와는 생구(甥舅) 간의 우호 관계가 있고, 이로써 국왕은 건궁(建宮)하여 천조(天朝)에 비견되는데, 다른 속국(屬國)은 감히

38 『牧庵集』卷3, 「高麗藩王詩序」.

범하지 못하는 바이다”라고 했다.³⁹ 원 조정과 고려 본국에서 모두 관직을 지낸 고려 명사(名士) 이곡(李穀)도 고려의 지위에 대해 유사한 언급을 하였다. 즉 “본경(本京)에는 비록 성(省)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국왕이 승상(丞相)의 신분으로 독자적으로 관할하고 있다. 그리고 [원]조정의 임명을 받아야 할 성(省)의 속관들도 모두 자체 임명하고 있으며, 그 밖에 내외의 백사(百司)들도 본국의 구례(舊例)에 따르고 있다.”⁴⁰

정동행성은 비록 허명(虛名)이지만 필경 몽원 조정과 일련의 관원들은 그것을 수단으로 고려 정사(政事)에 대한 간여를 강화했고, 심지어 삼킬 기도도 있었다. 충격이 컸던 예도 두 번 있었다. 하나는 성종(成宗) 대덕(大德) 3~5년(고려 충렬왕 25~27년, 1299~1301)의 행성관(行省官) 증치(增置) 사건이다.⁴¹ 대덕 원년(1297)에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 쿠틀룩 켈미시가 죽자 세자 왕원(王諤, 공주 소생으로 몽골명은 이지르부카)은 원도(元都)에서 급히 귀국해서는 자신의 어머니가 부친 거(朮, 賚에서 개명)의 애첩과 환관 등에게 해를 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죽였다. 왕거(王朮)는 결국 표를 올려 세자에게 양위(讓位) 할 것을 청하였다. 이듬해 왕원(王諤)이 즉위하였으나 얼마 후 성종(成宗)이 “[정사를 맡은 이래] 자못 독단으로 일을 처결하여 정사(政事)가 실당(失當)하였다”⁴²는 이유로 원도(元都)

39 『道圓學古錄』 卷5, 「大慶壽寺大藏經碑」.

40 李穀, 『稼亭集』 卷9, 「送白雲賓還都序」.

41 『元史』 「成宗本紀」와 『高麗史』에서는 “復征東行中書省”, “復立征東行省”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세조시기에 설치된 정동행성이 아직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원 조정과 당시의 사람들은 오직 虛名과 있고, 조정에서 官을 두지 않은 征東省을 국내의 行政區로 간주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2 『高麗史』, 「忠烈王世家」 24年 8月 癸酉條; 『元史』 「高麗傳」에 丞相 完澤이(完澤)가 王諤의 왕위 계승을 상주한 기사에 많은 착오가 있다.

로 소환되고, 왕거를 다시 복위시켰다. 그리고 평장(平章) 쿠쿠추(關闡出)와 좌승(左丞) 하싼(哈散)을 고려에 파견하여 “국사를 함께 논하라”고 하였다. 대덕 3년(1299), 하싼은 귀국해서 왕거가 자기 부하들을 통솔하지 못하니 조정에서 관원을 보내 왕과 같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하자 성종(成宗)은 활리길사를 정동행성 평장정사로, 아율희일(耶律希逸)을 좌승으로 임명하여 고려에 파견하였다. 그러자 왕거는 “작은 과오로 조풍(祖風)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진정(陳情)하는 표를 올렸다. 대덕 4년(1300) 2월에 활리길사(關里吉思)는 고려의 관부가 용잡(冗雜)하고, 예의(禮義)가 분수를 넘어서고, 민적(民籍)을 보고하지 않고, 백성을 가림주구하고 형벌을 함부로 가한다고 상주하여 “만약 본속(本俗)에 따라 행사(行事)하면 실로 다스르기 어렵다”고 하였다.⁴³ 같은 해 여름, 왕거는 입조하였고 성종은 “무엇이든지 말할 것이 있으면 곧 보고하도록 하라”고 하고는 우승상 올제이 완택(完澤)에게 전지(傳旨)하여 “고려국왕이 상주한 대로 본국의 풍속백사(風俗百事)를 옛 법 그대로 유지할 것을 허락한다”고 하였다. 활리길사가 다시 상주하여 노비법을 바꾸려고 하자 왕거는 다시 표를 올려 중서성에 이문(移文)하여 세조 원년에 다루가치를 설치하여 고려의 본속체례(本俗體例)를 바꾸려던 일을 설명하였다. 이에 중서성에서는 “고려국왕의 말대로 본속대로 시행하게 한다”라고 지시하였다. 대덕 4년 7월 중서성은 다시 전지하여 “노비 관련 사안은 본국의 체례대로 행하라”고 하였다. 중서성은 고려국왕 왕거(王珣)의 진언으로 “고려는 세조 황제의 성지에 ‘본속을 바꾸지 말며 오직 관명(官名)만을 바꾸라’라고 했는데 지금 모두 바꾸라는 것은 적당하지 않

43 『元史』「高麗傳」.

다”고 상주하였다. 성종은 증서성의 상주를 받아들여 관원의 증치를 중지하고 활리길사를 소환하였다.⁴⁴ 지대(至大) 원년(1308)에 왕거가 죽자 세자 왕원(王諤, 장(璋)으로 개명)이 즉위하였다. 그 후 홍다구의 아들 중희(重喜, 洪萬)는 증서성에 상서를 올려 고려에 행성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인종(仁宗)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경(皇慶) 원년(1312)에 성지를 내려 “고려 땅에 성을 세우는 일은 누구든 상주하지 말라”고 하였다.⁴⁵

또 다른 한 차례는 지치(至治) 3년(1323)에서 태정 원년(1324)의 행성 개치(改置) 사건으로 고려 왕실 내부 정쟁으로 발생한 것이다. 대덕 2년(1298)에 고려 국왕 왕거는 세자 왕원(王諤)에게 선위하고 자신은 태상왕(太上王)이 되었다(元에서는 ‘일수왕(逸壽王)’ 칭호를 받았다). 동년 8월에 원 조정에서는 왕거의 복위를 명하고, 왕원(王諤)과 그의 비(妃) 보타시린공주(晉王 카말라의 딸)를 입조하게 하였다. 이때부터 왕원은 궁정에서 10년간 숙위를 하며 성종 사후에 발생한 궁정 정변에 참여하여 아우르바르와다(인종)와 함께 무종을 옹립한 공으로 심양왕(瀋陽王)에 봉해졌다. 지대(至大) 원년(1308) 7월에 왕거가 죽자 왕원(王諤, 璋으로 개명)은 귀국하여 왕위를 계승하였고, 원에서는 예에 따라 정동행성승상고려국왕(征東行省丞相高麗國王)을 제수하였고 부마도위심양왕(駙馬都尉瀋陽王)이라는 봉호를 유지하게 하였다. 동년 11월에 그는 다시 원도(元都)로 가고, 제안공(齊安公)이 정동(征東) 성사(省事)를 담당하였다. 황경 2년(1313)에 인종과 태후가 왕장(王璋)에게 고려로 돌아가 정사를 담당할 것을 재촉하였지만 듣지 않고, 이듬해 세자

44 『高麗史』 「忠烈王世家」 26年 7月・10月・27年 3月の 기사；李齊賢，『益齋亂稿』 卷6，「在大都上中書都堂書」 참조.

45 『高麗史』 「忠宣王世家」 4年 6月 기사와 『益齋亂藁』 卷7，「在大都上中書都堂書」 참조. 李齊賢의 『益齋亂稿』 卷7，「光祿大夫平章政事上洛府院君方公祠堂碑」에 실린 “至大間，遼陽重喜訴忠宣王鑄用事”는 당연히 이 일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도(肅, 충숙왕)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자신은 원 대도에 머물렀다. 후에 다시 심왕(審王) 봉작(封爵)을 자신의 조카 고(高)에게 물려주었다. 왕고(王高)는 영종과의 친근한 관계를 이용하여 왕위를 빼앗으려 여러 차례 원 조정에게 왕도(王道)의 죄상을 고발하였다. 지치 원년(1321) 왕도는 입조하였는데, 왕고와 그의 일당이 “허위로 황제에게 무고하여” 다년간 구류(拘留) 당하고 국왕 인신(印信)을 빼앗겼다. 반대파는 본국에서도 원 조정이 충숙왕을 폐위시키고 왕고를 추대하도록 하기 위해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왕고는 심왕 명의로 고려에 균지(鈞旨)를 내렸다. 지치 3년(1323)에 왕고의 도당인 유청신(柳淸臣), 오잠(吳潛) 등은 권력 찬탈을 도모하기 위해 상서(上書)를 올려 고려에 내지와 같은 행성을 설치할 것을 청하였다. 그리하여 “조정에서 정동성(征東省)을 파하고 삼한성(三韓省)을 세울 것을 논의하였는데, 제식(制式)은 다른 행성과 같다”고 하였다. 영종(英宗)은 중서성에 상의하도록 명하였는데, 이재현(李齋賢)이 중서성에 상서를 올려 세조 황제가 공주를 충렬왕에게 하가(下嫁)시켜 대대로 부마가 되었기에

[고려가] 舊俗을 바꾸지 않고 宗社를 보존한 것은 세조황제의 성지에 근거한 것입니다. 천하 각처에 행성을 설립할 때 오직 小邦에만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일본에 東征할 때 세우고 비록 名額이 있기는 했으나 常選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 지금 듣건대, [원]조정에서 小邦에 행성을 설치하여 중국의 諸路와 같게 한다고 하니, 만일 그러하다면 小邦의 공은 막론하고라도 세조의 성지는 어찌되는 것입니까.⁴⁶ 列聖의 存恤의 뜻은 어찌되는 것입니까. …… 또한 中統·至元の 법도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46 『益齋亂藁』 卷7, 「在大都上中書都堂書」.

라고 했다. 집현대학사(集賢大學士)·상의중서성사(尙議中書省事)인 왕균은 도성(都省)에서 상의할 때,

고려는 京師에서 4천 리나 떨어져 있고, 땅이 척박하고 백성은 가난하며 오랑캐의 풍속을 여전히 숭상하여 증원과 다릅니다. 만일 그들이 교화에 따르지 않아 그것을 다스리는데 힘을 허비하게 되면 불행한 일이니 祖宗의 舊制를 지키는 것만 못합니다.

라고 하였고, 승상 배주(拜住)도 그의 건의에 동의하여 결국 입성(立省) 논의를 파하고 시행하지 말 것을 상주하였다.⁴⁷ 섬서행성(陝西行省) 평장정사 강리회회(康裡回回)도 “그 나라(즉 고려)를 폐하고 군현으로 삼는 것”에 반대하였다.⁴⁸ 『고려사』 「류청신전(柳淸臣傳)」에는, 유청신은 오잠(吳潛)과 함께 중서성에 글을 올려 고려에 행성을 설치하여 원 내지(內地)와 같이 취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의 통사사인(通事舍人)인 왕관(王觀)은 승상(丞相)에게 글을 올려 여섯 가지 이유를 들어 불가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2개의 사항만을 적어 둔다.

제가 들은 바로는 조정에서 정동행성을 설치하여 고려를 내지와 같이 만들려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논의하는 자들의 불찰로 헛된 이름만을 얻고 실제로는 폐해를 받게 될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고려가 우리 聖朝(元)를 흠모하여 귀순한 지 어언 1백여 년입니다. 그 간 대대로 계승하여 내려오면서 신하의 절의를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세조 황제가 그 충성심을 가상히 여겨 공주를 시집보냈으니 그 지위는 친왕과 같으며 두터운 총애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 本國에

47 『元史』 卷178, 「王約傳」.

48 宋濂, 『宋文憲公全集』 卷41, 「陝西行省平章康裡公神道碑」.

서 禮樂과 刑政은 本俗을 따르게 하였으니 조정(元)의 典章으로 구속할 수 없습니다. 고로 …… 遼河 以東에서 瀕海 萬里가 그 힘에 의지하여 평온하였습니다. 그 고려는 東藩이 되어 대대로 현저한 공헌을 했으며 누대에 걸쳐 공주와 혼인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는 대개 고려의 忠勤과 선조의 遺訓에 의거한 것입니다. 지금 一朝에 황당무계한 말을 듣고 오랜 제도를 버린다면 그것은 세조 황제의 현명한 정책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本國은 京師에서 수천 리나 떨어져 있어 풍토가 다를 뿐만 아니라 習俗도 같지 않습니다. 刑罰·爵賞·婚姻 등이 中國과 같지 않은데 이제 와서 중국 법으로 그들을 다스리게 된다면 필히 [서로] 전혀 맞지 않아 격렬한 저항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 다음 세 번째에서 여섯 번째는 입성(立省)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임을 얘기한 것으로 『원사』에 실린 왕약(王約)의 논의와 거의 비슷하다(단 훨씬 상세하다). 때문에 원 조정의 제신(諸臣)과 이제현의 반대 상서로 “입성(立省) 논의는 마침내 잠잠해졌다.”⁴⁹ 동년 8월에 영종(英宗)이 살해되고 태정제(泰定帝)가 즉위하였다. 태정 원년(1324) 정월(正月), 왕도는 명을 받고 귀국하여 다시 국왕 인장(印章)을 받고 왕작을 습봉하여 이전처럼 권한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왕고 도당의 모함과 날조는 그치지 않아서 중서성·추밀원·어사대에서 관원을 파견해 고려를 심문하기에 이르렀다.⁵⁰ 이듬해 5월에야 왕도와 그와 결혼한 공주(魏王, 阿木哥의 딸)는

49 王觀의 생애와 관직 경력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그가 上書한 일도 『元史』나 기타 사료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元의 通事舍人은 禮部의 侍儀司 從七品 屬員인데, 그가 중서성에 상서를 올린 것은 아마도 王約(集賢大學士·商議中書省事, 從1品)를 통해 아뢴 것이거나 보고한 것으로 史籍에서는 오직 직위가 높고 이름난 王約의 議論만 기재하였다.

50 李齊賢의 「光祿大夫平章政事上洛府院君方公祠堂碑」에 “다우랏 샤(倒刺沙)가 左相이 되어서는 고려에 省을 두자는 의논을 힘써 주장하였다. 평장이 中樞계

비로소 고려로 돌아올 수 있었다. 요양행성 좌승 이린천(亦輦真)은 명을 받들어 왕도의 환국(還國)을 호송하였다.⁵¹

상술한 고려의 상대적인 독립적인 지위를 침해한 두 차례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에서 볼 때, 쿠빌라이가 기정(既定)한 대고려 정책은 고려가 '영원히 동번(東藩)이 되는' 조건에서 자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적 이론적 기초이다.

아뢰자 재상에게 그대로 두라는 유시가 내리므로 다우랏 샤의 의론이 좌절되어 마침내 일이 잠잠해졌다”라고 하는데, 다우랏 샤가 좌승이 된 것은 泰定元年이므로 여기에 기재된 것은 사실이다. 立省 논의는 至治三年에 否定된 후 泰定 元年에 다시 제기되었지만 결국 또 이루어지지 못했다.

51 黃潛, 『黃金華文集』卷24, 「遼陽等處行中書省左丞亦輦真公神道碑」, “具宣德意, 以告其人, 闔境之內, 無不悅服.”

제국 동방 변경에서 일본을 막는다

— 원 제국 속에서 고려의 기능적 위치 —

威鎮東方極邊未附日本国辺面勾当—元帝国における高麗の機能的位置をめぐって

모리히라 마사히코(森平雅彦, 규슈대학 대학원 인문과학연구원)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국 동방 변경에서 일본을 막는다

— 원 제국 속에서 고려의 기능적 위치 —

모리히라 마사히코 규슈대학 대학원 인문과학연구원

1. 머리말

고려와 원의 국가 관계에 관한 본격적인 분석은, 일찍이 원의 최고 지방기관의 하나로 고려에 설치된 정동행성(征東行省)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¹ 그러다가 최근에는 재래 왕조체제를 보존하였다는 사실을 중시하는 ‘세조구제(世祖舊制)론’이 한국 학계에서 유력시되고 있다.² 또

- 1 北村秀人(1964), 「高麗に於ける征東行省について」, 『朝鮮學報』 32 ; ____ (1965), 「高麗末に於ける立省問題について」, 『北海道大學文學部紀要』 14-1 ; 高柄翊 (1970), 「麗代 征東行省의 研究」, 同著 『東亞交渉史의 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 ____ (1974), 「元과의 關係의 變遷」, 『한국사7—武臣政權과 對蒙抗爭』, 국사편찬위원회 ; 張東翼(1994a), 『高麗後期外交史研究』, 一潮閣 ; ____ (1994b), 「여·원관계의 전개」, 『한국사20—고려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국사편찬위원회.
- 2 李益柱(1996a), 『高麗·元關係의 構造와 高麗後期 政治體制』, 서울大學校博士論文 ; ____ (1996b), 「高麗·元關係의 構造에 대한 研究—소위 ‘世祖舊制’를 중

한편에서는 몽골 황실과의 통혼관계에 근거하여 “부마국체제(駙馬國體制)”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논자도 있다.³

이들 모두가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에는 이론(異論)이 없다. 다만 이것은 양국 관계를 규정하는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일부에만 중점을 둔 견해였다. 물론 각 요소의 중요도를 논하는 것은 가능하기는 하나,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뇌와 심장만을 가지고 인체의 전 구조를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일부분이 전체를 대표하고 나머지를 사상(捨象)시켜버릴 일이 아니다. 적어도 개개의 요소에 관한 사실을 하나씩 상세하게 해명하지 않고서 핵심과 비핵심으로 가려도 생산적인 논쟁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지금까지 필자는 고려-원 관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전제로 우선 핵심이 되는 군주(君主)에 초점을 두고, 원제국(元帝國)에서 고려왕의 위치와 관련한 제도·관례상의 여러 문제를 개별적으로 척결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양국 관계는 정치적 측면에 한정해도 이에 그치는 것은 아니지만, 전근대(前近代) 왕조 국가 간의 정치관계에서 군주를 둘러싼 관계가 근간을 이룬다는 것은 여러 논자들도 기본적으로 찬성할 것이다. 물론 고려 역사에서 대원(對元) 관계의 의의를 해명하고자 하는 필자로서는 본래 좀 더 고려의 입장에 선 분석 시각이 바람직한데, 말할 것도 없이 고려-원 관계는 후자에 대한 전자의 정치적 종속이라는 ‘형식’을 전제로 이뤄졌다. 그래서 필자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로 원 측(元側)이 설정한 정치 시스템 속에서 고려왕이 어떤 위치에

심으로, 『韓國史論(서울대)』 36.

3 閔賢九(1974), 「高麗後期の 權門世族」, 『한국사8—高麗後期の 社會와 文化』, 국사편찬위원회; ____ (2004), 「元 干涉期 高麗의 정치 양태—國王不在中の 국정운영을 통해 본 王朝體制의 지속성」, 同著 『高麗政治史論—統一國家의 확립과 獨立王國의 시련』, 고려대학교출판부.

있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싶은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필자는 이미 높은 수준의 연구가 축적된 정동행성은 일단 두고, ① 양국 왕실 간의 통혼(通婚)관계,⁴ ② 몽골 왕후(王侯)로서 고려왕의 지위,⁵ ③ 질자[質子, 투르카(turyay, 禿魯花)]의 송견(送遣)과 숙위(宿衛, 케시(kešig, 怯薛))로 참여,⁶ ④ 재래 왕조체제의 보존문제,⁷ ⑤ 원조 황제의 종교적 권위의 파급,⁸ ⑥ 고려왕과 원 중서성의 왕래 문서의 형식,⁹ ⑦ 중국 전통의 화이질서 형식과 관련 있는 조빙사(朝聘使)의 파견,¹⁰ ⑧ 고려에 부설(敷設)된 잠치[jamči, 站赤, 역전(驛傳)]의 노선¹¹ 등 문제를 추구해왔다. 각 주제에 대하여 더욱 깊이있게 검토해야 할 점도 있고, 또한 논해야 할 다른 주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초 사항을 파악하는 데는 어느 정도 논의를 다하였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요컨대, 원의 입장에서 보면 고려를 원조 황제의 권위와 권

-
- 4 森平雅彦(1998a), 「駙馬高麗國王の成立—元朝における高麗王の地位についての豫備的考察」, 『東洋學報』 79-4 ; ____ (2008b), 「高麗王家とモンゴル皇族の通婚關係に關する覺書」, 『東洋史研究』 67-3.
 - 5 森平雅彦(1998a), 앞의 글 ; ____ (1998b), 「高麗王位下の基礎的考察—大元ウルスの一分權勢力としての高麗王家」,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6.
 - 6 森平雅彦(2001), 「元朝ケシク制度と高麗王家—高麗·元關係における禿魯花の意義に關聯して」, 『史學雜誌』 110-2.
 - 7 森平雅彦(2008a), 「事元期高麗における在來王朝體制の保全問題」, 『北東アジア研究』 別冊1.
 - 8 中村淳·森平雅彦(2002), 「韓國·松廣寺所藏の元代チベット文法旨」, 『內陸アジア史研究』 17 ; 森平雅彦(2002a), 「松廣寺法旨의 발급 경위를 둘러싼 諸問題」, 『普照思想』 17 ; ____ (2002b), 「大元ウルスと高麗佛敎—松廣寺法旨出現の意義に寄せて」, 『內陸アジア史研究』 17.
 - 9 森平雅彦(2007), 「牒と咨のあいだ—高麗王と元中書省の往復文書」, 『史淵』 144.
 - 10 森平雅彦(2004b), 「『賓王錄』にみる至元十年の遣元高麗使」, 『東洋史研究』 63-2.
 - 11 森平雅彦(2004a), 「高麗における元の站赤—ルートの比定を中心に」, 『史淵』 141.

력 아래에 통합하기 위한 회로(回路)와 장치(裝置)들이며, 그들의 집적체(集積體)가 바로 고려-원 관계의 기본 골격이다. 다만 이런 제도와 관례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경우 몽골의 다른 종속 세력에게도 널리 적용된 사항들이다. 유일하게 독자적인 왕국에 설정된 행정(行省)이라는 점에서 특수하게 보이는 정동행정 조차도 후술하듯이, 시각에 따라서는 절대적인 의미로 특수하다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항목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고려-원 관계의 고유한 성격을 규명하였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원의 산하(傘下)에서 고려의 존재가 다른 종속 세력보다 개성이 있지 않다는 결론 자체는 그것이 역사적 사실인 한에서 반드시 기피해야 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최근 몽골제국사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이란, 러시아 평원 등 각 지역, 각 시기의 몽골정권을 관통하는 공통성과 보편성을 주목하고, 그것이 몽골제국의 세계사적인 획기성 주장과도 연결되어 있다. 필자의 연구도 이런 측면을 고려-원 관계에서 확인하는 작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차원에서의 논의이다. 개개의 제도와 관례를 기능론에서 파악한다면, 거기서는 몇 개의 사항을 관통하는 공통 논리라고 할 만한 것이 발견되고, 그것이야말로 고려-원 관계의 개성의 일단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이 바로 이 글의 제목으로도 사료에 근거하여 표현한 ‘동방 변경에서 아직 복속하지 않은 일본과의 경계를 진수, 위압하는 일(威鎮東方極邊未附日本國邊面勾當)’이며¹² 원 제국 동변(東邊)의 진수(鎮守), 특히 일본을 염두에 둔 변경 방위의 담당자

12 『高麗史』卷32, 忠烈王世家 28年(1302) 是歲.

의 역할이다. 이것은 본래 고려에게는 원이 책임을 떠맡긴 수동적인 책무였지만, 한편으로는 고려가 원의 정치적 영향을 받으며 지위의 보전과 안정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쟁취한 입장이기도 하고, 양국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이하에서 그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2. 갑술(1274)·신사(1281)의 역과 고려

고려·원과 일본 사이에 긴장 관계가 생긴 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1274, 1281년 두 차례 실시한 고려-원 양국의 대일(對日) 침략이다. 일본사에서 문영(文永)·홍안(弘安)의 역(役)이라고 불리는 이 전역(戰役)에 대하여 필자는 한국사에서 사용하는 호칭으로 사료에 근거하여 “갑술(甲戌)·신사(辛巳)의 역(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¹³ 우선 원의 일본 경략(經略)에 대한 고려 정부의 태도를 확인해 보자.

1260년에 고려와 원 사이에 화의가 성립되자, 원은 곧 고려에게 국왕의 친조(親朝), 물자 공출, 군사 협력, 호적(戶籍) 제출, 질자(質子) 제공, 역전(驛傳) 설치, 다루가치(達魯花赤, 감독관) 설치,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還都) 등의 요구를 들이댔다. 이 중에서 환도 문제는 해도(海島)에서 버티고 있던 고려 정부에만 해당하는 문제지만, 다른 7개 항목은 몽골이 정복지에 늘 요구하던 사항이었다.¹⁴ 그중 하나로 군사협력을 언급하는

13 森平雅彦(2009), 「13世紀前半における麗蒙交渉の一断面—モンゴル官人との往復文書をめぐって」, 한일문화교류기금·동북아역사재단 편, 『몽골의 고려·일본 침공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143쪽의 주27 참조.

14 이러한 요구사항은 선행 연구에서는 ‘六事’라고 불려왔는데, 이런 호칭의 문제

데, 몽골의 정복활동에서 정복지의 인적·물적 자원을 다음 정복 전쟁에 전용(轉用)하는 것은 상투적인 수단이었다. 그러나 당시 고려정부는 대몽골전쟁을 주도해온 무신집권 세력도 남아 있어서 원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시작된 원의 대일(對日) ‘초유(招諭, 조공권고(朝貢勸告))’에 대해서도 고려 정부는 당초 매우 비협조적이었다.

1266년 일본 ‘초유(招諭)’ 의지를 밝힌 세조 쿠빌라이의 명에 따라 흑적(黑的)이 고려에 들어오고, 고려 정부는 일본 도항(渡航)을 선도(先導)할 것을 명령받았다. 이에, 고려는 사자를 거제도(巨濟島)로 유도(誘導)하였다. 거제도는 쓰시마(對馬)까지 최단거리이기는 하나, 당시 일반적인 대일통교 창구는 김해(금주(金州))였다. 더욱이 이때 고려의 재상 이장용(李藏用)은 흑적에게 항해의 위험성과 대일교섭의 무익(無益)을 설명하고 결국 항해를 단념시켰다.¹⁵ 그리고 고려 정부는 쿠빌라이에게는 험한 풍랑이 위험하고 일본에서 사자(使者)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점, 그리고 일본과는 애당초 통호(通好)한 적이 없음을 고하여¹⁶ 견사(遣使)의 증지를 주장했다.

애초에 쿠빌라이는 고려 측의 저항을 예측하고, 위와 같은 사안을 명령 불이행의 구실로 삼지 말라고 미리 경고하였다.¹⁷ 그렇지만 고려 정부는 반복하여 같은 내용으로 회답한 것이다. 또한 고려정부는 대일통교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김해에 설치했던 왜인(倭人) 접대용 관사를 파괴하였다.¹⁸ 고려 정부가 흑적(黑的)을 거제도로 유도하였던 것도 아마

● 점에 대해서는 森平雅彦(2008a), 앞의 글, 138~139쪽 참조.

15 『高麗史』 卷102, 「李藏用傳」.

16 『高麗史』 卷26, 元宗世家 8年(1267) 正月; 『高麗史節要』(이하에서는 『節要』라고 생략) 卷18, 元宗 8年 正月.

17 『高麗史』 卷26, 元宗世家 7年(1266) 11月 癸丑; 『節要』 卷18, 元宗 7年 11月.

18 『調伏異朝怨敵抄』 所收 「潘阜·李仁挺書狀」. 『調伏異朝怨敵抄』의 원문에 대해서는 平岡定海(1959), 『東大寺宗性上人の研究并史料』 中, 日本學術振興會에

일본과 관계를 원사(元使)가 자세히 알지 못하게 하려던 것이다. 고려 정부는 이런 공작을 하면서 일본과 통호관계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격노한 쿠빌라이가 고려 정부가 직접 국서(國書)를 일본으로 가지고 갈 것을 요구한 결과, 1267년 말에 고려의 기거사인(起居舍人) 반부(潘阜)가 일본으로 가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고려 측 관계자의 대응 역시 매우 흥미롭다.

우선 쿠빌라이의 국서(國書)와 함께 일본에 전해진 원종의 국서¹⁹에는 정중한 뜻을 나타내는 서간(書簡) 형식인 계(啓)를 사용하고, 그 속에서 일본과 원에 관한 용어는 동격(同格)의 평출(平出)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일본 ‘초유’에 협조하라는 원의 요구에 대해서 고려는 ‘불획이(不獲已)’하게 따른다고 하고, 일본 측에게 ‘일개지사(一介之使)’를 파견하여 일단 상황을 알아보는 것이 어떻지 권고하였다. 이것이 바로 원에 대한 불손(非禮)이라고까지 할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초유’에 대한 고려 측의 소극성을 볼 수 있으며, 원의 의향을 경시하는 듯한 언사로 일본 측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느껴진다.

그러나 사자인 반부가 다자이후(大宰府)의 장관(당시 실질적인 다자이후 책임자는 고케닌(御家人)인 쇼니(小弐) 무토우(武藤)씨)에게 보낸 서장은 그보다 과격하다.²⁰ 여기서 반부는 김해의 왜인 접대용 관사 철거, 대일전사(對日遣使)의 지연 등 고려가 원의 기도를 방해한 사실을 폭로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문서 표기 형식에서 일본에 관한 용어에는 평출(平出)을 사용한 것에 반해 원에 관한 용어에는 꺾자(闕字)에 그쳐 원을 일본보다 격하(格下)시켜

실린 影印을 참조.

19 『調伏異朝怨敵抄』所收.

20 『調伏異朝怨敵抄』所收.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고려는 원(元)에 들킨다면 스스로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호의를 일본에 보이며 선처를 구하였는데, 그런 배려는 고려의 짝사랑으로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원의 ‘초유’에 대하여 교토[京都] 조정과 가마쿠라 바쿠후[鎌倉幕府]가 강하게 반발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그 후 1269년에 원사(元使)가 연행해 간 쓰시마[對馬] 도민(島民)이 고려를 거쳐송환되었을 때 동시에 원 중서성과 고려 경상도(慶尙道) 안찰사(按察使)의 첩(牒)을 같이 보냈다. 이때 일본 조정에서는 원의 중서성에게 강경한 반서(返書)를 작성한 것에 반해 고려에 대해서는 ‘전호(前好)’와 ‘맹약(盟約)’을 언급하면서 우호적인 회답을 작성하였다(다만 발행하지는 않았음).²¹ 또 사자 왕래의 창구인 다자이후[大宰府]에서는 1271년 원사 조량필(趙良弼)이 왔을 때, 독자적으로 반사(返使)를 준비하여 교섭을 진행하고자 한 흔적이 있다.²²

다자이후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쇼니 무토우씨는 12세기 말부터 13세기 초 사이에 다자이후로 취임한 직후부터 고려와 왜구금압(倭寇禁壓)과 통상에 관하여 교섭한 경험이 있다.²³ 원의 ‘초유’ 직전인 1263년에도 왜구금압 교섭을 하고,²⁴ 또한 무토우씨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

21 『本朝文集』 卷67, 「贈高麗王牒」.

22 『元史』 卷208, 「日本傳」 至元 9年(1272) 2月.

23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은 논고를 참조. 川添昭二(1975), 「鎌倉時代の對外關係と文物の移入」, 『岩波講座日本歴史6—中世2』, 岩波書店 ; ____ (1996), 「中世における日本と東アジア」, 同著 『對外關係の史的展開』, 文獻出版 ; 李頌(1999), 『倭寇と日麗關係史』, 東京大學出版會, 第2章 ; 近藤剛(2008), 「嘉祿·安貞期(高麗高宗代)の日本·高麗交渉について」, 『朝鮮學報』 207.

24 『高麗史』 卷25, 元宗世家 4年(1263) 4月 甲寅.

송무역선[日宋貿易船, 대재부소경전백상선(大宰府少卿殿白商船)]이 고려에 표류하여 보호를 받았다.²⁵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그전부터 있었던 네트워크를 전쟁 전까지도 유지하고, 이것을 통해 충돌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모색했을 가능성이 있다. 1272년에도 왜선이 김해에 입항하였는데,²⁶ 이것은 13세기 전반까지 이어진 여일(麗日)무역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일을 은폐하고자 한 경상도 안찰사 조자일(曹子一)을 원장(元將) 홍다구(洪茶丘)가 처형하면서,²⁷ 이제 정세가 긴박해졌다.

1269년에 집권무신 임연(林衍)이 원이 공인한 국왕 원종의 폐위를 강행한 사건은, 고려가 각종 요구를 불이행하여 불신감이 더해 있던 원에게 절호의 정치 개입 구실을 주었다. 1270년 원의 외교·군사압박 속에서 고려의 궁정 쿠데타로 무신집권세력은 타도되고, 1세기 만에 왕정복고를 실현하였다. 그러나 폐립 사건 즈음에 원에서는 고려의 폐절(廢絶) 등 강경한 정책조치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 정부로서는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대원 관계를 급히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에 직면하였다. 그래서 몽골 공주의 강가(降嫁) 요청, 투르카[秃魯花] 파견, 저항을 계속하는 삼별초 진압(鎭壓)을 차례로 진행했는데, 그 일환으로 일단일본 정략에도 협력 자세로 돌아서게 되었다. 다만 이 단계에서는 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등 다분히 소극성을 남겨 두고 있다. 그중에서 당시 왕태자로 원에 입조해 있었던 충렬왕이,

저 일본은 아직 聖化를 입지 않았으므로 詔使를 보내고, 이어서 軍

25 『高麗史』 卷25, 元宗世家 4年(1263) 6月 是月.

26 『高麗史』 卷27, 元宗世家 13年(1272) 7月 甲子, 『節要』 卷19 元宗13年 7月.

27 『高麗史』 卷27, 元宗世家 13年(1272) 10月 己亥, 『節要』 卷19 元宗13年 7月.

容을 뽐내고 있기에 전함과 군량은 지금 바로 필요한 바입니다. 만
일 이 일을 신에게 맡겨주신다면 心身으로 王師를 조금이라도 돕기
를 소망합니다.²⁸

라고 말한 것은, 대원 협조에 적극적이었던 충렬왕이 대일 경략에도 적
극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에 따르면, 이것은 함께 입원(入元)하였던 종신들이 항수병이 커지자 일
시 귀국하기 위한 구실로 말한 것이었다.²⁹

일본경략에 대한 고려 정부의 협력 자세는 갑술의 역 이후부터 신
사의 역 사이에 한층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변해간다. 그것은 1278년의
충렬왕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기점으로 한다.

일본은 일개 島夷에 지나지 않는데도 地勢의 險阻에 의지해서 굴복
하지 않고는 감히 王師에 저항합니다. 신이 스스로 생각건대 [일본
은 원의] 恩德에 보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컨대, 다시 戰艦을 만
들고 兵糧을 저축하여 [일본의] 죄를 소리내어 토벌하면, 성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³⁰

갑술의 역 후에 원은 곧 고려에 재공격 준비를 명령하였지만, 1275
년 말에는 그것을 철회하였다.³¹ 얼핏 보면 고려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28 『高麗史』卷27, 元宗世家 13年(1272) 2月 己亥, “彼日本, 未蒙聖化, 故發詔使, 繼耀軍容, 戰艦兵糧, 方在所須, 儻以此事委臣, 庶幾勉盡心力, 小助王師.”

29 『高麗史』卷27, 元宗世家 13年(1272) 2月 己亥; 『節要』卷19 元宗 13年 2月.

30 『高麗史』卷28, 忠烈王世家 4年(1278) 7月 甲申 “日本一島夷耳, 恃險不庭, 敢抗王師. 臣自念, 無以報德, 願更造船積穀, 聲罪致討, 蔑不濟矣.”

31 池内宏(1931), 『元寇の新研究』, 東洋文庫, 184~188쪽; 中村榮孝(1965), 「文永・弘安兩役間の國際政局」, 同著 『日鮮關係史の研究』上, 吉川弘文館, 62~63쪽.

개전을 요구한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하여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는 당시 고려가, 원의 고려인 무장(武將)인 홍다구에게 내정간섭을 당하여 양자 사이에 심각한 마찰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즉 쿠빌라이에게 환심을 사서 간섭에 저항하고, 홍다구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친원(親元) 자세를 표명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³² 그러나 원 측에 이런 언질을 줘 실제로 전쟁이 재개되면, 고려가 큰 부담을 지는 것은 분명하다. 한 관인(官人)과의 대립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폐한 국가 전체를 다시 곤궁에 처할 ‘알랑거리는 말’을 하였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한편 나카무라 히데타카[中村榮孝]는 이 직후에 한반도 남안을 침범한 왜구의 동향에 주목하였다.³³ 당시 일본에서는 원과 고려에 대한 반공(反攻) 계획[이국정벌(異國征伐) 계획]이 부상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왜구도 이에 관련된 움직임으로, 그 이전부터 조짐이 나타났을 것이고, 고려는 이에 위협을 느끼고 일본에 대한 선제공격(先制攻撃)을 도모하였다는 것이다. 상기(上記)한 왜구가 ‘이국정벌’ 계획과 관련 있는 사건이라고는 나카무라가 생각한 것처럼 명료하지는 않겠지만, ‘이국정벌’ 계획을 고려 측이 감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그만큼 절박한 위기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충렬왕은 원에 일본의 군사위협을 크게 강조하였을 것이다. 일본은 한낱 도이(島夷)에 불과하며 쉽게 공략할 수 있다는 왕의 발언과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 아마도 실제로는 이케우치와 나카무라 양설(兩說)을 절충하면 될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1275년 말에는 고려에게 내린 일본 재공격 준

32 池内宏(1931), 앞의 책, 제8장.

33 中村榮孝(1965), 앞의 글, 76~98쪽.

비 명령을 철회하였는데, 이것은 대남송전(對南宋戰)을 우선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³⁴ 한편 1276년에 쿠빌라이는 남송의 항장(降將)들에게 일본 공격의 가부(可否)를 하문(下問)하면서 재전(再戰) 의지를 밝혔다.³⁵ 이때는 야율희량(耶律希亮)의 의견에 따라서 대남송전 후에 잠시 휴식 기간을 두기로 하였는데, 외교 교섭이 타결되지 않는 한 일본과의 재전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1275년 초에 일본에 파견된 원사 두세충(杜世忠)의 소식은 1년 이상 두절되어 있었다.(그때 이미 가마쿠라 바쿠후[鎌倉幕府]는 그를 처형한 상태였다) 재전(再戰) 가능성은 고려가 보기에 명백하였을 것이다.

갑술(甲戌)의 역에서는 작전 수행 주도권을 원이 장악하고, 고려는 그들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형태고, 많은 부담을 강요받았다. 그때 원나라 장수로 재전에도 참가할 듯한 홍다구는 고려 정부와 사이가 나빴다. 그래서 고려는 불가피한 일본 재정벌에 대비하여, 오히려 적극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서 되도록 작전 수행 주도권을 장악하고, 동시에 원 측의 세력, 특히 홍다구 같은 비우호 세력을 멀리하여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실제로 이후 사태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쿠빌라이의 명으로 홍다구뿐 아니라 고려에 주재해 있던 원의 둔전군(屯田軍)과 다루가치도 원으로 소환되고, 고려는 원의 직접 감시에서 해방되었다. 더구나 충렬왕은 정동행성 책임자가 될 것을 청원하여, 승상에 취임하고, 전투에 참가하는 고려의 군관도 원수 이하의 원의 군직(軍職)을 수여받았다. 또 후술하듯이 이때 충렬왕은 ‘부마고려국왕’이라는 호칭도 획득하여 몽골 왕후의 한 사람으로 입지를 확실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고려는 원의 군

34 池内宏(1931), 앞의 책, 184~188쪽; 中村榮孝(1965), 앞의 글, 62~65쪽.

35 池内宏(1931), 앞의 책, 186~187쪽; 中村榮孝(1965), 앞의 글, 65~67쪽.

관과의 힘관계를 우세하게 하여 대일전역(對日戰役)에 종사하였던 것이다.

3. 고려의 ‘대일전선’ 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한반도 방면에는 신사의 역에 즈음해 고려 왕을 간부로 하는 동로군사령부(東路軍司令部)로 정동행성이 편성되었다. 이 전역에 관한 행성으로는 사료에 정일본행성과 정동행성 두가지가 등장한다. 이전에는 동일한 기구의 별칭이라고 이해하였는데, 장동익(張東翼)은 이들이 각각 별개 조직으로, 전자가 강남군(江南軍), 후자가 동로군(東路軍)을 지휘하였다고 해석하였다.³⁶ 이에 대하여 이강한(李康漢)은 신사의 역에서 동로군을 지휘한 정동행성은 정일본행성의 지부로 볼 수 있는 조직의 통칭이고, 1283년에 3차 공격을 계획했을 때 처음으로 고려 지역에서 독립 행성으로 정동행성을 성립하였다고 한다.³⁷ 여하튼 원래 정동행성은 임시로 편성한 군사사령부였던 것인데, 1287년에 다시 설립되었을 때부터 크게 성격을 바꾸어서 원의 상설지방최고통치기구로서 고려 땅을 관할하고, 역대 고려왕이 장관직(尙相)을 겸임하면서 관리·운영하였다.³⁸

지방통치기관(地方統治機關化)이 된 후 정동행성의 연혁에 대해서는 장동익이 자세하게 분석하였는데,³⁹ 여기서 문제는 정동행성이 1287년

36 張東翼(1994a), 앞의 책, 14~23쪽.

37 李康漢(2007), 「征東行省官 闕里吉思의 고려제도 개변 시도」, 『韓國史研究』 139, 85~91쪽.

38 北村秀人(1965), 앞의 글, 6~12쪽.

39 張東翼(1994a), 앞의 책, II.

을 경계로 군사적 역할을 상실하였는가 여부다. 종래의 논의는 행성제도에 관한 마에다 나오노리(前田直典)의 고전적 연구⁴⁰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그는 원 초 군사기구인 군전행성(軍前行省)이 1285년 전후에 행정기구로 변화하였다는 도식을 제시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상황을 약간 단순화시킨 정리 방식이다. 1285년 이후에도 군사기구로서 행성이 존재하였음은 확실하고,⁴¹ 또 행정기구로서 행성조직과 군사기능 자체는 모순이 없이 공존한다.⁴²

정동행성은 다른 지역 행성과 달리 ‘정동(征東)’이라는 기능, 목적에 입각한 명칭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 기타무라 히데토(北村秀人)는 정동행성이 상설기구가 된 계기는, 같은 시기에 몽골고원 동부에서 일어난 칭기스칸 제제(諸弟)의 후예인 동방 3왕가의 반란(나얀의 난)에 대응한 것이라고 한다.⁴³ 그 때문에 ‘정동’이라는 명칭이 생겼다면 발족 당시에는 분명히 군사적 역할을 기대했던 것이다. 또 1294년 쿠빌라이가 죽기까지 일본에 대한 재정(再征) 방침을 유지했기 때문에 정동행성이 이와 무관하였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신사의 역 직후, 일본 측의 반공에 대비하기 위하여 동로군의 전진기지였던 합포에 원의 제도인 진변만호부(鎭邊萬戶府)를 설치했다.⁴⁴ 1290년에는 전라도에도 설치하였다.⁴⁵ 삼별초 평정 후에 원이 직할한 제주도는 1294년 고려에 반환되었는데, 1301년에 ‘진변(鎭邊)’의 임무를 맡은

40 前田直典(1973), 「元朝行省の成立過程」, 同著『元朝史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41 大島立子(2002), 「元朝福建地方の行省」, 『愛大史學』 11.

42 李治安(2000), 『行省制度研究』, 南開大學出版社.

43 北村秀人(1964), 앞의 글, 8~9쪽.

44 『高麗史』 卷29, 忠烈王世家 7年(1281) 10月 己亥; 『節要』 卷20 忠烈王 7年 10月.

45 『元史』 卷16, 世祖本紀 至元 27年(1290) 2月 乙亥.

탐라만호부(耽羅萬戶府)를 설치했다.⁴⁶ 그리하여 제주도(濟州島), 가덕도(加德島), 동래(東萊), 울주(蔚州), 죽림(竹林), 거제도(巨濟島), 각산(角山), 내례량(內禮梁) 등 한반도 남안(南岸) 일대를 포괄하는 경비 체제를 구축했는데, 정동행성은 이런 경계망을 통괄하여 일본의 동정에 대응하고 상황을 원에 통보하는 일을 맡았다고 한다.⁴⁷ 쿠빌라이 사후에는 일본 공격에 나서지 않고 방어적인 태세로 변화였는데, 일본과 관련된 군사문제를 담당하는 현장기관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나안의 난’ 이후에 동방 3왕가를 견제하는 중앙 정부의 세력이라는 고려의 입장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⁴⁸ 이것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종왕가(宗王家)에 대해 노골적으로 경계 자세를 보이는 것을 꺼린 측면이 있을지도 모른다. 여하튼 1318년에도 제주도의 구적(寇賊) 사건과 관련하여 원이 정동행성에 진압 명령을 내린 것을 보면,⁴⁹ 원의 동방 변경에서 군사적인 위압을 담당하는 존재였다는 점은 정동행성의 기본속성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방통치 기구로서의 행성이 군전행성(軍前行省)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정면(征緡)’ ‘점성(占城)’ 등 정복 명목을 띤 행성을 별도로 조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⁰ 그런 점에서 정동행성은 예외적이다. 본래 정동행성은 왕조가 존속하였기 때문에 고려 국내의 광범한 통치사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정동행성의 존재는 비록 명목적이라 해도 군

46 『高麗史』 卷32, 忠烈王世家 27年(1301) 3月 癸卯·5月 庚戌.

47 『高麗史』 卷32, 忠烈王世家 28年(1302) 是歲.

48 이에 대해서는 고려 왕가와 몽골황족의 통혼에 대한 李命美(2003), 「高麗·元王室通婚의 政治的 의미」, 『韓國史論(서울大)』 49의 논의가 흥미깊다.

49 『元史』 卷26, 仁宗本紀 延祐 5年(1318) 4月 己亥.

50 前田直典(1973), 앞의 글, 186쪽.

사면(軍事面)의 무게는 그만큼 무거웠던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런데 『원사(元史)』 「지리지(地理志)」와 「백관지(百官志)」에는 ‘정동등처행중서성(征東等處行中書省)’이라는 항목이 보이며 원 원각(袁桷)의 『청용거사집(淸容居士集)』 권28 「주은군묘지명(周隱君墓誌銘)」에도 ‘정동등처유학제거(征東等處儒學提舉)’라는 기록이 있는 것처럼 정동이라는 명칭은 후에 지명처럼 사용한 경우도 있었을 수 있다. 다만 필자가 확인한 한에서 이런 명칭은 상기한 사례 이외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정식 호칭을 기재할 만한 공문서, 그중에서도 왕의 지위와 신분을 표시하는 인사 문서 전체 또는 일부를 이록(移錄)한 사료를 보면, 오로지 ‘정동행중서성’, ‘정동행성’ 등으로 기록한 점이 중요하지 않나 싶다.⁵¹

정동행성과 상기한 진변만호부의 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은 점이 많다. 서로 통속 관계가 없었다는 견해도 있지만,⁵² 이것도 근거는 부족하다. 다만 적어도 양자는 고려왕이 통괄 운영하고, 많은 부분을 고려 정부의 인원이 담당한 것은 틀림없다. 만호부의 군사 역량에 대해서는 14세기 중반 이색(李穡)의 건언서⁵³나 공민왕(恭愍王)이 원에 보낸 상서⁵⁴에서 그 형해화가 거론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만호부불요론(万户府不

51 특히 『元史』는 명대 초기 편찬물이다. 원사료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전제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사료 가치는 높지만, 편찬자의 作爲도 전혀 없지는 않다. 「地理志」와 「百官志」 기사의 소재가 된 것으로 보이는 『大元一統志』나 『經世大典』의 관계 기사가 남아 있지 않아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런志의 항목명은 「본기」와 「열전」의 본문보다 편찬자의 字句 조작 가능성을 상정하기 쉬운 부분이다. 참고로 『大元一統志』를 근거로 하였다고 생각되는 劉應李, 『大元混一方輿勝覽』(元中期)에서는 다른 행정들이 ‘○○等處行中書省’이라고 하였는데, 정동행정만 ‘鎭東行中書省’이라고 하였다.

52 北村秀人(1964), 앞의 글, 70쪽의 주77 참조.

53 『高麗史』卷115, 「李穡傳」.

54 『高麗史』卷39, 恭愍王世家 5年(1356) 10月 戊午; 『節要』卷26, 恭愍王 5年 10月.

要論)의 입장에서 과장한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기록에서는 군사조직으로서 일정한 실질을 갖추었음을 짐작할 수도 있다.⁵⁵ 그 간부(幹部)인 만호(萬戶)는 고려의 관인이 원조 황제에게서 ‘선수(宣授)’받는 형식으로 임명되었는데, 실제로는 고려 정부의 관료가 원에서 수직(授職)되지 않은 채 순무사(巡撫使) 등 고려의 관련 관직을 부여받아 현지에 가서 ‘진변(鎭邊)’의 임무를 담당할 경우도 많았던 것 같다.⁵⁶

갑술·신사의 역에 기여한 것은 당연히 원에 대한 고려의 공로(功勞) 중의 하나로 고려가 원에 자국의 이해(利害)를 주장하는 장면에서도 거론되었다.⁵⁷ 그리고 위와 같은 경위에서 고려는 스스로를 원제국 동변 방위 담당자를 자임하고, 그러한 입장을 원 측에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원 중서성에 보낸 1302년 충렬왕의 상서에 보이는 “동방의 극변(極邊)에서 아직 복속하지 않은 일본과의 경계를 위압(威壓), 진수(鎭守)하는 임무(威鎭東方極邊未附日本國邊面勾當)”라는 말에 단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런 입장은 대일 경계 체제의 책임자로서 개별 고려왕의 지위를 옹호하는 것에도 연결되었다. 1324년 원도(元都)에 오랫동안 억류되어 있던 충숙왕(忠肅王)의 조기 귀국을 요청할 때 고려의 신료(臣僚)는,

小邦은 일본과 인접하는 극동의 요지로 中原과는 4천 리나 떨어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國主가 不在하면 不測의 사변이 있을 경우에

55 『高麗史』卷82, 兵志 鎭戍 忠肅王 12年(1325) 10月; 『高麗史』卷111, 「柳濯傳」; 『節要』卷26, 忠定王 10年(1350) 2月; 李穀, 『稼亭集』卷9, 送洪密直出鎭合浦序 등.

56 『節要』卷24, 忠肅王 10年(1323) 正月; 『稼亭集』卷9, 送洪密直出鎭合浦序 등.

57 『益齋亂藁』卷6, 在大都上中書都堂書; 『東文選』卷62, 在大都上中書都堂書, 上征東省書 등.

보고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得失은 輕微하지 않습니다. 某等은 이것을 주야로 우려하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⁵⁸

라고 말하였다. 또 충숙왕이 죽은 1339년 고려의 기로(耆老) 등이 충혜왕(忠惠王)의 조속한 습위(襲位)를 정동행성에 요청할 때에도 “고려는 아직 복속하지 않은 왜경(倭境)을 이웃하기 때문에 사변(事變) 발생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海倭未服之隣, 不可不虞其變)”라고 말하고 있다.⁵⁹ 또 1348년 충목왕(忠穆王)의 사후, 왕후(王煦) 등이 공민왕의 습위를 추진하면서 원에 올린 상표문(上表文)에도 “본국은 일본이라는 불복종한 나라와 이웃하고 있어, 하루라도 국주(國主)가 없으면 안됩니다(本國隣於日本不庭之邦, 不可一日而無主)”라고 하였다.⁶⁰ 일본의 위협에 노출된 고려로서는 마땅히 국왕이 항상 존재해서 일본을 경계해야 한다는 논리가 국왕의 취위(即位)를 둘러싸고 주장되었던 것이다. 이런 논법은 원에서도 공유된 듯한데, 1330년에 일시 퇴위한 충숙왕이 2년 후에 원도(元都)에서 복위할 때 원의 재상 엘테무르(燕帖木兒)는 “고려는 왜경(倭境)과 인접해 있습니다. 지금 그 국왕이 오랫동안 도하(都下)에 체제하고 있으니, [신속히] 귀국시킬 것을 청합니다(高麗隣于倭境, 今其王久在都下, 請令還國)”라고 말하고 있다.⁶¹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는 기록상 11세기 후반을 전성기로 13세기 전반까지 쓰시마와 다자이후 방면 사람들을 주요한 담당자로 통상

58 『高麗史』卷35, 忠肅王世家 11年(1324) 5月 壬辰, “小邦, 隣接日本極邊重地, 相離中原四千里, 久曠無主, 儻有不測之變, 無所啓稟 利害非輕, 以此某等日夜爲懼, 未得寧心.”

59 『高麗史』卷36, 忠惠王世家 忠肅王 後8年(1339) 6月 壬辰.

60 『高麗史』卷37, 忠定王世家 忠穆王 4年(1348) 12月 己卯.

61 『高麗史』卷35, 忠肅王世家 後2年(1330) 3月, 『節要』卷25, 忠肅王 後2年 3月.

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갑술·신사의 역의 영향으로 이런 통상도 두절 상태에 이른 것 같다. 이후에도 한반도에는 왜인의 내박(來泊), 접근 사례가 있고, 표류자에 대한 고려의 처우는 반드시 적대적이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는 원에 통보하면서 처리한 것 같다.⁶²

전술한 것처럼 일본 측에서는 갑술의 역 이후에 고려와 원에 대한 ‘이국정벌(異國征伐)’ 계획이 존재하였다. 결국 실행은 하지 않았지만, 그 정보를 고려 측이 알아챘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적어도 소규모 왜구·침범 사건은 되풀이 발생하고, 전술한 것처럼 그중에서도 신사의 역 직전에 일어난 사건을 ‘이국정벌’ 계획과 연동한 움직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리고 1350년부터는 이른바 전기왜구(前期倭寇)가 본격화 된다. 일본의 군사적 위협은 고려로서 반드시 공상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일(麗日)사이의 무역(貿易)이 완전히 소멸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일원(日元) 양국이 서로 무역선의 왕래를 인정하였던 것과 크게 다르다. 일본에 대한 경계 자세는 원의 항구 도시에서도 엄격하였지만⁶³ 일원무역(日元貿易)은 활황을 보였다. 사료에 고려에 표민(漂民)이나 해적(海賊)으로 나타난 왜인 중에 실제로는 무역 목적의 통교자도 있지 않았는지 의심가는 부분도 있다. 고려가 원의 동방 변경에서 유일한 적성 세력인 일본에 대한 방위의 책임자를 자임하고 이것을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 『고려사』 등 정부가 만든 기록에 나온 일본이 기본적으로 경계 대상인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고, 고

62 『高麗史』卷30, 忠烈王世家 12年(1286) 8月 辛亥·9月 乙亥, 15年(1287) 12月 戊戌, 16年(1288) 正月丁未, 18年(1292) 10月 庚寅, 19年(1293) 7月 丁丑, 『高麗史』卷35, 忠肅王世家 11年(1324) 7月 癸丑 등.

63 이 문제에 대해서는 榎本涉(2007), 「元朝の倭船對策と日元關係」, 同著 『東アジア海域と日中交流—9~14世紀』, 吉川弘文館 참조.

려가 겉으로만 취한 자세일 수도 있겠다. 물론 사료의 정치적 성격이라는 필터를 넘어서 배어 나오는 정도의 존재감은 없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통교(通交)가 전무하였다고 측단(側斷)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닐까? 이것은 14세기 후반에서 전기 왜구가 발생하는 배경을 살펴볼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다.

그런데 정동행성은 원의 11개 행성 중에서도 독자적인 왕국인 고려에 설정되어 역대 고려왕이 장관을 세습하여 실질적으로 고려가 운영한 기구였다는 점에서 특수하다고 평가된다. 필자가 지적한 것처럼 동변 방위 기능을 강조한다면 그 특수성은 한층 커진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원의 최고 지방통치기관인 행성의 운영 방식은 지역마다 다양한 특색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업무 내용의 중점에 지역성이 있다는 것은 리지안(李治安)의 연구에서도 시사된다.⁶⁴ 몽골 왕후 귀족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산시(陝西) 지방의 행성(行省)은 이 지역에 출진(出鎮, 몽골 종왕(宗王)이 군대를 이끌고 변경에 주둔하는 것)한 안서왕(安西王)의 정청(政廳, 왕상부(王相府))이 행정권한(行政權限)을 장악하였던 시기에는 설치되지 않았는데, 일단 행성을 설치하자 안서왕 측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였다.⁶⁵ 한편 운남행성(雲南行省)의 경우 이 지역에 출진한 몽골왕의 종신(從臣)이 그 단사관(斷事官)이 되어 행성을 감독하고, 또 왕의 통치권한이 행성과 분립·경합하고 있었다.⁶⁶ 일반 행

64 李治安(2000), 앞의 책, 中篇.

65 松田孝一(1979), 「元朝期の分封制—安西王の事例を中心として」, 『史學雜誌』 88-8, 第1章.

66 方慧(2001), 『大理總管段氏世次年歷及其與蒙元政權關係研究』, 雲南教育出版社, 64~70쪽; 李治安(2007), 『元代分封制度研究(增訂本)』, 中華書局, 358~366쪽.

성의 관료조직은 제도상 정기적인 인사이동[천전(遷轉)] 원칙으로 운영하여야만 하였는데, 강절행성(江浙行省)에서는 남송 공략전의 수뇌였던 잘라 이르 족 무칼리 가문의 상위(相威)와 우량칸족 수베테이 가문(家)의 아주 두 가계(家系)에서 장관을 반복으로 배출하여, 지속적인 강남지배 관여가 확인된다.⁶⁷ 더구나 정부의 중추이면서 복리(腹裏, 허베이[河北], 산시[山西], 산둥[山東])의 통치기관이라는 점에서는 행성과 똑같은 입장이었던 중앙의 중서성도, 황태자가 최고직[중서령(中書令)]에 취임한다는 특색이 있다.⁶⁸ 이렇게 보면 정동행성의 특수성이 다른 행성과 질이 완전히 다른 것인지 아니면 지역 사정에 따라서 행성마다 다양한 편차가 있는데 그중에서 좀 더 두드러진 것에 불과한지,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원에서는 변경의 재지 세력에게 총관(總管), 만호(萬戶), 천호(千戶) 등 관직을 수여하여 통치를 위임하는 경우가 있었다. 고려왕에게 행성 승상직을 수여하는 것도 광의로는 그 일례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고려의 경우 원의 직제(職制)와 재래의 왕조 정부가 병존하였지만, 원 난이나 티베트 등 재지 지배층이 원의 관직을 띠면서 실제로 행한 통치 내용은 분명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앞으로 이것을 정밀하게 살펴보면 고려의 경우와 유사한 상황이 발견될지도 모른다.

67 堤一昭(2000), 「大元ウルス江南統治首腦の二家系」, 『大阪外學語大學論集』 22.

68 이 점에 대해서는 船田善之의 敎示에 의함.

4. 몽골 황족과의 통혼 배경

주지하듯이 사원기(事元期)의 고려는 충렬왕 이래, 유왕(幼王)이었던 충목(忠穆)·충정(忠定) 두 왕을 제외하고 역대 국왕은 원(元) 제실(帝室)에서 공주(황녀·왕녀)를 맞아들였다. 그 발단에 대해서는 이미 줄고에서도 논한 바가 있는데,⁶⁹ 요점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260년 강화 이후에도 고려와 원의 관계는 안정되지 않고, 요구에 따르지 않는 고려 정부에 대하여 원의 불신감은 더해가고 있었다. 1269년에 권신 임연(林衍)이 국왕 폐립 사건을 일으키자 원은 이것을 고려의 반역으로 간주하고 왕조 폐절(廢絶)과 소령(所領) 분할까지 고려하면서 개입하였다. 바로 그때 사절로 원과 협상했던 왕태자 심(諱, 충렬왕)은 이 위기를 해결하려고 원에 공손한 자세를 표시하기 위해 임연 토벌과 공주 강가(降嫁)를 요청하였다. 원 측에서도 고려에 대한 실력 행사에 따르는 위협성과 부담뿐만 아니라 일본과 남송 경락을 앞두고 있는 상황, 고려가 남송과 손잡을 가능성도 고려하여, 고려 왕실을 후원하고 반대세력을 제어하여 고려의 신속(臣屬)을 확실하게 하고, 그 국력을 대송·대일 경락에 이용하는 방침을 선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최근 이명미(李命美)는 양국의 통혼관계가 성립한 배경으로, 상기한 내용에 덧붙여 앞에서 언급한 동방 3왕가를 고려해 고려를 친(親)쿠빌라이가 세력으로 확보하면서, 동시에 이들 종왕가를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⁷⁰ 고려와 쿠빌라이가의 통혼이 결과적으로 그러한 효과를 가져온 것은 수궁이 간다. 그리고 통혼 교섭을 진

69 森平雅彦(1998a), 앞의 글.

70 李命美(2003), 앞의 글, 21~31·45~50쪽.

행할 때 원도 그 점을 염두했을 가능성도 인정할 수 있다. 단지 그것은 마침 1270년 전후라는 시기에 통혼 교섭을 시작한 직접 또는 주요한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고, 통혼 정책의 결과이거나 부대적인 요소로 보아야 한다. 『원고려기사(元高麗紀事)』에 수록된 원 추밀원(樞密院)의 논의에서도 보이듯이, 원의 입장에서는 대일·대송 경략을 염두에 놓고 고려 정세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주요하고도 직접적인 과제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원제국 동변의 군사문제는 양국 왕실 간의 통혼 개시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갑술의 역 개전 준비가 갖추어진 1274년에 이르러 충렬왕에 대한 강가(降嫁)가 마침내 실현된 것은 여러 배경 중에서도 대일 경략이 중요하였음을 상징할 것이다.

그 결과 왕은 원 제실의 부마로, 몽골제국의 최고 지배자 집단을 구성하는 왕후(王侯) 귀족의 일원이 되어야만 하였다. 그러나 그런 대우가 바로 실현된 것은 아니었다. 당초, 고려왕과 부마라는 두 가지 입장은 별개의 것으로 취급되어, 고려왕 자체가 부마로 대우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충렬왕은 원과의 교섭 끝에 1281년에 “부마고려국왕(駙馬高麗國王)”이라는 칭호를 획득하여 드디어 두 가지 입장이 통합되었던 것이다. 이것도 바로 신사의 역 직전의 일이었고, 충렬왕의 정동행성 승상 취임과 동시였다. 이 시기에 고려왕의 지위가 격상된 것도 일본경략에 대한 협조와 표리관계를 이룬다.

한편 통혼 관계의 패턴으로는 이른바 출진(出鎭)한 종왕과의 통혼이 눈길을 끈다.⁷¹ 전술하였듯이 출진이라는 것은 몽골 종왕, 특히 쿠빌라이 가문의 친왕(親王)이 변경 지대에 군대를 이끌고 주둔하여 해당 지역

71 이 문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森平雅彦(2008b), 앞의 글 참조.

의 군사적인 수호자로서 위압하는 체제이다. 최초로 공주 하가(下嫁)를 받은 충렬왕은 쿠빌라이의 황녀(皇女)를 맞이하였지만, 이어서 충선왕은 몽골 고원에 출진한 진왕(晉王) 카말라의 왕녀, 충숙왕은 윈난(雲南)에 출진한 영왕(營王) 예순테무르의 왕녀, 충혜왕은 티베트에 출진한 진서무정왕(鎭西武靖王) 초펠의 왕녀를 맞이하였다. 예외적으로 위왕가(魏王家)는 충숙왕의 계비(繼妃) 2명과 공민왕비(恭愍王妃)를 냈다[현재 내몽골 자치구 츠핑(赤峰) 방면에 왕부(王府)가 있었던 것 같다. 또 방계의 왕족이었지만, 충선왕의 조카인 고(高)는 원의 심왕(瀋王)에 오르면서 동시에 양왕(梁王) 승산의 왕녀를 맞이하였다. 혼인 당시 양왕가(梁王家)의 동향은 불분명하지만, 전후 시기에는 윈난(雲南)에 출진하고 있었다.

물론 개개의 통혼 성립 배경으로는 생물학적인 우연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고, 추출할 수 있는 패턴도 그것뿐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각 시기의 황제(皇帝)와 출가왕가(出嫁王家) 및 강가대상인 고려왕 내지 왕족이라는 3자 각각의 친소(親疎) 관계와 가계의 위상(家格), 개인의 지위 등이 관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진서무정왕(鎭西武靖王) 초펠은 문종(文宗) 툽테무르가 천력(天曆)의 내란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어 정권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서남부 지역의 지지 세력으로 군사적 공헌을 하였는데, 그 사위가 된 충혜왕 역시 문종정권 지지 세력 중의 한 사람이었다. 반대로 충선왕의 장인(舅)인 진왕(晉王) 카말라는 당시 성종(成宗) 테무르 황제의 장형(長兄)으로 가계(家格)는 높았지만 성종과 황위 계승을 둘러싸고 마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의 통혼을 고려 왕가를 우대할 것으로 순수하게 평가할 수 없다.

또 출진 왕가와와의 혼인은 통혼 대상으로 원격지의 왕가를 선택하였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심왕(瀋王) 고(高)의 장인인 양왕(梁王) 승산이 충선

왕의 장인인 진왕 카말라의 아들인 점을 제외하고, 특정 출신 왕가와와의 통혼이 세대를 거듭하여 계속된 일도 없었다. 고려 왕실과 몽골황실의 혼인은 기본적으로 원조 중앙 정부의 의지 또는 승인으로 결정하였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고려 왕가가 근린(近隣) 또는 특정한 몽골 왕가와와의 관계를 특별히 심화시키는 것을 경계하여 원조 정부가 의도적으로 취한 조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인 동기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동기도 상정할 수 있다. 즉 고려 왕가를 포함한 이들 왕가의 공통점은 원제국 주변의 방위를 담당하는 왕가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혈연 세력을 중앙정부의 안배로 상호 연결시켜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제국의 응집력을 높이는 효과를, 비록 상징적인 형태라고 해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견해를 인정한다면, 원제국의 동변(東邊) 진수(鎭守)의 요체로서 고려의 위치는 몽골 왕실과의 통혼 패턴에도 반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교통 · 경제정책과 왕조체제의 보전

일본을 염두에 둔 제국 동변의 진수라는 고려의 기능적 위상은 교통과 경제를 둘러싼 고려-원 관계에도 반영되었다고 생각된다. 원은 종속세력에 대한 정례(定例) 요구로 고려에 잠치[*jamči*, 站赤, 역전(驛傳)] 설치를 요구하였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 결과 고려에는 압록강변 의주(義州)에서 수도 개경에 이르는 노선과, 개경 이남에서 갈라져 남동쪽의 함포[*함포*, 지금 마산(馬山)]에 이르는 노선과 남서변(南西邊)의 나주(羅州) 방면을 거쳐

제주도에 이르는 노선이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⁷² 합포는 일본 공격을 위한 전진기지가 되었던 곳이고, 전술한 것처럼 전후(戰後)에는 진변만호부(鎭邊萬戶府)가 있던 곳이다. 나주(羅州)는 고려 정부와 원이 제주도에서 저항하던 삼별초를 공략할 때 전진기지를 설치한 곳이다. 또한 제주도는 한반도 남방 해상의 요충이며 원이 일시 직할하고 고려로 반환한 후에도 원의 목장이 있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갑술·신사의 역 후에는 전라도와 제주도에도 각각 만호부를 설치하였다. 이처럼 고려에 부설(敷設)한 잠치는 원과 고려 정부 사이의 연락뿐만 아니라 대일 전역 때에는 전선(前線)과의 연락, 전후에는 변경 수비에 관한 연락을 위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바로 고려의 대일 전선(前線) 기능에 대응하는 기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필자의 견해에 대해서는 정요근의 비판도 있다.⁷³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다른 기회로 미루도록 하고, 여기서는 특히 중요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약술해 두겠다. 첫째, 비판 전체의 전제가 되는 지적으로, 필자가 상정한 잠치노선은 고려에 이미 있던 역로(驛路)와 겹치는데, 필자가 고려 본래의 역전과 원의 잠치를 별개 조직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둘째, 필자는 『원사(元史)』 권11 「세조본기(世祖本紀)」 지원(至元) 18년(1281) 6월 임진(壬辰)의 ‘고려국왕 왕춘이 말하기를 “본국은 역을 40개 설치하였는데, 백성과 가축이 쇠약해졌습니다”. 칙명을 내려 20참(站)으로 병합하고 말 값 800정(錠)을 지급하기로 하였다.(高麗國王王賸言, 本國置驛四十, 民畜凋弊, 勅併爲二十站, 仍給馬價八百錠)’라는 기

72 森平雅彦(2004a), 앞의 글, 第2~3節.

73 정요근(2007), 「고려 역로망 운영에 대한 元의 개입과 그 의미」, 『역사와 현실』 64, 第1節.

사에 대하여 고려에 부설된 잠치를 설명한 것으로 보고, 이것이 1308년의 사료⁷⁴에 일본 침략 때 개경을 기점으로 정비된 참으로 기재된 '서해도 절영에 이르는 7개의 참 및 회원·탐라로 향하는 연로에 있는 참의 호구(西海道岳嶺至七站, 及會源·耽羅指沿路站戶)'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그렇다면, 거리(距離)에 비해 역수(驛數)가 부자연스럽게 적다는 것이다.

우선 첫 번째 비판점은 오해다. 필자는 원의 제도를 따라 설치한 잠치가 고려 본래 역전과 별개 조직으로 설치했다고는 설명하지 않았고, 잠치 조직의 자세한 내실(內實)은 금후의 과제로 유보하였다. 다만 기존의 역지와 다른 곳에 설치한 참도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역을 전용한 것만은 아닐 것이라고 하였다. 역으로 말하면, 필자는 상당수의 참은 기존의 역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일부 고려 기존의 역이 적어도 명목상 혹은 어떤 조처를 가하면서 원의 잠치를 겸한 것으로 상정하는 것이고, 참과 역의 위치가 겹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두 번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관련 지역의 마을 수에 따라 필자가 상정한 잠치노선의 거리와 참의 간격을 산출해 보자. 다만 각 참의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해상을 제주도로 향하는 부분은 일단 제외하고, 또한 육상의 거리를 단순히 참수(站數)로 나눈 근사치로 검토하기로 한다.

필자 생각으로는 1281년에 40에서 20으로 줄어든 잠치는 개경(開京)에서 서해도(西海道, 대략 지금의 황해도)의 자비령(慈悲嶺, 또는 절영(岳嶺))에 이르는 노선과 개경 이남에서 갈라져 합포(合浦, 후에 회원(會原)으로 개칭)와 제주도[탐라(耽羅)]에 각각 도달하는 노선이 존재하였다. 자비령 이북에서 압록강

74 『高麗史』 卷82, 兵志 站驛 忠烈王 34年(1308) 8月.

에 이르는 구간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1281년 당시는 그 지역이 동녕부(東寧府)로, 원의 직할이었기 때문이다. 또 제주도에 이르는 노선은 육로로는 나주 방면에 도달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한양(漢陽, 지금 서울)을 기점으로 한 각 읍의 거리와 각 읍에서 주변 관계지까지의 거리를 보면, 한양~자비령 = 한양~서흥+서흥~자비령 = 395+60 = 455리, 한양~나주 = 742리, 한양~합포 = 한양~창원 + 창원~합포 = 844 + 45 = 889리다. 개경~자비령 노선은 한양~자비령 노선에 포함되고, 또 개경 이남의 잠치 노선은 한양 부근에서 분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잠치 노선의 총 길이는 대략 455+742+889 = 2086리다. 여기에 40개 참을 설치하였다면, 참의 평균 간격은 52리(약 21km), 즉 당시 중국리로 약 38리다. 참의 수가 20개로 준 후에는 약 75중국리(中國里, 약42km)가 되지만, 위에서 언급한 1308년의 사료에는 개경~자비령 구간은 7개 참이 있었다. 이것이 20개로 준 때의 상황 그대로라면 한양~개경 = 166리이므로 개경 이남의 총 길이 166+742+889 = 1797리에는 13개 참이 설치된 것이 되고, 참의 평균 간격은 138리, 즉 당시 중국리로 약 100리(55km)가 된다.

감소 후의 참의 간격은 60중국리(中國里, 총 33km) 간격으로 설치한다는 원의 규정보다 넓다. 그러나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제도상의 원칙이다. 대도(大都)의 지방지인 『석진지(析津志)』 「대도동서관마보참(大都東西館馬步站) 천하참명(天下站名)」에 기록된 각 참 사이의 거리를 보면, 중국에도 100중국리를 넘는 경우가 흔히 있어서 위와 같은 참 간격은 꼭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개경 이북의 구간에서는 참이 매우 조밀하게 배치된 셈인데, 이 경우 이 구간이 고려-원 양국 정부 간을 사자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간선로로 이용이 빈번한 노선이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한편 정요근은 상기한 40참(후에 20참)을 개경에서 압록강 하류에 도달하는 노선과 개경에서 동북변의 쌍성총관부(雙城總管府) 관내를 통과하는 노선에 설치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1281년 당시 이들 지역의 상당 부분은 동녕부로(東寧府路) 및 개원로(開元路)의 일부로 원의 직할이었기 때문에, 상당수의 참을 고려 정부의 관할구역 밖에 설치한 셈이다. 극히 일부분이라면 수공할 수도 있으나 물자 보급과 인원 충당의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⁷⁵ 특히 동녕부와 쌍성총관부는 고려에서 원으로 붙은 세력이 지배하였으며, 고려 정부와는 영역(領域)과 영민(領民)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역에 고려의 역호(驛戶)가 몇 군데나 설정되고, 고려 정부가 원격 조작으로 쉽게 유지·관리할 수 있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또한 이것은 로(路)와 주부현(州府縣)이 관구(管區) 내 잠치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원의 제도와의도 크게 어긋난다.

1274년 충렬왕은 왕비인 쿠빌라이의 황녀를 동녕부에서 마중하였는데, 동녕부 관하(管下)에 있는 서경[평양(平壤)]에서는 스스로 은(銀), 저(紵)를 팔아서 종신(從臣)의 양초(糧草)를 구입해야만 하였다고 한다.⁷⁶ 1278년에 원에 들어갈 때에도 사전에 동녕부에 사람을 보내 은, 포(布)로 쌀을 구입하였다.⁷⁷ 1279년 충렬왕은 원에 입조할 때 이용하는 사우리[sa'uri,

75 정요근(2007), 앞의 글, 175쪽은 1290년 쌍성총관부와 서경을 잇는 站赤 부설이 고려에 명해진 예를 들었는데, 당시 이미 동녕부는 고려에 반환되었고, 站赤 부설지로 상정되는 대동강 중·상류유역[森平雅彦(2004a), 앞의 글, 제3절]은 대략 그 관구 내에 들어가므로, 고려가 自領에 설치한 站赤의 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76 『高麗史』卷28, 忠烈王世家 元宗 15年(1274) 10月 丙寅.

77 『高麗史』卷28, 忠烈王世家 4年(1278) 4月 乙丑.

掃里, 숙역(宿驛)]를 원 국내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 설치 지역 중에 동녕부로도 포함되었다.⁷⁸ 이런 점에서 보면, 동녕부로(東寧府路)에 고려 정부가 관리하는 잠치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사정은 개원로(開元路)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신사의 역 때 고려가 부담을 요구 받은 원군(元軍)의 이동 경비도 자비령에서 함포까지 구간으로 한정하였다.⁷⁹ 당시 고려 정부는 자비령 이남의 교통에 대해서 책임졌음을 엿볼 수 있다.

고려에 부설한 잠치에는 해상 잠치[수참(水站)]도 있었다. 사견(私見)으로는 1290년경 제주도~한반도 서안(西岸)~직고(直沽) 방면의 항로에 13개의 수참(水站)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 2개 참(站)은 고려 국외에 설치한 것 같다.⁸⁰ 이에 대해서도 정요근의 비판이 있다.⁸¹ 이 수참 노선은 사료에 “탐라에서 압록강변, 양촌 해구까지 모두 13곳(自耽羅, 至鴨綠江并楊村海口, 凡十三所)”⁸²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필자가 ‘양촌(楊村)’을 대도(大都)의 외항(外港)인 직고(直沽, 현재 허베이성 텐진[天津]) 부근에 있는 동명(同名)의 하항(河港)으로 비정한 것은 무리가 있고, 고려 국내 또는 압록강에서 멀지 않은 요양행성(遼陽行省) 관내에 비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제주도를 기점으로 하는 수참 노선의 도달지로 한반도 서안(西岸)의 북쪽 한계인 압록강이 병기(併記)된 이상 양촌(楊村)을 고려 국내에 비정할 수는 없다. 또 정요근은 수참 설치 이유로 당시 고려에서 요동(遼東)으로 진흥곡을 수송하였다는 사실을 중시하는데, 그중에서 해로상

78 森平雅彦(1998b), 앞의 글, 第4節.

79 『高麗史』卷29, 忠烈王世家 7年(1281)正月乙丑.

80 森平雅彦(2004a), 앞의 글, 第4節.

81 정요근(2007), 앞의 글, 第2節, 2.

82 『元史』卷63, 地理志 征東等處行中書省.

의 도달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례는 요동반도 북쪽의 개주(蓋州)로 항해가 이루어졌다.⁸³ 갑술의 역 단계의 일이지만, 반대로 요동에서 고려에 진흙미를 제공했을 때에도 ‘조원(阻遠)’한 해로(海路)로 수송하였다는 데에서⁸⁴ 위의 항해 사례와 비슷한 경로를 역으로 따라왔을 공산이 크다. 이런 실정을 염두에 두고 고려 국외에도 두 군데의 수참을 부설한 것이라면, 고려에서 나름대로 먼 지역에 도달하는 노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직고로 향하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 요동반도 일대에 별도로 수참을 설치하고 이것이 압록강 부근에서 고려가 부설한 수참과 연계되었다면 정요근의 견해도 성립되지만, 아직 이것을 지지하거나 시사하는 사료가 없다.

그렇다면 만약 요동에 ‘양촌(楊村)’이라는 지명을 찾을 수 있고 그곳이 물자의 상륙 지점이나 수운의 중계지점에 상응하는 경우는 별도로 해도, 현 단계에서는 직고 부근의 양촌을 항로의 종점으로 상정하는 것도 그다지 무리가 아니다.(단 수참 노선의 종점이 바로 수참의 설치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료에 나오는 쿠빌라이의 당초 수참 설치 동기가 고려의 물자를 대도 방면으로 수송하는 것이었다는 점은⁸⁵ 역시 중시하고 싶다. 강남의 물자를 대도로 운송하는 원의 해운에서는 물자가 양절(兩浙) 지역의 적출항(積出港)에 모이고, 직고까지 바다를 항해하였다.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도 물자 집적에는 연안의 수참을 이용하고, 그 어느 지점에서 황해를 횡단하던가, 요동반도를 따라 발해만으로 향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항로가 요동으로의 물자수송에도 이용할 수 있음

83 『高麗史』卷30, 忠烈王世家 15年(1289) 3月 辛卯.

84 『高麗史』卷27, 元宗世家 15年(1274) 4月 己酉.

85 『高麗史節要』卷21, 忠烈王 17年(1291) 9月.

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필자의 생각 역시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여하튼 고려 국외로 물자를 수송할 목적으로 이 수참을 설치하였다는 점은 필자의 생각과 정요근의 생각이 일치한다. 그런데, 이 수참은 10년 후에 필요없다고 해서 폐지되기에 이르렀다.⁸⁶ 항로 자체가 경제적 의미를 상실한 것은 아니다. 강남에서 산둥반도를 감싸고 발해만으로 들어가기 전에 고려로 향하는 분로(分路)가 있었다고 하고,⁸⁷ 해운(海運)을 이용해서 고려와 교역 하였던 해운관계자도 있었다.⁸⁸ 대도의 상인이 고려로 내항(來港)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료도 있는데,⁸⁹ 원대의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되는 픽션인 『노걸대(老乞大)』에는 고려 상인이 직고에서 배편을 이용해서 고려로 귀국하는 이야기를 신고 있다. 또한 제주도에 있는 원의 목장에서는 14세기에도 소를 헌상하였는데,⁹⁰ 멀리 원도(元都)까지 소가 육로로 걸어갔던 것은 아닐 것이다. 즉 이런 경제적 목적에 따른 교통 시스템을 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고려-원 사이의 공적 해상 물류기구가 항상 중요성을 갖지 못하였던 것은 고려가 원의 상설 수세(收稅) 대상에서 시종 제외되고, 수세의 전제인 인구 파악도 결국 행하지 않았다는 것⁹¹과 무관하지 않다. 고려 정

86 『元史』卷178, 「王約傳」.

87 陳高華(2005), 「元朝與高麗的海上交通」, 同著『元史研究新論』,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365쪽.

88 植松正(2004), 「元代の海運万戸府と海運世家」, 『京都女子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研究紀要(史學編)』3, 157~158쪽.

89 『高麗史』卷36, 忠惠王世家 後2年(1341) 7月 丙子.

90 『大元馬政記』泰定元年 10月 13日の 太僕卿渾丹, 寺丞塔海的 奏.

91 森平雅彦(2008a), 앞의 글, 140~142, 157쪽.

부가 복속국으로서 행한 ‘세공(歲貢)’도 초기 단계에서 폐지된 듯하다.⁹² 물론 고려 정부는 정기적·부정기적인 물품 현상은 빈번하게 실시하고 원에서도 필요한 물자를 수시로 요구하였다. 그것은 고려-원 관계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다. 그러나 체계적이고 항상적인, 게다가 무게와 부피가 큰 수탈과는 양상이 다르고, 해로는 그것을 위한 중요성을 가질 수 없었던 것 같다.

이 일은 고려가 독자 왕조체제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이었다. 고려를 경제수탈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견해는 고려를 직할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반대하는 원 내부의 논리에도 나타난다. 원 통사사인(通事舍人) 왕관(王觀)의 의론이 가장 상세한데,⁹³ 고려를 직할하게 되면 원의 제도에 따라 수세해야 하는데, 고려 경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또 원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고려 국내에는 그 운영 경비를 조달할 수 없다. 게다가 진수(鎭守)를 위해 원에서 군대를 파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새로 고려에 보낼 군사력의 여유는 없고, 그 경비도 고려의 민중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고려 왕조를 존속 시켜야만 하는데, 이로써 원은 고려의 군사협력을 얻어서 자신의 힘을 들이지 않고도 동방 변경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그래서 왕관은 이것을 쿠빌라이의 심려원모(深慮遠謀)에 근거해서 답습해야 할 전례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이처럼 고려에 대하여 큰 경제수익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원의 방침은 고려의 왕조체제를 유지하는 방침과 연결되고, 나아가서 원의 동방 방위책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92 『元文類』 卷117, 高麗國王封曾祖父母父母制, 『高麗史』 卷33, 忠宣王世家 2年 (1309) 7月 乙未.

93 『高麗史』 卷125, 「柳淸臣傳」.

고려를 직할로 삼는 것을 반대하는 쪽은 고려가 직할이 되면 원에 대한 일본의 경계심을 증폭시켜 그들의 귀속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하고 있다.⁹⁴ 사실 원은 일본에 조공을 권고할 때 고려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존속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⁹⁵ 고려 왕조의 폐절은 원이 이전에 한 말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된다. 고려의 왕조체제 보전은 원에게는 효율적인 동변(東邊) 방위책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장래에 귀복(歸服)시켜야 하는 적성세력인 한에서 그 동방 정책의 방향을 구속하는 요건이기도 하였다.

적어도 고려는 그러한 효과를 기대하고 자신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논법으로 활용하였다. 1343년 충혜왕이 원에 체포되었을 때, 사면을 구하는 고려 신료의 상서에 “소방(小邦)은 일본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원에게] 복(福)을 입으면 그 나라에서는 [그것을 보고] 귀화를 지연한 것을 후회할 것이요, 우리 나라가 [원에게] 처벌당하게 되면 그 나라는 [그것을 보고] 자기의 완미성(頑迷性, 귀복 거부)에 만족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⁹⁶

94 『益齋亂藁』 卷6, 在大都上中書都堂書.

95 『異國出契』 所載, 至元6年(1269)의 日本國王宛 元中書省牒.

96 『高麗史』 卷110, 「李齊賢傳」, “小邦與日本隔海爲隣. 我之蒙福, 彼則愧其歸化之遲, 我之獲戾, 彼則甘其執迷之陋.”

6. 맺음말 – 고려사상에서 갑술·신사의 역의 의의에 대하여

필자가 지금까지 검토한 고려-원 관계사의 논점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고려를 원 황제의 권위 아래에 통합하기 위한 장치(裝置)의 근본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복속 세력과 비교하여 반드시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없는 면도 있다. 그러나 기능론적으로 보면, 고려가 원제국의 동변 진수를 특히 일본을 염두에 두고 담당한다는 명목과 결부되면서—물론 각 제도·관례의 성립 요건으로서는 일부에 불과하지만—주요한 여러 관계가 편성되어 있는 양상을 볼 수 있다.

물론 이상은 다분히 형식적인 측면의 이치이다. 그러나 이런 형식이 일단 성립하면, 그것은 원의 고려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선례로 쉽게 부정하기 어려운 구속력을 가진다. 이런 구조는 고려가 일본 침략에 가담할 것을 강요받은 것을 계기로 생겼다. 그러나 고려는 이런 제약 속에서 자신의 지위 안정과 향상을 위해 이러한 입장을 오히려 적극 쟁취하고 이용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몽골 왕후의 일원(부마)입과 동시에 원조 정부의 고급관원(정동행성 승상)이고, 게다가 독자 왕국의 군주이기도 하다는 사원기(事元期) 고려왕의 존재형태의 근간은 이러한 공통 논리—결과론 또는 형식론이라는 면도 있지만—가 관통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세 가지 속성을 가진 고려왕을 원 황제의 주종제(主從制) 관계를 바탕으로 유지, 재생산하기 위한 장치(裝置)인 투르카·케식 제도, 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원황제의 종교 화이론적 권위 질서가 얽히게 된 것이다.

물론 고려의 선택은 원과 정치적 일체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

기 때문에 양날의 칼이었다. 대원관계에서 원 정국의 영향을 받기 쉬워 왕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국내적으로는 신료가 개별적으로 원의 권력과 제휴하여 군신 관계를 상대화하고, 그 때문에 국왕 측에서도 측근정치 경향이 심해져서 왕권의 구심력이 종합적으로 저하되는 악순환이 생겨났다. 이 시대 고려 정치사의 특징인 왕위 계승을 둘러싼 혼란은 이런 내외 동향이 복합적으로 얽힌 가운데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였다. 1356년에 공민왕이 이원(離元)정책을 개시한 이후 고려왕조 앞에는 이런 역사적 경위로 동요하고 있는 왕권을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었는데, 곧 사태는 왕조 교체로 나아갔다.

갑술·신사의 역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종래 일본사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하여, 그 충격이 일본 국내의 정치, 사회, 문화 등 여러 방면에 끼친 영향은 밝혀졌다. 그러나 다른 한쪽 당사자인 고려에 관해서는 이 문제를 정면에서 논의하여 왔다고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어디까지나 한 국면에 불과하지만, 이 전역을 계기로 구축된 대원관계에서 고려왕의 존재 형태는 현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필자의 답변이기도 하다.

13~14세기 여몽관계에 대한 몽골 학계의 관점

김장구 (동국대학교)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3~14세기 여몽관계에 대한 몽골 학계의 관점

김장구 동국대학교

1. 머리말

우리나라는 고려 말 ‘대몽골국(Yeke mongyol ulus)’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이후 오랫동안 광범위한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몽골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없었다. 물론 조선시대에도 사역원(司譯院)에서 몽골어를 교습하였지만 직접 교류는 아주 드물었다. 20세기 전반기에 잠시 몽골과 접촉이 있었지만 곧이어 체제가 달라지면서 교류가 불가능했다. 몽골과 본격 교류가 이루어진 것은 1990년 3월 26일 한국과 몽골의 수교가 이루어진 이후였다. 이것은 고려와 대몽골국 시기의 접촉 이후 가장 활발하고 전면적인 교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활발한 정치·경제·문화 방면의 교류에 비해 상호 학문 교류는 아직 미미한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더 오랜 시간과 꾸준한 노력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사 쪽에서는 고려-몽골(元)관계사 연구자, 동양사 쪽에서는 ‘대원(大元)몽골국(Dai On kemekü Mongyol ulus)’¹ 연구자들의 몽골사 연구가 꾸준히 이어졌고, 특히 1990년대 이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대몽골국에 대한 인식과 연구 현황에 대해서는 이미 훌륭한 논고들이 발표되었으므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글을 참고하면 전체적인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²

몽골의 한국학 연구도 면면히 이어지다가 1990년대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³ 특히 몇몇 연구자들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와 한문뿐 아니라 영어, 러시아어 등 서양 언어를 활용하여 본격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몽골 정치·경제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여 학문성과도 더욱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는다. 물론 몽골 학자들의 한문(漢文)이해가 그리 깊지 않기 때문에 기본 사료를 이용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이 문제 또한 그들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1 이하 13~14세기 몽골이 유라시아를 지배한 시기를 부를 때는 ‘대몽골국(Yeke mongrol ulus)’으로, 쿠빌라이 칸 이후를 특정해서 부를 때는 ‘대원(大元)몽골국(Dai On kemekü Mongrol ulus)’으로 적는다. 물론 ‘인용문’은 원문에 따라 번역하며, 원문의 의미 그대로 적는다.

2 이계석(1995), 『蒙古帝國·元史研究의 展望과 課題』, 『동양사학연구』 50 ; ___(2007), 『정통론과 13-14세기 동아시아 역사서술』, 『대구사학』 88 ; ___(2008a), 『大蒙古國-高麗 關係 연구의 재검토』, 『사학연구』 88 ; ___(2008b), 『東아시아 諸國의 13~14세기 歷史像과 민족주의』, 『한국사학사학보』 18 ; 주채혁(1989), 『몽골-고려사 연구의 재검토 : 몽골-고려사의 성격 문제』, 『국사관논총』 8, 국사편찬위원회 ; 김호동(2006), 『몽골帝國과 ‘大元’』, 『역사학보』 192 ; ___(2007), 『몽골제국과 고려』 등의 논저를 참고하시오.

3 이평래(1996), 『1990年 以後 몽골 역사학계의 몽골史 研究動向과 研究成果』, 『中央아시아研究』 1.

이 글은 몽골 역사학자들이 단독으로 저술한 몇 종류의 몽골(인민공화)국 통사, 이어서 사회주의 시기 몽골과 소련 학자들이 공동으로 저술한 몽골인민공화국 통사, 그리고 몽골 학자들의 단행본 저서에 나타난 서술 내용을 분석하여 대몽골국-고려(高麗)관계에 대한 몽골 학계의 관점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여몽관계에 대한 몽골 학계의 관점

1) 몽골 통사에 보이는 고려에 대한 서술과 인식

(1) 몽골 학자 단독 저술 통사

근대 몽골 역사학에서 최초로 몽골 통사 서술을 계획한 것은 몽골 인민공화국 성립과 최초의 헌법 비준 10주년, 인민혁명 1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33년 조직한 준비위원회였다.⁴ 그러나 모두 다섯 권으로 계획했던 몽골 통사 중에서 단지 1권 고대사 부분과⁵ 4권 근대사 부

4 Amar A, Ochir A, ed.(1934/1989), *Mongolyn товч түүх*(몽골의 간략한 역사, (키릴문), 편자 서문 10쪽. 오치르 교수는 덴데브가 저술한 책을 제3권이라고 했는데, 덴데브의 책에는 분명히 제4권(Dötöger debter)이라고 적혀 있다. Dingdüb(1934), *Mongyol-un tobči teüke*(전통 몽골문). 이하 출판지를 밝히지 않은 몽골 저술은 모두 울란바토르(Ulan-Bator)에서 출판된 것이다.

5 아마르(Amur A.)는 서문에서 발행 일자를 칭기스칸 紀 773년, 몽골국 24년으로 적었는데, 이는 1934년이다. 이로써 계산해보면 칭기스칸의 탄생을 1162년으로 이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몽골에서도 칭기스칸의 탄생 연도를 공식적으로 1162년으로 정하고 있다. Amur(1934), *Mongyol-un tobči teüke* · I (몽골의 간략한 역사 · I, 전통 몽골문), 서문 XIII 쪽 ; Amar/Ochir A.ed.(1934/1989), 앞의 책, 18쪽.

분⁶ 두 권만 1934년에 출판하였다. 이 중에서 아마르(Amar A.)는 원시시대부터 칭기스칸 시기까지 몽골 고대사 부분을 저술하여 출판되었다. 그 중에서 고려에 관해서 몇 군데에 아주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칭기스칸(Činggis qayan) 57년(1218) …… 솔롱고스(Solongos, 즉 고려)를 정복하여 고려 왕이 매년 몽골에 공납을 바치도록 했다.⁷

칭기스칸 군대의 숫자는 11~15만 명 정도였으며, 동쪽은 솔롱고스부터 서쪽은 카프카스 산맥과 인도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영토에 적절하게 배치하여 그렇게 많은 나라를 통합한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다.⁸

라고 서술하였다. 이어서 대몽골국을 건립한 칭기스칸의 활동과 원조의 영토에 대해,

칭기스칸은 동아시아에서 몽골 종족과 국가를 통합하여 하나의 강력한 정권을 건립하였을 뿐 아니라, 동쪽으로는 솔롱고스(Kau-li, 고려)부터 서쪽으로는 인도(Enedkeg) 땅인 인더스 강(Ind mören)과 카프카스 산맥(Kabkas-un ayulas) 너머까지, 남쪽으로는 시라무렌(Šira mören)이라 불리는 카툰의 강(Qatun-u yool, 黄河) 너머까지, 북쪽으로는 바이칼 호(Bayiyal dalai)와 사얀 산맥(Sayan ayula) 너머까지 이 광대한 영

6 Dingdüb(1934), *Mongyol-un tobči teüke* · IV(몽골의 간략한 역사 IV) ; Dendev Lkh./ Chuluun S. ed.(1934/2006), *Mongolyn tovch tiiikh* · IV(몽골의 간략한 역사 · IV, (키릴문).

7 Amar A./Ochir A. ed.(1934/1989), 앞의 책, 248/136쪽.

8 Amar A./Ochir A. ed.(1934/1989), 앞의 책, 320/165쪽.

토와 나라를 통합하였으며 ……⁹

…… 원조(Yüvan ulus)는 荒漠(sa-mu, aru yajar)에서 발흥하여 西域諸國(ši-iüi, barayun yajar-un olan ulus-ud)을 통합하였으며, 西夏(Barayun Xiya)를 평정하고 女真(Niüi-ji, Altan ulus)을 멸망시키고, 高麗(Kau-li, Solongγos)를 복속하였으며, 남쪽 지방(emüne nangkiyad, 南中國)을 진압하여 쿠케 무렌(Köke mören, 揚子江) 너머까지 정복함으로써 역사상 최대의 판도를 지녔다.

라고 서술하였다.¹⁰ 아마르의 고려에 대한 서술을 살펴보면, 칭기스칸이 건립한 대몽골국의 영토 판도를 말하면서 고려를 언급했을 뿐이며, 그는 칭기스칸 시기에 이미 고려를 완전히 복속시킨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몽골 역사학자들이 단독으로 저술한 『몽골인민공화국사』(3권본)는 1966~1969년에 출판되었다.¹¹ 그 서술 내용은 아직까지 러시아(소련) 동양학자들의 연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아울러 분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고려와 관련된 서술도 양적으로 많아졌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다.

우게데이는 지속적으로 북중국 정복을 시도하는 한편으로 페르시아, 고려를 평정하기 위해 대군을 파견하였다.¹²

우게데이칸(Ögedei qayan) 시기에 고려를 군사력으로 공격하는 한편

-
- 9 Amar A./Ochir A. ed.(1934/1989), 앞의 책, 364/184쪽.
10 Amar A./Ochir A. ed.(1934/1989), 앞의 책, 368/186쪽.
11 Shirendev B. eds.(1966~1969), *BNMAU-yn tüükh* · I ~ Ⅲ(몽골인민공화국사 · I ~ Ⅲ 3권본).
12 Shirendev B. et. al. eds.(1966~1969), 앞의 책, 251쪽.

여러 차례 사신을 파견하여 자발적으로 몽골의 지배를 받아들일 것을 고려왕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였다.¹³

우게데이칸은 金朝에 대항하여 싸우는 한편 한반도에 있던 고려에 대해서도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몽골군은 1231년 여름에 고려로 진공하였다. 전쟁의 원인은 몽골 사신이 고려에서 살해당했기 때문이었다. ……¹⁴

나얀(Nayan)이 반란을 일으켜 카이두 측에 가담한 것을 알게 된 쿠빌라이는 …… 바얀(Bayan) 장군에게 카라코룸(Qara qorum) 주변 지역을 카이두(Qayidu)로부터 방어하라는 임무를 주고, 가말라(Γamala)가 이끄는 군대를 카이두를 향해 출정시켰다. 이 밖에도 고려(Solongoγos) 왕이 군대를 이끌고 동쪽에서 공격함으로써 가말라를 지원하기로 하였다.¹⁵

정동행성은 처음에 쿠빌라이칸이 일본 원정과 연계하여 1283년에 고려에 설치했으며, 목덴(穆登)에 통치의 중심을 두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고려는 몽골의 일반 행성이 되지 않았고, 공납을 바치는 복속국 형태로 통치를 받았다.¹⁶

원조시기에 몽골의 칸과 귀족에 대항한 저항과 반란이 각지에서 일어났다. 어떤 때에는 몽골, 고려, 중국 등 각 민족이 합세하여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으며, 이러한 반란에 몽골 장수와 관리들도 참가하여

13 Shirendev B. et. al. eds.(1966~1969), 앞의 책, 367쪽.

14 Shirendev B. et. al. eds.(1966~1969), 앞의 책, 278쪽.

15 Shirendev B. et. al. eds.(1966~1969), 앞의 책, 290쪽.

16 Shirendev B. et. al. eds.(1966~1969), 앞의 책, 305쪽.

반란을 이끄는 경우도 있었다. ……¹⁷

쿠빌라이칸(Qubilai qayan)은 처음에는 외교수단으로 일본을 정복하기 위해, 1266년에(?)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몽골 칸이 파견한 최초의 사신이 고려인 반부(潘阜)와 함께 일본에 도착했지만 일본 수도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 원조의 칸은 고려를 일본 정벌을 위한 기지로 삼아 여러 차례 대규모 수군을 보내 일본을 공격하였으며, 여섯 차례나 사신을 파견하여 몽골에 복속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아 원조가 실행한 정책은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했다.¹⁸

이 책의 특징은 사회주의시기에 저술되었기 때문에, “몽골 칸의 사신을 그렇게 살해하는 것은 몽골의 침략에 대해 저항하는 한 가지 형태였다”, “원조시기에 몽골의 칸과 귀족에 대항한 저항과 반란이 각지에서 일어났다”라고 서술하여 지배자 또는 침략자에 대한 백성(인민)들의 저항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려에 대해서는 복속은 했지만 공납을 바치면서도 일정 정도 ‘독립성’을 유지했음을 지적하여 고려의 ‘이중성’을 처음으로 언급하였다.¹⁹ 아울러 몽골과 일본 사이에서 행한 ‘중개자’ 성격도 분명히 인식하고 서술하였다.

몽골의 국가체제가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변하여 기존의 역사 서술과는 다른 서술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리하여 2003년에 『몽골

17 Shirendev B. et. al. eds.(1966~1969), 앞의 책, 320쪽.

18 Shirendev B. et. al. eds.(1966~1969), 앞의 책, 377~378쪽.

19 고려왕의 國王과 駙馬로서의 ‘이중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호동(2007), 『몽골제국과 고려』, 101~120쪽을 참조하십시오.

국사』(5권본)를 간행했다.²⁰ 그중에서 대몽골국-고려관계는 둘째 권에 서술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려사』에는 당시 몽골-고려의 교류와 관련된 자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몽골사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고 언급하였으며,²¹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간단하게나마 언급하였다.²² 칭기스칸 시기의 대몽골국-고려관계에 대해서는 달라이(Dalai Ch.)의 연구를 인용하여 서술하였다.²³

칭기스칸은 소수의 기병을 파견하여 고려와 교류할 수 있는 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칭기스칸은 고려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복속시키려는 정책을 시행하였다.²⁴

대몽골국 초기 고려와의 관계, 즉 사신 저고여(著古與) 살해와 72명에 달하는 다루가치(達魯花赤, daruḡači) 살해 사건에 대해서도 달라이의 다른 연구를²⁵ 이용하여 서술하였다.²⁶ 또한 몽골의 일본 원정 시 고려의 역할과²⁷ 정동행성에 대해서도 1966년 통사의 서술을 되풀이하고 있다.²⁸ 이 책에서는 대몽골국-고려관계에 대해 다양한 서술을 하였지만, 대부

20 Ochir A. et. al. eds.(2003), *Mongol ulsyn tüükb* · II (몽골국사) · II (5권본).

21 Ochir A. et. al. eds.(2003), 위의 책, 17쪽.

22 Ochir A. et. al. eds.(2003), 앞의 책, 32쪽.

23 Dalai Ch.(1998), *Mongol · Solongosyn ertnii tüükben khariltsaa*(몽골과 한국의 고대 역사 관계), 14쪽.

24 Ochir A. et. al. eds.(2003), 122쪽.

25 Dalai Ch.(1973/1992), *Mongolyntüükb*(1260~1388) · III[몽골사(1260~1388) · III].

26 Ochir A. et. al. eds.(2003), 앞의 책, 159~160 · 186~187쪽.

27 Ochir A. et. al. eds.(2003), 앞의 책, 203 · 315쪽.

28 Ochir A. et. al. eds.(2003), 앞의 책, 211쪽 ; Shirendev B. et.al,eds, (1966), 앞의 책, 305쪽.

분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에는 대몽골국 성립 800주년을 맞아 대몽골국의 각 지방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칸국과 몽골 원조(元朝)의 역사에 관한 책을 출간하였다.²⁹ 그중에서 몽골 원조와 고려 관계에 대해서는 『몽골 원조(元朝)』에서 기술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동행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 征東行省으로 존재하다가 1299년 초에 고려로 바뀌었으며 같은 해 말에 철수하였고, 1321년에 다시 설치하였다. 이 행성의 총책 임자는 고려왕이 겸했다. 고려는 자치권을 지녔으며 자국의 내정과 사회에 대해 원조의 권력자들은 중국에서 행한 것처럼 변경하지 않았다. 국내 통치 구조는 원칙적으로 원조의 행정과는 전혀 달랐으며, 티베트도 같은 방식으로 쇄신하였다.”³⁰

1259년 고려가 몽골에 복속함으로써 쿠빌라이 시대 이후 몽골 원조와 고려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으며, 그 이유 중 하나는 남송을 정복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이라고 서술하였다.³¹ 그리고 쿠빌라이는 이러한 고려와의 관계를 보다 강력하게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딸을 고려왕에게 시집보내 ‘인척(quda uruγ) 관계’를 맺었다고 설명

29 Ganbold J. et. al.(2006), *Mongolyn yuan'uls* (몽골 원제국). 이외에도 Dalai Ch., *Ikh Mongol uls*(대몽골국) : Tsolmon S., *Mongolyn altan ordon uls* (몽골 킵차크칸국) : Enkhchimeg Ts., *Mongolyn tsagadain uls*/몽골 차가타이칸국 : Ankhbayar D., *Mongolyn el kbaant uls*(몽골 일칸국) 등이 몽골제국 성립 800주년을 기념하여 함께 출간되었다.

30 Ganbold J. et. al.(2006), 앞의 책, 36쪽.

31 Ganbold J. et. al.(2006), 앞의 책, 132쪽.

하였다. 이어서 나차도르지의 저술을 인용하여³² “인척 관계를 맺어 고려를 제국의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고려는 매년 쿠빌라이칸에게 공납을 바쳤고 특산물을 선물로 바쳤다”고 서술하였다.³³ 몽골 원조의 복속국이 된 고려는 자국의 의지가 아닌 상국의 임무를 받아 다른 여러 나라와 교류하였으며, 그 한 예가 몽골과 일본 사이에서 중개역할을 한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이어서 몽골이 일본을 원정하기 위한 준비 상황과 과정 등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고려의 중개 역할 등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³⁴ 비교적 최근에 간행한 이 책의 서술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연구 성과를 뛰어넘는 새로운 서술은 찾아볼 수 없다.

(2) 몽골과 소련학자 공동 저술 통사

사회주의시기 몽골 역사서술의 특징은 러시아와 공동으로 『몽골인민공화국사』를 서술하였다는 것이다.³⁵ 이 책은 1955년(초판), 1966년(수정 재판), 1984년(수정 3판) 세 차례나 다시 간행되었으며, 몽골 과학아카데미와 소련 과학아카데미 두 기관이 중심이 되어 사회주의 역사서술이라는 관점에서 몽골 통사를 발행하였다.³⁶ 그러나 이 책에서는 고려에

32 Natsagdorj Sh. (1998), *Khubilai setsen*(쿠빌라이 세첸 칸), 39~40쪽.

33 Ganbold J. et. al. (2006), 앞의 책, 133쪽.

34 Ganbold J. et. al. (2006), 앞의 책, 134~145쪽.

35 1956년 몽골과 소련, 중국 삼국이 회의를 열어 1959년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1960년부터 시작하여 1965년까지 공동으로 3권본 몽골통사를 서술하기로 합의했으나, 진행 과정에서 중국이 빠진 채 몽골과 소련 양국 학자들이 서술하게 되었다. Rupen R. A. (1958), “Russian–Mongol–Chinese Conferenc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XVII, No. 3, pp.537~541.

36 Grekov B. D. · Shirendev B. et. al. eds. (1955), *BNMAU–yn tüükb*[몽골인민공화국사(초판)] ; Jukov E.M · Shirendev B. et. al. eds. (1966), *BNMAU–yn tüükb*[몽골인민공화국사(수정 재판)] ; Bira Sh · Okladnikov A.P. et.

관해서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심지어 몽골 원조의 일본 원정에 관한 서술도 세 줄에 불과할 뿐 아니라 원정에서 중개 역할을 했던 고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몽골 원조의 일본 원정에 관한 서술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또한 쿠빌라이칸은 일본에 대해서도 두 차례 큰 규모의 원정을 실행했는데, 처음 1274년 10월에, 이어서 1281년에 군대를 파견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원정은 모두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³⁷

1966년에는 몽골 인민혁명 45주년을 기념하여, 1955년에 발행한 『몽골인민공화국사』의 수정 재판을 발행하였다.³⁸ 그러나 이 책에도 고려에 대한 언급 없이 1955년도 『몽골인민공화국사』와 거의 똑같이 일본 원정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했을 뿐이다.³⁹

1984년에는 1966년(수정 재판)에 이어 『몽골인민공화국사』 수정 3판을 발행하였다.⁴⁰ 이 책에서도 칭기스칸과 우게데이칸 시기 대몽골국-고려관계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없다. 그리고 몽골의 일본 원정에 대해서도 1955, 1966년에 발행한 책과 똑같이 언급하였고, 마찬가지로 고려에 대한 언급도 없다.⁴¹

al. eds.(1984), *BNMAU-yn tüükb*[몽골인민공화국사(수정 3판)].

37 Grekov B. D. · Shirendev B. et. al. eds.(1955), 위의 책, 133쪽.

38 Jukov E. M. · Shirendev B. et. al. eds.(1966), *BNMAU-yn tüükb*[몽골인민공화국사(수정 재판)].

39 Jukov E.M · Shirendev B. et. al. eds.(1966), 위의 책, 135쪽.

40 Bira Sh · Okladnikov A. P. et. al. eds.(1984), *BNMAU-yn tüükb*[몽골인민공화국사(수정 3판)].

41 Bira Sh · Okladnikov A. P. et. al. eds.(1984), 위의 책, 174쪽.

몽골과 소련학자들이 공동으로 저술한 1권본 『몽골인민공화국사』 모두 세 차례 발행되었는데, 그 분량이 적었기 때문에 고려에 대한 서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고려 역사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도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한다. 사회주의시기에 저술된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몽골의 중국 지배시기 원조에 대해 '몽골 봉건 정복자와 지배자들에게 충성을 바쳤던, 그들의 부용배(附庸輩)와 중국의 군사 봉건 지배자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중국 인민을 억압했던 힘든 시기였다'라고 강조하였다.⁴²

2) 몽골 학자 저술 단행본에 보이는 고려에 대한 인식

여기에서는 학자별로 나누어 서술하도록 하겠다. 먼저 몽골사 연구자인 달라이의 저술을 살펴보도록 하자. 몽골 역사 학계에서 대몽골국-고려관계에 대한 서술은 대부분 달라이의 연구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그는 한문과 중국어, 러시아어 자료를 능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학자였다.

우게데이칸은 금 왕조를 정벌하는 동시에 고려를 공격했다. …… 1218년에 哈眞과 扎刺 등이 이끄는 몽골 군대가 거란의 잔여 세력을 좇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고려 북부 영토로 들어갔다. 양측의 협력으로 거란 잔여 세력을 격파하였다. 사료에는 '강동성에 있던 거란 침략 세력을 다음 해 고려와 몽골의 …… 연합 세력이 진압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어서 몽골과 고려 양국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 …… 이렇게 하여 고려 왕인 고종(1214~1259)은 몽골국에 공

⁴² Bira Sh · Okladnikov A. P. et. al. eds.(1984), 앞의 책, 170쪽.

납을 바치게 되었다. …… 칭기스칸이 사르타굴(Sartayul, 호레쥬)을 원정하러 떠날 때 후방 몽골을 책임지고 남아 있던 옷치긴은 제멋대로 1221년에 고려에게 지나치게 많은 공물을 요구하여 고려 백성들의 원망을 사게 되었다. 이런 원망이 쌓여 1225년에는 칭기스칸의 사신을 귀환 도중에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나 칭기스칸은 고려를 군사력으로 정복하여 철저하게 파괴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양국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다.⁴³

칭기스칸이 보낸 사절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지 6년이 지난 1231년에 우게데이칸은 공식 사절을 살해한 것을 구실로 몽골 군대를 고려 북부지방으로 파견하였다. …… 전쟁은 오래지 않아 끝나고 고려는 몽골의 복속국이 되었다. …… 그러나 고려 측에서 몽골에 바치기로 약속한 많은 공물을 제 때에 바치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1247~1250년까지 ‘공납을 바치지 않는다’는 구실로 몽골군이 네 차례에 걸쳐 고려 영토를 침입하였는데 ……⁴⁴

쿠빌라이칸이 일본과 교섭하려 할 때 지리적으로 가깝고 언어 문자, 관습을 가장 잘 아는 고려를 이용하였다. 일본에 파견한 몽골 사신을 고려 사람이 길안내를 맡았고, 서신을 고려 사람이 번역하였으며, 또한 필요한 어떤 경우에는 고려왕이 단독으로 몽골과 일본 양국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수행하였다. …… 몽골 사신은 반년 가까이 일본에서 참고 기다리며 회답을 기다렸으나 아무런 회답도 얻지 못하자 되돌아와서 사건의 전말을 쿠빌라이칸에게 상세히 보고하였다. 쿠빌라이칸의 서신과 함께 고려왕도 일본의 천황에게 서신을 보내, 천하에서 가장 강력한 몽골 칸의 안녕을 축원하는 사절을 곧바로 보내 화평

43 Dalai Ch, (1994), *Mongolyn tüükh*(1206~1260) · II [몽골사(1206~1260) · II], 156~157쪽.

44 Dalai Ch, (1994), 위의 책, 158쪽.

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충고했지만, 일본 천황은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한반도를 일본 원정을 위한 전초기지로 정하였다.⁴⁵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달라이는 대몽골국-고려관계 전반에 걸쳐 정확한 사료활용과 이해를 바탕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특히 고려에 대한 서술에서는 몽골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이 밖에도 고려에 대해 여러 가지 짧은 서술을 하였는데 예를 들면, 『고려사』의 사료 가치에 대한 서술과,⁴⁶ 카이두(Qaidu)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가말라(Γamala)가 이끄는 군대를 고려(Solongγos) 왕이 도와주기로 하였다는 것,⁴⁷ 원 제국의 구성원으로는 ‘주인’인 몽골 이외에도 정복당한 중국, 버마, 티베트, 안남, 고려 등이 포함되었는데, 몽골의 칸과 귀족들은 제국 전부를 대몽골국으로 이해했다고 서술하였다.⁴⁸

아울러 몽골의 대칸과 일족, 귀족, 장군 등은 중국, 인도, 고려, 페르시아 등에서 가져온 비단, 솜, 면포 등으로 품질 좋은 털 등 의복을 만들어 입었으며,⁴⁹ 원 제국 시기에 목마장은 더욱 늘어나 동으로는 고려, 북으로는 셀렝게(Selengge) 분지, 서쪽으로는 간수(甘肅), 남쪽으로는

45 Dalai Ch.(1973), 앞의 책, 81~82쪽 ; Dalai Ch.(1973/1992), 앞의 책, 79~80쪽.

46 Dalai Ch.(1973), *Yuan gürnii üeiin mongol*(원대 몽골), 27쪽 ; Dalai Ch.(1973/1992), *Mongolyn tüükib*(1260~1388) · Ⅲ[몽골사 (1260~1388) · Ⅲ], 30쪽.

47 Dalai Ch.(1973), 앞의 책, 49~50쪽 ; Dalai Ch.(1973/1992), 47쪽.

48 Dalai Ch.(1973), 앞의 책, 56쪽 ; Dalai Ch.(1973/1992), 50쪽.

49 Dalai Ch.(1973), 앞의 책, 64~65쪽 ; Dalai Ch.(1973/1992), 60~61쪽.

원난(雲南)까지 이르렀다고 『원사(元史)』를 인용하여 서술하였다.⁵⁰

1992년에는 1973년에 간행한 『원대 몽골』의 수정증보판인 『몽골사 Ⅲ(1260~1388)』을 출판하였다. 대부분은 옛 원고 그대로이지만,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은 수정 증보하였다. 그중에서 대몽골국-고려관계를 서술한 부분을 인용해보도록 하겠다.

13~14세기에 몽골과 고려의 대외 관계는 아주 분명해졌다. 그러나 당시 몽골과 고려관계의 상황을 살펴보면, 대몽골국 시기(1206~1260)와 원 제국 시기(1260~1368) 둘로 나누어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전기에는 완전한 독립국인 몽골과 고려 양국 간의 관계였다. 고려의 사신, 匠人, 醫員, 장사꾼들이 모두 몽골 수도인 카라코룸으로 왔다. 그런데 쿠빌라이칸이 원 제국을 성립한 뒤에는 몽골과 고려관계는 그 내용이 달라져 몽골-중국-고려 삼국 관계와 같이 되었다. 몽골과 고려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고종이 1260년에 사망했다. 그 후로 고려 왕, 귀족, 사신 등은 한 번도 카라코룸으로 오지 않았다. 주로 칸 발가스(Qayan balyas, 大都)로, 가끔 상두(Sangdu, 上鄱)로 오곤 했다. 1274년부터 시작해서 몽골과 고려 관계의 주된 형태는 '부마관계'를 통한 화평 형태가 되었다. 당시의 몽골 칸들은 고려인들에게 공납을 바칠 것, 일본 원정에 필요한 배를 건조할 것, 제주도에 몽골 마을을 조성하여 몽골군을 주둔시킬 것, 몽골 다루가치(darugači)를 파견하면 서도 고려의 내정에는 크게 간섭하지 않은 채 감시하는 등의 대외정책을 시행하였다.⁵¹

이어서 달라이는 1998년에 『몽골과 한국의 고대 역사 관계』라는 저

50 Dalai Ch.(1973), 앞의 책, 95쪽 ; Dalai Ch.(1973/1992), 88쪽.

51 Dalai Ch.(1992), 앞의 책, 79쪽.

서를 발간하였다.⁵²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 1장. 서장
- 2장. 대몽골국 시기의 몽골-고려관계(1206~1260)
- 3장. 원 제국 시기의 몽골-고려관계(1260~1368)

이 책의 시작 부분과 마지막의 결론 부분만을 요약해보겠다.

고려시기 몽골과 고려관계를 되돌아보면 양국의 백성은 아주 오랫동안 대부분 우호적으로 교류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의 바람은 결코 실현되지 못했다.⁵³

…… 마지막으로 언급하자면, 원 제국 시기에 몽골과 고려관계는 마치 한 집안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겉으로는 아주 가까운 사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계를 정복한 대제국 곁에 있던 작은 나라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교류한 모범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당시에 고려는 원 제국의 종속국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당시 몽골과 고려관계를 단지 우호적인 면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어쨌거나 몽골 정복자들은 고려의 백성에게 수많은 고통을 안겨주었고, 무거운 공납으로 짓눌렸던 것은 사실이다. 몽골의 압제에 항거하여 고려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⁵⁴

이 인용문에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대몽골 제국과 약소국이었던 고

52 Dalai Ch, (1998), *Mongol Solongosyn ertnii tүүкben kharilttsaa*(몽골과 한국의 고대 역사 관계).

53 Dalai Ch, (1998), 앞의 책, 3쪽.

54 Dalai Ch, (1998), 앞의 책, 59쪽.

려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서술한 몽골 노(老) 역사가의 고민이 보인다.

다음으로 몽골의 언어학자인 수미야바아타르(Sum'yaabaatar B.)의 연구 업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도록 하겠다. 그는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몽골과 고려 관계에 대한 여러 권의 저서를 출판하였다. 그리고 그는 한국어와 한문에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사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번역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학자이다.⁵⁵ 특히 1992년 한국에서 출간한 그의 저서 『중세한몽관계사(中世韓蒙關係史)－문헌편(文獻篇)』은 몽골학자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린 역저이다.⁵⁶ 이 책은 1215년부터 1254년까지 몽골에 대한 『고려사』, 『동국병감(東國兵鑑)』 등의 기록을 역주하여 1978년에 몽골에서 출간했던 것을 바탕으로 1254년 이후 1260년까지 기록을 더하여 출간한 것이다. 이렇게 한국 측 한문사료를 몽골어로 번역하여 한문을 잘 모르는 몽골학자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몽골 중세사 연구의 권위자인 이시잡츠 등이 편찬한 『몽골제국의 대외관계』는 몽골-고려관계를 비교적 상세하고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그 내용을 옮겨보도록 하자.

13세기는 몽골과 고려교류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 고려 영토를 침입하여 3년간 머물러 있던 거란인들을 힘을 합쳐
궤멸시킨 1218년부터 몽골과 고려관계가 처음 시작되었던 것이다.
…… 거란인들을 궤멸시킨 다음, 1219년 초에 합진은 “우리가 1만 리
밖에서 와서 귀국과 함께 반란을 진압한 것은 하늘의 뜻이다”라고 말

55 Sum'yaabaatar B. (1978), *XIII-XIV zuuny Mongol Solongos khariltsaany bichigüüd*(13~14세기 몽골 한국 교류 문서).

56 수미야바아타르(1992), 『中世韓蒙關係史－文獻篇』, 단국대학교출판부.

하고, 몽골과 고려의 군사 지휘관들은 “우리들 양국은 영원히 형제로서 자손만대까지 오늘을 잊지 말자!”고 맹세하였으며 몽골군이 귀환할 때 고려인들은 예절에 따라 환송하였다. 이 말은 예의상, 또는 양측 군사 지휘관이 생각나는 대로 한 말은 아니었다. 어쨌든 고려인과 가깝게 지내고 싶었던 몽골인의 입장에서 한 말이었다. …… 고려 측에서도 영향력이 커지고 있던 몽골과 화평 관계를 깨뜨릴 생각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료를 살펴보면, 고려인들은 한편으로는 몽골인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으며, 믿어야 할지 말지 머뭇거렸던 모습도 찾아볼 수 있다. …… 1219년 봄의 첫 달, 즉 몽골군이 철수하면서부터 1225년 봄의 첫 달, 즉 몽골과 고려의 국교가 끊어질 때까지 6년간 몽골에서 고려로 11번 사신을 파견하였으며, 고려는 몽골에 다섯번 예물과 공납을 바쳤다. …… 이 시기부터 고려는 실질적으로 몽골의 종속국이었다. 중세시기에 양국 간의 두 단계에 걸친 교류를 요약하면, 몽골 측은 고려를 복속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고려는 몽골에 대항하다가 결국은 복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⁵⁷

쿠빌라이칸 시기에 고려는 완전한 종속국이었으며, 양국 교류는 모든 방면으로 확대되고 깊어졌다. …… 다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몽골제국의 중심과 유라시아를 포함한 다국적인 민족교류의 새로운 규범에 양국관계도 관련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고려는 어떤 형태로라도 몽골의 지배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새로운 규범에 포함되어 고려가 독립을 완전히 상실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 한 나라의 독립을 나타내는 기준인 영토를 지켰으며, 원 제국의 전략적 범위 내에서 대외정책을 수행했지만 왕조는 유지하여 조정의 업무를 수행했고 국정을 통제하였으며, 일본으로 원정을 실시한 군대를 제외하면 진압 군대를 설치하지 않은 것 등은 이를 증명한다. …… 또한 원 제국의 칸의 궁정에서 봉사했던 사람의

57 Ishjamts N, et. al.(1995), *Mongolyn ezent gürnii gadaad kbariltsaa* (XⅢ~XⅣ)[몽골제국의 대외관계 13~14세기], 55~65쪽.

절반 정도는 고려에서 보낸 공녀들이었으며, 칸의 궁정과 고관대작들의 집을 지키던 사람들도 대부분 고려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몽골에는 고려의 관습과 생활 풍습이 적지 않게 퍼졌다. 양측의 이러한 영향을 몽골에서는 “고려양”, 고려에서는 “몽골풍”이라고 부를 정도로 널리 퍼졌다. …… 특히 몽골 군대가 20여 년 동안 주둔했던 제주도에서는 몽골어를 한반도의 다른 어느 곳보다 많이 사용하였다. ……⁵⁸

이 책에서도 몽골과 고려관계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대몽골국에서 고려의 위치에 대해서도 역시 ‘이중적’인 성격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몽골과 고려 사이의 문화교류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으며, 제주도에 끼친 몽골 문화의 영향도 언급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몽골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나차도르지는 『쿠빌라이 세첸 칸』을 발간하였다.⁵⁹ 그는 몽골(원) 제국과 고려에 대해 「제6절 몽골원 제국의 성립」에서 간단하게 서술하였다.

또한 몽골 정복자들은 남송 이외에도 고려를 통치범위 안에 두는데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칭기스칸은 1218년에, 우게데이칸은 1231~1233년에 이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여러 차례 군사를 파견하여 마침내 고려를 복속하였다고 하지만, 고려왕은 몽골에 완전하게 복속당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적대적으로 대했다. …… 쿠

58 Ishjamts N. et. al.(1995), 위의 책, 88~97쪽.

59 Natsagdorj Sh.(1998), *Khubilai setsen*(쿠빌라이 세첸 칸).

빌라이가 칸에 오른 뒤 고려의 왕자(후에 원종)가 쿠빌라이에게 사신을 보내 우호 관계를 맺기를 원하자, 이 기회를 이용하여 고려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고 玉帶 및 다양한 선물을 보내어 화평을 유지하고 나아가 원조에 공납을 바칠 것 등을 요구하였다. …… 이후로 몽골과 고려의 우호 관계는 더욱 두터워졌다. 이 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고려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는 목적으로 자기 딸을 고려왕에게 시집을 보냈다. ……”⁶⁰

1996년에는 오랫동안 한국관련 외교활동을 해 왔던 하과(Lkhagvaa-B.)가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하였다.⁶¹ 1장은 한국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하였으며,⁶² 2장은 몽골과 한국의 민족 기원 문제를 정리하였다.⁶³ 이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장에서 13~14세기 몽골과 고려의 교류와 그 전통에 대해 서술하였다.⁶⁴ 그 내용을 일일이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서술 체제를 살펴본 후에 몇 가지 특징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3장의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장. 13~14세기 몽골과 고려의 교류와 그 전통

1절. 대몽골국과 고려의 관계

2절. 원 제국과 고려의 관계

– 원과 제주의 관련성

– 만주와 고려의 관련성

60 Natsagdorj Sh.(1998), 위의 책, 39~40쪽.

61 LkhagvaaB.(1996), *Solongos, Mongol-Solongosyn khariltsaany ulamjlalaas* [한국, 몽골-한국의 교류 전통(몽골어)], 두솔 출판사.

62 Lkhagvaa B.(1996), 위의 책, 13~49쪽.

63 Lkhagvaa B.(1996), 앞의 책, 51~60쪽.

64 Lkhagvaa B.(1996), 앞의 책, 61~198쪽

3절. 교류의 영향과 전통

- 사회, 정치적 영향
- 왕실 혼인과 정치, 문화적 영향
- 양국 간 상품 교류
- 학문 분야의 관련과 영향
- 문화, 교육 분야의 관련과 그 원인
- 언어 상관성 문제
- 종교적 관련과 영향
- 복식 등에 끼친 영향
- 인적 교류
- 요약

그는 3장 1절에서 이 시기 대몽골국과 고려는 몽골과 한국의 교류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중세 시기 양국 간의 교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둘째, 긍정적·부정적인 영향의 양면 모두를 포함하였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시기처럼 두 나라 사람들이, 관련성과 교류가 모든 방면을 포함하여 넓고 가까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셋째, 대몽골국과 원 제국의 대외정책의 범위에서 몽골과 고려의 교류는 당시 몽골과 다른 여러 나라의 교류와 달리 특별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⁶⁵

또한 대몽골국과 고려의 교류 관계를 두 시기로 나누어 보았는데, 하나는 교류의 개시(1218~1225)와 다른 하나는 여섯 차례의 몽골의

65 Lkhagvaa B.(1996), 앞의 책, 63쪽.

고려 침략 시기(1231~1259)이다. 이 시기 대몽골국과 고려 간 교류의 특징에 대해서도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 ① 양국 교류는 처음으로 1218년에 대몽골국 측에서 군사력이 아닌 우호적인 방법으로 고려를 복속시키려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시작되었다.
- ② 그러나 실제로 고려는 그렇게 우호적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몽골국은 무력으로 침략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 ③ 그러나 양국 관계는 이후 원-고려 사이에 우호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놓았다.⁶⁶

3장 2절에서는 원 제국-고려관계 시기의 교류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첫째, 30여 년간 지속된 전쟁 끝에 관계는 정상화되었을 뿐 아니라 더 가깝고 깊어졌다.

둘째, 다양한 나라와 민족을 포함하고 몽골 중앙 정부는 다면적 관계의 통합된 새로운 규범에 고려를 포함하였다.

셋째, 몽골에 포함된 나머지 민족을 생각한다면, 몽골 칸의 '황금 가문(alтан уруу)'에 고려의 왕이 피를 섞을 정도로 아주 밀접해졌다.

넷째, 고려는 독립을 일정 정도 유지하였다.⁶⁷

이어서 그는 위의 목차에 보이는 순서대로 몽골과 고려 교류 관계의 다양한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서술하였다. 하과의 저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몽골 학자들의 개별적인 연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했으며, 아울러 한국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적극 활용한 것에 그 특징이 있다.

66 Lkhagvaa B.(1996), 앞의 책, 77쪽.

67 Lkhagvaa B.(1996), 앞의 책, 77쪽.

2004년에는 몽골-일본 관계사 전공인 몽흐체첵(Monkhtsetseg T.)이 『13~14세기 몽골-일본 관계』라는 저서를 출간하였다. 특히 2장 1절 ‘동아시아에 대한 원조의 정책’에서 서술하기를 “고려는 몽골 제국에 복속 하면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상국의 임무를 부여받아 다른 여러 나라와 교류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몽골과 일본 사이에서 중개역할을 수행하고 군사적으로 흡수하게 된 것이다”라고 명확히 지적하였다.⁶⁸

그는 쿠빌라이칸에 대해서도 “쿠빌라이칸의 동아시아정책과 행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영토를 확장하려 했던 몽골 대칸들의 전통적인 정책을 새로운 상황에 따라 지속하려 한 것이고, 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베이징[대도(大都)]을 중심으로 지휘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정주 농경문화를 지닌 나라로부터 몽골 제국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는 동시에 유라시아의 문화, 교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교통망의 안전을 조성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라고 서술하였다.⁶⁹

3. 맺음말

이상으로 몽골에서 이루어진 대몽골국-고려관계에 대한 서술 내용과 관점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몽골 근대 역사학 초기에는 고려역사에 대한 연구도 미진했으

68 Mönkhtsetseg T. (2004), *XIII~XIV zuuny üeiin mongol ypony kbariltsaa* (13~14세기 몽골-일본 관계), 30쪽.

69 Mönkhtsetseg T. (2004), 위의 책, 41쪽.

며, 대부분 러시아 동양학자들의 연구를 인용하여 서술하였다. 사회주의시기에 몽골과 소련학자들이 공동으로 서술한 통사에는 몽골의 대외 원정을 각지의 인민에 대한 억압과 착취라는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아울러 고려에 대한 서술도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만 언급하였다.

1960~1970년대 달라이의 몽골사 연구 과정에서 나타난 고려역사에 대한 관심과 수미야바타르의 언어 연구와 『고려사』에 나오는 몽골 관계 사료 번역을 시작으로 대몽골국-고려관계를 연구할 수 있는 기초가 놓였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에는 한국의 연구 성과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었던 하과의 연구로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성과를 아직까지는 중등학교 몽골 국사 교과서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우리말로 번역된 『몽골의 역사』에도 대몽골국-고려관계에 대한 서술이 전혀 없으며, 현대 한국에 대해서만 두 차례 언급했을 뿐이다.⁷⁰

한국에서도 대몽골국의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 오랫동안 한문사료에만 의존하였기 때문에 세계사의 흐름에서 대몽골국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었다. 심지어 몽골국의 역사를 단순하게 ‘원조(元朝)’의 역사로만 서술하여 역사 인식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⁷¹

1990년대 이후 한문 이외의 다양한 사료 활용과 기존 사료를 재검토하고 새롭게 인식하면서, 다양한 이해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몽골에서도 1990년대 이후 젊은 연구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앞으로

70 강톨가 외 저, 김장구·이평래 역(2009), 『몽골의 역사(Mongolyn Tüükh)』, 동북아역사재단.

71 김장구(2006), 「중국사 연구자들의 元代史 연구와 ‘蒙古’인식」, 김장구 외, 『중국 역사가들의 몽골사 인식』.

몽골의 한국학 연구 전망을 밝게 해준다.⁷²

아울러 몽골 각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운 학생들이 늘고, 더 나아가 한국으로 유학을 오면서, 연구자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한국을 더 넓고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몽골 연구자들도 더욱 분발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과 몽골국은 모두, 몽골에서 한국학 연구와 한국에서 몽골학 연구가 전반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미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각 대학과 연구단체, 관계기관에서도 더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인다면 한국과 몽골의 학문 연구는 빠른 시일 내에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72 그중에서 역사를 전공하는 몽골국립대학교 국제관계대학의 바트투르 교수(J. Battör, 현대사), 같은 학교 외국어문화대학 한국학과에 이르덴치멕 교수(G. Erdenechimeg, 중세 몽·한관계사) 등이 있으며,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몽골 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연구원 에렉젠(G. Eregzen, 고고학)의 활약도 기대한다.



13~14세기 고려-몽골관계 탐구

초판 1쇄 인쇄 2011년 7월 1일

초판 1쇄 발행 2011년 7월 4일

역은이 동북아역사재단 · 경북대학교 한중교류연구원

펴낸이 정재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 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미군동 267) 임광빌딩

전 화 02-2012-6065

팩 스 02-2012-6189

e-mail book@nahf.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11

ISBN 978-89-6187-238-6 93910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